

균형과 화합 위에 서구
내일을 열어가는

발간등록번호
54-3560290-100001-10

2025년 안전관리계획

safety management plan



인천광역시 서구

2025년도
안전관리계획

 인천광역시 서구
<http://www.seo.incheon.kr>

 인천광역시 서구
<http://www.seo.incheon.kr>

2025년 서구 안전관리계획

2025. 2.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I.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 I.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I.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 I.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목 차

I. 총설	1
1. 개요	3
2. 성과 및 반성	9
II. 여건 및 추진방향	17
1. 지역 여건 및 전망	19
2. 추진방향 및 목표	25
III. 재난·안전관리 체계	35
1. 국가 안전관리체계	37
2. 군·구 안전관리체계	41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내용	60
4. 재난관리역량 강화방안	77
IV.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79
1. 총괄	81
2. 재난·안전사고 주요 유형별 관리대책	95
① 자연재난 분야.....	95
가) 풍수해.....	95
나) 대설·한파.....	106
나-1) 대설.....	106
나-2) 한파.....	120
다) 폭염.....	131
②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145
가) 화재·폭발.....	145
가-1) 문화재 화재사고.....	154
나) 감염병.....	158
다) 사업장 산재.....	166
라) 시설물 재난·사고.....	173
라-1) 문화시설(공연장).....	173
라-2) 체육시설.....	180
라-3) 청소년시설.....	188
라-4) 의료시설.....	191
라-5) 저수지붕괴.....	196
라-6) 주거시설(공동주택).....	203
라-7) 다중이용시설.....	215
마) 유해화학물질.....	234
바) 미세먼지.....	242
사) 도로교통 재난·사고.....	250

목 차

③ 공통분야-----	257
가) 안전취약계층 지원-----	257
가-1) 안전취약계층 - 아동·여성 안전-----	257
가-2) 안전취약계층 - 사회복지시설-----	265
가-3) 안전취약계층 - 어린이 놀이시설-----	272
가-4) 안전취약계층 - 어린이·고령자-----	282
3. 재난·안전사고 일반 유형별 관리대책-----	291
① 자연재난 분야-----	291
가) 산사태-----	291
나) 가뭄-----	303
다) 지진-----	312
②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328
가) 산불-----	328
나) 생활·레저 사고-----	339
나-1) 승강기 사고-----	339
나-2) 전기·가스 사고-----	343
나-3) 등산·레저 사고-----	352
다) 수질오염-----	359
라)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372
마) 농·어업 사고-----	379
바) 범죄-----	389
사) 자살-----	398
아) 해양오염-----	405
자) 식품사고-----	413
차) 의료제품 사고-----	432
카) 전시재난·테러-----	436
③ 공통분야-----	445
가)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 홍보-----	445
나)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449
다) 재난안전관리체계-----	454
라) 국가핵심기반사고-----	459
라-1) 정보통신 사고-----	459
라-2) 전산망 사고-----	463
라-3) 사이버 안전관리-----	470
라-4) 공공청사-----	475
라-5) 환경(폐기물)-----	490

V. 행정사항 499

■ 부록

제 I 장

2025년 안전관리계획

총 설

1. 개요
2. 성과 및 반성



1. 개 요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시·도 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 수립목적

- 군·구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연 및 사회재난, 각종 안전사고 관리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운용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수립주체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수립절차

- 국무총리는 5년 단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업무에 관한 계획과 관련된 집행계획을 작성,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와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확정, 시·도 등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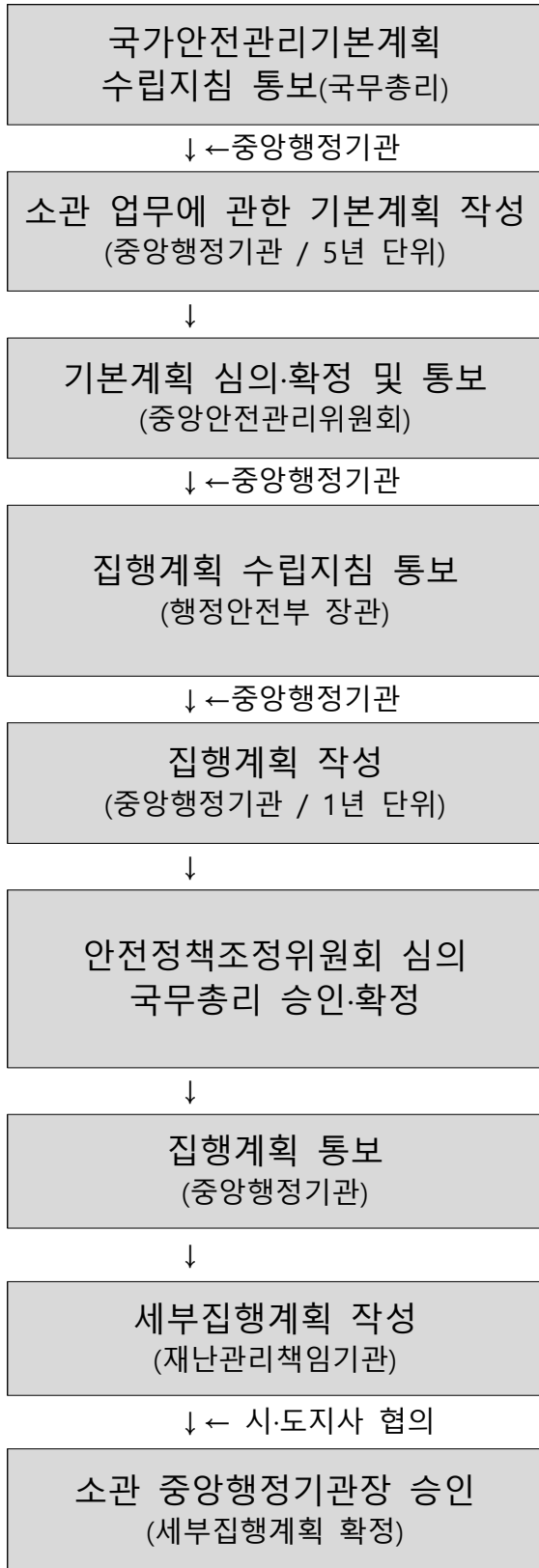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수립지침과 세부집행계획을 종합하여 시·도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시·도지사는 「재난안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
- 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군수·구청장은 수립지침, 세부집행계획을 종합하되,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수립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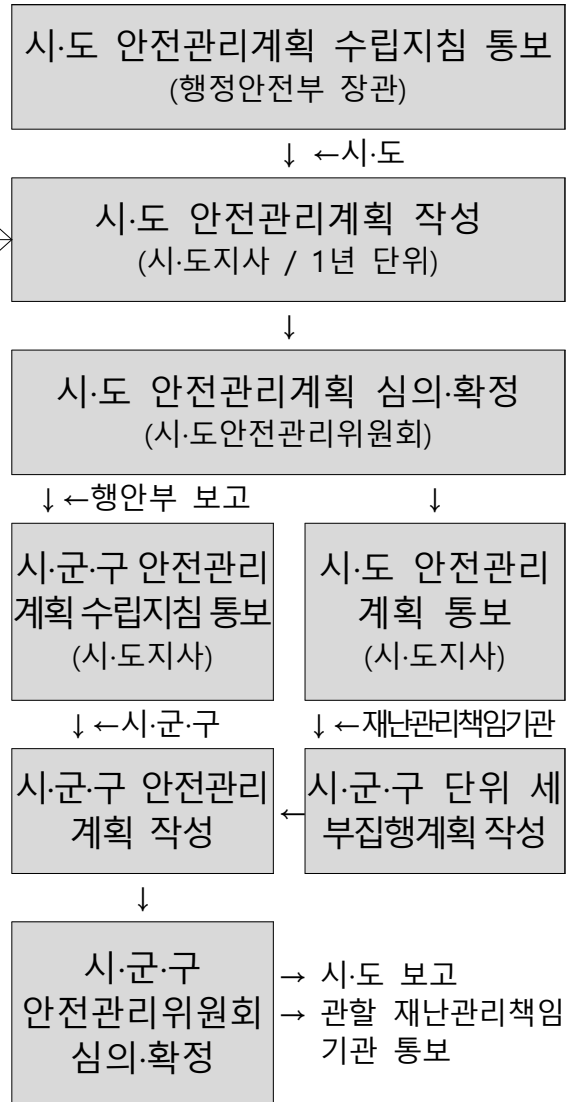
- (자연재난) 풍수해, 대설·한파, 폭염 등 6개 유형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폭발, 감염병 등 20개 유형
- (공통) 안전취약계층 지원, 재난구호 및 복구 등 6개 유형

< 안전관리계획 수립 흐름도 >

◆ 국가안전관리계획



◆ 지역안전관리계획



[참고]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사고 분류체계

분야	유형 (43개)		정의 및 분류기준	
자연 재난 (9개 유형)	홍수해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태풍, 홍수, 집중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산사태		▶ 「사방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산사태(산지붕괴), 토석류 등	
	가뭄		▶ 가용 수자원(댐, 저수지, 하천수 등)의 부족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농업·산업·상업 활동에 발생한 피해	
	지진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 * 내진 성능평가, 보강공사, 지진 관련 조사·교육·시스템 등	
	황사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사	
	조류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의 조류(녹조포함)	
	대설·한파		▶ 폭설 및 급격한 기온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	
	폭염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일 최고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피해	
	낙뢰 등 기타		▶ 낙뢰, 화산활동, 우주전파,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26개 유형)	화재·폭발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화재 및 폭발	
	산불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이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불에 타는 재난·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 기반시설, 지하시설, 건축물 등 시설물 또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 풍수해에 대비한 저수지, 댐 등 보수·보강 사업은 풍수해 유형으로 분류	
	교통 재난· 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 *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 등) 사고 포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등 * 도로구성물 중 터널·교량·지하도·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및 도선장, 도선의 교통을 위해 수면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
		철도교통 재난·사고		▶ 「철도안전법」 제2조의 철도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포함) * 열차(고속철도 포함), 지하철 및 관련시설 사고 등
		항공교통 재난·사고		▶ 「항공안전법」 제2조의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를 포함 ▶ 「공항시설법」 제2조의 공항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분야	유형 (43개)		정의 및 분류기준	
		선박 재난·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양사고 ▶ 「항만법」 제2조의 항만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유선장 및 도선장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의 방사선비상 * 방사능 관련 시설 및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 포함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화학사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독성가스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관리대상 유해·위험물질 누출 	
		미세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생명, 건강 등 피해 * 오염원 배출 최소화, 예보·예측 및 홍보, 국제협력 등 포함 	
		수질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보전법」 제2조의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해양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양오염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사고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의 수산생물전염병
	생활· 레저 사고	승강기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운행 관련 사고 	
		전기·가스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전기재해 및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로 인한 피해 * 감전, 가스누출 등 전기·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포함 	
		등산·레저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 및 레저활동에서 발생한 사고 * 수상레저 제외 	
		물놀이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 등 물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생활제품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기본법」 제2조의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 의료제품은 별도 관리 	
	산업 재난· 사고	사업장 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유형은 제외 	
		농어업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수산업의 작업 중 발생하는 인적 피해 *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유형은 제외 	

분야	유형 (43개)	정의 및 분류기준
	식품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사고 * 축산·수산·식품 위생 및 불량식품 관련 사고 등
	의료제품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의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피해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관련 생활범죄 사고
	자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시재난·테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사변,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공통 (8개 유형)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 훈련, 홍보, 안전 문화 확산 활동 등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구조, 구급에 관한 활동 * 재난안전일반 분야 사업 중 구조, 구급, 응급의료 관련 사업(관리체계, 교육·훈련 등 포함)은 본 유형으로 우선 분류
	재난 구호 및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구호법」 제2조의 구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복구 등 재난 후 지원 * 예비비 성격의 사업, 재해대책비 등 재난 발생 후 지원 사업
	재난안전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본부·상황실 등 운영,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안전도 제고를 위한 점검, 조사, 진단 등
	국가핵심기반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보호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시설 관련 사고 ▶ 전력·천연가스·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발생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재산·인프라에 피해를 주는 사고,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관련 사고, 식용수 공급 관련 사고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보호시설 개선 등)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해외재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외재난
	교부세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세, 국제협력 등

2. 성과 및 반성

□ 추진성과

○ 자연재난

- (폭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편의 시설 확보
 -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8개소 설치, 유지 관리
 - 그늘막덮터 441개 운영(54개소 추가 설치)
 - 폭염 예방물품 취약계층 지원 : 1,320개
 - * 손선풍기 570개, 선풍기 450개, 쿨조끼 300개 등
 - 생수냉장고 ‘서빙고’ 23개소 운영 : 92,000개
 - 양산대여소 23개소 운영 : 843개(450개 추가 구매)
- (풍수해) 풍수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교육훈련
 -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지원
 - * 2024년 총 148가구 역류방지밸브 170개소, 차수판 293개소 설치
 - 수방자재 보유현황 점검 및 동별 양수기 가동훈련
 - 동 재난담당자 엔진펌프 작동법 교육
 - 풍수해 대비 지역 자율방재단 임무사전교육
 - 빗물펌프장(6개소) 일제점검 및 가동훈련
 - 효율적인 풍수해 대비를 위한 「인천서구청 풍수해 대응 핫라인」 개설
- (대설·한파) 한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자원봉사자 운영
 - 우리 동네 눈치우기 자원봉사자 30명 운영(목표대비 50% 확대)
 -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광판 표출 및 홍보물 게시
- (산사태)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연 3회 이상 점검 실시, 산사태예방단 운영
- (지진) 지진 행동매뉴얼 상·하반기 정비, 지진가속도계통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향상 및 지진데이터 상호연계 유지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 추진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 (화재·폭발) 문화유산의 예찰활동 강화로 관내 문화유산 화재 피해율 0%
- (감염병)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감염병(백일해, 성홍열, 수두 등)의 증가함에 따라 감염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적극 실시함(감염병 역학조사 수 23년 4,738명 → 24년 3,171명)
- (시설물 재난·사고) 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청소년시설 정기 안전점검(월별) 및 호우·강설대비 점검 등 연중 점검(51회) 실시하여 청소년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대상 안전점검 실시(4개단지, 12개동), 제3동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아파트 54개동, 빌라 1개동)
 -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대응체계, 전기안전, 가스안전 점검 추진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다중이용시설 27개소)
- (유해화학물질)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훈련 참여 및 매뉴얼 개정
- (미세먼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 (도로교통 재난·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신설하여 시인성 강화하여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23년 0개소 → '24년 57개소)
- (산불)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10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11명), 산불진화대 진화장비 확충
-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사고, 전기·가스 사고 예방
 - 승강기 유지관리업 실태점검('23년 10개소 → '24년 12개소)
 - 가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305개소)

- (수질오염) 행동매뉴얼 정비, 방제 작업 등 수질오염 사고 대비 강화
 -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4회(분기별)
 - 수질오염 방제작업 예산 95% 집행
 - 수질오염 방제훈련 실시 : 1회
-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에 가축방역 약품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소독약품 437kg, 구제역 백신 6,478두)
- (농·어업 사고) 연근해 어선의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어선(선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어선어업인보험료 4척/2.5백만원, 어선보험료 4척/1.1백만원)
- (범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가해자 행동교정 및 폭력 재발 방지 기여('23년 149명→'24년 159명)
- (자살) 자살예방사업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위기 대응, 사례관리 강화
 - 자살관련 일반상담('23년 1,789건→'24년 3,074건)
 - 자살고위험군 등록('23년 175건→'24년 189명)
 -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23년 6,390건→'24년 7,867건)
- (해양오염) 행동매뉴얼 정비, 방제 작업 등 수질오염 사고 대비 강화
 -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4회(분기별)
 - 수질오염 방제훈련 실시 : 1회
- (식품사고) 식중독 집중 취약시설 지도점검 ('23년 752개소→'24년 819개소)
- (전시재난·테러) 전시·사변,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 시 대응 능력 함양을 위한 민방위 대원의 실질적 교육 강화, 민방위 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수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분기별), 비상대피시설 점검(월별)

○ 공통

- (안전취약계층지원) 어린이, 고령자 등을 위한 점검 및 교육 실시
 - 1인 여성 밀집 거주지역, 범죄 취약 지역 중심으로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여 범죄 발생 예방 및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 해소(이용건수 2023년 12,821건→2024년 16,897건)
 - 교통안전 취약계층인 고령자·어린이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연 중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음(2023년 5,935명→2024년 8,674명)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실시(상반기 실태점검 135개소, 여름철 21개소, 4분기 87개소)
- (재난 구호 및 복구)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세대 및 업체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생활 안정 지원('23년 34건 99,260천원→'24년 114건 296,871천원)
-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안전보안관 운영('23년 41명→'24년 60명)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11회)
-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재난 훈련(3회)
- (재난안전관리체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 CCTV 운영을 통한 감시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성 확보 (CCTV 신규 설치 33건, 성능개선 6건)

○ '24년 주요 성과목표 달성현황

분야	유형	성과목표	'24년 목표 (전년대비 감소율)	달성률 (25.1.기준)
자연 재난	풍수해	침수방지시설 설치(개)	1,250	463(미달성)
	대설	제설 자원봉사자 운영(명)	20	30(달성)
	한파	한파 대비 홍보(회)	2	2(달성)
	폭염	폭염대책 홍보물품 제작(백만원)	50(54.13%)	109(달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	문화재 피해(%)	0	0(달성)
	체육시설	시설 안전점검(회)	4	4(달성)
	청소년 시설	시설 안전점검(회)	50	51(달성)
	의료시설	시설 안전점검(%)	100	100(달성)
	주거시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00	100(달성)
	다중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00	100(달성)
	교통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95	91(미달성)
	유해 화학물질	매뉴얼 정비(%)	100	100(달성)
	미세먼지	행동매뉴얼 정비(%)	100	100(달성)
	감염병	역학조사 완료(%)	100	100(달성)
	자살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건)	6,372(3.16%)	7,867(달성)
공통 (안전취약계층 지원)	아동·여성	무인택배함 이용(건)	13,000	16,897(달성)
	사회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회)	2	2(달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100	100(달성)
	도로교통 사고	교통안전교육 실시(회)	210	211(달성)

□ 반 성

- 침수방지시설 설치 개수 부족
 - (개선방안) 통·반장 협조를 통한 관내 지하 및 반지하가구 방문 수요조사 및 현관문 안내문 부착
 - 과거 침수이력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점으로 지원사업 홍보 진행
- 가뭄, 한파, 폭염 매뉴얼 개정 횟수 부족
 - (개선방안) 상·하반기 1회씩 매뉴얼 현행화하여 개정 실시
- 수질오염 방제훈련 목표 미달성(1회)
 - (개선방안) '24년 성과목표를 해양방제 합동훈련 횟수 포함 2회/년로 설정하였으나 해양방제 합동훈련 실적은 해양오염 분야에 반영되어, '25년 성과목표를 1회/년으로 조정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율 미달
 - (개선방안)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내 노후화 및 불량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어린이놀이시설 선제적 예방조치 성과목표 조정 필요
 - (개선방안) '24년 성과목표 측정상 안전관리시스템에 보험가입 여부 등이 입력되어야 하며 관리자가 보험가입 정보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순 누락 및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스템 입력에 대해 상시 독려 예정이며, '25년 성과목표를 90점으로 조정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율 미달
 - (개선방안)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내 노후화 및 불량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가정·성폭력 피해자 캠페인 및 치료회복 목표 미달성
 -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프로그램 참여인원 축소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로 운영을 일원화하여 전액삭감
 -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스토킹 피해자 지강화 및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등을 위해 50% 삭감

- (개선방안)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서구 관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서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하여 대책 마련
- 가정·성폭력 피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전문 심리정서지원 상담 및 법률 상담 지원
- 가정·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 가정·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및 지원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 재난이슈: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

□ 발생개요

- (일 시) 2024. 8. 1.(목) 06:15 발화 → 8.1.(목) 14:35 완전
- (장 소) 서구 청라한올로9 96 제일풍경채아파트 333동 지하1층 주차장
- (사고내용)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량에서 화재 발생
- (피해현황) 인명피해 없음 / 차량피해 948대 / 시설피해 단전 약 735세대, 단수 1,581세대
 - 단전·단수로 인한 임시주거시설 운영(최대 11개소 350세대 1,170명)
 - 화재 분진등으로 인한 공용부·세대별 청소
- (인력/장비 동원현황) 화재 진압 및 대응 위한 소방 인력 281명 및 장비 동원
 - 소방 관계자 281명 (소방 189, 의용소방대 50, 기타 42), 소방 장비 73대

□ 주요 대응사항

○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24. 8. 1.(목)~상황종료 시까지
- 13개 대응반(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 재난관리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방역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자원봉사지원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지원, 재난수습홍보)

○ 유관기관 합동 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 '24. 8. 1.(목)~상황종료 시까지
- 통합지원본부 현장회의 실시(서구 부구청장 주재)
- 시·서구 관계부서 합동 소통 채널(카카오톡)을 통한 상황 공유

○ 피해지원 안내 콜센터 운영

- '24. 8. 7.~8월말까지
- 재해구호비 지원 관련 안내(275건)

□ 조치사항

○ 피해주민 지원

- 임시주거시설 제공 : 최대 11개소 350세대 1,170명 이용
- 긴급구호비 지급
 - 지급대상 : 6개동(329~334동, 임시주거시설 이용자 제외)
 - 생활안정비(숙박비 세대당 1일 80,000원, 급식비 1식 9,000원, 목욕비 1인 10,000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안전순찰단 운영 및 안전캠페인 실시

제 II 장

2025년 안전관리계획

여건 및 추진방향

1. 지역 여건 및 전망
2. 추진방향 및 목표



II

여건 및 추진방향

1. 지역 여건 및 전망

□ 총괄

- (지역적 특성)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 가정, 석남, 가좌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규모 산업단지, 600여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이 다수 위치하여, 재난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
- (인문·사회적 환경) 총 인구 656,46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재난취약계층 고령인구와 1인가구의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서구 고령인구 및 비율 》

연도	인구(명)	65세이상 고령인구(명)	고령인구 비율(%)
2019	544,556	53,691	9.86
2020	542,040	58,087	10.7
2021	553,962	63,203	11.4
2022	585,036	69,831	11.93
2023	624,358	77,384	12.4

《 서구 1인가구 비중 》

연도	가구수	1인가구수	1인가구 비중
2019	195,663	44,281	22.63
2020	223,229	48,799	21.86
2021	232,834	54,576	23.44
2022	248,741	60,913	24.48
2023	245,055	68,510	27.95

※ (통계 출처) 통계청 코시스

- (자연적 환경) 이상 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대설·한파, 폭염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재난분야 전망

○ 자연재난

- (풍수해) 기온 증가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강수 변동폭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풍수해를 가중시키는 요인 작용, 지구 온난화, 기온 변동폭 증가에 의한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 위험이 높음
- (대설·한파) 저기압 통과 횟수가 적어 5년간('19~'23) 대설로 인한 피해가 적었지만, 작년('24) 기록적인 대설로 평년 대비 피해가 증가했음. 한파특보 횟수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급수장치 시설물의 정비로 수도미터 동파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폭염) 지구온난화 등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과 폭염일수의 증가로 인한 피해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 (화재) 최근 5년간('20~'24년) 화재 발생건수는 평균 258.4건, 인명 피해는 17명(사망 3명, 부상 1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화재 및 공장밀집지역 화재 등 대규모의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공장 밀집지역 화재 안전대책과 전기차 화재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음
- (감염병)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증가
 - 기후 온난화, 해외여행의 증가, 외식 기회의 확대 등으로 인해 해외 유입 감염병과 장관 감염증(식중독)의 발생이 증가 전망
 - * 코로나19(20년), 엠폭스(23년), 백일해(24), 성홍열(24), 인플루엔자(24)
- (사업장 사고) 관내 대규모 건설현장 및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시설물 재난·사고) 시설물과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풍수해 피해, 화재, 시설물 이용 중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유해화학물질)** 서구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총 630개 (2024년 기준)이 있으며, 인천광역시 내 사업장 중 약 36%가 위치함
 -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위험요소는 존재함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적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마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이 필요
- **(미세먼지)** 관내 석유화학 공업단지, 중공업 산업단지, 영세업체 밀집 산업단지로부터 초미세먼지가 생성되고, 외부적으로는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도로교통 재난·사고)**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내 노후 및 불량한 교통안전시설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공통

-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증가
 - 안전취약계층의 사고는 2020년 30,554건에서 2021년 35,150건, 2022년 43,054건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노령화 사회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변화하는 교통안전법규를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강화가 필요
- **(재난구호 및 복구)**
 - 구 30년 이상 노후주택 대부분이 가정, 석남, 가좌동에 집중되어 재난취약지역에서의 대형재난·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존재
 - 구호상황 발생 시, 도심지역의 특성에 따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긴급주거지원 및 임시주거시설 등을 활용하여 이재민 구호 실시
 - 집중호우, 대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 유형별 위험(취약)등급 ※ 2024년 미래위험목록 보고서(국립재난안전연구원) 참고 작성

- 해양오염, 보건의료 2개유형 1·2등급(매우안전~안전), 폭염, 강풍 등 8개유형 3등급(보통), 태풍·호우, 한파 등 29개유형 4~5등급(위험~매우위험)

등급현황(개)		재난·사고 유형
1등급 (매우 안전)	0	-
2등급 (안전)	2	해양오염, 보건의료
3등급 (보통)	8	폭염, 강풍, 조류, 도로 교통 재난·사고, 금융전산, 범죄, 안전취약계층사고, 의료제품 사고
4등급 (위험)	19	태풍·호우, 한파, 가뭄, 황사, 연안재해, 대설, 화재, 산불, 시설 재난·사고, 사업장 사고, 전시 재난·테러, 정보통신사고, 철도 교통 재난·사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물놀이 사고, 식품사고, 등산 및 레저 사고, 승강기 사고
5등급 (매우 위험)	10	산사태, 지진, 감염병, 미세먼지, 가축 및 수산 생물 전염병,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쓰레기 수거·매립, 전기·가스 사고, 생활제품 사고

□ 유형별 피해 현황

○ '23년 재난·사고 유형별 피해 현황

구분		발생건수 (건)	사망자수 (명)	부상자수 (명)	재산피해 (백만원)	비고	
자연재난	풍수해	202	-	-	122.5		
	대설	-	-	-	-		
	한파	5	-	5	-		
	폭염	20	-	20	-		
	산사태	-	-	-	-		
	가뭄	-	-	-	-		
	지진	-	-	-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	286	5	14	6,517		
	감염병	4,575			-		
	사업장 산재	13	13				
	시설물 재난·사고	문화시설	-	-	-	-	
		체육시설	-	-	-	-	
		청소년시설	-	-	-	-	
		의료시설	-	-	-	-	
		저수지	-	-	-	-	
		주거시설	54	1	3	2.4	
		다중이용시설	-	-	-	-	
	유해화학물질	3	-	-	-		
	미세먼지	6	-	-	-		
	도로교통 재난·사고	1,338	17	1,883			
	산불	1	-	-	-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1	-	2	-	
		전기·가스	-	-	-	-	
		등산·레저	-	-	-	-	
	수질오염	-	-	-	-		
	가축 전염병	-	-	-	-		
	농·어업 사고	-	-	-	-		
	범죄	119				(가정폭력)	
	해양오염	-	-	-	-		
	식품사고	3	-	33	-		
의료제품 사고	-	-	-	-			
안전취약계층사고	1	-	1	-	(어린이)		

□ 주요 재난유형 선정(12개)

- (자연재난) 풍수해, 대설·한파, 폭염 순으로 위험순위가 높음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 감염병, 사업장 사고, 시설 재난·사고,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미세먼지, 도로 교통재난·사고 순으로 위험순위가 높음
- (공통) 안전취약계층 사고, 재난 구호 및 복구를 주요유형으로 선정

【 인천광역시 서구 주요유형 선정 프로그램 결과 】

분야	유형	(1번) 지표	(2번) 지표	(3번) 지표	(4번) 지표	(5번) 지표	최 종		결과
		위험점수	피해현황	지자체현안	주민체감도	중앙중점	점수	순위	
자연재 난	풍수해	5	4	5	0	1	15	1	주요유형
	산사태	5	1	1	0	0	7	7	
	가뭄	4	4	1	0	1	10	4	
	지진	5	1	1	0	1	8	6	
	황사	4	5	1	0	0	10	4	
	조류	3	1	1	0	0	5	8	
	한파	5	4	3	0	0	12	2	주요유형
	폭염	4	5	2	0	0	11	3	주요유형
	우주물체 추락	1	1	1	0	0	3	10	
	우주전파재난	1	1	1	0	0	3	10	
낙뢰 등 기타	1	3	1	0	0	5	8		
사회재 난 및 안전사 고	정보통신사고	4	1	1	1	0	7	17	
	화재	5	5	5	1	1	17	1	주요유형
	산불	5	4	1	0	1	11	9	
	시설 재난·사고	5	4	1	1	1	12	4	주요유형
	다중이용집합사고	1	1	1	0	0	3	28	
	방사능 재난·사고	3	1	1	0	0	5	23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4	4	3	0	1	12	4	주요유형
	미세먼지	5	4	1	1	1	12	4	주요유형
	대기오염	3	4	1	1	0	5	11	
	수질오염	3	3	1	1	1	5	11	
	토양오염	1	1	1	1	0	4	26	
	해양오염	2	3	1	1	0	7	17	
	감염병	5	5	1	1	1	13	2	주요유형
	가축 및 수산생물전염병	5	1	1	0	1	8	14	
	도로 교통재난·사고	4	5	1	1	1	12	4	주요유형
	철도 교통재난·사고	4	3	1	0	1	5	11	
	항공 교통재난·사고	1	1	1	0	0	3	28	
	해양선박 재난·사고	1	1	1	0	0	3	28	
	유선 및 도선 재난·사고	1	1	1	0	0	3	28	
	사업장 사고	5	5	1	1	1	13	2	주요유형
	농·수산업 사고	-	1	1	0	0	2	32	
	국가핵심기반 마비	2	1	1	0	0	4	26	
	전시재난·테러	5	1	1	0	0	7	17	
	승강기사고	2	3	1	0	0	6	21	
	물놀이사고	4	1	1	0	0	6	21	
	등산 및 레저 사고	3	4	1	0	0	8	14	
전기·가스사고	5	5	1	0	0	11	9		
생활제품 사고	3	1	1	0	0	5	23		
의료제품 사고	3	1	1	0	0	5	23		
식품 사고	4	1	1	0	1	7	17		
범죄	4	1	1	1	1	8	14		
안전취약계층 사고	4	5	1	1	1	12	4	주요유형	

* (출처) 202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주요유형 선정 프로그램’ 결과

2. 추진방향 및 목표

비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한 서구』 구현



목표

재해위험요소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피해 제로화



중점 추진 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p>㉠ 선제적 재난관리 · 재난대응체계구축</p>	<p>①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훈련 ② 재난위험시설 등 취약시설 종합대책 추진 ③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추진</p>
	<p>㉡ 안전한 서구 조성</p>	<p>① 재난 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 ②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p>
	<p>㉢ 의식 전환 안전문화운동 전개</p>	<p>① 안전관리 민·관 협력 및 국민 참여 확대 ②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p>

①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훈련

-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훈련일시 : 2025년 하반기 중
 - 훈련목표 : 재난대응 유관기관과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훈련내용 : 문제해결 중심의 토론기반훈련, 구민과 함께하는 훈련
-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 훈련일시 : 2025년 하반기 중
 - 훈련내용 : 새울, 인사, 재정, 건축행정 등 공통기반 표준행정업무에 대해 재해 상황에 따른 모의 복구 훈련 실시
- 해양방제 합동훈련 실시
 - 훈련일시 : 2025년 하반기 중
 - 훈련목표 : 선박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의 유출 및 유출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 실시반별 임무 숙지 및 대응절차 숙달
 - 훈련내용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를 토대로 실시하는 2025 방제대책본부 운영 훈련 참여
- 재난현장출동의료팀 도상훈련
 - 훈련일시 : 2025년 분기별 실시
 - 훈련목표 :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긴급구조대응
 - 훈련내용 : 보건소 신속 대응반 출동, 응급의료지원 요청,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전 현장 응급의료지원 활동

② 재난위험시설 등 취약시설 종합대책 추진

- 2025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집중안전점검 추진
 -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발굴·해소
 - 진단대상 : 건축물·시설물
 - 점검방법 : 점검 대상 시설 전체를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
- 폐기물 업체 및 적환장 점검
 - 재난 발생 시 원활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수집·운반 업체 및 적환장 점검
 - 점검내용
 - 폐기물 반입량 입치여부 및 적환장, 차고지 관리실태 점검
 - 수거차량·장비 등 관리실태 점검
 - 직원 교육 및 관리사항
 - 청소민원의 접수 및 민원처리 상태
- 공연장 안전 점검
 - 공연장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
 - 점검대상 : 관내 공연장
 - 점검내용
 -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안전 대응 매뉴얼 작성 관리
 - 피난 및 연소방지 시설 구비
 -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구호설비 등 구비
 - 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행정안전부 주체 전국 지자체 일제 점검 추진
 -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미운행 승강기에 대해 검사이행 유도, 안전 관리 실태 계도

③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추진

□ 자연재난 사전대비체계 구축

- 재난별 대책기간 운영
 - 호우대책기간 : 7월 ~ 10월 / 폭염대책기간 : 7월 ~ 8월
 - 대설대책기간 : 11월 ~ 3월 / 한파대책기간 : 12월 ~ 2월
-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재해대비
 - 상습침수지역, 급경사지, 유수지, 하천 등 사전점검
 - 수중모터 등 각종 수방자재 작동점검 및 사용자 교육 등
- 폭설, 결빙 강풍 등 겨울철 재해대비
 - 교량, 경사도로, 음지, 고층건물 등 재난취약지역 점검
 - 제설 자재·장비 확보, 작동점검 및 교육

○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 저지대 주택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폭우시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
- 역류방지장치 설치(바닥배수구, 싱크대, 화장실 등)
- 주출입구 차수판 설치

○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 지진가속도계측통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향상 및 지진데이터 상호연계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향상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 폭염대책 홍보물품 제작

- 폭염대책 홍보물품 제작·구입
- 관내 무더위쉼터 폭염취약계층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 산불예방 캠페인

-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으로 산불발생 건수 저감
- 주요내용
 -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능률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소규모 공공주택 안전관리

-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대상 :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경과된 임의관리 공동주택 단지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실태조사 실시 후 제3종시설물 지정
- 조사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 15층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지정원칙 :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시설물 중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오염지역 내에서 입국하는 의심환자 발생 감시
- 검사대상 : 검역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의심환자

○ 구제역 및 AI 예방사업

-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차단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도축장, 도계장)에 가축방역 약품지원

1 재난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

-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 : 13개 실무반
 - 핵심 대응업무
 - 재난상황 파악전파 및 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11개) 업무총괄 지원·조정 등
 - 대응단계 추진활동
 - 재난위험 시설물 등의 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 재난 취약시설 긴급점검 및 지시 등
 - 평시 대비활동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평시 자원확보 및 관리
- 방범CCTV 카메라 신규 설치
 - 구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충
 - 설치규모 : 관내 33개소
 - 설치대상 : 주민과의 대화, 새올민원 접수, 행정복지센터 건의, 전화 및 방문접수, 관계기관 건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지 선정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각 부서별·목적별 CCTV 통합운영관리
 - 방법, 차량번호판독용, 불법주정차단속, 재난감시 등
 - CCTV 영상자료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경찰서 등) 협업체계 구축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

- 방법 CCTV 부대장비 기능개선
 - 방법 CCTV 카메라 구축 초기모델부터 합체 및 비상벨 단계적 교체 추진
 - 플라스틱 재질 -> 철제 재질, 노란 분체도장으로 시인성 강화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
 -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시선유도봉 및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및 정비
 - 투광기 등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 보호구역 정비
- 산불 예방장비 구입
 - 효과적인 산불예방 및 산불기간 내 집중단속으로 초기진화를 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 및 필요장비 구입
 - 주요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 및 실정에 맞는 개인진화장비 구입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버스 내부 음성 홍보
- 각종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정비
 - 재난재해 발생 대비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지속 확인·관리
-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 민방위 장비의 최적 상태 유지·관리로 유사시 주민보호 및 대원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

②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
 -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범죄발생예방 및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 해소
-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현행화를 통한 사고 예방
 -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점검 및 전수점검 실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현행화
 - 놀이제공 영업소 시 합동점검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및 발생 후 사례관리, 사회봉사 연계
 - 주요내용
 -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운영
 - 학교폭력 특별교육 및 사회봉사 연계 지원
 - 학교폭력관련 촉법 청소년'사랑의 교실' 선도 교육
- 가정·성 폭력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해자 성행 교정
 - 가정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유 및 자존감 회복

① 안전관리 민·관 협력 및 구민 참여 확대

- 안전점검의 날 추진
 -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하여 구민 안전의식 향상
 - 안전점검의 날 개최 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구민의 관심을 높임
-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 임원 및 단원에 대해 방재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주요 재난대응사례를 통한 국가재난대응체계
 - 민간 방재조직 구성 및 재난안전 리더쉽
 -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민·관이 연대하여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 제설 자원봉사자 운영
 - 서구 관내 학생 및 주민대상 자원봉사 포털 활용 모집
 -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 인정
-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도입 및 훈련 실시

② 구민 안전의식 제고 및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인 취학 전 아동과 고령자를 포함, 구민대상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
 - 주요내용
 -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영상콘텐츠 및 옐로카드 활용)
 -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어린이 보행지도) 추진
- 올바른 손씻기 장비대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인 손씻기의 필요성 강조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다수의 교육이 가능한 장소
확보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할 역량이 있는 모든 기관
 - 운영방법 : 손씻기 체험교육용 장비대여를 통해 실제 체험으로 평소 손씻기 습관 확인 및 올바른 손씻기 방법 습관화 유도
- 등산로 안전문화 홍보
 - 등산로 내 불법 굴취 및 벌채행위 계도
 - 지방지 및 반상회보등을 통한 홍보로 등산에 대한 구민의식 전환
-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 상·하반기 일반음식점 보수교육
 -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교육
 -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 캠페인 실시
- 가정·성 폭력 시민의식 개선
 - 가정폭력·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 주요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성매매 방지 캠페인
 - 홍보물 및 홍보물품 배포

제 Ⅲ 장

2025년 안전관리계획

재난·안전관리 체계

1. 국가 안전관리체계
2. 군·구 안전관리체계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내용
4. 재난관리역량 강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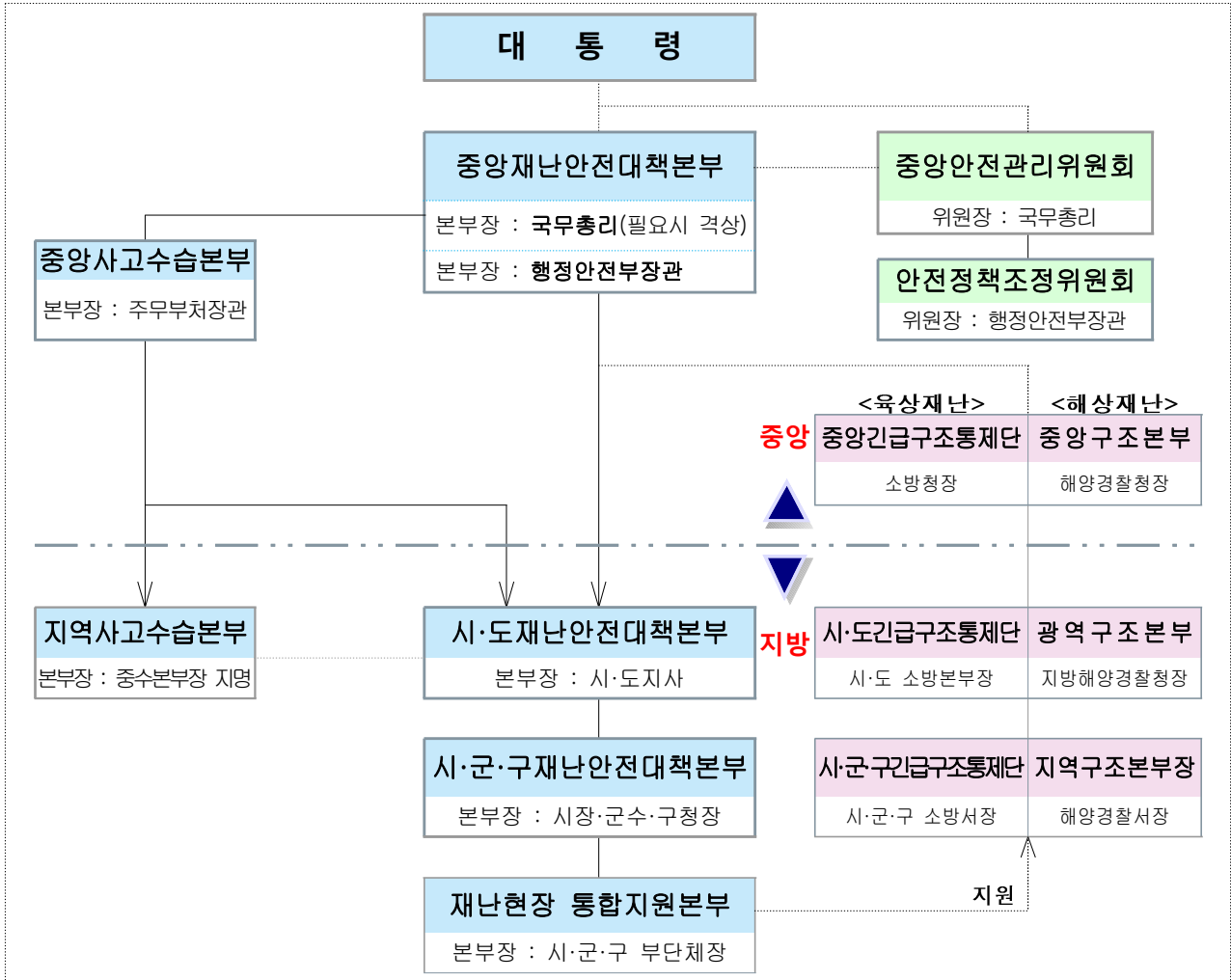


III

재난·안전관리 체계

1. 국가 안전관리체계

가. 체계도



< 수습기구 >	<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 >
<p>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 필요시 국무총리로 격상 ▶ 차 장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기 능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중대본회의 개최 등 	<p>중앙안전관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국무총리 ▶ 간 사 : 행정안전부장관 ▶ 기 능 : 재난안전 사업예산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관계부처 협의·조정
<p>중앙사고수습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 기 능 :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 및 수습과정 총괄 	<p>안전정책조정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간 사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기 능 : 중앙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의·조정

나. 주요 기구별 기능

구 분	기 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 분야별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심의 ○ 중앙행정기관간 재난·안전관리업무 협의·조정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건의사항 심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의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 재난 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필요시 현장 파견 ※ 해외재난시 외교부장관, 방사능재난시 원안위원장, 대규모 재난시 국무총리가 수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내 재난·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총괄, 지휘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대응활동 총괄 지휘 ○ 긴급구조 활동 지휘 및 통제 ○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명령 등 주민 보호조치 이행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시·군·구 부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현장에서 재난상황 수습 -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 조치, 긴급복구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징후 목록 작성·운영 ○ 소관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 대규모 재난발생시 소관분야 기술제공 등 수습활동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미설치시 재난수습 현황 종합·조정 ○ 산하기관 등 재난책임기관 활동 종합 및 조정
지역사고수습본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내 소관분야 재난대비 예방활동 ○ 자체 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직원 파견 등 지원 ○ 사고 대응정보 제공 및 수습활동 지원 ○ 사고 원인조사 및 피해 평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본부 (소방·해경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지원 -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긴급구조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지역긴급구조통제단/본부 (지방소방·해경청장, 소방·해경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긴급구조 지원기관 지휘·통제

다. 주요 중앙행정기관별 기능

부 처	기 능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방송 홍보 지원체계 점검 재난상황 대국민 홍보방송, 재난방송 실시 지원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원자력안전 사고,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방사능 유출에 따른 폐기물처리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국립·공립·사립 학교시설 등 이재민 수용시설(학교 강당, 체육관 등)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우주전파 재난, 정보통신 사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피해시설 응급복구 : 정보통신시설 등 재난발생 피해지역 방송통신시설 긴급 지원
우주항공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우주물체 추락, 우주전파 재난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재난관리상황 모니터링 외국인 사상자 발생현황 등 국내 외국 대사관에 사고상황 통보 외국의 구조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 통합창구 운영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지원 요청 상황 접수 및 출동지원 전문 재난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구조 활동 간 2차 재난방지를 위한 경계구역 설정·통제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공동구, 위험물 사고, 풍수해·지진·한파·낙뢰·화산·가뭄, 정부 중요시설 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상황관리 총괄 상황판단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사고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세 감면 지원 재난안전통신망(LTE, TRS) 재난현장 지원 자원 응원 요청 및 조정,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등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방송, 언론활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가축 질병, 저수지 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등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원유수급 사고, 원전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 전력 사고,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에너지 긴급 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재난현장 및 에너지 공급 고립지역 긴급 지원 요청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 지원 이재민 임시 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부 처	주 요 임 무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보건의료 사고, 감염병 재난 ▪ 현장 응급의료소 의료진 및 의료물자 등 확보·지원 ▪ 응급진료 비상체계 운영 및 지원 ▪ 재해지역 방역대책 활동 강화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식용수 사고,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 녹조, 황사, 댐의 사고, 미세먼지 ▪ 먹는 물 공급대책 및 상하수도 시설 응급 복구 ▪ 재해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공동구 재난, 고속철도 사고, 댐 사고, 도로터널 사고, 광역상수도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지하철·항공기 사고,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피해시설 응급복구 : 하천, 철도,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등 ▪ 하천 및 댐 홍수량 조절·관리(홍수예보발령 등) ▪ 교통두절시 응급복구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 긴급복구물자 운송지원 등 특별수송대책 추진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적조, 조수, 해양 환경오염 사고, 해양 선박 사고 ▪ 피해시설 응급복구 : 어항시설, 어선, 항만시설,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등 ▪ 항만하역 및 선박 입·출항 통제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범죄, 다중운집인파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 비상연락망 유지, 순찰 및 지원인력 출동태세 점검·정비 ▪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 사망자 신원 확인,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 재해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화재,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 인명 구조·구급활동 ▪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국가유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산불, 산사태 ▪ 피해시설 응급복구 : 산사태,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산림작물 등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 휴양객 대피, 등산로 통제 및 휴양시설물 순찰강화
질병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감염병 재난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진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파
해양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인명 구조·구급활동 ▪ 중앙(지역) 구조본부 운영

2. 군·구 안전관리체계

가.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 (위원장) 구청장
- (위원) 21명(당연직 14명, 위촉직 7명)
 - 당연직(14명): 구청장(위원장), 부구청장, 안전교통국장, 서부소방서장, 검단소방서장, 서부경찰서장, 507여단 1대대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사무처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 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서부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부평지사장
 - 위촉직(7명): 서구의회 구의원(2명), 서부수도사업소장, 인천도시가스 안전관리1부서장, SK인천석유화학 안전ERS팀장, KT서인천지사 지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중부지역본부장
- (간사) 안전관리업무담당 부서장(안전총괄과장)

○ 주요기능

-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구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

- 임 기: 당연직(재직기간) 및 위촉직 2년(연임 가능)
- 회의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수시)
-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24년 개최실적) 3회
- 2024년 안전관리계획(안) 및 기능연속성계획 심의(24. 2.)
-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안) 심의(24. 3.)
-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심의(24. 10.)

나. 서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 (위 원 장) 부구청장
- (위 원) 20명(당연직 16명, 위촉직 4명)
- 당연직(16명): 부구청장(위원장), 안전교통국장(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과장, 인천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팀장, 인천검단소방서 119재난대응팀장,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계장,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507여단제1대대 대위,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인천광역시본부 안전문화팀 차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서부지사 안점검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검사 2부장, 한국전력공사 인천서부지사 전력공급부 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부평지사 지사장,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구호복지팀장
- 위촉직(4명): SK인천석유화학 안전부장, 인천도시가스 서구관리팀장, KT서인천지사 영업기획팀 차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중부지역본부장
- (간 사) 사회재난업무담당(사회재난팀장)

○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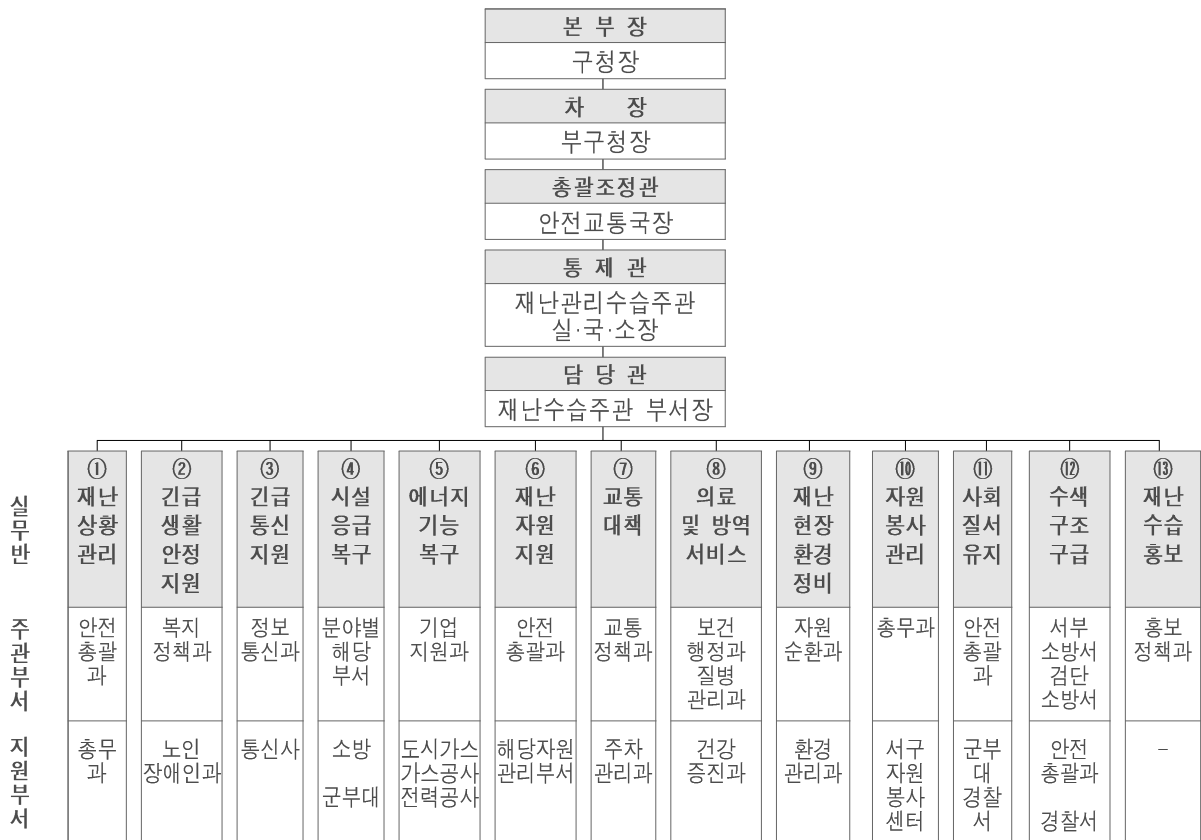
-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전의 사전 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할 사항의 검토 및 정리
- 법 제66조의9에 따라 구에서 개최(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공연법」의 재난대처계획 포함) 심의
- 그 밖의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협의·조정 및 검토

○ 운영

- 임 기: 위촉직 2년(연임 가능)
- 회의소집: 수시
 - 안전관리위원회의 관계기관, 단체장 및 축제 주관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
 -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24년 개최실적) 17회
 - KBS 전국 노래자랑 인천 서구편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24. 2. 22.)
 - SK인천석유화학 벚꽃동산 개방행사 안전관리계획(안) 외 1건 심의(24. 3. 20.)
 - 세븐틴 투어 콘서트 재해대처계획 재심의(24. 3. 25.)
 - 2024 장애없는 세상 ‘같이 하는 우리, 가치 있는 행복’ 안전관리계획(안) 심의(24. 4. 5.)
 - 2024년 제7회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 안전관리계획(안) 심의(24. 4. 23.)
 - 제1회 피트니스 패밀리 페스티벌 안전관리계획(안) 외 2건 심의(24. 5. 2.)
 - 제26회 새생명 사랑 가족걷기 대회 안전관리계획(안) 외 1건 심의(24. 5. 16.)
 - OBS와 함께하는 토트로파티 특집 콘서트 안전관리계획(안) 심의(24. 7. 16.)
 - 싸이 흠뻑쇼 SUMMER SWAG 2024 안전관리계획(안) 외 1건 심의(24. 8. 7.)
 - 2014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 기념 KBS열린음악회 안전관리계획(안) 심의(24. 9. 3.)
 - 제7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안전관리계획(안) 외 1건 심의(24. 9. 12.)
 - 2024 드림파크 가을문화행사 안전관리계획(안) 외 2건 심의(24. 9. 26.)
 - 2024 인천서구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안전관리계획(안) 심의(24. 10. 8.)
 - 제10회 수학 대축전 및 제26회 과학대제전 안전관리계획(안) 심의(24. 10. 16.)
 - 제12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마라톤대회 안전관리계획(안) 심의(24. 11. 7.)
 - 제12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마라톤대회 안전관리계획(안) 재심의(24. 11. 14.)
 - 2024 정서진 해님이 행사안전관리계획(안) 재심의(24. 12. 17.)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1) 체계도



2) 주요기능

-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 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조치
-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 활동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소집 및 운영

- 소집권자 : 본부장(구청장)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 대행

○ 대책본부회의 운영

- 회의소집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음.

《 기타 필요한 경우 》

- ①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수 있음.
- ② 본부장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서구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수 있음.

○ 심의사항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및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 작성·보존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5년간 보관

4) 주요임무

구성		주요 임무
지휘부	본부장 (구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 총괄
	차장 (부구청장)	• 본부장 보좌
	통제관 (안전교통국장)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 본부장 보좌
	담당관 (안전총괄과장)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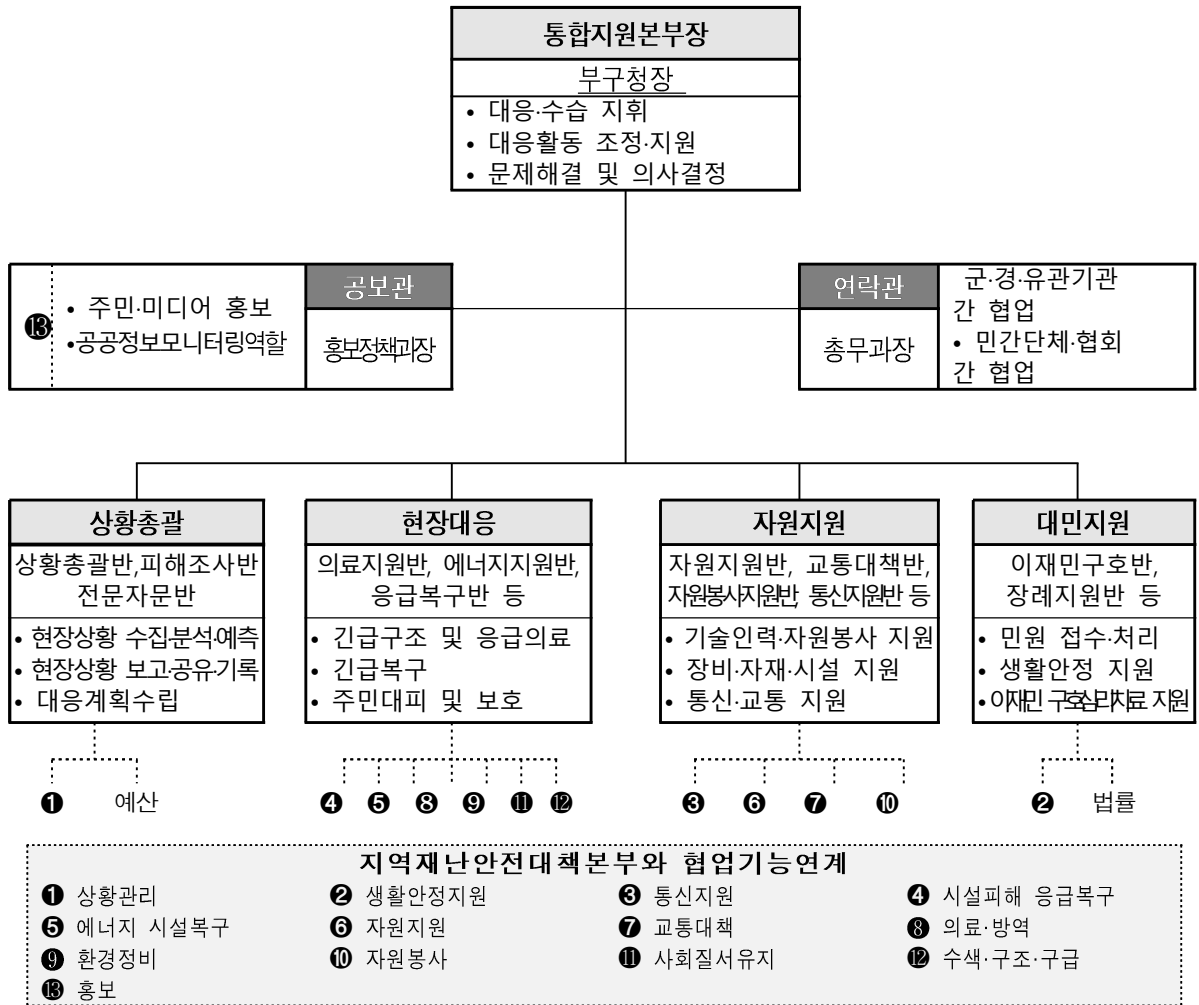
구성		주요 임무
실무반	1. 재난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휴교 및 학교시설 관련사항 관할 교육청과 협의 처리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3. 긴급 통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 재난현장 긴급통신 송·수신 체계 유지(재난안전통신망 포함)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구성		주요 임무
	6. 재난관리자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가동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7. 교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관할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구성		주요 임무
	11. 사회질서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 재난지역 긴급차량 이동 최우선 지원
	12. 재난지역수색, 구조·구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13. 재난 수습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텔레비전·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라. 통합지원본부

1) 체계도



2) 기능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 긴급구조통제단장(서부소방서장)의 자원지원 요청 협조
-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동원, 배분 및 조정
-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 그 밖에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3) 운영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현장에 통합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함.
- 재난피해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시까지 지속 운영
- 운영 종료 시 조치사항 등 추진서류 일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인계

설치시기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그 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3항 》

- ①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②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 ③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설치장소 : 관공서, 민간건물, 임시텐트, 지휘차량 등 선정

- (실무반 편성)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 : 현장대응반장

- ※ 현장대응반장 : 재난 유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 단, 재난 유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관·과소의 장이 없을 경우 안전총괄과장이 수행

4) 주요임무

구분	실무반	주요 임무	소관부서장	지대본 연계
지휘부	통합지원본부장 (지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지원본부 운영 총괄·조정 통합지원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부구청장	① 재난상황 관리
	공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언론브리핑, 취재지원 	홍보정책과장	
	연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기관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 통합지원본부장의 연락창구 역할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 및 협회, 전문가 간 협업 	총무과장	
상황총괄	상황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및 보고/공유/기록 현장 대응계획 수립, 현장보고서 작성 현장상황관리관 및 전문대응팀 파견 예산 확보 및 집행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브리핑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건의 현장상황 수집·보고·전파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반 등)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또는 안전총괄과장	① 재난상황 관리
	피해조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현황 조사 및 기록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전문자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상황 분석 및 예측 자문 현장대응계획수립 자문 	민간전문가	
현장대응	응급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사유시설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복구추진 소요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협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건축과장	④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에너지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구조구급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지원 	기업지원과장	⑤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복구
	의료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지원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심리지원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보고 	보건행정과장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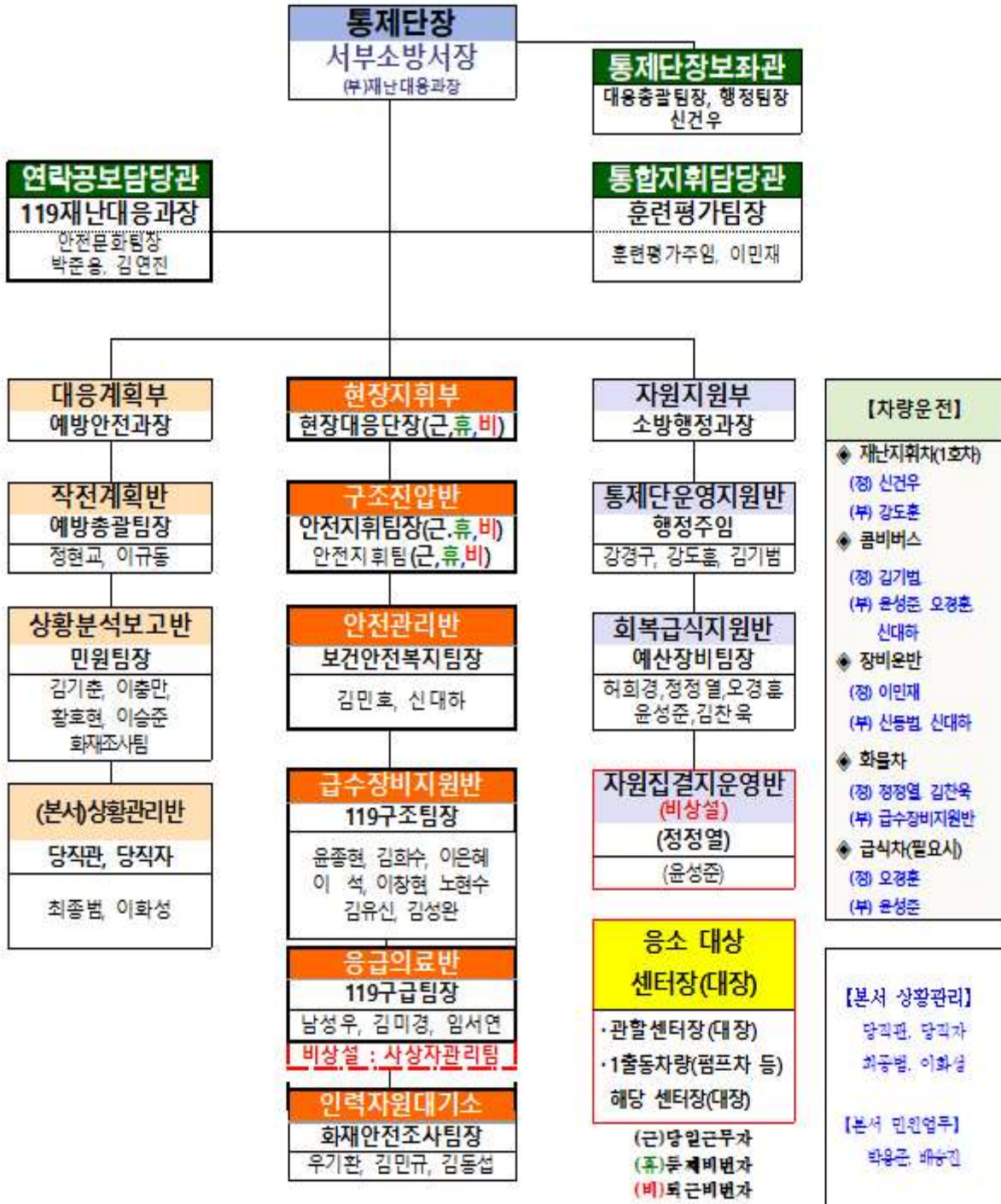
구분	실무반	주요 임무	소관 부서장	지대본 연계	
현장대응 이 대 이	환경정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자원순환과장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질서유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혼잡 완화 조치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지원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요청 재난지역 긴급차량 이동 최우선 지원 요청 통제선 등 현장출입 제한 요청 	감사실장	⑪ 사회질서 유지	
	구조구급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발생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후송 지원 	건강증진과장	⑫ 수색·구조·구 급지원	
	유 해 대 이	산불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산림정원과장	① 재난상황관리
		건물 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건축과장	④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제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리조트 붕괴 사고) 	도로과장	⑥ 재난관리 자원지원
		오염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불산 누출 사고) 	환경관리과장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농·축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 농작물 정밀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 	경제정책과장	① 재난상황관리	
자 원 지 원	통신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두절 상황관리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긴급통신장비 보급 재난현장 긴급통신 송·수신 체계 유지 	정보통신과장	③ 긴급 통신 지원	
	교통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현장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관리 피해현장 주변 차량 우회대책 마련 대중교통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 	교통정책과장	⑦ 교통대책	
	자원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동원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안전총괄과장	⑥ 재난관리 자원지원	

구분	실무반	주요 임무	소관 부서장	지대본 연계
자원 지원	자원봉사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 피해상황 전달 등 지원단과 상황 공유 • 자원봉사 활동 시 소요되는 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 등 지원 • 자원원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총무과장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대민 지원	이재민구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재난지원금 지원 •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복지정책과장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장례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노인장애인과장	
	법률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 및 민간법률자문 	예산법무과장	
유관 기관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 전기, 가스, 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 업무 수행 	유관기관 파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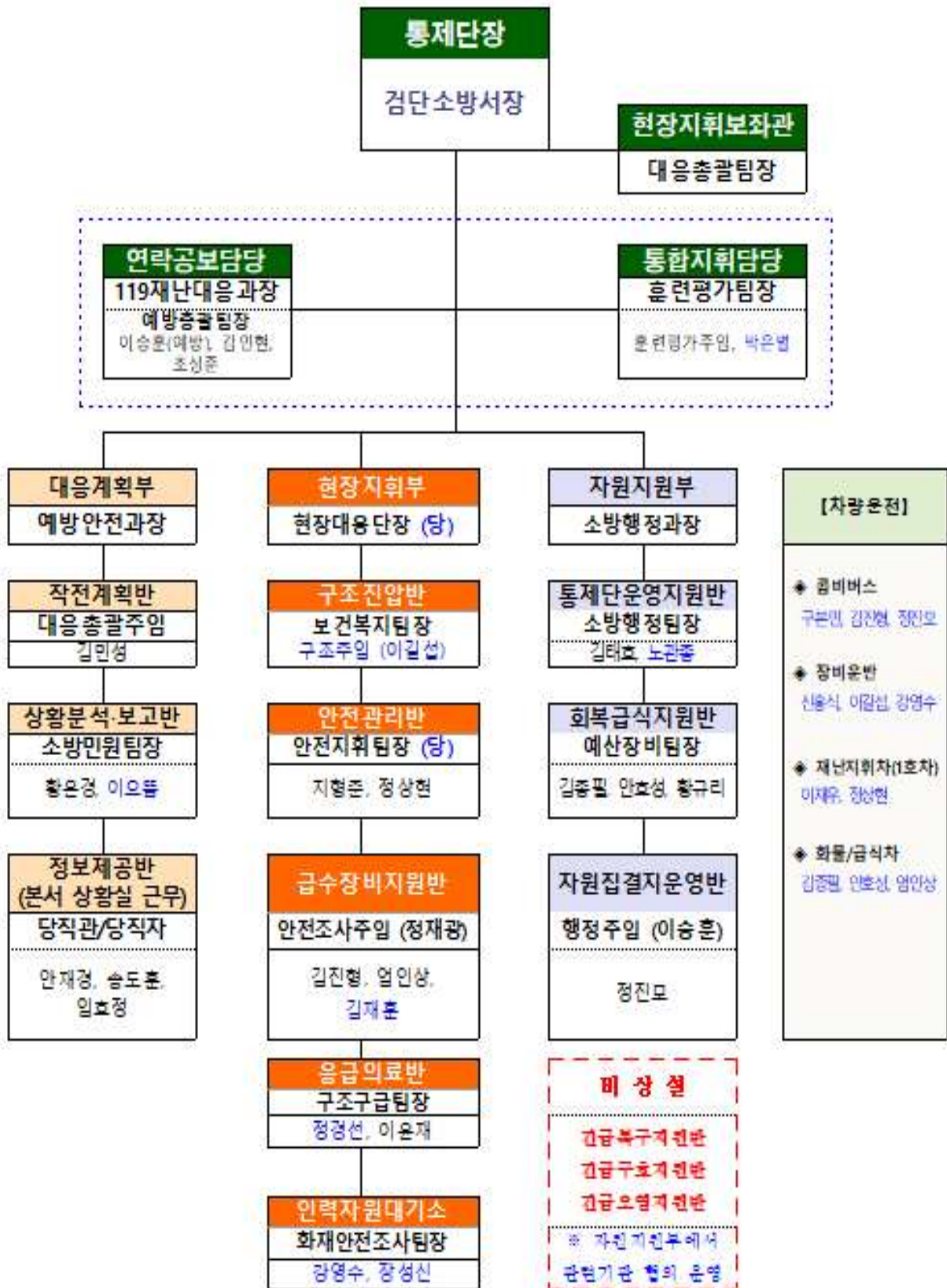
마. 긴급구조통제단

1) 체계도

□ 서부소방서



□ 검단소방서



2) 기능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 참여기관의 역할을 분담하고 지휘통제
- 대응구역별 자원 운용 및 현장대응 활동 지원

3) 운영

- 각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규모는 재난상황 및 규모에 의해 통제단장이 각 부장의 상황판단자료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 및 규모에 따라 통제단 운영규모와 구성을 탄력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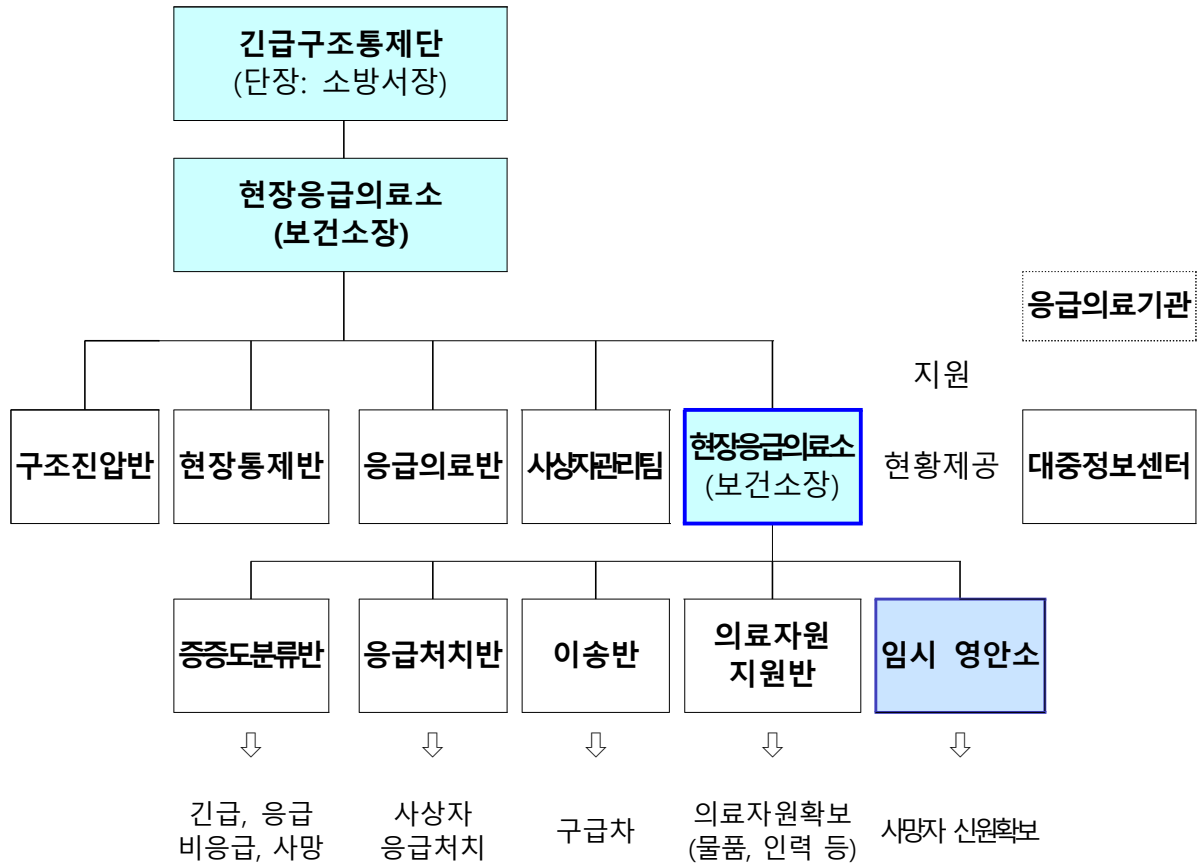
4) 주요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통제단장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총괄지휘부	통합지휘	- 전반적 대응목표 및 전략 결정,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 -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기타 통제단장 지원활동
	연락공보	-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 통제단 및 중앙통제단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전담당	-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대응계획부	상황분석	-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 재난상황예측,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상황보고	- 통제단 및 중앙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정보제공	- 현장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자원지원부	통제단운영 지원	- 통제단인력 응소부 관리 - 현장지휘소 설치, 전기, 조명, 냉·난방 등 기반설비 설치 - 현장급식(급식차 운영, 식사, 생수 등 필요물품 구입 운영)
	장비지원	- 현장에 필요한 민간자원(중장비 등) 지원 - 유관 기관(지원기관) 장비 동원 협조 - 공기호흡기 봄베, 소화 약제 등 기타 필요 장비 - 차량 연료 지원(주변 주유소 섭외 상주)
	급수(차량) 지원	- 소화전 점령 및 급수차량 부서 등 관리
	인력자원 대기	-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지원(무전) - 비상동원 현장대원 응소부 관리 - 현장인력 교대조 관리(활동, 대기, 휴식) - 휴식장소(에어텐트 등)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초기 상황전파, 영상등록 - 현장 위험요소 파악, 대원안전사고 방지활동 - 긴급구조통제단과 연락체계 구축, 보고자료 전파 등
	현장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주변 소방활동 구역 설정 및 파이어라인 설치 (1차, 2차 통제선 설치, 현장통제) -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출입증 발급·관리 및 이동안내
	응급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보건소 및 보건 부서와 협력관계 구축 - 의료기관 현황 파악 및 의료자원 지원요청 - 사상자 분류 및 우선순위에 따른 부상자 응급처치 관리
	사상자 관리(비상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이송병원에 연락관 파견 및 사상자 현황관리 - 이송된 의료기관 현황 및 병원 병상 정보 제공

바. 긴급구조 현장지휘소

1) 체계도



2) 기능

- 현장응급의료지원반 소집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시·도와 관할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 현장응급의료지원반이 사고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소모품, 약물 및 기타 장비 준비
- 현장응급의료지원반이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 확보
- 각 반과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확보
- 기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주요임무

반명	주요임무
현장응급의료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소 설치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의료자원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물품요청 • 구급차 대기 운영 • 의료자원 확보 및 지원
분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한 의사배치 • 사상자 중증도 분류(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응급처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실무지원반에게 지원요청
이송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동
임시영안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현황파악 • 개인 소지물품 보관 • 시신방부처리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가. 총괄

단계	주요 임무와 역할	
예방 단계	정의	재난예방은 재난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재난발생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예방(Prevention)활동 + 경감(Mitigation)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구성 ○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유지관리·점검 등 ○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등 관리대상 선정 및 점검 ○ 운영연속성 확보(비상운영계획, 표준행동절차 등) ○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 교육·훈련·홍보
대비 단계	정의	재난대비는 실제 재난이 발생한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점검 등 ○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 교육·훈련
대응 단계	정의	재난대응은 재난발생 또는 재난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관리 ○ 긴급통신 지원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교통대책 운영 ○ 재난현장 환경 정비 ○ 사회질서 유지 ○ 재난 수습 홍보 등 ○ 긴급생활안정 지원 ○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재난관리자원 관리 ○ 의료 및 방역서비스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수색, 구조·구급
복구 단계	정의	재난복구는 도로, 항만, 시설물 등 물리적 피해를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또는 회복시키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시설복구 ○ 특별재난지역 선포 ○ 홍보 ○ 재정적 절차 ○ 복구계획 수립 ○ 피해주민 지원, 구호대책, 사상자 치료 ○ 자원봉사자 관리 ○ 평가 및 사고재발대책 마련 등

【 참고 :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안전법」 관련 규정 】

1. 예방단계	법 제25조의4 내지 제33조의3	2. 대비단계	법 제34조 내지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제25조의4) ○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제26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제27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제28조) ○ 재난방지시설의 관리(제29조) ○ 재난분야 종사자 교육(제29조의2)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제30조)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31조) ○ 정부합동 안전점검(제32조) ○ 사법경찰권(제32조의2)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제33조) ○ 재난관리체계 평가(제33조의2) ○ 재난관리실태 공시(제33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제34조) ○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 마련(제34조의2) ○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제34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용어정의, 표준체계, 대응체계 원칙 등 기준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제34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공동협업기능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제34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제34조의6) ○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제34조의7)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제34조의8)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제34조의9) ○ 재난대비훈련 실시(제35조) 	
3. 대응단계	법 제36조 내지 제57조	4. 복구단계	법 제58조 내지 제66조
<p><응급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태 선포(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선포 ○ 응급조치(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 조치 ○ 위기경보의 발령 등(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주의·경계·심각 ○ 재난예보·경보체계구축·운영 등(제38조의2) ○ 동원명령(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대본부장, 지대본부장 ○ 대피명령(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 ○ 위험구역의 설정(제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 ○ 강제대피조치(제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 ○ 통행제한(제4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서장에게 요청 ○ 응원(제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이 군부대 등에 요청 ○ 응급부담(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 실시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제46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제47조) ○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제48조) <p><긴급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제49조)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제50조) ○ 긴급구조(제51조) ○ 긴급구조 현장지휘(제52조) ○ 긴급대응협력관(제52조의2) ○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53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제54조) ○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제54조의2) ○ 재난대비능력 보강(제55조)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55조의2) ○ 해상에서의 긴급구조(제56조) ○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제57조) 		<p><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주민신고→시·군·구 보고→중앙대책본부장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복구계획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수립 ※ 중앙재난 복구계획 ▶ 중앙대책본부장 수립 ○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제59조의2) <p><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6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포권자 : 중앙대책본부장 ※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영 제69조)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제61조) <p><재정 및 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부담 원칙(제62조) ○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제63조) ○ 손실보상(제64조) ○ 치료 및 보상(제65조)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제66조) 	

나. 예방단계

1) 조직 구성

-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관리 등 분야별 총괄부서 운영
 - 평상시 : 재난유발 요인·행위 등 사전 제거·관리 등 예방업무
 - 재난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업무 편성에 따른 업무
- 재난위험요소 정보 관리
 - 재난 유발(위험)요인 정보화 관리, 사전 제거 활동 강화

2)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유지관리·점검

- 시특별 대상 시설물 관리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반지하 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교통안전시설물·범죄예방시설물 유지 보수 및 설치 확대

3) 실천·참여기반 안전문화 확산

-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 주민과 함께하는 테마별 안전문화 홍보 '안전점검의 날' 추진
-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 운영
-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 추진 및 개선사항 발굴
-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참여

4) 현장 중심 민·관 특별 안전점검

- 구 안전자문단 안전점검 서비스
 - 점검대상 : 건축물, 용벽, 석축, 교량, 터널, 학교시설물 등 전 분야
 - 점 검 반 : 교수, 전문가 등
 - 운영방법 : 시설물의 균열, 변형, 누수 등 손상상태 점검 및 방안 제시

○ 구 안전보안관 활동

- 자격조건 : 안전보안관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구청장의 위촉을 받은자
- 활동지역 : 관내 지하철역, 공원, 어린이시설 등
- 활동내용 :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위험요소 신고활동,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및 환경정화 활동

< 주요 추진사업 >

1.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유지관리·점검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점검
 -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공연장, 체육시설 등 안전점검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 실천·참여기반 안전문화 확산
 -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추진
 -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 등산로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3. 현장 중심 민·관 특별 안전점검
 -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안전보안관 활동

다. 대비단계

1) 예·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현장 정보수립 체계 구축,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시간 연계 시스템 운영
- 지역통신사 연계 재난문자 전파 운영
 - 대 상 : 이동통신사(LG, KT, SK)
 - 범 위 : 자연재난, 사회재난, 민방위사태
 - 절 차 : 상황판단 ⇒ 방송요청 ⇒ 재난방송 ⇒ 모니터링
- 지역 맞춤형 긴급재난문자 발송

2)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 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호장비·물자·시설·인력 조달을 위한 정보 운용·관리
- 중점관리 재난유형별 필요자원 도출
- 재난발생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활용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및 현행화
- 서구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인 역량 강화(교육·훈련 등 활동 지원)

3)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훈련 등을 통한 보완

4) 재난대응 훈련(도상, 모의) 실시

- 긴급구조통제단과의 불시 대응훈련 추진
- 재난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수신 훈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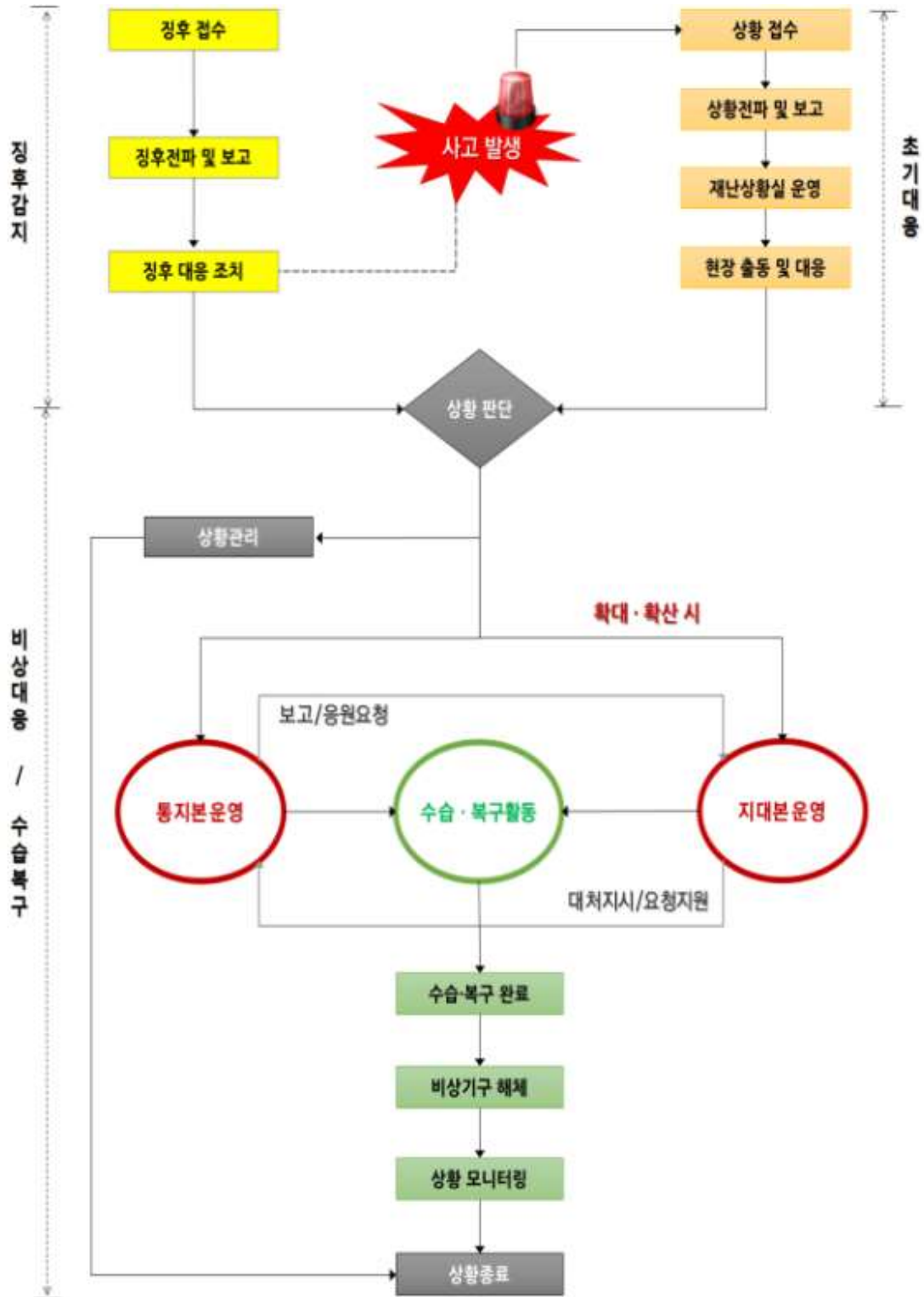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연계한 기능별 유관기관, 주무부서간의 업무와 역할 명확화
- 재난대응 협업기능별 유관기관간 활동계획 수립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현장, 토론) 협력 및 참여

< 주요 추진사업 >

1. 예·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CCTV 설치 및 정비
 -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2.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 산불전문진화대 채용
 - 서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3.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 풍수해, 한파, 폭염, 대설 행동매뉴얼 개정
 -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관리
 - 저수지 붕괴,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매뉴얼 개정
4. 재난대응 훈련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실시
 -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 재난훈련 실시

라. 대응단계

1) 재난대응 절차도



2) 재난대응 단계별 주요임무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 감지	○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등에 따른 감시활동 강화	○ 주민 대피계획 검토 ○ 유관기관 등 대·내외 비상연락체제 구축 ○ 긴급구호 비축자재 확인	관심
초기 대응	○ 유관기관 공조하에 비상연락체제 및 정보공유를 통한 주민대피 준비	○ 신속한 주민대피 준비 ○ 긴급 구호활동,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 이재민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주의
비상 대응	○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신속한 주민대피 및 지역안정대책 시행	○ 주민대피 및 재난경보방송 실시 ○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 전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경계 심각
수습 복구	○ 피해에 따른 주민대피, 구호활동(지속), 피해현황 파악, 항구지원대책 강구, 시행	○ 주민대피 및 재난경보방송(계속) ○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계속) ○ 피해현황 파악, 항구지원대책 검토	심각

3) 재난대응 추진절차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부서	안전총괄과 / 치수방재과 상황실	[1. 징후접수 및 파악] [1-1] 징후접수 - 상황실에서 징후 접수(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1-2] 징후파악(현상, 사고가능성 등)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위기상황 모니터링 [2. 징후전파 및 보고] [2-1] 징후전파 - 각 반별 소관부서에 유선전파 [2-2] 유관기관 징후전파 - 경찰서, 교육청, 한전,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등 [2-3] 지자체장 또는 상급기관 징후보고 - 시장, 부시장, 중앙행정기관	[4. 상황접수 및 파악] [4-1] 상황접수 (2~4단계 계속) - 위기단계 격상 접수 [4-2] 상황파악 (2~4단계 계속) - 원인, 피해상황, 현장상황, 추가피해 가능성 파악 등 [5. 상황전파 및 보고] [5-1] 상황 보고 (2~4단계 계속) - 시장/부시장 유선보고 및 상급기관 보고 [5-2] 상황 전파 (2~4단계 계속) (소관부서상황전파) - 각 반별 소관부서에 유선전파(상황실 크로샷 이용) (소관부서상황전파) - 경찰서, 교육청, 한전,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등 [7. 재난안전상황실(지대본 상황실) 가동] [7-1] 현장 피해 및 대처상황 파악 [7-4] 필요 자원 파악 및 지원 요청 [7-8]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7-9] 비상기구(지대본) 가동 준비 [필요시] [7-6] 관계기관 대책 회의 준비 및 개최	
		[3. 징후 대응] [3-1] 징후확인 및 평가 - 주관부시장 징후확인(확인지시 및 현장출동) - 징후평가 회의개최(주관부서) [3-2] 징후 대응조치 - 감시활동반 편성 - (필요시)필수요원 비상 소집 및 근무 명령 - (필요시)담 접근 제한 및 교통통제 - 재난대응체계 가동 점검 - 징후 대응 상황 보고(국장, 부시장/시장)	[40. 주민대피] [40-1]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담당자 대기 지시 [40-2] 동원 인력, 장비, 시설 사전확보 여부 확인 [40-3] 경찰, 소방, 군부대 등과 임무 등에 대해 사전 협조 체계 구축 [40-4] 대피요령에 대하여 방송 및 홍보물 준비	
시장 (부재시) 부시장		○ 유관기관장 상황전파 및 비상시 협조요청 -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 (필요시) 필수요원 비상근무 지시 ○ 상급기관 상황보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 전 직원 비상대기 및 비상근무 확대 지시 - 유관기관장 상황전파 및 추가 협조요청 - 긴급조치사항 점검, 이재민수용, 구호물자 지급 등 - 지역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 지원요청사항 - (필요시) 관계기관 대책회의 주재	
시민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점검 ○ 재난상황실 운영 ○ 징후확인 및 재난대응부서 긴급조치 지시 ○ 재난대응부서 및 소관부서 비상근무태세 확립	[비상대응 준비]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확립 ○ 비상대응단계 상황조정 가능성 동향파악 및 보고 ○ 통합지원본부 설치 검토 - 현장지원소 또는 응급의료소 설치 시 즉시 가동 ○ 지대본 운영 필요사항 확인 - 설치장소, 근무반별 임무, 근무인원 등 ○ 언론홍보 지원 [필요시] ○ 상황에 따라 자체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주재	

구 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대변인 (13) 재난수습홍보)	○ 재난공보체계 점검 [46. 재난방송] [46-1] 위기경보 전파 및 경보방송 시행 [47. 언론대응] [47-1]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46. 재난방송] [46-1] 위기경보 전파 (계속) [46-2] 재난방송(대응 및 수습상황, 위기경보 발령 등) - 재난방송 준비완료(방송국 등, 필요시 즉시 방송시행) [47. 언론대응] [47-1]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계속) [47-4] 브리핑 및 취재지원 (계속) - 언론보도 준비 (국토교통부 및 수자원공사 협의)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2) 긴급생활안정지원)	- (필요시) 비상근무		[11. 이재민 구호] [11-4] 이재민 수용시설 운영 - 임시 주거시설 확보	
안전총괄과 정보통계담당관 (3) 긴급통신복구)	- (필요시) 비상근무		[15.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15-1] 긴급통신지원 - 긴급통신 단말기(무전기, 전화기 등) 현장지원 준비	
문화체육관광과 지역공동체과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시설과 등 (4) 시설응급복구)	- (필요시) 비상근무		[16. 시설응급복구] [16-2] 응급복구 지원 준비 요청 [16-3] 응급복구 장비 보유현황 파악	
경제정책과 산업입지과 (5) 에너지기능복구)	- (필요시) 비상근무		[19. 재난현장 에너지 지원] [19-1] 구조구급현장 에너지 지원 - 현장 전기제공(발전기 등) 및 이간작업 위한 조명지원 준비	
안전총괄과 (6) 재난자원지원)	- (필요시) 비상근무		[20. 방재자원 확보 및 수요파악] [20-1] 방재자원 확보 현황 파악 [21.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21-1] 방재자원동원 관계자 긴급 사전회의 - 피해 규모에 따라 동원범위 설정 - 복구에 필요한 추가 방재자원 및 지원규모 분석 및 검토	
도로과 교통과 (7) 교통대책)	- (필요시) 비상근무		[23. 교통상황파악] [23-2] 재난발생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및 관리 - 교통상황파악 및 교통통제 준비 [24. 대체교통수단 마련] [24-1]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 교통통제 및 우회로 안내방송 준비	
보건소 (8) 의료및방역서비스)	- (필요시) 비상근무		[26. 의료 및 방역지원] [26-2]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26-3] 지자체 의약품, 방역물품 확보 및 운영	
도시청결과 환경정책과 (9) 재난현장환경정비)	- (필요시) 비상근무		[34. 폐기물 수거 및 처리] [34-3] 대규모 폐기물 대비 장비 동원 체계 점검	
복지정책과 노인보건장애인과 (10) 자원봉사관리)	- (필요시) 비상근무		- 비상대기 및 비상근무 실시	

구 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생활안전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11) 사회질서유지	- (필요시) 비상근무		[42. 질서유지활동] [42-7] 취약지점 점검 및 예방순찰 활동 강화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안전총괄과 119종합상황실 (12) 수색구조구급	- (필요시) 비상근무		[44. 수색구조구급지원] [44-1]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요청 사항 협조 [44-2]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안전총괄과 119종합상황실	○ (필요시)상황악화에 대비한 현장 긴급구조체계 준비		○ 현장 긴급 구조·구급 ○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대피 ○ 출동대별 추가임무지시, 상황전파 및 임무재지정 ○ 구체적인 통제범위를 지정하여 현장통제선 설치 ○ 추가 위험 가능성 판단, 비상상황 발령(대응1,2단계)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여부 판단	
경찰서	○ (필요시)정후발생 건물주변 교통 및 통행 통제		○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주민 대피 지원 ○ 재난관리부대 등 긴급지원 우선 배치 ○ 경찰통제선 범위설정, police line 설치 - 사고발생 현장 통제 및 비상로 확보 ○ 현장 응급구조 및 안전관리 지원 ○ 주·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 ○ 원활한 구조·구급지원을 위한 포토라인 지정운용	
군부대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인명구조 및 추가붕괴 방지 조치 지원	
교육청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필요시) ○ 재난대응자원 집결지(학교운동장 등) 지원(필요시)	
KT			○ 2차 피해확산방지 조치 및 긴급복구 지원 ○ 주변지역 원활한 통신소통 확보	
한국전력공사			○ 전기설비 피해규모 확인(고압, 저압 공급설비 등) ○ 전원분리시행(현장출동반) ○ 본부, 본사, 산자부 상황전파 및 보고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피해시설의 긴급복구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한국가스공사			○ 사고 현장 가스차단 조치 ○ 주변지역 우회공급 방안 대책수립 ○ 가스사고 대응조직 설치가동 및 전문가 지원	
대한적십자			○ 사고전파에 따른 (봉사원 비상소집) ○ 응급구조물품 요청(현장상황파악) ○ 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구호활동 전개	
지역자율방재단	- (필요시) 비상근무 - 사전예찰 및 상황전파 초기대응활동		○ 비상근무 ○ 위험지역 출입통제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초기 대응 부서	안전총괄과 / 치수방재과 상황실	[7. 재난안전상황실(지대본 상황실) 가동] [7-1] 현장 피해 및 대처상황 파악 - 추가피해상황 및 비상대응 상황 파악 [7-3] 재난상황 수시 보고 및 전파, 공유 -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에 수시 전파 [7-6] 관계기관 대책 회의 준비 및 개최 [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8-1] 지대본 설치 및 가동 - 회의장 설치 및 회의소집 [8-2] 지대본 실무반 편성 - 재난대응활동 13개 기능 실무반 편성 [8-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사고 대응 및 수습 대책 협의 - 중수본, 중대본 응원요청 및 업무지원 -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상황종합 - 협업 기능별 조치사항 총괄 - 유관기관 협업 총괄 - 사고수습 총괄 및 사후대책 강구	[7.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 가동] [7-1] 현장 피해 및 대처상황 파악 -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7-4]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요청 - 수습복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파악 및 중대본에 필요 자원 지원 요청 [7-8]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8-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계속)	
		[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8-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통지본) 운영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보고/공유/기록 - 현장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조치활동 총괄 - 기획예산실과 협의하여 예산 확보 및 집행 [40. 주민대피] [40-5] 대피명령 지시 (관련부서 및 지역 관계기관) [40-6] 대피실시 - 읍,면,동사무소 중심으로 주민대피 안내	[9. 재난 및 사고 복구] [9-1]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사고합동조사반 운영을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 [9-2] 지대본 결정사항 이행계획 수립 - 신속한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생활안전지원, 특별 교부금 지원 등 계획 수립 및 이행 [9-3] 복구상황 총괄 - 수습복구 현황에 대한 도시건설국장, 부시장, 시장 지속 보고 [9-4]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 - 일부붕괴 시 정밀진단 실시 - 사고합동조사반 조사결과 검토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장 (부재시) 부시장		[지대본 및 통지본 지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 현장방문 및 피해자 위로, 이재민 구호소 방문 면담(부시장) ○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 등 ○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 판단 ○ 범정부적 지원(인력, 장비)사항 요청 [필요시] ○ 시민 담화문 발표 및 재난사태 선포(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 - 절차 : 시장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고수습활동 지휘·점검] ○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전 조치 지시 ○ 피해현장 방문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수행 ○ 사망·실종자 유족보조 조치 지시(장의비, 위로금 지급 등) ○ 피해원인 분석 및 향후 종합대책 마련 지시 [필요시]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 - 절차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대통령 (선포 및 공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및 관계법령 개선 지시	
		[지대본 운영] ○ 시장 또는 부시장 보좌 ○ 재난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체계 가동 ○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 지대본 조치내용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 ○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보고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 [필요시] ○ 대응 행동요령 등 인터뷰	[수습·복구 지원] ○ 주요인사 현장 방문시 수행 ○ 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 ○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 ○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지원 ○ 복지지원대상 및 범위보고 ○ 사고대응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강구	
시민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 · 복구
대변인 (13 재난수습홍보)	[46. 재난방송] [46-1] 위기경보 전파 (계속) [46-2] 재난방송(대응 및 수습상황, 위기경보 발령 등) [46-3] 국민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자료 배포 [47. 언론대응] [47-1]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계속) [47-2]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상급기관 보도자료 참고하여 세종지역 보도자료 배포 [47-4] 브리핑 및 취재지원 (계속)		[47. 언론대응] [47-1]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47-2]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47-4] 브리핑 및 취재지원	
	[11. 이재민 구호] [11-1] 이재민 관리 - 이재민 발생 현황 파악 및 구호활동 총괄 [11-2] 현장(동지본) 이재민구호반 가동 - 구호지원반 편성 및 운영, 구호물자 비축현황 파악 [11-6] 이재민 구호 - 이재민 급수, 급식 지원, 구호물자 확보 및 지급 [11-8] 구호물자 지원 요청 - 대한적십자 등 구호기관 물자 및 인력 지원 요청 [13. 장례지원] [13-1] 사망자 및 실종자 인적사항 파악 - 세종경찰서에 사망자 신원확인 요청 및 유가족 연락 [13-2]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장례식장 현장상황 관리 및 유가족 장례절차 지원 [13-3] (필요시) 임시/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임시 분향소 설치 및 유가족 대기공간 마련, 장례절차 등 행정편의 지원 [13-4] 유가족 지원 대책 - 유가족 편의지원, 유가족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상담 - 희생자 가족 심리치료 지원 [13-5] 장례비 지원		[12. 경제적 지원] [12-4] 저소득층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지원 등 [12-5] 의료비 지원 - 지대본 심의로 정한 지원기준을 의료기관 및 부상자, 가족 안내 및 청구·지급 [12-6] 법률상담 및 자문 - 무료법률상담사 등 피해주민 필요상담 지원 [12-8] 세제 및 금융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사회재난피해자 생활안전지원금 등 지급 [14. 피해보상 및 지원] [14-1] 피해 지원 대책 홍보 요청(대변인) [필요시] [14-2] 피해보상 접수 [14-3] 피해 보상 지원 - 인명피해(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금 산정 및 지급 - 재산피해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2 긴급생활안정지원)	[15.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15-1] 긴급통신지원 - 동지본 긴급통신 업무 협조 -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요청(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5-2] 통신두절 지역 복구 요청 - 통신지원기관(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5.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15-1] 긴급통신지원 (계속) - 통신지원기관(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6. 시설응급복구] [16-4] 응급복구 지원 요청 [16-5]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16. 시설응급복구] [16-5]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16-7] 장기 수습·복구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과 지역공동체과 경제정책과 건축과 도로과 등 (4 시설응급복구)	[16. 시설응급복구] [16-4] 응급복구 지원 요청 [16-5]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16. 시설응급복구] [16-5]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16-7] 장기 수습·복구 방안 마련	
경제정책과 산업입지과 (5 에너지기능복구)	[19. 재난현장 에너지 지원] [19-1] 구조구급현장 에너지 지원 - 현장 전기제공 및 야간작업을 위한 조명지원 등 [19-2] 동지본 에너지 지원 [19-3]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 안전점검 및 전기공급, 냉난방 설비 등 지원 [19-4]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에너지 차단 조치		[18. 에너지 기능 복구 지원] [18-2] 에너지 공급재개 지원 요청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공급라인 복구 - 피해지역 주변 주민생활을 위해 가스 및 전기 공급 요청(한전 및 가스공사 등)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 · 복구
안전총괄과 (⑥ 재난자원지원)	<p>[10. 대민지원] [10-1] 민원접수 창구 설치 및 운영 - 각종 여론 정보수집 및 민심동향, 민원처리 등</p> <p>[21.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21-2] 유관단체 인력 동원 -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민방위 등 [21-3]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21-5] 군 인력, 장비 동원을 위한 군부대 지원 요청 [21-7]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 방재자원관리, 지원실적 정리 및 보고 [21-8] 응급복구 수습 예산 지원</p> <p>[22. 현장 자원지원(통지본 설치 시)] [22-1] 자원지원반 편성 및 운영 - 인력, 장비, 자재, 시설 등 지원</p>	<p>[21.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21-3]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21-7]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 방재자원관리, 지원실적 정리 및 보고 [21-8] 응급복구 수습 예산 지원</p>		
도로과 교통과 (⑦ 교통대책)	<p>[41. 통제활동] [41-1] 교통통제 [41-2] 출입통제 - 피해지역 및 침수예상지역 교통, 출입통제</p> <p>[24. 대체교통수단 마련] [24-5]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 응급환자, 자원봉사인력, 구호물자 등 수송 및 운반을 위한 버스, 트럭 등 지원</p> <p>[25. 현장 교통대책(통지본 설치시)] [25-1] 교통대책반 편성 및 운영 - 통행방해 주차차량 견인 조치 및 임시주차장 마련</p>	<p>[24. 대체교통수단 마련] [24-5]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 수습·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 수송 및 운반을 위한 버스, 트럭 등 지원 계속</p>		
보건소 (⑧ 의료및방역서비스)	<p>[26. 의료 및 방역지원] [26-1] 의료방역분야 상황 총괄 [26-2]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 다수 사상자 수용 가능 병원 현황 파악 및 실시간 현장응급의료소에 정보 제공, 필요시 군의관 등 의료 인력 지원 요청</p> <p>[29. 환자이송 및 관리] [29-2] 부상자 등 조치상황 파악 및 보고 -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계획부와 협조, 사망자 인적 사항, 안치장소 등 실시간 파악</p> <p>[32. 현장의료/방역지원(통지본 설치시)] [32-1] 응급의료소 지원 - 의료지원반</p>	<p>[26. 의료·방역지원] [26-7]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 재난으로 인한 가족, 목격자, 구조자 등 심리치료 - 재난심리지원센터 중심, 무료 심리 상담활동 전개 및 병원 등 유관기관 연계</p>		
도시청결과 환경정책과 (⑨ 재난현장환경정비)	<p>[34. 폐기물 수거 및 처리] [34-6] 재난 폐기물 긴급 수거 및 처리</p> <p>[37. 현장 환경정비지원(통지본 설치시)] [37-1] 환경정비 지원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 잔해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p>	<p>[34. 폐기물 수거 및 처리] [34-7] 재난 폐기물 처리 상황 보고</p> <p>[36. 환경관리] [36-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p>		
복지정책과 노인보건장애인과 (⑩ 자원봉사관리)	<p>[38. 자원봉사관리] [38-1] 자원봉사자 모집 [38-2]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38-3]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38-4]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설치</p> <p>[39. 현장 자원봉사지원(통지본 설치시)] [39-1] 자원봉사지원반 편성 및 운영 [39-2]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지원</p>	<p>[38. 자원봉사관리] [38-4]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설치 - 지속 가동</p>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생활안전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11) 사회질서유지	[42. 질서유지활동] [42-2] 재난 현장 질서유지 - 관계자 외 출입금지 철저 [43. 현장 주민대피 및 보호지원(통지본 설치시)] [43-1] 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	[42. 질서유지활동] [42-1] 재난 현장 범죄예방 활동 - 재난현장 주변 순찰강화 및 폴리라인 유지를 통해 안전 사고 예방 - 재난현장 불법 활동 감시 요청(세종경찰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안전총괄과 119종합상황실 (12) 수색구조구급	[44. 수색구조구급지원] [44-2]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44-5]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구조 활동 지원 [45. 현장 긴급구조 지원(통지본 설치시)] [45-1]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지원	[44. 수색구조구급지원] [44-1]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요청 사항 협조 [44-2]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안전총괄과 119종합상황실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피해 및 구호상황 보고 및 브리핑 ○ 재난현장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및 사상자 파악 ○ 민간인력 및 장비동원 ○ 대한적십자사 등에 비상급식 요청 ○ 대규모 붕괴시 세종시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중앙긴급통제단 운영으로 응원요청	○ 소방력(장비 등) 지원 ○ 복구현장 부상자 등 구급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협조/지원		
경찰서	○ 주민대피·긴급 구조 활동 지원 및 사상자 후송 지원 ○ 우회도로 확보 및 인근 교통 정리 ○ 현장 주변 순찰 강화로 범죄예방활동 강화	○ 재난 현장주변 순찰 및 위법행위 단속 ○ 원활한 수습·복구를 위한 복구현장 차량 등 교통통제 ○ 재난 관련 유언비어 등 사이버범죄 수사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협조/지원		
군부대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수색, 구조·구급 지원 ○ 인명구조 및 추가붕괴 방지 조치 지원	○ 군인력 및 장비 지원		
교육청	○ 이재민 임시주거장소 제공(체육관, 강당 등)	○ 재난대응자원 집결지(학교운동장 등) 지원		
KT	○ 피해 통신시설 긴급소통대책 시행	○ 피해 통신시설 복구 시행		
한국전력공사	○ 원격개폐기 조작으로 전원분리(배전센터) 설비피해 상태 확인 ○ 직원(배전운영실) 및 협력사 인력, 장비 등 지원 ○ 비상발전차 지원 : 당사보유 및 위탁계약 업체 동원을 통한 비상전원 공급 ○ 비상상황실 구성 : 당사 직원 및 협력사 비상대기근무 시행(현장상황보고 및 복구지원 등) ○ 피해 전기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복구 시행 ○ 전기 시설 피해 복구 ○ 주변지역 안전점검 및 안정적 전기 공급		
한국전기안전공사	○ 이재민 임시주거지 및 통지본 전기공급 ○ 피해 전기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 전기 시설 피해 복구 ○ 피해 주변지역 안전점검 및 안정적 전기 공급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협조/지원		
한국가스공사	○ 피해지역 가스 우회공급 방안 시행 ○ 피해 가스공급 시설 응급복구	○ 피해 가스공급 시설 복구 ○ 피해 주변지역 안전점검 및 안정적 가스 공급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협조/지원		
대한적십자	○ 이재민 대피소 설치 시 구호물품 지급 ○ 구호급식활동 실시 ○ 긴급구호 대책본부 및 현장 재난구호봉사단설치·운영	○ 제한된 심리상담반 운영 ○ 수습·복구 자원봉사자 및 지원인력 급식 지원		
지역자율방재단	- 위험지역 순찰 및 상황보고 - 지역 주민 긴급대피유도 - 재난발생지역 합동조사 참여	- 거주지역 피해조사 지원 -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활동 및 노력 봉사		

마. 복구단계

1)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재난피해 조사 실시

- 서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피해조사반, 소관 시설관리부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등

※ 필요시 중앙부처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등 지원 건의

2) 복구계획 수립

-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구 자체 복구계획 또는 특별재난 지역 선포 시 중수본에서 복구계획 추가 수립

3) 시설복구

- 교통 및 통신두절지역 긴급 복구
-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물 응급 복구 등

4) 피해주민 지원, 구호대책, 사상자 치료

- 이재민 구호시설 지정·관리 및 실태점검
- 신속한 구호물자 배포 및 추가 생필품 확보 노력 등

5) 자원봉사자 관리

- 유관 기관, 인근 자치단체 행정응원, 자원봉사자 등 지원 요청

6) 평가 및 사고재발대책 마련 등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2차 피해원인 제거, 제도적 장치 마련 등

7) 언론 및 주민홍보

- 피해원인, 피해현황, 향후대책 등에 대한 브리핑,홍보를 통해서 혼란과 동요를 막고 필요한 정보 공유

< 주요 추진사업 >

1. 시설 복구의 신속·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사전 협조
- 비상연락망 관리, 사전 협조 요청 등
2. 응급 복구 자원 및 물자 사전 확보
- 재난관리자원 및 물자(응급구호세트, 굴삭기, 수중펌프 등)
3. 재난 상황 혼란 방지를 위한 언론 및 주민홍보 창구 일원화
- 서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공보관을 통한 대 주민 홍보

4. 재난관리역량 강화방안

- 1) 지자체 재난관리 조직의 재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민간 및 관계기관 간 상시 훈련 강화
- 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 재난관리 부서의 관리자(급) 및 실무 담당자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 확대
- 3) 재난관리 부서 업무담당자 사기진작
 - 성과평가 결과 연계 승진가점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 수당 신설, 포상 등 재난관리부서의 근무여건 개선
- 4) 민간협업 및 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재난관리역량 등
 - 자율방재단, NGO, 민간전문가·지역주민 등 민간참여 활성화

제 IV 장

2025년 안전관리계획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1. 총괄
2. 재난·안전사고 주요 유형별 관리대책
3. 재난·안전사고 일반 유형별 관리대책



IV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1. 총괄

□ 주요 성과목표

구 분 (선정한 주요유형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목 표
풍수해 (재산피해/백만원)	257.2	250	2445	245	240	△7.2백만원 (2.8%)
대 설 (재산피해/백만원)	500	450	350	300	300	△50백만원 (10%)
한 파 (동파 발생건수)	264	510	500	490	480	유지
폭 염 (온열환자/명)	54	50	48	46	44	△4명 (7.41%)
화 재 (문화유산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유지
감염병 (감염건수)	3,171	3,071	2,971	2,871	2,771	△100건 (3.1%)
사업장사고 (사망자/명)	13 (‘23 통계)	12	12	11	11	△1명 (7.69%)
주거시설(공동주택) (사고건수)	51	49	47	47	45	△2명 (3.92%)
다중이용시설 (사고건수)	0	0	0	0	0	유지
유해화학물질 (사고건수)	2	0	0	0	0	△2건 (100%)
미세먼지 (목표농도)	17	16	15	15	15	△1% (5.88%)
도로교통 (사고건수)	1,338 (‘23 통계)	1,550	1,510	1,490	1,470	유지
어린이놀이시설 (발생건수/명)	1 (‘23 통계)	1	1	1	1	유지

□ 주요 추진대책

○ (자연재난)

- 풍수해, 산사태, 가뭄, 지진 등 6개 유형에서 법·제도개선(6개), 재정사업(4개), 기타시책(2개) 포함 총 12개 대책 수립

- (풍수해) 행동 매뉴얼 정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2개 대책
(제도개선 1, 재정사업 1)
- (대 설) 제설 자원봉사자 운영 1개 대책
(기타시책 1)
- (한 파) 행동매뉴얼 개정, 한파 대비 홍보 2개 대책
(제도개선 1, 기타시책 1)
- (폭 염) 행동매뉴얼 정비, 폭염대책 홍보물품 제작 2개 대책
(제도개선 1, 재정사업 1)
- (산 사 태) 행동매뉴얼 정비,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 2개 대책
(제도개선 1, 재정사업 1)
- (가 뭄) 매뉴얼정비 1개
(제도개선 1)
- (지 진) 매뉴얼 정비,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2개 대책
(제도개선 1, 재정사업 1)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등)

- 화재, 감염병, 사업장 사고, 시설물 등 20개 유형에서 법·제도개선(7개), 재정사업(27개), 기타시책(19개) 포함 총 53개 대책 수립

- (화 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신현동 회화나무 관리 2개 대책
(재정사업 2)
- (감 염 병) 감염병 관리사업 3개 대책 (재정사업 3)
- (사업장 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개 대책
(재정사업 1)
- (시 설 물) 문화시설 1개 대책 (기타시책 1)
체육시설 1개 대책 (기타시책 1)
청소년 시설 1개 대책 (기타시책 1)
의료시설 1개 대책 (기타시책 1)
저수지 2개 대책 (제도개선 1, 재정사업 1)
공동주택 3개 대책 (재정사업 2 기타시책 1)
다중이용시설 2개 대책 (제도개선 1, 기타시책 1)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매뉴얼 정비 1개 대책 (제도개선 1)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재난 행동 매뉴얼 정비 1개 대책 (제도개선 1)
- (도로교통 재난·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1개 대책 (재정사업 1)
- (산 불) 매뉴얼정비, 산불전문진화대 채용 등 7개 대책
(제도개선 1, 재정사업 3, 기타시책 3)
-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사고 1개 대책 (기타시책 1)
전기·가스 사고 1개 대책 (기타시책 1)
등산·레저 사고 2개 대책 (재정사업 1, 기타시책 1)
- (수질오염) 행동매뉴얼 정비, 수질오염 방제작업 등 3개 대책
(제도개선 1, 재정사업 1, 기타시책 1)
-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소독약품 및 예방백신 지원 2개 대책 (재정사업 2)
- (농·어업 사고)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농업인 보험료 지원 등 3개 대책
(재정사업 2, 기타시책 1)
- (범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4개 대책
(재정사업 3, 기타시책 1)
- (자살)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1개 대책 (재정사업 1)
- (해양오염) 행동매뉴얼 정비, 해양방제 합동훈련 2개 대책
(제도개선 1, 기타시책 1)
- (식품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 4개 대책
(재정사업 2, 기타시책 2)
- (의료제품 사고) 의약품 취급자 지도점검 실시 1개 대책 (기타시책 1)
- (전시재난·테러) 민방위 교육운영,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2개 대책
(재정사업 2)

○ (공통)

- 안전취약계층 지원, 재난 구호 및 복구 등 **6개 유형**에서 법·제도개선(2개), 재정 사업(12개), 기타시책(7개) 포함 **총 21개 대책** 수립

- (안전취약계층 지원) 여성 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등 8개 대책 (제도개선 1, 재정사업 5, 기타시책 2)
- (재난 구호 및 복구)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1개 대책 (재정사업 1)
-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점검의 날 추진 2개 대책
(재정사업 2)
-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1개 대책 (재정사업 1)
- (재난안전관리체계) CCTV 설치 및 정비 1개 대책 (재정사업 1)
- (국가핵심기반사고) 정보통신사고, 전산망사고 등 8개 대책 (제도개선 1, 재정사업 2, 기타시책 5)

□ 유형별 성과지표

분야	유형	대책명 (목표명)	사업정보			성과지표	'25년 목표	주관 부서	
			국가 연계	재난 단계	사업 구분				
자연 재난	풍수해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X	예방	제도 개선	매뉴얼 정비 횟수	2회	안전 총괄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X	예방	재정 사업	침수방지시설 설치 개수	300개		
	대설	제설 자원봉사자 운영	X	대응	기타 시책	자원봉사자 명수	20명		
	한파	한파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X	예방	제도 개선	매뉴얼 개정 횟수	2회		
		한파 대비 홍보	X	예방	기타 시책	국민행동요령 홍보 횟수	2회		
	폭염	폭염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X	예방	제도 개선	매뉴얼 정비 횟수	2회		
		폭염대책 홍보물품 제작	X	예방	재정 사업	폭염대책 홍보예산 지출 실적	100백 만원		
	산사태	산사태 예방 매뉴얼 정비	X	예방	제도 개선	행동매뉴얼 개정 횟수	1회		산림 정원과
		(신규)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	O	예방	재정 사업	(점검완료 개소수/점검대 상 개소수)*100	100%		
	가뭄	가뭄 행동매뉴얼 정비	X	예방	제도 개선	행동매뉴얼 개정 횟수	2회		안전 총괄과
지진	지진 행동매뉴얼 정비	X	예방	제도 개선	행동매뉴얼 개정 횟수	2회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X	예방	재정 사업	용역 시행 여부	시행			
	화재	(신규)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X	대비	재정 사업	해당연도 화재공제 가입 지원금 대상 점포수	300건	경제 정책과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문화유산 피해율	X	예방	재정 사업	(총피해액/횟수)*100	0%	문화 관광 체육과
	감염병	역학조사 완료율	X	대비	재정 사업	(역학조사 완료건수 전수 /감사대상 감염병 신고건수)*100	99%	질병 관리과
		오염지역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X	대비	재정 사업	(추적조사 완료자 수/추 적조사 대상자 수)*100	100%	
		손씻기 체험교육용 장비대여	X	대비	재정 사업	손씻기 체험교육용 장비대여 횟수	200회	
	사업장 사고	(신규)위험성평가 결과개선	X	예방	재정 사업	위험성평가 결과개선을	90%	안전 총괄과
	시설물 재난사고	공연장 안전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시설별 안전점검 실시 횟수	13회	문화 관광 체육과
		체육시설 안전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안전점검 횟수	4회	
		청소년시설 안전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시설별 안점점검 실시 횟수(상시, 불시)	50회	교육 지원과
		의료시설 안전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점검개소 수/점검대상 의료기관 수)*100	100%	보건 행정과
		저수지 붕괴 등 재난매뉴얼 정비	X	대비· 대응	제도 개선	매뉴얼 점검 횟수	1회	경제 정책과
		분기별 저수지 환경정비 사업	X	예방	재정 사업	점검 및 환경정비 횟수	4회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X	예방	재정 사업	(이행개소/선정개소)*100	100%	주택 관리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선정개소/신청개소)*100	100%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점검완료 수/ 점검대상 수)*100	100%	주택과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률	X	예방	제도 개선	(매뉴얼 작성개소 수/ 다중이용시설 개소수)*100	100%	안전 총괄과
		관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점검 개소 수/ 다중이용시설 개소 수) *100	100%	
	유해 화학물질	매뉴얼 정비율	X	예방	제도 개선	매뉴얼 개정에 따른 승인 여부	100%	환경 관리과
	미세먼지	행동매뉴얼 정비	X	대비· 대응	제도 개선	매뉴얼 정비 횟수	1회	기후 대기과
	도로교통 재난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X	예방	재정 사업	재정사업 예산 집행률 (집행액/예산액)*100	95%	교통 정책과
	산불	매뉴얼 정비	X	예방	제도 개선	행동매뉴얼 개정 횟수	1회	

사회재난 및 안전 사고	산불	산불전문 진화대 채용	X	예방	재정 사업	채용인원 수	10명	산림 정원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X	예방	재정 사업	산불 CCTV 유지보수 개수	2개		
		산불진화대 진화장비 확충	X	예방	재정 사업	예산 지출 실적	15 백만원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X	예방	기타 시책	현수막 설치 개수	100개		산림 정원과
		산불예방 캠페인	X	예방	기타 시책	캠페인 실시 횟수	2회		
		산불 관련 안전교육	X	예방	기타 시책	교육 실시 횟수	3회		
	생활러져 사고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X	예방	기타 시책	관내 승강기 점검개소 수	12개소	기업 지원과	
		가스시설 안전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점검개소 수/대상 개소 수)*100	100%		
		등산로 정비사업	O	예방	재정 사업	사업 공정률	100%	산림 정원과	
		등산로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X	예방	기타 시책	단속 및 홍보 횟수	3회		
	수질 오염	행동매뉴얼 정비	X	대비	제도 개선	(정비실시 횟수/정비목표 횟수)*100	100%	환경 관리과	
		수질오염 방제작업	X	대비	재정 사업	(집행예산/예산액)*100	90%		
		수질오염 방제훈련	X	대비	기타 시책	방제훈련 실시 횟수	1회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소독약품 지원	O	대비·대응	재정 사업	소독약품 지원(kg)	500kg	경제 정책과	
		구제역 예방백신	O	대비·대응	재정 사업	구제역 백신 지원 두수	450두		
	농·어업 사고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X	대비·대응	재정 사업	(보험료 사업비 집행액/총예산액)*100	80%		
		농업인 보험료 지원	X	대비·대응	재정 사업	(보험료 사업비 집행액/총예산액)*100	100%		
		어선 안전점검	X	대비·대응	기타 시책	연간 어선 점검 척수	4척		
	범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O	대응	재정 사업	참여 인원 수	160명		가정 보육과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대응	재정 사업	참여 인원 수	54명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대응	재정 사업	참여 인원 수	30명	
		가정폭력·성폭력 캠페인 진행	○	대응	기타 시책	캠페인 결과보고 횟수	4회	
	자살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제공	X	예방	재정 사업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건수	6700회	치매 정신과
	해양 오염	행동매뉴얼 정비	X	대비	제도 개선	행동매뉴얼 개정 횟수	1회	환경 관리과
		해양방제 합동훈련	X	대비	기타 시책	해양방제 합동훈련 횟수	1회	
	식품 사고	집중취약시설 지도점검	X	예방	재정 사업	(점검완료 개소/ 점검대상 개소)*100	100%	식품 위생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X	예방	재정 사업	수거·검사 건수	860건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X	예방	기타 시책	연간교육홍보 횟수	40회	
		유통식품 지도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점검건수/ 대상업소 수)*100	100%	
	의료제품 사고	의약품 취급자 지도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점검개소 수/ 관내 약국 개소 수)*100	100%	보건 행정과
	전시 재난· 테러	민방위 교육 운영	○	대비	재정 사업	(수료자 수/ 대상자 수)*100	96%	안전 총괄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X	대비	재정 사업	(시설장비 점검 수/ 시설장비 대상 수)*100	100%	
	공통	안전취약 계층지원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	X	예방	재정 사업	무인택배함 이용 실적 건수	17,000 건
서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X	예방	재정 사업	회의 개최 횟수	1회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사회복지시설 전수점검 횟수	2회	복지 정책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X	예방	제도 개선	관리계획 수립(80점) 조례제정 여부(20점)	100점	안전 총괄과

	어린이 놀이시설 선제적 예방조치	X	예방	기타 시책	-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20점) - 안전관리시스템 현행화 (40점) ※(총입력률) 95%이상(40점), 90~95%(35점) 85~90%(30점), 80~85%(25점) - 놀이제공영업소(키즈카페) 시 합동점검(40점)	90점	
	어린이·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X	예방	재정 사업	교육 실시 횟수	215회	교통 정책과
	어린이·고령자 교육참여인원 증대	X	예방	재정 사업	교육 참여 인원 수	6100명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X	예방	재정 사업	캠페인 실시 횟수	9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신규)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X	복구	재정 사업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 지출 건수	20건	안전 총괄과
안전문화 및 교육 훈련 홍보	안전보안관 활동 추진	X	예방	재정 사업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에 근거한 실비 지급 (월 평균 활동인원 1명=5점)	100점	안전 총괄과
	안전점검의 날 추진	X	예방	재정 사업	안전점검의 날 개최 (개최 건수 1회=10점)	100점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훈련	X	대비	재정 사업	시행 횟수	3회	보건 행정과
재난안전 관련체계	CCTV 설치 및 정비	X	대비·대응	재정 사업	CCTV 설치개소/정비개소	35/49	안전 총괄과
국·핵심 기반사업	정보통신사고 매뉴얼 정비	X	대비·대응	제도 개선	(개정 완료 횟수/ 개정 대상 횟수)*100	100%	정보 통신과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실시	X	대비·대응	기타 시책	목표복구시간 (4시간) 내 복구 완료 여부	실시	
	PC 보안 프로그램 운영	X	예방	기타 시책	내 PC지키미 점검항목 점수	94점	
	청사 정비	X	예방	재정 사업	(시설 장비 유지비 집행액/예산액)*100	95%	재무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X	예방	재정 사업	월별 소방시설물 점검 실적	12회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점검 횟수	9회	
	화재 예방교육	X	예방	기타 시책	실시 횟수	2회	
		폐기물 업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X	예방	기타 시책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횟수	6회

□ 유형별 재정투자 현황

분야	유형	세부사업수 (25회계연도 기준)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합계	'23	'24	'25
계		86개	23,135.8	7,562.6	7,187.7	8,385.5
자연재난	풍수해	2개	948	99	418	431
	대설	1개	59	49	10	0
	한파	2개	0	0	0	0
	폭염	2개	319	109	110	100
	산사태	2개	90	30	30	30
	가뭄	1개	-	-	-	-
	지진	2개	37.5	13	13	11.5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	2개	120	24	55	41
	감염병	3개	2,477	2,435	26	16
	사업장사고	1개	414	237	80	97
	시설물 재난·사고	11개	246	92	79	75
	유해 화학물질	1개	-	-	-	-
	미세먼지	1개	-	-	-	-
	도로교통 재난·사고	1개	4,977	670	680	3,627
	산불	7개	801	254	272	275
	생활·레저 사고	4개	2,320	400	1,500	420
	수질오염	3개	1,282.1	498.5	373.7	409.9
	가축 전염병	2개	236.4	78.8	78.8	78.8
	농·어업 사고	3개	111	40	34	37
	범죄	4개	46.5	30.5	8	8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자살	1개	597	182	215	200
	해양오염	2개	-	-	-	-
	식품사고	4개	47.7	16.7	15	16
	의료제품 사고	1개	-	-	-	-
	전시 재난·테러	2개	564	213	168	183
공통	안전취약 계층지원	8개	254.4	72.6	77.9	103.9
	재난 구호 및 복구	1개	220	50	90	80
	안전문화	2개	50.9	13.5	22.4	15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1개	4.5	1.5	1.5	1.5
	재난안전 관리체계	1개	6,348.8	1806.5	2,681.4	1,860.9
	국가핵심 기반사고	8개	447	147	149	151

□ 유형별 관계규정 현황

분야	유형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부서	
계		65개			
자연재난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안전총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		
	대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한파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		
	폭염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		
	산사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2,7,8,13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산사태예방교육		산림정원과
	가뭄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재해 및 관리지침 제7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등		안전총괄과
	지진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7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지휘체계, 현장지휘소의 운영 재난의 단계구분 및 대응기준 등	안전총괄과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2	전통시장 대상 정부 제공 공공보험	경제정책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등	문화관광체육과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 감염병 확산 최소화	질병관리과
	사업장 사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 이행 및 중대재해 예방	
	시설물 재난·사고	공연법 제11조	등록 공연장 : 매년 12우리 말까지 다음연도 재해대처계획 신고 공연장 외 장소 1천명 관람 예상 공연 공연 14일전까지 재해대처계획 신고	문화관광체육과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교육	
		국가안전대진단 자체계획	의료시설 안전점검	보건행정과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8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경제정책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서 공중의 안전 확보	주택관리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주택법 제93조	보고·검사 등	주택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안전총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8,9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대상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방법 등	
	유해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44조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조치, 현장 대응에 관한 내용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기후대기과	
도로교통 재난사고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8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교통정책과	
산불	산림보호법 제35조, 제28조, 제31조	산불방지교육 실시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산불조심기간 내 비상근무 실시	산림정원과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의 제조, 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등	기업지원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계획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숲길의 종류 및 조성 관리 숲길주변의 금지행위 등	산림정원과	
수질오염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금지 및 오염발생시 방제조치 주체	환경관리과	
가축 전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가축 전염병 예방 등	경제정책과	
농어업 사고	어선안전조업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국가 등의 재정 지원		
범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 보호	가정보육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 보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 보호		
자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치매정신과	
해양오염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금지 및 오염발생시 방제조치 주체	환경관리과	
식품사고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제15조	식품안전기본관리계획 식중독예방관리계획	식품위생과	
의료제품 사고	약사법 및 의약품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	관내 약국 지도점검 실시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	보건행정과	
전시 재난테러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5조	민방위 대위 교육훈련 민방위 준비	안전총괄과	
공통	안전취약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가정보육과

계층 지원	제22조,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복지정책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총괄과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8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교통정책과
재난 구호 및 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재난피해 이재민 구호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해구호법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 ·홍보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안전총괄과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보건행정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제18조 3항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법 CCTV 설치	안전총괄과
국가핵심 기반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 정보통신사고 예방	정보통신과
	국가 정보보안 기본치침 제29조	재난 방지 대책	
	전자정부법 제45조의 2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전자정부법 제56조, 제56조의 2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인천광역시 서구 영조물등 관리규정	영조물 관리 등	재무과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 처리	자원순환과

2. 재난·안전사고 주요 유형별 관리대책

① 자연재난 분야

가. 풍수해 (우선순위 1위 / 주요유형)

1) 현 황

○ 최근 5년간 총 337.8백만원의 재산 피해 발생(인명피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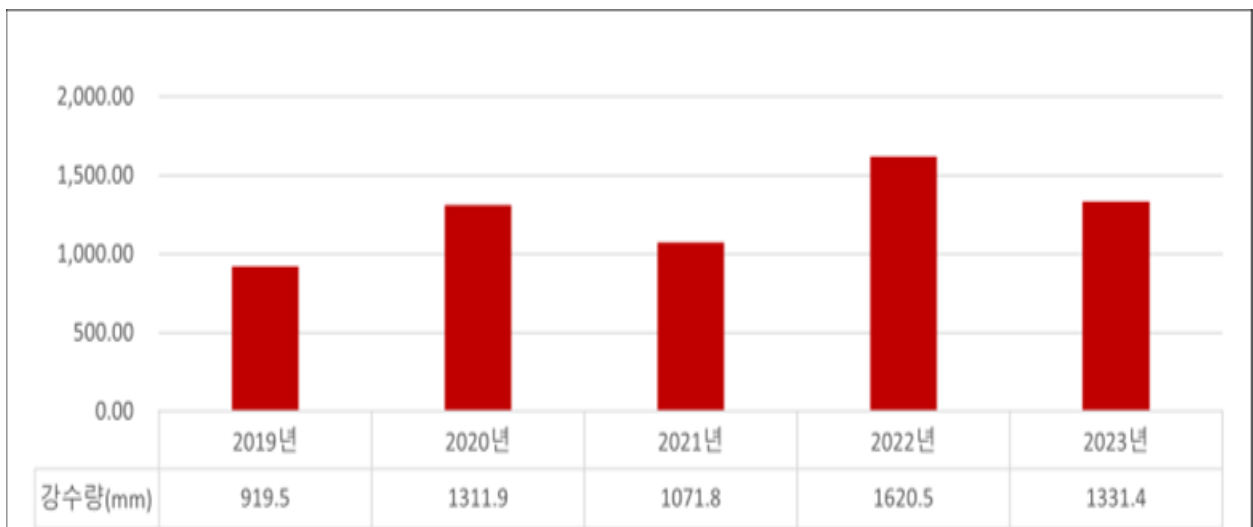
< 연도별 풍수해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225.8	153	27	471	202	276
재산피해	571.06	45	10.6	2,420	122.5	257.2
인명피해	계	-	-	-	-	-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 (통계 출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통계자료

< 연도별 강수량 현황 >



※ (통계 출처) 기상자료개방포털 강수량 분석

○ 취약요인 현황

<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태풍일수(회)	노출인구(명)	안전취약 계층(명)	하천(m ²)	노후건물(m ²)
인천 서구	60	5,633	167,694	64,691	5,789,674
비교지역 평균	99	4,115	96,339	1,512,693	5,821,977
항 목	강수일수(일)	홍수위험 지역(m ²)	지하건물(m ²)	고층건물(m ²)	지하차도(m ²)
인천 서구	21	2,621	2,893,203	2,105,570	8,334
비교지역 평균	23	2,937,905	1,969,795	987,700	1,414

2) 원인분석

- (기상전망) 최근 5년 평균 강수량은 1,251.02mm로 평년(1991~2020년) 강수량 1,207.4mm과 비슷하였고 2023년 1,331.4mm를 기록하여 2022년도에 비해 강수량이 감소하였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적 여건) 2022년 8월 시간당 75.5mm의 기록적인 강우로 인해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등 저지대가 밀집된 지역의 침수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음
- (사회·경제적 여건) 한들, 검단 등 신설중인 도로와 도시개발구역 주변에서 침수, 토사유출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276	270	265	265	260
재산 피해		257.2	250	245	245	24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세부사업명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합계	'23	'24	'25
침수방지시설 설치	894	82	402	410
풍수해 보험	29	2	6	21
수방자재물품 구입	25	15	10	0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① 방재시설물 관리

- 방재시설물 관리주체와 합동으로 일제점검 실시
-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재난위험 시설 지정
 - 재난사전대비기간 중 정기점검 및 정비
- 태풍이나 폭우 전에 정비가 어려운 경우 응급복구용 장비 확보 등 재해응급대책강구 특별관리

②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관리

- 강우량 계측시스템 구축
 -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유지보수 용역 시행

③ 응급복구장비 및 수방자재 관리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토록 조치
- 동원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 취득 후 지정
- 수방자재(PP포대, 비닐, 로프, 모래주머니, 말뚝 등) 사용가능 여부를 수시 점검, 정비상태 확인
- 수방자재 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나) 대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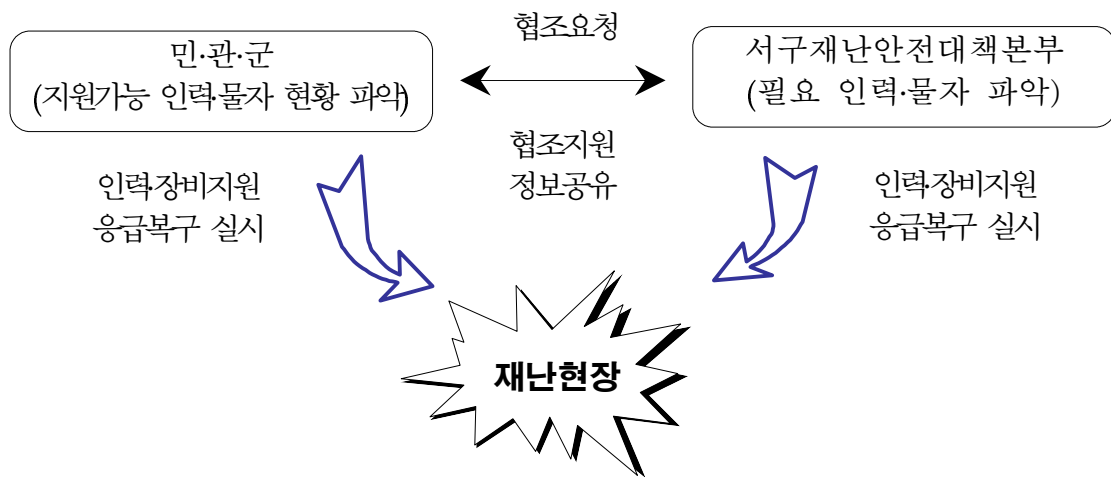
① 민·관·군 공동대응체계구축

- 서구 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간 응원협정 체결

협약기관	협약일	협약명
김포시,광명시,부천시.시흥시,부평구,계양구,강화군,강서구,양천구,구로구	2011. 6. 20.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협약

- 군부대 협력지원체계 구축: 2005. 11. 4.

<민·관·군 협력체계도>



②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 주민 안전의식 고취
 - 재난문자방송(CBS), 홈페이지, SNS, 인터넷카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상상황 등을 전파하여 대비 알림
 - 과거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개인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은 위험표지판 설치 추진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계활동 강화
 - 과거 인명피해 발생 현황 조사 및 D/B화
 - 위험지역에 출입통제 담당자 지정 및 배치
 - 경고표지판 또는 위험표지판 설치하여 경각심 고취
 - 위험지역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명령 (대피명령, 강제대피, 출입제한 등 발령) 운영 강화

다) 대응단계

①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로 편성 운영 ⇒ 직원 비상소집

-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실무반 준수사항 및 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② 상황판단회의

- (목적)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 (근거)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
- (구성) 본부장,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각 실무반장,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
- (내용)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결정 등

③ 주민에 대한 재난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 재해 우려 시 재난문자방송(CBS)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라) 복구단계

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대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와 공공시설 피해
- (내용)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 사유시설: 현장 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 보고(동)→현장 확인 후 피해 확정(구 소관부서)
 - 공공시설: 현장 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 보고(동)→구청 소관부서 현장 조사 후 재난관리시스템 입력(구 소관부서)
- ※ 구청 소관 외 시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현장 조사 후 구청에 통보

② 재난지원금 등 지급

- (대상) 인명, 주택, 소상공인, 농·축·수산업 등 자연재난 피해자
- (내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주택, 소상공인, 농경지,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 등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
- (지원금액)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10조 등에 따라 산정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자연재난팀장 조봉현	032-560-4701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조상혁 주무관	032-560-4705 whtkd555@korea.kr	예방	X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매뉴얼 정비	2회	2회	2회	매뉴얼 정비 횟수

□ 주요내용

- 재난관리체계 규정
 - 국가재난관리체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등 명시
 - 단계별 행동요령 등 서구 풍수해 발생 시 관리체계 및 주요임무 규정
 - 그 밖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 기본현황 변경사항 반영 등

□ 추진성과(최근 3년)

-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 추가, 외국인 사상자 주한공관 상황전달 서식 수정, 재난안전통신망(PS-LTE) 추가, 담당자 현행화, 담당자 현행화(2022. 5./ 11.)
-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내용 반영 등(2023. 12.)
-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기준 반영,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초기대응 개정,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추가(2024. 6./9./12.)

'25년도 주요 계획

-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2/4분기	상반기 매뉴얼 개정	4~6월
4/4분기	하반기 매뉴얼 개정	10~12월

소요예산 : 해당없음

나) 재정사업

(1)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자연재난팀장 조봉현	032-560-4701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김영중 주무관	032-560-4703 duclwnd14@korea.kr	예방	X

◇ 저지대 주택 등 침수 피해가구 지원을 위한 예방 사업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침수방지시설 설치	2,665개	1,250개	300개	침수방지시설 설치 개수

※ 예산 삭감으로 인한 목표 하향 조정

□ 주요내용

- 저지대 상습 침수 주택의 옥·내외 역지변(역류차단기) 설치
 - 배수구, 싱크대, 화장실(하수구, 좌변기) 등
- 주출입구 차수판 설치
 - 현관문, 창문 등

□ 추진성과(최근 3년)

구 분	추진 계획	연차별 추진성과
2024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역류방지밸브 170개소, 차수판 293개소 설치 완료
2023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역류방지밸브 1,748개소, 차수판 920개소 설치 완료
2022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역류방지밸브 374개소 설치 완료

□ '25년도 주요 계획

- 침수방지시설 설치 수요조사 진행
 - 통·반장 협조를 통한 관내 지하 및 반지하가구 방문 수요조사 및 지원 사업 홍보 진행
-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진행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발주	3월
2/4분기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준공	6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043.1	56.1	65	82	430	410	82	82	82	
침수방지시설 설치	1,043.1	56.1	65	82	430	410	82	82	82	

나. 대설·한파 (우선순위 2위 / 주요유형)

나-1) 대설

1) 현 황

< 연도별 대설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8.6	0	0	1	0	42
재산피해	100.5	0	0	2.5	0	50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통계 출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통계자료

○ 취약요인 현황

< 인천광역시 서구 대설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대설일수(일)	노출인구(명)	안전취약계층(명)
서구	6	6,731	167,694
비교지역 평균	8	4,652	96,339
항 목	한파일수(일)	비닐하우스(ha)	취약구조건물(m ²)
서구	3	15	4,193,215
비교지역 평균	2	32	2,197,748

2) 원인분석

- 지속적인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 강설량 및 강설 횟수는 줄고 있는 추세임.
- 저기압 통과 횟수가 적어 5년간('19~'23) 대설로 인한 피해가 적었던 인천이지만, 작년('24) 기록적인 대설로 평년 대비 피해가 증가함.
- 서구에는 지속적인 예방대비 활동으로 대설로 인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24) 대설로 1억1천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42	40	35	35	35
재산 피해		500	450	350	300	30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9-'23)	'20	'21	'22	'23	'24	'25	'26	'27
제설자재구입	95	12	12	12	49	10	0	15	15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재해우려지역 및 취약재해시설 등 전수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실시

□ 기상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관리

□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 실시

1) 재해우려지역 전수 재조사 및 예·경보시설 전수점검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
 - 인명피해 우려 지역 일제조사 실시 및 관리대책 마련
 - 인명피해 우려 지역 경계활동 강화
- 안전지킴이(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등 활용) 제도 운영
-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강화
- 첨단기술(ZOOM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겨울철 자연재난 대처 및 처리

2) 피해우려시설 관리 강화로 사전위험 발생요인 제거

- 인명피해 우려 시설 관리 강화
 - 붕괴 우려 노후주택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을 포함, 폭설 시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주택 및 적설취약시설물(PEB, 아치판넬, 시장 비가림시설, 조립식 가설건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일제조사 실시
 - 겨울철 전 건축물 소유자·점유자에게 보수·보강 및 제설용 장비·자재 구입 및 비치 강화
- 기상특보 등 위험징후 발생 시 사전 출입통제대피를 위한 담당 책임자 복수 지정
 - 옥외광고물 안전상태 점검
 - 옥외광고물은 시설 노후와 폭설시 내하력 부족으로 붕괴위험이 크므로 지자체 건축물 담당자가 안전상태 수시점검 및 관리
 -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 산악지역(철마산, 가현산 등)인명피해 안전대책 추진
 - 산악지역 등반객 안전대책 강구
 - 강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고립이 예상되거나 눈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 일제조사 실시
 - 취약지역별 담당자 지정 및 예비특보 시부터 탐방객의 출입통제

- 눈사태 발생 위험 구간 피해 예방대책 마련
- 학생 안전관리대책 적극추진
 - 기상특보 상황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장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책임자)재정비
- 농·축·수산 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축산시설 보강 및 경감대책 추진
 - 선박사고 방지대책 추진
- 응급조치 대책 추진
 - 체계적인 응급조치 추진계획 구축
 - 응급조치 장비 확충
 - 응급조치 지원인력에 대한 후생 지원
- 낙상사고 방지대책 추진
 - 낙상사고 정보수집 및 사고지역 점검, 낙상사고 안내판 설치 및 사고지역 우선 제설작업 실시

3) CCTV 통합관제센터 대설 상황관리 체계 구축

-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한 폭설상황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안전총괄과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 대설 피해 우려지역을 사전에 설정후 집중 모니터링 후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 전파 및 제설상황 실시간 파악
- 첨단기술(ZOOM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결하여 신속하게 겨울철 자연재난 대처 및 처리

4) 국민행동요령 정비 및 홍보 강화

- 방재교육 실시
 - 공무원, 유관기관 실무자, 대형공사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에게 재해단계별 행동요령, 재해취약요인 점검·정비 및 순찰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전파 및 대피방법 등 교육 실시

- 대국민 국민행동요령 홍보강화
 - 구정소식지, 반상회보, 공동주택정보공유시스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예방중심의 현장 홍보활동 실시
- 구정소식지를 활용하여 시기별 관련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매월 게재

나) 대비단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체계 확립을 통한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확립

□ 재난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1) 재해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

- 지역 여건 및 자체 실정에 맞는 매뉴얼 작성·활용
- 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 시 신속정확한 상황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관리 실무반 등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2) 지역·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응체계 확립

-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제설 담당제 실시
 - 도로별 제설 우선구간 및 경계구간 지정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제설 실시
 - 각 제설차량에 대해 담당노선을 지정하여 강설 시 즉시 현장투입 및 신속한 초동제설 실시
 - 각 실·과소에 동별 제설 담당구역 지정 및 제설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신속한 제설 실시
 - 마을제설반 운영하여 농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 신속하게 제설 실시
- 제설 대책(도로 분야) 상황실 운영
 - 적설량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태세 확립
 - 순찰반 운영을 통해 강설 시 관내 취약구간 중 제설이 필요하거나

노면 결빙 구간을 발견 시 즉각적인 초동 제설 실시

- 적설량별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여 장비 및 인력 등의 운영 효율성 향상

○ 도로 규모별 제설대책 강구

- 교통량이 많은 간선·보조간선도로와 급경사지 등 취약지 중점관리
- 주민이용이 많은 노선(마을버스 운행노선, 마을 주출입로 등)부터 제설 실시
- 출·퇴근시간 이전 집중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 서구 제설 전진기지 운영

- 설해 전진기지에 장비·자재 사전배치하여 신속한 제설 실시

제설 전진기지 현황(4개소)			
서구청제2청사부지	가좌동	마전동	오류동

○ 간선도로 제설대책 추진

- 자체장비 활용한 차량별 노선 전담제 실시
- 관내 설해 취약구간 자동제설시스템 운영
 - 취약구간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시스템 원격작동 시험

○ 이면도로 제설대책 추진

- 소형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지원을 통한 동 행정복지센터 주도의 제설 대응
- 자체장비를 활용한 제설작업 시행
- 급경사지 및 상습 결빙지역 제설함 집중배치

○ 인도 제설대책 추진

- 자체인력 동원을 통한 보도제설

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과거 자연재해발생빈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시주거시설의 규모와 장소 지정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 이재민 급식을 위하여 민간구호단체와 사전협의
- 임시주거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관리 상태 수시점검

4) 겨울철 폭설대응 합동훈련 실시

- 극한 폭설 발생시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합동훈련 실시
 - 인천광역시 주관하에 민·관·군 폭설 대응 합동훈련 실시

5)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내집앞 내점포앞 눈 치우기 홍보

- 각 동 지역자율방재단, 자생단체와 함께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캠페인 홍보

다) 대응단계

- 신속 대응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및 보고체계 가동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1) 한 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비상근무 체계 구축

-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대체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마련
 - 기상상황 단계별 상황판단회의 개최 시기 및 회의 주제 책임자 지정
 - 상황판단회의 참석 대상 범위 설정
 - 기상특보, 적설상황별 예상 피해지역·유형 분류 및 대응전략 수립

○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구 분	기 상 상 황	비상근무체계(인원)			
		안전총괄과	도로과 검단출장소	기타 단·과	동
특보예상시 (1단계)	신적설량 3cm내외, 결빙우려	1명	도로과: 3명 검단출장소: 2명	0명	0명
준비단계 (2단계)	대설예비특보	1명	도로과: 3명 검단출장소: 2명	0명	1명
경계단계 (3단계)	대설주의보	5명	1/3명	2명	1/4명
비상단계 (4단계)	대설경보 발효(피해 미발생)	7명	1/2명	4명	1/3명
비상단계 (5단계)	대설경보 발효(피해발생)	9명	1/2명	6명	1/2명

2)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가동

-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 (최초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지체없이 상황 전파시스템,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 (중간보고) 상황전파시스템 등을 활용, 재난 수습기간 중 수시 보고
 - (최종보고)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3)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황대응 및 정보 공유

- 재난관리정보시스템 및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 상황단계별 신속한 사전대비 및 대응 업무절차 수행을 위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사전 지정 및 교육·훈련 실시
 - 자연재해 대비 보유 자원(인력, 물자, 시설, 관리지역 현황 등)을 시스템에 입력·관리함으로써 상황관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확보
- 재난관리정보시스템 및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교육 실시
 - 원활한 시스템 활용을 위한 부서별 담당자 교육 실시

4) 협업기능별 상황근무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상황관리체계 구축
-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기능
 - 서구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 수행

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 재난 발생 시 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후 재난 상황 통합관리 실시
 - 설치장소는 관공서, 민간건물, 에어텐트 등 선정
 - 상황총괄, 의료, 장례, 이재민 구호, 행정지원, 홍보, 유관기관 지원 등 7개 필수기능 위주로 표준편제 구성
 - 기능분석 결과 유사한 기능별로 분류하여 실무반 편성

6) 우리 동네 눈 치우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설자원봉사자 운영

- 1365자원봉사 포털을 활용하여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으로 구성된 제설자원봉사자 모집 후 개별적으로 제설활동 실시
- 적설량 3cm 이상일 경우 제설자원봉사 실시 및 자원봉사 시간 인정

라) 복구단계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한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지원금 지급>

1) 피해조사 및 보고권자

- 피해조사 및 보고권자 : 구청장
 - 구청장 ⇒ 시장 ⇒ 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
 -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대규모 재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

- 보고 의무 소홀로 피해시설, 이재민이 복구계획에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
 - 누락 시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따라 자체복구계획 수립, 복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소관시설에 피해상황을 구청장에게 발생 즉시 통보(관계 중앙행정기관에도 보고)
 - 구청장 ⇒ 시장 ⇒ 행정안전부
-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임(불법체류자)
 - 주민등록 말소자는 피해발생 구청장이 피해조사 보고
- 인명, 선박, 어망 피해는 피해자 주소지, 선박 등의 선적지에서 수립
 - 피해발생지역 군수, 구청장은 피해자 주소지, 선박, 어망 선적지에 신속히 피해사실 통보
 - ※ 시설물, 농경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피해발생 구청장이 복구계획 수립
 - 원해상 침몰 선박은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소재 시, 도에서 보고
-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의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시설은 시장 책임하에 조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2) 보고 시기 및 방법

- 피해 보고 시기
 - (최초)인명 등 재난발생 시 서면, 모사전송,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
 - (중간)전산시스템 등을 활용, 재난의 수습기간 중에 수시 보고
 - (최종)구청장이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 원인이 종료된 후
 - (확정보고)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정밀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 피해보고 방법
 - (중간보고)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 (최종 및 확정)대설 관리 피해상황 총괄표 서식을 활용 보고

3) 전산재해대장 작성

-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별로 전산재해대장 작성
- 재해대장 작성
 - 공공시설 : 전체
 - 사유시설 : 주택, 농경지 유실, 매물, 농림시설, 축사, 잠실, 기축, 선박,

어망, 어구, 수산증·양식시설, 농림 및 수산 부대시설 포함

※ 사유시설 재해대장은 구 자체 보관

※ 유실·매몰로 확인이 곤란한 것은 군수, 구청장 확인서 첨부(대장작성 안함)

○ 피해 및 복구비 산출시 유의사항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단가 적용

※ 특히 소규모시설은 도로교량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

○ 재해대장은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

○ 개선복구지역 등은 별도 보고서 작성

<복구계획수립>

1) 국고의 부담 지원 대상

○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한 군구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은 제외)

○ 전국적으로 국고지원 대상 시·군·구가 있는 경우, 피해액이 지원기준에 미달(비우심)되는 군·구에도 지원 가능

-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재민구호와 사유 시설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를 지원할 수 있음(국비:지방비=5:5)

- 국고지원대상 시·군·구포함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본부장이 복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 재난지원금 산정방식

- 이재민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산정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조건표에 따라 산정

○ 자연 재난 피해 신고

-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군수, 구청장 또는 면·동장에게 신고

○ 재난지원금의 지급

- 피해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함

3) 재난복구비용 산정 등

- 기능복원사업은 본래 기능 유지가 가능한 복구 소요비용 산정
- 개선복구사업은 피해원인의 근원적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 지구단위복구사업은 방재성능을 고려한 일괄사업 비용 산정
-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공사비가 적을 경우 매입하여 우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을 수립
- 재난지원금 산정 및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확정 통보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지원기준지수 및 적용단가가 없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한 단가 및 지원기준지수를 적용
 - 공공시설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설계, 공사감독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설계, 감리비를 계상 가능

4) 그 밖의 재난복구

- 기준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광산·시장과 건물 등에 복구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금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 가능

5) 간접 지원 등

- 기준령에서 정한 간접지원은 관계기관의 장이 관련기금 등으로 지원
- 구청장은 피해신고 내용을 간접 지원 실시 기관에 즉시 제공
- 간접 지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군·구에 추가자료 요청 가능

8) 세부추진대책

가) 기타시책

(1) 제설 자원봉사자 운영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조봉현 자연재난팀장	032-560-4701 jonum@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김영중 주무관	032-560-4702 dudwnd14@koreakr	대응	X

◇ 2024년 「우리 동네 눈 치우기」 활성화 정책[안전총괄과-7586(2024. 10. 5.)]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자원봉사자 활용 눈 치우기 봉사실시	20명	20명	20명	자원봉사자 명수

□ 주요내용

- 서구 관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활용 모집
-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 인정
- 우리동네 눈 치우기의 일환으로 개별적으로 제설 자원봉사 후 증빙자료 제출

□ 추진성과(최근 3년)

- 2024년: 자원봉사자 모집 및 눈치우기 봉사활동 실시
- 2023년: 자원봉사자 모집 및 눈치우기 봉사활동 실시
- 2022년: 자원봉사자 모집 및 눈치우기 봉사활동 실시

□ '25년도 주요 계획

- 자원봉사자 모집
- 대상 : 서구 관내 학생 및 주민

- 내용 :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활용 모집
- “우리 동네 눈치우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활용 제설작업 실시
 - 대상 : 중 고등학생 및 일반자원봉사자
 - 내용 : 제설 필요시 서구자원봉사센터 연락하여 자원봉사자 집결 후 봉사활동 실시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2024~2025년도 겨울철 자원봉사자 모집	1월
	적설량 3cm 이상일 경우 제설자원봉사자 제설작업 실시	1~3월
4/4분기	2025~2026년도 겨울철 자원봉사자 모집	11~12월

소요예산 : 해당없음

나-2) 한파

1) 현 황

< 연도별 한파 피해현황 >

(단위 : 건,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526.2	64	1,458	334	511	264	
인명피해	계	5.6	8	3	2	6	9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한랭질환)	5.6	8	3	2	6	9

※ (통계 출처) 서부수도사업소 및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한파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한파일수(일)	노출인구(명)	안전취약 계층(명)
서구	3	11,226	167,694
비교지역 평균	2	5,230	96,339
항 목	취약거주건물(개소)	노후건물(m ²)	농축산업(개소)
서구	3,986	5,789,674	1,154
비교지역 평균	3,901	5,821,977	1,243

2) 원인분석

- 지구온난화에 따라 겨울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지역에 따른 큰 편차를 보이면서 한랭 질환자 발생 증가
- 지속적인 동파 방지용 수도미터 설치, 동파방지팩 설치, 보호통 교체 등 급수장치 시설물의 정비가 이루어져 수도미터 동파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 주요 동파 원인은 장기간 공가세대 발생, 나대지, 건축공사장, 소량 사용 제조업체의 보온재 미비로 인한 동파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옥상 물탱크 옆, 지하 1층 세대의 출입문 고장 등으로 인한 동파가 많이 발생함.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한파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

< 연도별 목표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건)		264	510	500	490	480
인명피해 (명)	계	9	8	7	7	7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9	8	7	7	7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기상특보 발표기준

구 분	주 의 보	경 보
한 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대비계획 수립

1) 한파 피해 저감을 위한 분야별 예방대책 수립

- 한파 관련 부서 상호 간 업무 분담 및 긴밀한 연계 체계 구축
- 취약계층 보호 TF팀 구성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상황관리 및 협력체계 확립

2) 한파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재난도우미 확보

- 기초현황 조사를 통한 폭염 취약계층 대비 재난 도우미 확보
 - 취약계층 :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만성 건강관리 대상자 등
 - 재난 도우미 : 건강 보건 전문인력,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통장, 자율방재단 등
- 재난 도우미 DB구축을 통한 한파 시 취약계층 건강관리
 - 한파 시 안부전화 및 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 한파 정보 및 예방 행동 요령 신속 전파를 위한 재난 도우미 비상 연락망 DB구축

3) 한파 예방시설 정비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 한파 저감 시설 확충 : 버스정류소 방풍시설(천막) 등
- 수도계량기 보온 조치(보온덮개, 동파 방지팩 등) 강화, 보온 조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정 검침 적극 활용(서부사업소 협조)
 - 계량기 검침 없이 전년 동기 또는 최근 평균 요금 부과 등 (겨울철 이후 검침·정산)

4) 농·축산·수산시설

- 한파 대비 시설작물 및 농작물, 축산시설, 수산 양·증식시설의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 주기적인 기상상황 전파 및 농·축·수산 시설물 관리요령에 대한 홍보 대책 수립

5)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 각종 매체를 활용 가구별 수도 동파 대비 홍보 대책 수립
- 수도계량기, 수도관 동파 시 긴급 교체토록 긴급지원반 구축

6) 노숙인,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촌 등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안전 점검
-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촌 등 취약계층 한파피해 예방대책 수립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긴급 협조체계 구축
- 취약계층(독거노인 등)을 위한 한파쉼터 운영

7) 한파 행동요령 시민 홍보 강화

- 반상회보, 마을앰프, 아파트단지 구내방송, 홈페이지, 구청 영상 게시판,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예방중심의 현장 홍보활동 실시
- 한파특보 발효 시 행동 요령 및 핫팩 배부 등 홍보실시

나) 대비단계

□ 한파 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계획 수립

- 추진기간 : 한파특보 발령~상황 종료시 까지(24시간 상황 유지)
- 참여부서 : 안전총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
- 추진체계 : 한파대책종합상황반을 중심으로 관련부서 합동대책

□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한파상황 모니터링 실시

- 관련 부서 한파상황 모니터링 및 한파정보 전파
-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관리자(공무원 및 재난 도우미)를 대상으로 한파특보를 SMS로 제공(수도권기상청)
 - 한파 관련 담당자 및 재난 도우미 비상 연락망 DB화

1) 한파특보 정보전달 체계

-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 관련 업무 및 시설물 담당부서
- 관련부서 담당자, 지역 소방서, 유관기관, 관련 민간단체, 생활지원사 및 방문건강관리사의 연락처 DB구축

- 분야별 비상 연락망 유지 및 시설별 담당 공무원 지정

2) 한파대비 사전 준비 및 한파대책 추진

- 취약계층, 농·어업인, 근로자 등 분야별 한파 대책 수립·시행

3) 응급의료기관 기반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 일자별 한랭질환자, 사망자 발생현황 파악 및 통계 분석 등
 - 운영기간 : 12월~3월(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 조정 가능

다) 대응단계

□ 사전 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한파 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설치·운영

○ 한파대책종합상황반

- 안전총괄과 : 상황관리, 피해예방활동 및 피해조치사항 접수

○ 긴급안전점검 및 서비스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동 행정복지센터 : 독거노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 피해 대비(생활관리사 등 활용하여 직접방문 또는 유선으로 수시 건강 확인)
- 경제정책과 : 농·축·수산분야 관리대책 추진, 비닐하우스 관리
- 기업지원과 : 전기·가스·화재 등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가동
- 홍보정책과 : 전광판, 구보, 인터넷 등 홍보 활동
- 동 행정복지센터 : 통·반장 연락체계 구축, 재난도우미 관리·운영 강화
- 서부수도사업소 : 수도관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 조치 및 홍보 활동, 피해조사 및 복구활동
- 보건소, 서부소방서 :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및 구조
- 기타 한파 관련 부서 : 한파 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업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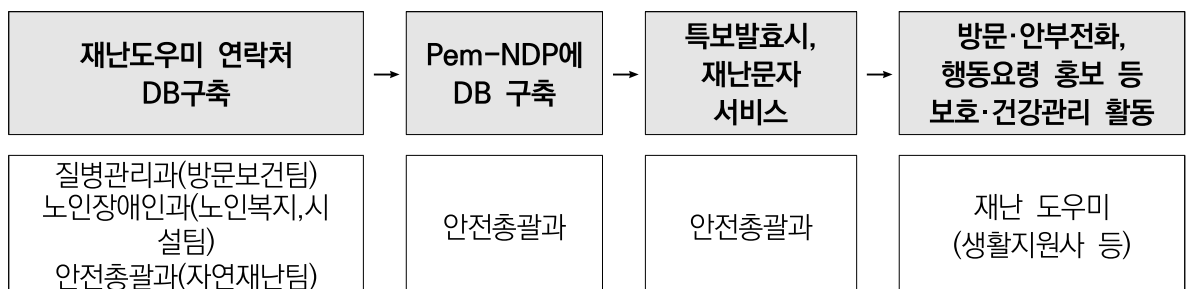
○ 운영반별 임무

구분		담당 부서	주요임무
한파 대책 종합 상황반		안전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철 자연재난상황실』운영 피해예방활동 및 피해조치사항 접수
긴급안전점검 및 서비스반	독거노인 대책반	노인장애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촌 등 취약계층 피해에 대비, 노인돌보미 등을 활용, 직접방문 또는 유선으로 수시 건강 확인 등 순찰 강화 보온부실 독거노인 마을회관 및 노인정 등에 임시 주거 조치 수도관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조치 및 홍보 활동, 피해조사 및 복구 활동 농·축·수산물 냉해피해예방, 시설물관리, 피해조사 및 복구 활동 전기, 가스, 화재 등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가동, 피해조사 및 복구 활동 한파 인명피해 조사 및 구조 등
	노숙자·쪽방 대책반	복지정책과	
	동파피해 방지반	서부수도 사업소	
	농·축산물 피해 방지반	경제정책과	
	수산물피해 방지반		
	전기·가스 피해 대책반	기업지원과	
한파인명피해 대책반	보건행정과		

2)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특보발효 시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 전광판, 인터넷 활용 등)
- 한파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피해조사 파악

< 정보 전달체계도 >



- 농·축·수산 분야 동파로 인한 피해 예방 관리대책 추진

- 전기·가스·화재 등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가동 등

3) 단계별 대응시스템

- 기상특보 발효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편성기준”에 따라 대책본부 가동 및 비상단계를 결정하고 필요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겨울철 자연재난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편성기준 (※ 재난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인원은 변동 가능)		
비상단계	비상단계기준	비상근무 인원
사전 대비 단계	- 기상특보 예상시	- 주간 : 안전총괄과 - 야간·공휴일 : 당직근무자 - 동행정복지센터(필요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기타 실무반(필요시)
초기 대응 단계	- 한파예비특보(필요시)	- 안전총괄과(1명) - 재난안전대책본부 기타 실무반(필요시)
1단계	- 한파주의보	- 안전총괄과(1명)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경제정책과, 질병관리과(1명, 재택) - 동행정복지센터(필요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기타 실무반(필요시)
2단계	- 한파경보	- 안전총괄과(1명)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경제정책과, 질병관리과(1명) - 보건행정과(1명, 재택) - 동행정복지센터(필요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기타 실무반(필요시)
3단계	- 대규모 피해 우려 시(한파)	- 안전총괄과(1명)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경제정책과, 질병관리과(1명) - 보건행정과(1명, 재택) - 동행정복지센터(필요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기타 실무반(필요시)

□ 분야별 한파대응

1) 농·축·수산시설

- 한파특보 상황을 문자전광판, SMS,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홍보실시
- 분야별 한파 대책 현장 대응·복구반 가동
- 분야별 피해 상황 조사, 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 및 응급 복구실시

2)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 동파 응급 복구반 편성·운영 : 신속한 누수 복구(도로결빙 방지) 및 동결 해소
- 유관기관(서부수도사업소) 협조 요청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3) 노숙인,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 거리 노숙인 응급 잠자리 지원 등 보호조치
- 쪽방촌 주민 한파대피소 지정·운영
- 독거노인 안전 확인 강화
 - 노인돌보미를 통한 정기 및 수시 안전 확인 실시
- 한파로 인한 수도 동파사고 예방 홍보 및 동파 시 긴급 복구 협조
- 긴급대피처(임시거주지) 확보 및 운영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대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와 공공시설 피해
 - (내용)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 사유시설: 현장 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 보고(동)→현장 확인 후 피해 확정(구 소관부서)
 - 공공시설: 현장 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 보고(동)→구청 소관부서 현장 조사 후 재난관리시스템 입력(구 소관부서)
- ※ 구청 소관 외 시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현장 조사 후 구청에 통보

② 재난지원금 등 지급

- (대상) 인명, 농·축·수산업 등 자연재난 피해자
- (내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 등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

○ (지원금액)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10조 등에 따라 산정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한파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조봉현 자연재난팀장	032-560-4701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 계획연계
			조상혁 주무관	032-560-4705 whtkd555@korea.kr	예방	X

- ◇ 관련 부서·기관별로 한파재난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 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 관련 부서·기관은 한파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행동매뉴얼 활용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동)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행동매뉴얼 제·개정	3회	3회	2회	매뉴얼 개정 횟수

□ 주요내용

- 재난 대응체계 변경 및 유관기관, 부서 연락처 현행화
 - 재난관리 체계도 및 재난 대응 표준 절차도 변경
 -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자 및 연락처 현행화

추진성과(최근 3년)

- 인사이동을 반영한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2022. 10.)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재난대응 단계에 한파 쉼터 및 한파 응급대피소 내용 추가,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2024. 12.)

'25년도 주요 계획

- 상·하반기 매뉴얼 개정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2/4분기	상반기 매뉴얼 개정	4~6월
4/4분기	하반기 매뉴얼 개정	10~11월

나) 기타시책

(1) 한파 대비 홍보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자연재난팀장 조봉현	032-560-4701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조상혁 주무관	032-560-4705 whtkd555@korea.kr	예방	X

◇ 한파에 대비하여 국민 행동 요령 등 홍보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2회	2회	2회	국민 행동 요령 홍보

주요내용

- 한파주의보 및 경보 시 국민 행동 요령 현장 홍보
- 한파 및 대설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전단지 및 현수막 제작·배포

추진성과(최근 3년)

- 한파주의보 대비 행동요령 전광판 표출, 홈페이지 팝업존 겨울철 한파 행동요령 홍보물 게시(2024)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방한장갑 및 홍보스티커 구매(2023)
- 한파 취약계층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과 한파 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방한용품(핫팩) 및 스티커 구매(2022)

'25년도 주요 계획

-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4/4분기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홍보물 제작	11월

다. 폭염 (우선순위 3위 / 주요유형)

1) 현 황

< 연도별 폭염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29.8	27	31	15	22	54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30	27	32	15	22	54
	사망(실종)	0	0	1	0	0	0
	부상	29.8	27	31	15	22	54

※ (통계 출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통계자료

○ 취약요인 현황

< 인천광역시 서구 폭염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폭염일수(일)	노출인구(명)	안전취약계층(명)
서구	64	3,845	167,694
비교지역 평균	142	4,601	96,339
항 목	양식업(㎡)	농축산업(개소)	취약거주건물(개소)
서구	0	1,154	3,986
비교지역 평균	0	1,243	3,901

2) 원인분석

- 지구온난화 등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과 폭염일수 증가로 피해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폭염 인명피해 경감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54	50	48	46	44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54	50	48	46	44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54	50	48	46	44

6) 재정투자 현황

세부사업명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합계	'23	'24	'25
재해예방 (홍보물품 구입)	319	109	110	100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대구민 홍보

- 홈페이지, 버스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폭염피해 예방 정보 제공
- 양산쓰기 캠페인, 생수 나눔, 홍보물품 배부 등 거리 등 현장중심 캠페인 확대
-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 영상 적극 홍보를 통한 구민 동참 유도

나) 대비단계

①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관리

- 운영기간 : 폭염대책기간(5. 20. ~ 9. 30.)
- 운영목적 :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건강관리
- 지정기준

-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한 접근이 양호한 장소
-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 관리기준
 - 안전총괄과, 노인장애인과(경로당), 동 행정복지센터 재난담당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쉼터 관리 및 운영
 - 냉방기 가동여부,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 폭염대비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 노인 건강관리와 행동요령 교육·홍보 점검
 - 폭염발생시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영관리 점검
 - 폭염발생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비상시 응급조치를 위해 비상구급품 등을 구비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쉼터 현황 입력 등 전산 관리
- 무더위쉼터 현황 : 98개소

계	시설현황(개소)					
	노인시설	보건소	주민센터	종교시설	금융기관	기타
98	52	1	23	1	15	6

②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설치·운영

- 목 적 : 최근 평균기온과 폭염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르신, 어린이 등 신호대기 보행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
- 사업규모 : 관내 주요 횡단보도 등 441개소 운영(접이식 대형파라솔)
- 운영방식
 - 강풍 및 사고 등으로 인한 파손 또는 파손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한 폭염대책기간 상시 운영
 - 폭염대책기간 중 그늘막 상태, 보행자 불편여부 등 수시 점검

다) 대응단계

1) 폭염대책 T/F팀 구성·운영

- 추진기간 : 폭염대책기간(5. 20. ~ 9. 30.)
- 참여부서 : 안전총괄과 노인장애인과 건강증진과 등 관련부서
- 운영내용
 - 폭염발생 직전
 - 언론매체를 통한 폭염 시 행동요령 홍보 강화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 폭염발생 시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해당 실·과 근무실시
 - 지역내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시행
 - 실·과 및 유관기관 폭염대책 추진
 - 폭염 특·예보시 상황전파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 사업장별 안전대책 추진(건설 및 산업 근로자 작업중지 등)
 -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 농 축산분야 관리대책 추진
 - 여름철 음식분류 폐기물 위생관리 추진 등
- 부서별 역할
 -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안전총괄과
 - 합동 T/F팀(안전총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등) 구성·운영
 - 폭염대책 추진상황 총괄관리 및 실적 제출(市 자연재난과)
 - 여름철 폭염대비 건강 지키기 집중홍보기간 운영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추진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재난

도우미 D/B구축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지원
- 무더위쉼터 운영 등
-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 노인장애인과
 - 응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 구축하여 폭염 피해 사전예방
 - 폭염피해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 폭염특보 발효 시 일일 상황보고 실시
 -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 독거노인 보호체계 구축
 -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안심폰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 독거노인 안부 확인 실시 및 응급상황 대처
- 여름철 도시 열섬화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 : 자원순환과
 - 폭염 대비 작업시간 변경에 따른 살수차 확대 운영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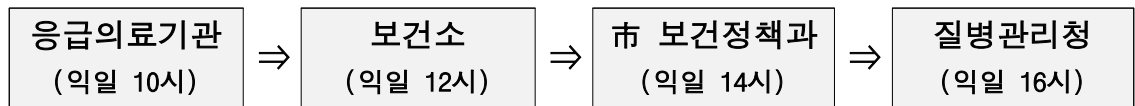
정상 운행			확대 운영		
작업시간	평일	주말	작업시간	평일	주말
오전	9:30~11:30	없음	오전	9:00~11:30	1일 4시간
오후	14:00~17:00		오후	13:00~18:00	

※살수차 확대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혹서기 거리 노숙인 보호 대책 : 복지정책과
 - 거리노숙인 현장상담(Out-reach)활동 전개
 - 거리노숙인 응급잠자리 지원 및 보호조치(해오름 일시보호소)
 - 인천의료원, 보건소, 119구급대 등과 연계하여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 하절기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 대책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단 폭염 행동요령 교육, 상담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폭염 피해예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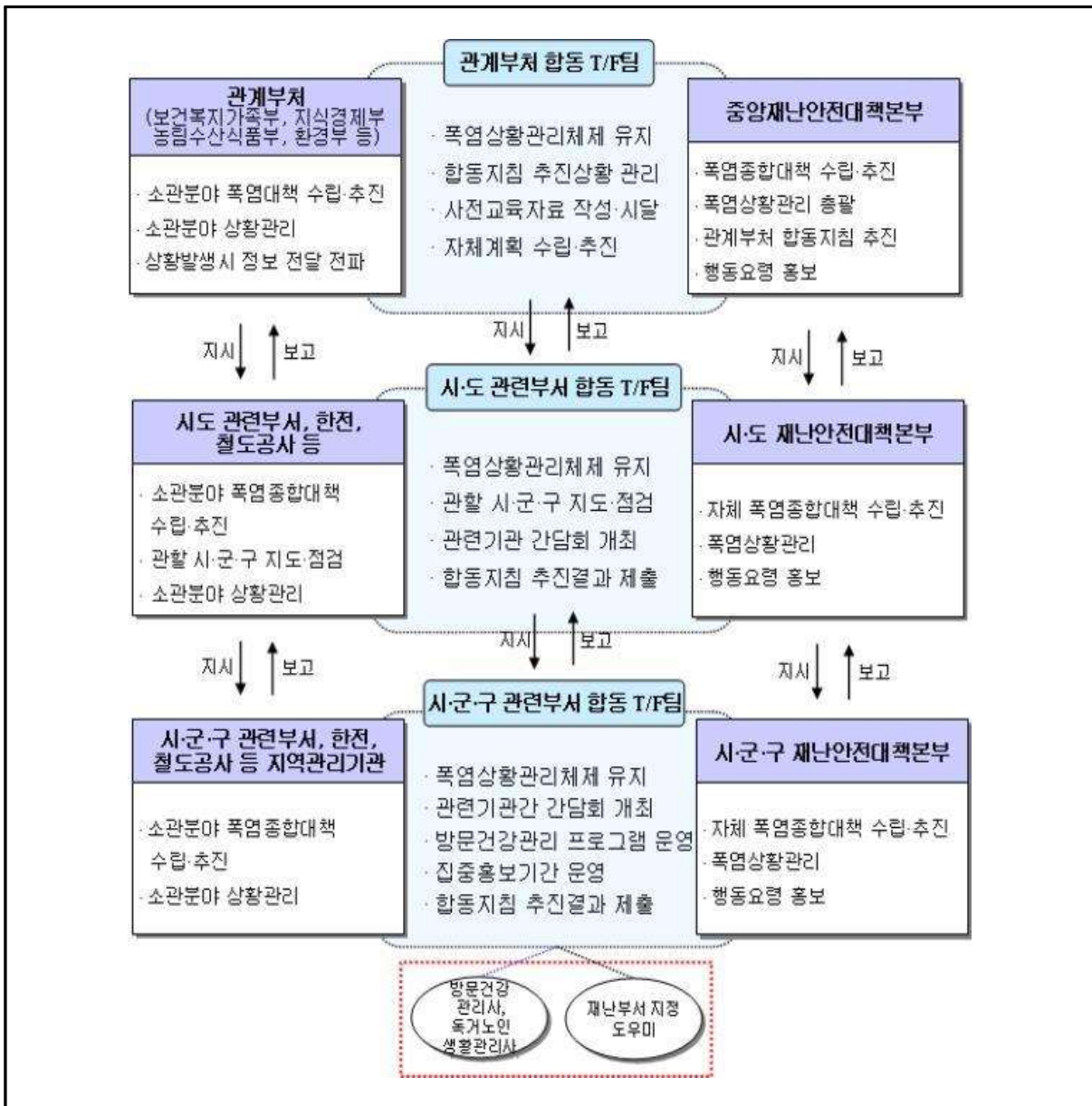
공문 시행, 행동요령 매뉴얼 배포

- 하절기 어린이집 안전관리 대책 : 가정보육과
 - 폭염 대비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냉방장치 관리 등)
 - 폭염특보 발표 시 실외에서 체육활동,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 자제
 -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단축 수업, 휴원 등 학사일정 조정 검토
- 농·축·수산분야 피해예방 대책 : 경제정책과
 - 병충해 방제대책, 환풍시설 강화, 방역소독 등 폭염 대비 농작물
 - 가축 관리대책 수립
 - 농업기술센터 작목반 교육, 농업인 대상 폭염 행동요령 SMS 발송 등 피해예방 행동요령 교육·홍보 강화
 - 폭염에 따른 농작물·가축 피해예방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 폭염발생시 농업종사자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협조
- 응급의료기관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 보건행정과
 -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폭염에 대한 주의 환기와 예방행동을 유도하여 건강 피해 최소화
 -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의 「온열질환 감시관리」로 신고·보고



- 대형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 : 건축과
 - 폭염 상황관리 체계 적정 운영
 - 작업일정 관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건축관계자에게 폭염 대응 안전관리 철저 관련 공문 발송

○ 폭염상황관리 체계도



라) 복구단계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한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지원금 지급

① 피해조사 및 보고권자

○ 피해조사 및 보고권자 : 구청장

- 구청장 ⇒ 시장 ⇒ 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
-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대규모 재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
- 보고 의무 소홀로 피해시설, 이재민이 복구계획에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
 - 누락 시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따라 자체복구계획 수립, 복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소관시설에 피해상황을 구청장에게 발생 즉시 통보(관계 중앙행정기관에도 보고)
 - 구청장 ⇒ 시장 ⇒ 행정안전부
-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임(불법체류자)
 - 주민등록 말소자는 피해발생 구청장이 피해조사 보고
- 인명, 선박, 어망 피해는 피해자 주소지, 선박 등의 선적지에서 수립
 - 피해발생지역 군수, 구청장은 피해자 주소지, 선박, 어망 선적지에 신속히 피해사실 통보
 - ※ 시설물, 농경지, 농작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피해발생 구청장이 복구계획 수립
 - 원해상 침몰 선박은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소재 시, 도에서 보고
-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의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시설은 시장 책임하에 조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② 보고 시기 및 방법

- 피해 보고 시기
 - (최초)인명 등 재난발생 시 서면, 모사전송,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
 - (중간)전산시스템 등을 활용, 재난의 수습기간 중에 수시 보고
 - (최종)구청장이 기상특보, 홍수 등 피해 원인이 종료된 후
 - (확정보고)중앙합동조사 또는 지방 자체정밀조사 완료 후 3일 이내
- 피해보고 방법
 - (중간보고)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전산보고
 - (최종 및 확정)대설 관리 피해상황 총괄표 서식을 활용 보고

③ 전산재해대장 작성

-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별로 전산재해대장 작성

- 재해대장 작성
 - 공공시설 : 전체
 - 사유시설 : 주택, 농경지 유실, 매몰, 농림시설, 축사, 잠실, 가축, 선박, 어망, 어구, 수산증·양식시설, 농림 및 수산 부대시설 포함
 - ※ 사유시설 재해대장은 구 자체 보관
 - ※ 유실·매몰로 확인이 곤란한 것은 군수, 구청장 확인서 첨부(대장작성 안함)
- 피해 및 복구비 산출시 유의사항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단가 적용
 - ※ 특히 소규모시설은 도로교량하천 등의 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
- 재해대장은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
- 개선복구지역 등은 별도 보고서 작성

2) 복구계획수립

① 국고의 부담 지원 대상

-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한 군구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은 제외)
- 전국적으로 국고지원 대상 시·군·구가 있는 경우, 피해액이 지원기준에 미달(비우심)되는 군·구에도 지원 가능
 -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재민구호와 사유시설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를 지원할 수 있음(국비:지방비=5:5)
 - 국고지원대상 시·군·구포함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본부장이 복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②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 재난지원금 산정방식
 - 이재민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산정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조건표에 따라 산정
- 자연 재난 피해 신고
 -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군수, 구청장 또는 면·동장에게 신고

○ 재난지원금의 지급

- 피해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함

③ 재난복구비용 산정 등

- 기능복원사업은 본래 기능 유지가 가능한 복구 소요비용 산정
- 개선복구사업은 피해원인의 근원적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 지구단위복구사업은 방재성능을 고려한 일괄사업 비용 산정
-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공사비가 적을 경우 매입하여 우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을 수립
- 재난지원금 산정 및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확정 통보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지원기준지수 및 적용단가가 없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한 단가 및 지원기준지수를 적용
 - 공공시설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설계, 공사감독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설계, 감리비를 계상 가능

④ 그 밖의 재난복구

- 기준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광산·시장과 건물 등에 복구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금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 가능

⑤ 간접 지원 등

- 기준령에서 정한 간접지원은 관계기관의 장이 관련기금 등으로 지원
- 구청장은 피해신고 내용을 간접 지원 실시 기관에 즉시 제공
- 간접 지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군·구에 추가자료 요청 가능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폭염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작성 부서	안전 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자연재난팀장 조봉현	032-560-4701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김영중 주무관	032-560-4702 dudwnd14@korea.kr	예방	X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매뉴얼 정비 횟수	1회	2회	2회	매뉴얼 정비 횟수

□ 주요내용

- 재난관리체계 규정
 - 국가재난관리체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등 명시
 - 단계별 행동요령 등 서구 풍수해 발생 시 관리체계 및 주요임무 규정
 - 그 밖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 기본현황 변경사항 반영 등

□ 추진성과(최근 3년)

- 2024년: 폭염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완료
- 2023년: 폭염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완료
- 2022년: 폭염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완료

'25년도 주요 계획

- (상반기/하반기) 폭염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
 - 폭염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될 때 소속기관의 임무·역할, 행동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2/4분기	상반기 매뉴얼 개정	6월
4/4분기	하반기 매뉴얼 개정	12월

소요예산 : 해당없음

나) 재정사업

(1) 폭염대책 홍보물품 제작

작성 부서	안전 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자연재난팀장 조봉현	032-560-4701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김영중 주무관	032-560-4702 dudwnd14@korea.kr	예방	X

◇ 특별교부세 및 구비 등으로 폭염대책 홍보물품을 제작 및 배부하여 폭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폭염대책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109	50	100	폭염대책 홍보 예산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주요내용

- 폭염대책 홍보물품(부채, 물티슈, 양산 등)을 제작·구입하여 관내 무더위쉼터에 배부하여 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 추진성과(최근 3년)

- 2024년: 폭염대책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완료
- 2023년: 폭염대책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완료
- 2022년: 폭염대책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완료

□ '25년도 주요 계획

- 폭염대책 홍보물품 구입
- 폭염 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3/4분기	폭염대책 홍보물품 구입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	7월

□ 소요예산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509	80	110	109	110	100	100	100	100	
재해예방 (홍보물품 구입)	509	80	110	109	110	100	100	100	100	

②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가. 화재·폭발 (우선순위 1위 / 주요유형)

1) 현 황

< 연도별 화재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258.4	245	240	236	286	285	
재산피해	30,808	2,569	7,320	17,334	6,517	120,304	
인명피해	계	17.4	8	8	19	19	33
	사망(실종)	3.2	3	1	4	5	3
	부상	14.2	5	7	15	14	30

※ (통계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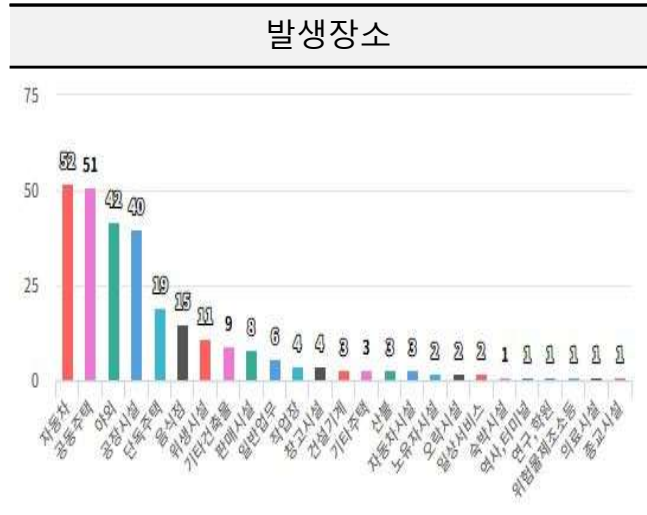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화재·폭발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가연성 분진 취급시설(%)	초고층아파트 (50층이상)지역(%)	다중이용시설(%)	물류창고(%)
서구	13.49	0.51%	2.40	1.39
비교지역 평균	4.41	0.32%	4.46	0.76
항 목	영세업체 밀집 산업단지(%)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지역(개소)	고층아파트 (30층이상) 지역(%)	가스원유 비축시설(m ²)
서구	3.87%	39개소	3.92%	1,726,839
비교지역 평균	1.36%	10개소	3.03%	70,375

2) 원인분석

- (화재원인) 주요 화재원인은 담배꽂초, 기기 사용 등의 부주의 34%(99건), 과부하 및 과전류, 미확인단락 등의 전기적 요인 28%(80건), 기계적 요인 11.5%(33건) 순임
- (화재장소) 주요 화재발생 장소는 자동차 18%(286건), 공동주택 17%(51건), 야외 14.7%(42건) 순임



* (통계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야	유형	관계 법령	주요내용	주관부서
사회재난	화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지휘체계, 현장지휘소의 운영 재난의 단계구분 및 대응기준 등	안전 총괄과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최근 5년간('20~'24년) 평균 인명피해자*의 10% 저감

* 평균 인명피해자: 5년('20~'24년) 17.4건→향후 5년('24~'28년) 15.7명 (-1.74건)

· 매년 2%씩 저감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명)

구 분		저감 목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인명피해	계	17.1	16.7	16.4	16	15.7
	사망(실종 포함)	3.1	3.1	3	2.9	2.9
	부상(환자 포함)	14	13.6	13.4	13.1	12.8

6) 재정투자 현황

세부사업명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합계	'23	'24	'25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40	6	14	20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① 폭발·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가. 주요취약대상 특별안전점검 실시

- 1) 중점관리대상,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 2)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실태 확인
- 3) 방화관리 및 소방훈련 실시 등 자율방화관리실태 확인

나. 다중이용업소 등 취약대상 비상구 단속 실시

- 1) 중점관리대상, 다중이용업소, 신종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취약 시기별 지속적 단속
- 2) 비상구 폐쇄, 잠금, 훼손, 변경으로 유사시 사용 불가능하게 한 행위, 계단·복도(통로)·출입구에 물건 또는 장애물 적치행위 확인 점검

다.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확인 및 단속 실시

- 1)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점검
- 2) 무허가(허가량 초과) 위험물 저장·취급여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기전 준수 여부 등 단속

②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 자체 안전대책 강구 지도

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나. 작업시간 전 작업장의 안전점검 실시

다. 작업장에 안전담당자 등 감시인 배치 및 안전교육

나) 대비단계

① 긴급구조 대비체제 구축

가. 119종합상황실 운영

- 1) 장 소 :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 2) 운영체제 : 24시간 상시운영
- 3) 임 무
 - 재난사고 발생상황의 접수·확인 및 초기조치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및 응원요청 등 상황관리
 - 재난유형·규모 및 동원 인력·장비 등 상황보고

② 유관기관간 소방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가. 신속한 화재·폭발발생 경보 및 전파체계 확립

나. 재난유관기관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신고 일원화

③ 현장지휘체계 강화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가.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관리 철저 및 보고체계 확립

나.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다. 신속한 화재·폭발현장 보고 및 지휘체계 구축

④ 화재·폭발사고 대비 효율적 진압 등 대책 강구

가. 재난관리책임기관간 지원체제 구축 및 훈련

나. 진압 및 구조·구급체계 구축

다. 화재취약지구 등 소방통로 확보로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라. 자율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자위소방대 운영

⑤ 재난대비 실효성 있는 소방교육·훈련 강화

가. 대형·특수재난 대비훈련의 내실화

나. 전문구조대원 양성을 위한 특수교육훈련 실시

다.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유관기관 합동 도상 및 실제훈련 실시

다) 대응단계

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통제단장 : 소방서장)

- 가. 가동시기 : 광역응원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대형화재 발생시
 - 1)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일부 기능 수행이 필요한 경우
 - 2)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 및 활동을 통합하여 지휘·조정·통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가동여부 결정 : 화재 상황분석에 따라 통제단장이 결정
- 다. 설치장소 : 화재현장
- 라. 운영요령 : 상황종료시까지 24시간 운용(2교대 근무조 편성)
- 마. 주요기능
 - 1) 지역 긴급구조대책의 총괄 조성
 -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 통제
 - 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지 활동계획의 수립
 -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②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가. 재난현장에서의 인명의 탐색·구조
- 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 다. 추가재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라.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마.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바.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사.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등

아. 통제선 설치 운영

- 1) 제1출입 통제선 : 소방기관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하도록 설치 운영(통제단장)
- 2) 제2출입 통제선 :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하도록 설치 운영(경찰서장)

③ 자원의 대기소 및 집결지 설치 운영

- 1) 자원대기소 : 현장지휘소 인근에 배치, 자원집결지의 전진기지 기능 수행
- 2) 자원집결지 : 사전 지정 장소, 긴급구조·구호자원이 필요한 곳

④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가. 화재현장의 응급의료자원을 총괄 지휘 통제
- 나. 사상자를 분류, 처치, 이송
- 다. 다수 사상자 발생에 따른 중증도 분류체계 적용
- 라. 신속한 병원분산 이송으로 부상자의 소생을 향상

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단계로 전환 운영
- 나. 화재상황을 평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 1) 화재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확정
 - 2) 화재 예방대책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
- 다. 현장상황관리관(본부장이 지정) 화재현장 파견
- 라. 기능
- 1)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 2)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 요청

⑥ 통합 지휘·통제체제 확립

- 가. 대응역량 집중을 위해 유관기관 통합 지휘체계 강화
- 나. 유관기관 통합작전이 가능한 군CP 개념의 지휘체계 확립

⑦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가. 화재조사 전문화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 나. 응원출동체제 구축으로 소방력 운용의 효율화
- 다. 의용소방대 조직관리의 내실화를 통한 기능 활성화 및 강화

⑧ 효율적 화재·폭발사고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전개

- 가. 신속·정확한 상황보고·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나.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및 지휘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 1) 신속한 현장 장악과 진압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전개
 - 2) 체계적·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다. 화재·폭발사고 유형별·사안별 전문 진압·구조요원 신속 배치

⑨ 응급구조·구호체계 신속 가동

- 가. 신속한 피난유도 및 인명구조 · 구급활동 최우선 실시
- 나. 응급의료전문기관 상호 협조체제 구축 및 신속 가동
- 다. 민간 구조단체와 합동으로 긴급 구조 · 구급활동 전개
- 라. 이재민 수용·급식 등 생필품 구호, 의연물품 등 접수 및 배분

라) 복구단계

① 수습 및 복구

- 가.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제 운영
 - 1) 사상자 후송 · 치료, 이재민 수용 등 구호 조치
 - 2) 전기 · 가스 · 통신 등 라이프 라인 우선적 구호 조치

- 나.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민·관 합동 구호 조치
- 다. 각종 안전조치 및 화재 · 폭발 잔재물 수거 처리
- 라. 신속 · 정확한 피해조사에 의거 복구지원계획 수립
- 마. 긴급구조 및 복사활동 상황 보도 및 주민 홍보

② 신속한 화재·폭발원인 및 피해 조사

- 가. 화재원인 철저히 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 1) 유관기관 합동 조사체계 구축 및 특별조사팀 운영
 - 2) 주요화재 사례분석을 통한 항구적 사후 관리
- 나. 사고원인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한 관련부처 합동 대책회의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신규)

작성 부서	경제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문주 전통시장지원팀장	032-560-3381 moon9738@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백진원 주무관	032-560-3382 gagharv6@korea.kr	대비	X

- ◇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 조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공제 가입 지원하여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
 - * 지원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의거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화재공제료 지원 점포수	-	-	300건	해당연도 화재공제 가입 지원금 대상 점포수

□ 주요내용

- 전통시장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공제료(보험료) 지원
 - * 전통시장법에 근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보험 상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추진성과(최근 3년)

- '23년 상반기 인천시 방침 수립 및 하반기 최초 시행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개정('23. 5.)
- 2023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계획 수립 후 지원
- 최근 지원실적: '23년(90건, 6,467천원), '24년(360건, 14,958천원)

□ '25년도 주요 계획

- 전통시장 상인대상 화재공제 가입 지원 및 홍보(연중)
- 관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금 지원으로 가입률 제고 및 안전의식 강화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2025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방침 통보 및 안내	2월
2/4분기	2025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연중)	'25. 4~6월
3/4분기	2025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연중)	'25. 7~9월
4/4분기	2025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연중)	'25.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40	-	-	6	14	20	20	20	20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40	-	-	6	14	20	20	20	20

가-1) 문화재 화재사고

1) 현 황

< 연도별 국가유산 화재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 (통계 출처)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통계자료

2) 원인분석

- 관내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유산이 없고 비, 묘, 매장문화유산인 관계로 국가유산 피해내역이 없었으며 향후 화재발생가능성 및 화재피해 가능성 낮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야	유형	관계법령	주요내용	주관부서
문화유산	사회재난	문화유산법 14조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화재, 도난방지	문화관광체육과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문화재 화재 발생 제로화

< 연도별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연도별 예산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계	112	13	19	18	41	21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용역	112	13	19	18	41	21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화재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

-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천연기념물은 상시관리용역을 통한 재난 및 화재예방 추진, 소방시설 점검

* 대상문화유산 : 천연기념물 신현동 회화나무

나) 대비단계

상시관리 용역 추진

- 신현동 회화나무의 생육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상시관리 용역 시행
- 2025. 3월 ~ 10월 실시

다) 대응단계

비, 묘, 유해지

- 임야, 산 속에 위치한 문화유산은 산불대응지침에 의함

천연기념물(회화나무)

- 초동단계 응급조치 : 회화나무 소화전을 활용하여 초동대처
- 소방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문화유산 화재 대처
- 상황보고 및 전파

- (신고) 최초발견자 → 문화관광체육과, 소방서 → 구 재난종합상황실

- (보고, 전파) 구 재난종합상황실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문화유산청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1) 천연기념물

- 생육가능 :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육환경 개선
- 생육불가능 : 문화유산 해제 절차 진행

2) 묘, 비, 유허지

- 수목 및 잔디 식재
- 비석 등 문화유산은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협조로 복원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구분
예방	• 회화나무 상시관리	상시관리 공사	기타
대비 · 대응	• 소화전 상태 점검	연 1회 이상 소화전 상태 점검	기타
	• 상시관리 공사 실시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공사	제도
복구	• 산불대응지침 의거	산불대응 지침 의거 초동대처	제도
	•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전문가의 협조로 복원	제도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신현동 회화나무 관리 용역

작성 부서	문화관광 체육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현경 국가유산관광팀장	032-560-5931 darai32@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김병훈 주무관		032-560-5932 bhkim14@korea.kr	예방	X

◇ 문화유산의 예찰활동 강화로 보존·관리방안 사전대책 강구 및 문화유산이 소재한 인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상시 관리체계 강화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문화유산 피해율	0%	0%	0%	총피해액/횟수

주요내용

-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상시관리용역을 통한 화재예방 추진

* 대상문화유산: 천연기념물 신현동 회화나무

추진성과(최근 3년)

- 천연기념물(신현동 회화나무)은 상시관리 및 해당 행정동의 주변 순찰 요청으로 예방활동 강화

'25년도 주요 계획

- 25. 3. ~ 10.: 회화나무 상시관리 용역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2~4분기	회화나무 상시관리 용역	상시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12	13	19	18	41	21	21	21	21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용역	112	13	19	18	41	21	21	21	21

나. 감염병 (우선순위 2위 / 주요유형)

1)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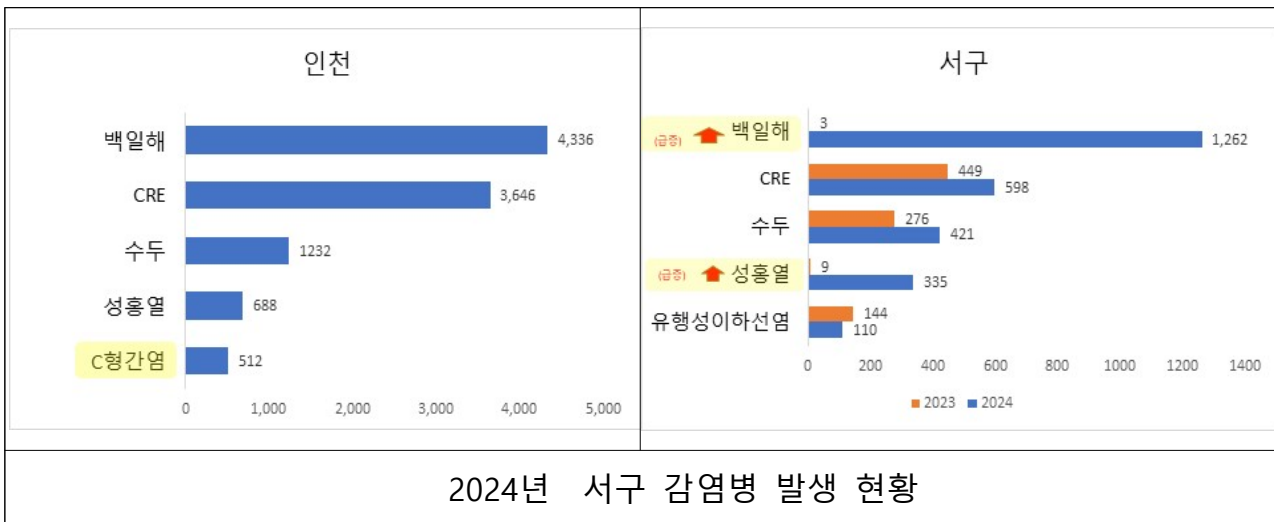
○ 관내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구 분	법정감염병(명)			
	총계	1급	2급	3급
2019년	1,696	193	1,148	355
2020년	1,433	534	763	136
2021년	6,361	5,657	627	77
2022년	325,064	189,980	134,958	126
2023년	4,575	0	4,571	163
2024년	3,171	0	2,982	189

※ (통계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2024. 12. 31.)

○ 다빈도 감염병 발생 현황

- 2024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이후 여름철에 코로나19 재유행, 백일해, 성홍열, 수두,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함
- 백일해('23년 3명 → '24년 1,262명), 성홍열('23년 9명 → '24년 335명) 급증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감염병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다중이용시설(%)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	쓰레기매립장(개)	항만(m ²)	의료시설(개)
서구	2.40	4.32	1	42,075	9.86
비교지역 평균	4.46	7.51	0.07	6,265	17.83

2) 원인분석

- (방역조치 완화) 호흡기 감염병 증가 원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줄였으나, 방역 완화로 착용이 감소하면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커져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된 경향을 보임
- (해외여행 증가) 국제 이동 증가로 해외 감염병 유입
 - 일본에서 유행하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성홍열 의사환자가 증가하였으며,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엠폭스도 국내로 유입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함
- (신도시 특성) 인구밀집도가 높은 신도시에서 조기 검사·진단을 향상
 - 신도시(청라동, 가정동, 아라동)에서 아동 청소년층이 많아 호흡기 질환 검사·진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유병률이 높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야	유형	관계법령	주요내용	부서
사회재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대규모 유행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	질병관리과

4) 의견수렴

- 지역사회의료협의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대 신속한 의료대응 및 신종감염병 유입의 지속적 감시 대책을 논의함

5) 목 표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사망자 감축목표 : 법정감염병 사망자 3.1% 감축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3,171	3,071	2,971	2,871	2,771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32	31	30	29	28
	사망(실종 포함)	32*	31	30	29	28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 사망 통계(32명): 2급 감염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균중(CRE)감염증 31명, 폐렴구균감염증 1명
 · CRE 감염증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에 의해 발생하여 주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신고되는 의료관련 감염병임. 국내외에서 빠르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높음.

6) 재정투자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재난안전예산 반영사업 (감염병관리)						
감염병예방·관리사업	7,828	2,579	2,772	2,435	26	16

※ 목표선정 : 코로나19 종료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원비 관련 예산 대폭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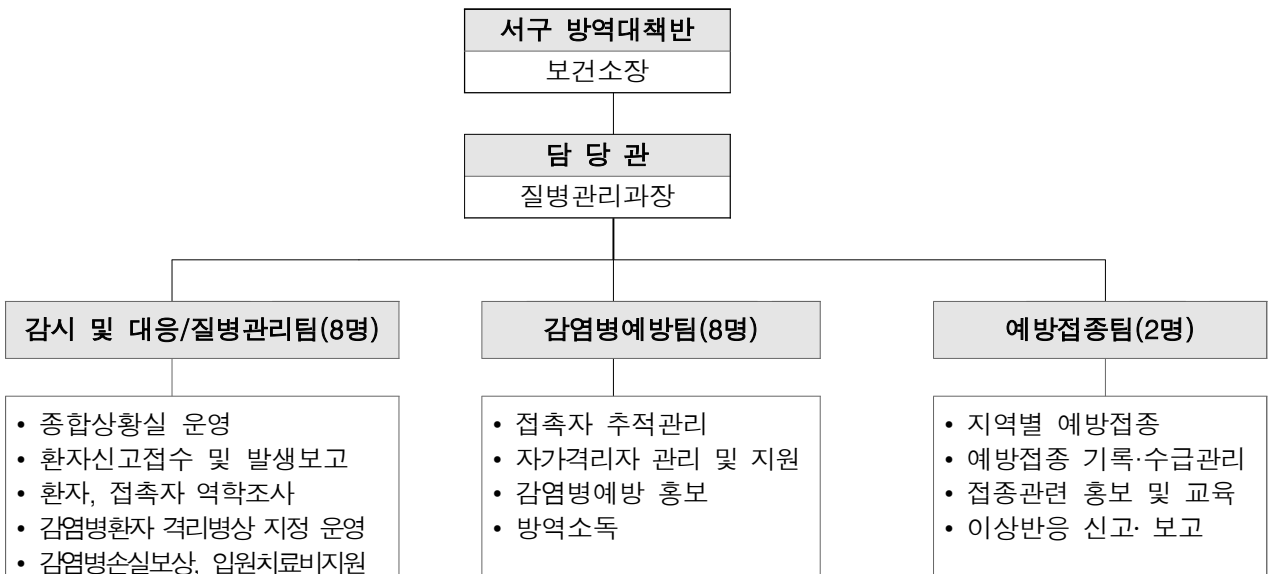
기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국내·외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의료기관 및 집단시설 대상)
 -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현황 안내
 - 감염병 의심입국자 추적관리
- 감염병 정보제공 및 예방방법 홍보
 - 유행시기별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올바른 비누사용 손씻기 및 기침예절 방법 상시 홍보

나) 대비단계

- 방역대응체계 구축
 - 환자 이송체계 점검 및 격리병상 사전 확인(시 협의)
 - 비상대책반 구성 및 역할 점검
 - * 24시간 비상근무 및 접촉자 1:1관리 : 보건소 전 직원 협조
 -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인프라 점검
 - 방역물품, 의료장비 및 비축물자 확인점검
 - 개인보호구 4종(보호복, 고글, 장갑, 마스크) 등 현황 파악
 - * 반출에 용이하도록 보관 창고 내 재배치 및 물품 수 정확히 파악

다) 대응단계

□ 상황전파 및 비상방역체계 운영

- 감염병 발생 상황 전파
 - 소관 및 관련부서 전파(구 관련부서, 시 감염병관리과 등)
 -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단체 전파(관내 의료기관 등)
- 비상방역체계 운영
 - 구상황실 가동 및 24시간 비상방역근무 돌입, 일일 상황보고 유지

□ 현장 출동 및 초기 대응조치

- 초기대응반 현장 출동
 - 의심환자 조치(역학조사, 병원이송, 동선 및 접촉자 파악 등)
 - 시 보건부서 협조 요청(환자분류, 격리병상 배정 등)
 - 신속한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한 2차 전파 조기 차단
- 모든 협조체계 가동(관내 의료기관, 경찰, 소방 등)
- 접촉자 관리
 - 자가격리자 분류 후 모바일 통지서 발급 및 자가격리수칙 안내
 - 선별검사 안내

□ 확산방지 조치 강화

- 감염병 추적관리를 통한 추가 확산방지
- 감염병 발생지역 집중 방역활동 강화

라) 복구단계

□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피해 보상 및 지원

-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지원

○ 재발방지대책

-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지속 및 감시체계 강화 유지
- 범국민 대상 감염병 예방방법 홍보

□ 확산방지 조치 강화

○ 감염병 추적관리를 통한 추가 확산방지

○ 감염병 발생지역 집중 방역활동 강화

8) 세부추진대책

나) 재정사업

(1) 감염병관리사업

작성 부서	질병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배은정 질병관리팀장	032-718-0441 mariebae@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정원경 주무관	032-718-0442 pass153@korea.kr	대비	X

- ◇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감시, 추적조사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역학조사 완료율	100%	99%	99%	(역학조사 완료건수/ 전수감시대상 감염병 신고건수) * 100
오염지역입국자 추적조사 완수율	100%	100%	100%	(추적조사 완료자수/ 추적조사 대상자 수) * 100
손씻기 체험교육용 장비대여	323회	200회	200회	손씻기 체험교육용 장비대여 횟수

□ 주요내용

- 운영기간 : 연중
- 대 상 : 1,2급 감염병 의심환자, 어린이집
- 운영방법
 - 1급 감염병은 즉시 역학조사, 2급 감염병은 24시간내 역학조사
 - 질병보건관리시스템상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5일 이내 2회 실시
 - 어린이집, 감염취약시설에서 손씻기 체험교육용 장비대여를 통해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습관화 교육

□ 추진성과(최근 3년)

-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적조사완료율 100% 달성함
- 해외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의심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기여함
- 집단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고, 초기 생활습관 형성이 중요한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홍보하여 영유아의 참여율을 높임

□ '25년도 주요 계획

- 1·2급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24시간 이내) 입국자 감시 및 추적관리
-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재활시설), 어린이집에 올바른 손씻기 스티커 배부하여 감염병 예방 교육률을 높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 역학조사(1·2급감염병, 입국자) 실시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육용 장비대여 홍보 및 대여	월말 보고
2/4분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 역학조사(1·2급감염병, 입국자) 실시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육용 장비대여 홍보 및 대여	월말 보고
3/4분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 역학조사(1·2급감염병, 입국자) 실시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육용 장비대여 홍보 및 대여	월말 보고
4/4분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 역학조사(1·2급감염병, 입국자) 실시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육용 장비대여 홍보 및 대여	월말 보고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7,828	2,579	2,772	2,435	26	16	16	16	16	
감염병관리	7,828	2,579	2,772	2,435	26	16	16	16	16	

다. 사업장 산재 (우선순위 3위 / 주요유형)

1) 현 황

- 서구 산업재해(사고재해) 발생은 ‘24년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발생건수/사망자수 100% 증가

* 2023년 발생건수 14건/사망자수 15건, 2022년 발생건수 7건/사망자수 7건

< 연도별 산업재해 피해현황 >

(단위 : 명,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망자 수	15	12	18	13	10
사망만인율*	0.73	0.55	0.78	0.59	-

※ (통계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 2024년 3분기 기준 작성

< 인천광역시 서구 사업장 산재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영세업체 밀집 산업단지수(%)	중공업 산업단지(%)	공사시설(개)
서구	3.87	3.87	6.03
비교지역 평균	1.36	2.76	11.79
항 목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지역(개소)	외국인 근로자(명)	항만(m ²)
서구	39	9.63	42,075
비교지역 평균	9.84	4.71	6,265

2) 원인분석

- 서구는 대규모 건설현장 및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제조업 부품제조 등 2차, 3차, 하청업체 밀집 지역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산업재해 발생이 높게 나타남

2)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 제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명)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사고 사망자수	10	10	10	10	10

6) 재정투자 현황

세부사업명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합계	'23	'24	'25
중대재해예방	414	237	80	97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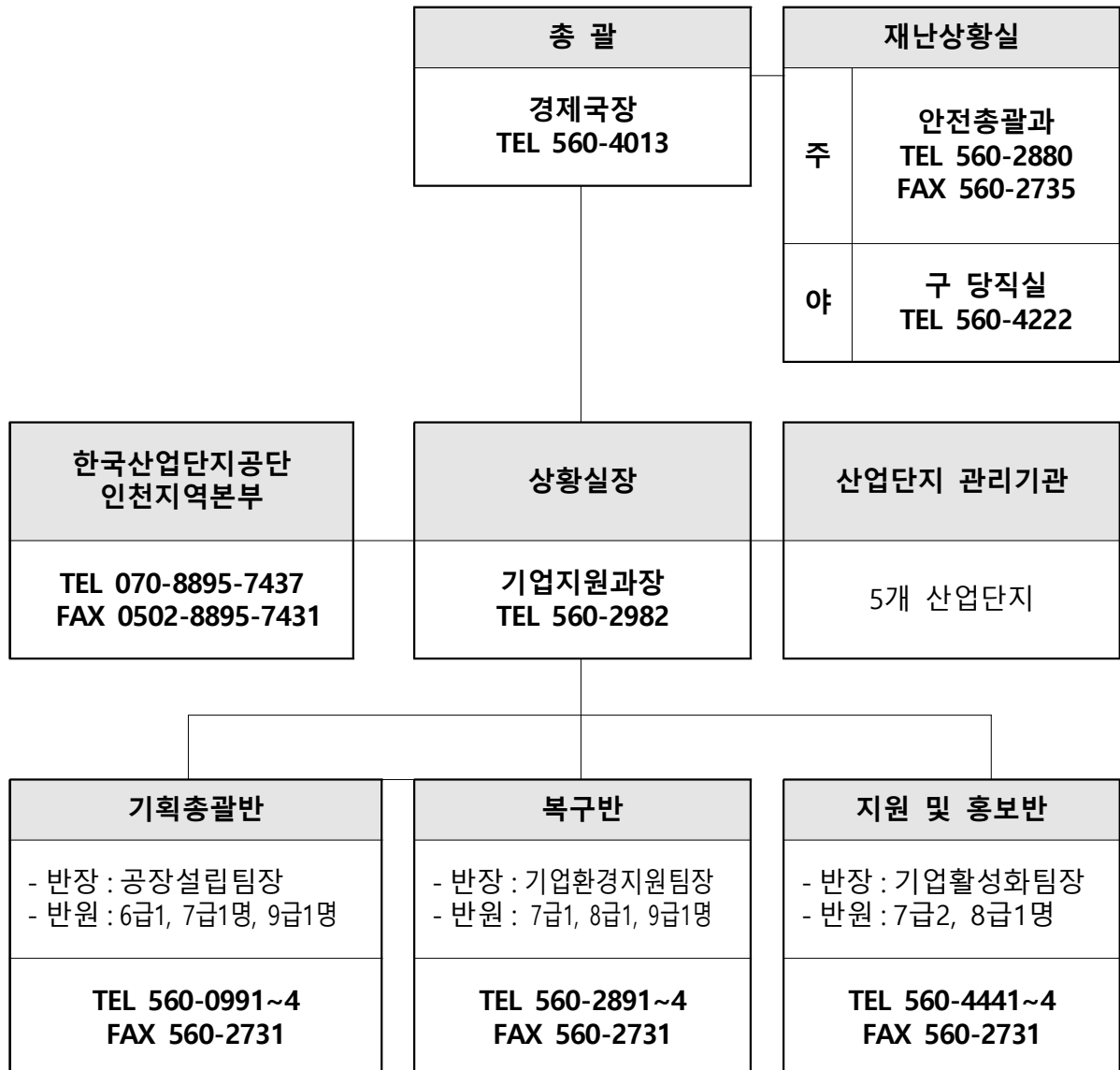
-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입주기업 중점관리 대상업체 선정관리

단지명	위 치	면적(천㎡)	관리기관
인천지방산업단지	가좌동 573-1	1,136	인천광역시
인천기계산업단지	가좌동 570-8	350	인천기계산단
인천서부산업단지	경서동 689	939	인천서부산단
청라1지구지방산업단지	경서동 673	194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	오류동 410	2,245	검단산단
주안국가산업단지	가좌동 539	1,744	한국산업단지

- 안전취약 중점관리 대상업체 지정관리
- 취약시기 산업단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실태 지도·점검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 산업단지 내 재난 및 안전관리활동 적극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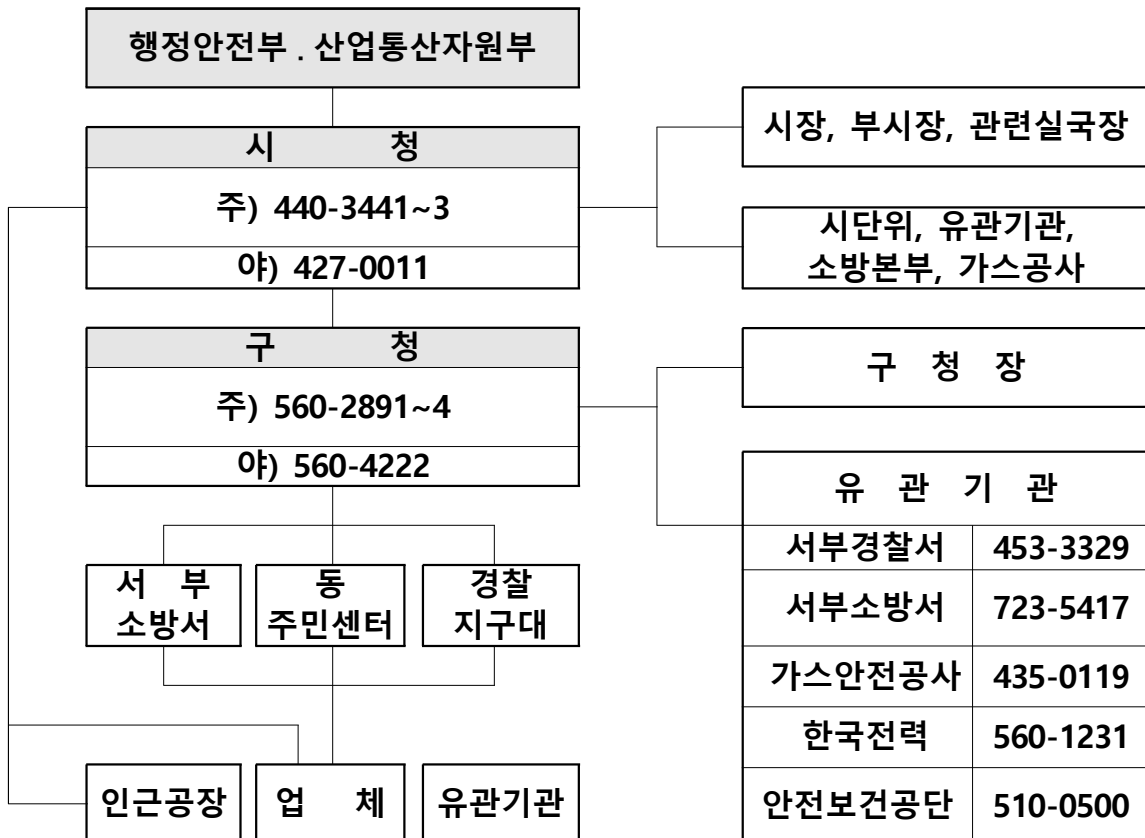
나) 대비단계

- 재난대비 상황보고체계 구축



구 분	임 무	비고
기획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설치 및 운영 총괄 ○ 인원동원(예비군부대 포함) 및 차량지원 ○ 유관기관 협조체제 가동 ○ 피해지역 경계 및 보안 유지 ○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및 비상연락망 유지 ○ 피해복구 운영자금 및 물품 조달 계획 수립 시행 기타 각반 활동 지원 	
복 구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활동 총괄, 시군 협조 ○ 주요시설물 및 복구장비 점검·보수 ○ 기타 피해복구 활동에 대한 사항 	
지원및홍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 및 피해활동 총괄 ○ 재난 피해대책 홍보 및 순찰 ○ 기타 피해복구 및 구호활동 지원 	

- 재난대비 자원 동원계획 구축
- 재난대비 연습(실제, 도상) 계획수립 시행
- 지원·자체시설의 재난관리 계획수립 시행
-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체제 유지



다) 대응단계

- 재난상황보고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 긴급구조·구급대책 추진
-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라) 복구단계

- 재난합동조사반 구성·운영
- 인력·장비 등 긴급복구 물자 조기투입 및 복구
- 재난피해 배상(보상)대책 수립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재난복구 사후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신규)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민석기 중대재해예방팀장	032-560-3281 skmsk96@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은지 주무관	032-560-3282 eenzi8503@korea.kr	예방	X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율	-	-	90%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문서

□ 주요내용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 추진성과(최근 3년)

- 서구 중대재해예방 종합추진계획 수립(1월)
-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훈련 실시(상반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분기별)
- 작업환경측정 실시(반기별)
- 부서별 안전·보건 의무 이행여부 점검(반기별)
-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하반기)
- 현업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실시(연중상시)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합동 작업현장 순회점검(연중상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상담 실시(연중상시)
- 관리감독자 및 현업종사자 교육 실시(연중상시)

□ '25년도 주요 계획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2025년 3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2025년 3,6,9,12월)
- 작업환경측정 실시(2025년 4,11월)
-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훈련 실시(2025년 5월)
- 부서별 안전·보건 의무 이행여부 점검(2025년 6,12월)
-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2025년 7월)

- 현업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실시(연중상시)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합동 작업현장 순회점검(연중상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상담 실시(연중상시)
- 관리감독자 및 현업종사자 교육 실시(연중상시)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1월) 중대재해예방 종합추진계획(안) 수립 (3월)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1차 특수건강진단 실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2/4분기	(4~6월)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5~6월) 상반기 부서별 안전보건 의무행 점검 및 조치 (6월)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3/4분기	(7~9월) 위험성평가 실시 (9월) 2차 특수건강진단 실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4/4분기	(10~11월)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11~12월) 하반기 부서별 안전보건 의무행 점검 및 조치 (12월)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414			237	80	97	100	100	100	
중대재해예방	414			237	80	97	100	100	100	

라. 시설물 재난·사고 (우선순위 공동4위 / 주요유형)

라-1) 문화시설(공연장)

1) 현 황

○ 최근 5년간 공연장 피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공연장 시설현황(10개소)

연번	시설명	구분	등록일	객석수	면적(m ²)	연락처
1	검단복지회관	공공	2001.04.06.	200	360	032-561-4115
2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공공	2001.07.27.	951	1,485	032-579-1150
3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공공	2001.07.27.	200	457	032-579-1150
4	가정생활문화센터	공공	2003.05.09.	75	130	032-579-1150
5	서구청소년센터	공공	2006.02.17.	216	243	032-578-7979
6	엘림아트센터 챔버홀	민간	2016.12.08.	150	204	032-289-4275
7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민간	2016.12.08.	298	325	032-289-4275
8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공공	2017.02.02.	950	1,297	032-715-6430
9	아띠홀	민간	2020.08.21.	160	163	010-2417-2229
10	청라블루노바홀	공공	2021.08.20.	480	1,873	032-510-6008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시설물 재난사고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지역(개소)	영세업체 밀집 산업단지(%)	지하차도(km ²)
서구	39	3.87	0.07
비교지역 평균	9.84	1.36	0.05
항 목	다중이용시설(%)	석유화학 공업단지(%)	초고층아파트 (50층이상)지역(%)
서구	2.40	0.05	0.51
비교지역 평균	4.46	2.27	0.32

2) 원인분석

- 5년간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미발생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야	유형	관계법령	주요내용	주관부서
사회재난	시설물 재난사고	- 공연법 제11조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 등록공연장: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재해대처계획 신고 - 공연장 외 장소 1천명 관람 예상 공연 공연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 신고	문화관광체육과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문화시설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최소화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발생건수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부상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을 통한 유지보수 관리

○ 일상점검

- 숙달된 점검자가 육안으로 관찰하는 일반적인 점검
 -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조명, 무대시설, 광고탑 등 부속시설 안전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 기타 사고나 충돌 여부

○ 특별점검

- 태풍, 폭우 및 천재지변인 재해에 의한 손상이 생겼거나 예상되는 경우 및 국가안전대진단 등 특정한 날의 이상 유무 점검

○ 정기점검

- 구조물에 문제의식을 갖고 점검하는 것
- 주요부분의 마모상태, 부식, 손상, 균열 등 설비의 상태변화나 이상 유무 등을 기계 또는 설비의 가동 중지 상태에서 정밀 점검
 - 주 구조부의 상태(보, 기둥, 비틀림, 균열, 철근 노출 등)
 - 주 구조부 이외의 상태(계단, 보도부 등의 파손)
 - 부대시설의 상태(난간, 배수장치 파손, 조명시설 이상 유무 등)

나) 대비단계

- 전문기관 안전교육 이수 및 내부 인력 전파 교육 실시
- 비상대피로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도 정비
-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
 - 화재 또는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 확보
 - 예측 가능한 안전사고 사전 방재 조치
 -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비치 및 숙지로 안전마인드 고취
- 안전사고 대처 방법 사전교육 및 훈련
 - 119 안전센터 연계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교육 실시
 - 한국화재보험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기관 연계 교육 실시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이용객 대피 유도 및 부상자 구조 작업 실시
 - 2차 재해요인과 위험요소 즉시 제거로 사고확대 및 재발 방지
-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관계기관 보고
- 중요재산 반출 등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재난관리체계 정비·평가

○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방재 유관기관 연락책임자 선정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재난관리협력체계 평가 구축

- 재난 협력에 문제점 분석과 함께 보완대책 수립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주소(또는 위치)
내부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	560-4347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실	560-2924 560-2987	서구청 본청사, 제2청사
	재난종합상황실	560-470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긴급 대응 기관	서부소방서	723-542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
	서부경찰서	453-3329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77
	서구보건소	560-5000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815-5017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 220
	소방안전본부 재난종합상황실	870-30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유관 협력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435-15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08 경향프라자 12층
	한국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	290-7100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7 5층
	한국전력 서인천지사	560-128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86
	신일산전(승강기)	578-8521	인천광역시 서구 괴랑로 495, 2동 907호
	KT 서인천지사	566-0007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34번길 9
	(주)인천도시가스	570-7802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23

8) 세부추진대책

가) 기타시책

(1) 공연장 안전점검 실시

작성 부서	문화관광 체육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은선 문화예술팀장	032-560-4341 pes0915@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김민현 주무관	032-560-4347 minhyeon2@korea.kr		

◇ 공연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 실시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공연장 안전점검 실시	11회	13회	13회	시설별 안전점검 실시 횟수

□ 주요내용

- 공연장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 대상시설 : 관내 공연장 10개 시설
 - 지도감독 내용
 -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안전대응 매뉴얼 작성 관리
 - 피난 및 연소방지 시설 구비
 -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구호설비 등 구비
 - 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공연장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관리 주체 자체점검)

□ 추진성과(최근 3년)

- 최근 3년 공연장 재산피해, 인명피해 미발생

□ '24년도 주요 계획

- 분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 명절(설, 추석) 연휴 대비 안전점검 실시
- 하절기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설 연휴 대비 안전점검 실시	1월
2/4분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	6월
3/4분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추석 연휴 대비 안전점검 실시	9월
4/4분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11월

라-2) 체육시설

1) 현 황

< 연도별 체육시설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2) 원인분석

-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미발생으로 해당없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야	유형	관계법령	주요내용	주관부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 육시설 안전관리에 관 한 기본계획 등 수립)	-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사항 -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문화 관광 체육과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향후 5년간 연도별 목표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발생건수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각종 체육대회 및 스포츠행사 시 행정지도 강화

- 체육대회 및 행사시 안전관리 강화
 - 체육대회 및 행사에 따른 사전계획서(안전계획서) 제출 검토
 - 체육시설물 사용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율 등 적정성 확인
 - * 필요시 유관기관 등과 사전 안전대책 협의
- 관리책임자 사전 교육 철저
 - 각종 사고에 따른 관리책임자 행동 방안(임무) 마련
 - 위탁기관(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의 협조 대응체계 구분 마련
- 체육시설 안전 의식 확대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시설 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안전 교육 실시
 - * 비상조치요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직책별 업무 능력 향상 교육
 -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적 안전점검 실시

- 신규 체육시설 사업 시 시설 안전기준 적합 계획 확인
 - 자연재난(지진, 풍수해 등) 및 안전관리(시설물) 분야
- 손해보험가입 등 공제제도를 통한 이용자 피해보상 대책 마련
 -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 확인
 - 시설이용 중 불의의 사고에 따른 보상 대책 (공제상품 가입)

나) 대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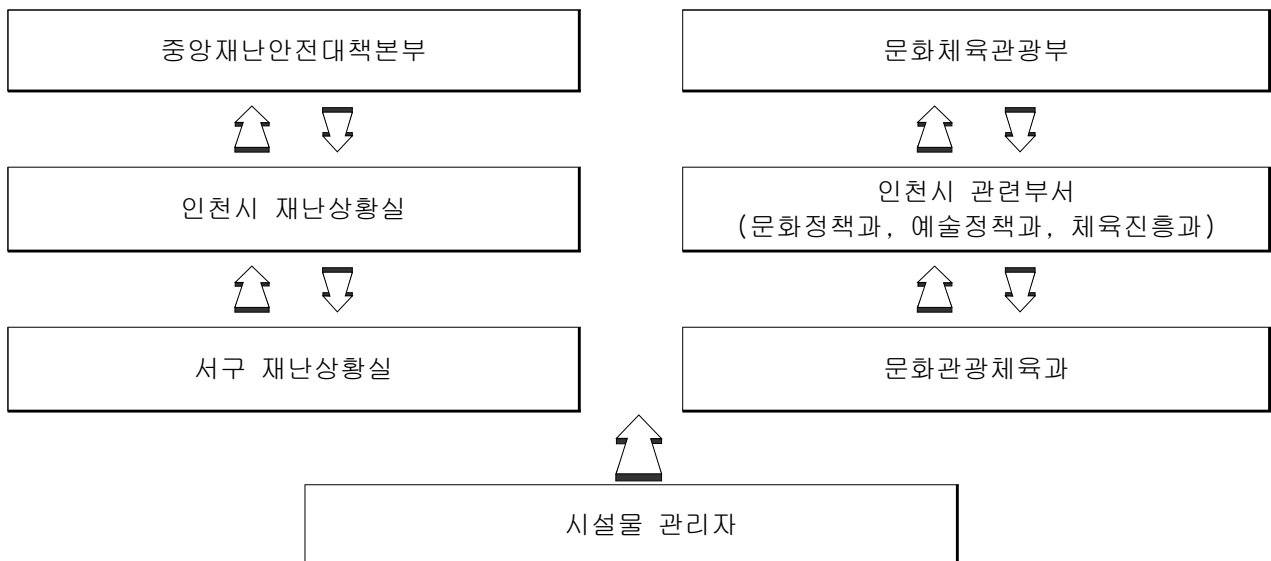
□ 체육시설물 이용 안전수칙 교육

- 시설물 이용방법,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
 - 체육시설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사전 안내

□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 제고

- 인명구조 우선의 응급조치,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체계 유지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 체계 전환, 조기수습으로 피해 최소화 노력

☞ 응급상황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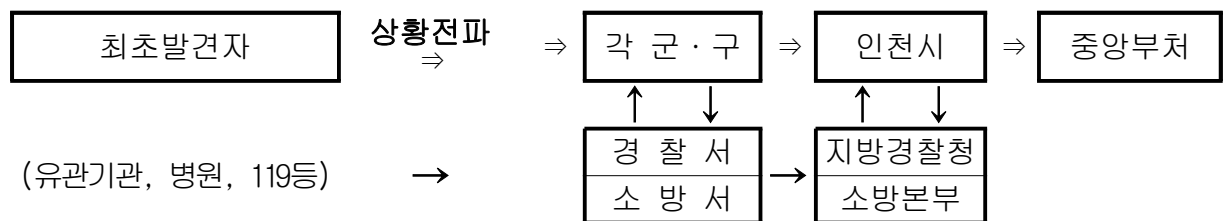


다) 대응단계

□ 사고발생시 신고체계 확립

- 사태발생 신고 전파 : 행사주최측 또는 사고 발견자
- 인근 행정기관이나 소방서·경찰관서 등에 신고
- 최초 접수기관 : 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고발생 보고
- 현장출동, 피해상황·정도·유형을 신속히 파악 보고
- 구조 및 유관기관 동원 응급조치
- 시, 서구 사고수습대책 본부 가동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신고 및 보고체계도



□ 사태 등 관리요령

- 현장응급 조치
 - 사고현장주변의 안전요원, 경찰·소방 등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가 현지 확인하여 응급조치와 더불어 신속히 지원요청
 - 사전에 배치한 경찰·소방·안전요원을 즉각 출동시켜 안전사고 수습조치
 - 인근 경찰·소방·병원 등에 비상연락 신속히 지원요청
 - 관람객의 동요를 막기 위해 현재 상황 등을 방송을 통해 알려주고 질서유지 협조와 비상대피 등을 안내
 - 외부인이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치
- 응급구호 조치
 - 화재 발생의 경우에는 인근의 소화기, 소화전 등으로 신속히 진화하는 한편, 대기 중인 소방차 출동 요청
 - 신체적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급반을 요청하여 구호조치

-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 응급병원 등에 지원을 요청, 상호 협조 하에 신속대응

□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구청장은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주민긴급대피, 통제구역지정, 시설물 보호조치 등 2차 피해 유발요인 제거
- 현장 응급 조치
 - 경찰, 소방 인력 등 긴급 지원 조치
 - 관람객, 스포츠 이용자 질서유지 협조 및 현장 상황 설명 방송
 - 구조 및 안전요원 외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
 - * 경찰 인력 등 질서유지 요원 협조
- 응급 구호 조치
 - 초기 사고(화재 등) 시 유관기관 신고 후 즉시 대응
 - * 소화기, 소화전 사용으로 최대한 초기 진화 노력
 -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사고수습 현장대책반 편성 운영
 - * 주민긴급대피, 피난시설 운영, 통제구역지정, 시설물 2차 피해 방지
- 담당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 구성
 - 담당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 구성
 - 피해상황 집계 및 책임소재 파악
 - 피해자 대표와 의료 대책 및 피해 보상 대책 협의
 - 재난 재발 방지 대책 연구
 -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보험금, 국고 및 기금)
 - 필요한 물자, 인력 동원 계획 수립

라) 복구단계

□ 사고 조기수습 및 피해 최소화

- 사상자 대책
 - 사상자 분류 및 병원별 분산 수용
 - 현장 관리요원 배치
- 현장 응급구호 조치
 - 복구 단계별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조기 복구조치
 - 긴급방역 및 구호활동 병행 실시

□ 합동조사단 편성 및 보상대책

- 공연장, 재난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 과학적 피해조사
 - 피해상황 집계 및 책임소재 파악
 - 피해자 대표와 의료 대책 및 피해 보상 대책 협의
 - 재난 재발 방지 대책 연구
- 유관기관(군·경찰·병원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 수습

□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보험금 청구, 국고지원 등)
- 필요한 인력 및 물자 동원 등 비상체제 확립

□ 피해시설(지역)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위문활동 전개

- 문화예술계, 체육계, 종교계 등 주관으로 봉사대 구성·운영
- 사랑의 문화봉사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통해 피해 지역 및 피해복구 참여자 위문활동 전개

□ 전국적인 모금 캠페인 전개

- 방송사 및 신문사 주관, 전국적 모금 캠페인 동참 협조
- 지역 내 문화예술인 등 참여 협조 등

※ 기관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구 분	기 관 명	담당부서	연 락 처	비 고
1	인천시	체육진흥과	032-440-4323	
2	서구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070-8177-3731	위탁기관
3		검단복지회관	070-8177-3761	위탁기관
4		실내게이트볼장	070-8177-3871	위탁기관
5		청라복합문화센터	070-8177-5611	위탁기관
6		원당문화체육센터	032-568-5030	위탁기관
7		불로문화체육센터	032-561-5670	위탁기관
8	서구체육회	북청라대교하부체육시설	032-567-7330	위탁기관
9		마전게이트볼장	032-567-2285	위탁기관
10		가좌배수지배드민턴장	032-572-2286	위탁기관

8) 세부추진대책

가) 기타시책

(1)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작성 부서	문화관광 체육과	작성자 및 연락처	심윤주 체육진흥팀장	032-560-4131 yunzhu@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김은혜 주무관	032-560-4134 eh0927@korea.kr		
			이호건 체육시설팀장	032-560-3181 cutechris@korea.kr		
			정용운 주무관	032-560-3185 younokr1@korea.kr		
					예방	X

◇ 현장여건을 감안, 관리·감독하는 주체별 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시설안전점검	4회	4회	4회	안전점검 횟수

□ 주요내용

○ 실천가능한 연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실천가능한 현장중심의 세부추진계획 수립(매년)
- 추진계획
 - 시·도 계획 :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관할 시 종합 → 문체부 보고)
 - 시·군·구계획 : 서구 문화관광체육과(자체 계획 → 인천시 보고)
 - 계획 : 공공건축물 위탁기관(자체 계획 → 시, 각 군·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계절별 안전점검	2~3월
2/4분기	계절별 안전점검	5~6월
3/4분기	특별 안전점검	10월
4/4분기	계절별 안전점검	11~12월

라-3) 청소년시설

1) 현 황

< 연도별 청소년시설 사고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2) 원인분석

- 피해 미발생으로 해당 없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 2(안전교육)

4) 의견수렴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시설별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의견 수렴

5) 목 표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연간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정기점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에 의거 안전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시기별·시설별 안전점검 실시

② 특별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감사 점검 등 특정 시기 안전점검

나) 대비단계

- 재난관리 대응 매뉴얼 관리 및 관련 교육, 훈련 실시
 - 시설관리자 및 시설이용객 대상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재난 상황 시 신속 대피로 확대 및 피난 유도법 습득
 -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비치 및 사전 숙지로 안전 마인드 고취

다) 대응단계

- 이용객 대피 유도 및 부상자 구조작업 실시
 - 위험요소 즉시 제거로 2차 사고 등 피해 확대 방지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유관기관 보고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8) 세부추진대책

가) 기타시책

(1) 공연장 안전점검 실시

작성 부서	교육 지원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은정 청소년팀장	032-560-3101 jeong9837@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여화 주무관	032-560-3102 yhlee85@korea.kr	예방	X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안전점검 등)에 의거 청소년 시설 내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청소년 시설 안전점검 실시	50회	50회	50회	시설별 안전점검 실시 횟수 (상시, 불시)

□ 주요내용

- 청소년 시설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 대상시설 : 서구청소년센터 외 3개소
 - 지도감독 내용
 -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안전대응 매뉴얼 작성 관리
 - 피난 및 연소방지 시설 구비
 -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구호설비 등 구비
 - 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청소년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관리 주체 자체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2/4분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	6월
3/4분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4/4분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11월

라-4) 의료시설

1) 현 황

< 연도별 의료시설 화재 피해현황 >

(단위 : 건, 천원, 명)

구 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수	1	0	0	1	1	3
재산피해	5,534	0	0	544	5,152	21,974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통계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의료기관 현황(병원급 이상)

(단위 : 개소수)

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41	5	11	2	9	11	3

2) 원인분석

-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특성상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시 안전관리 체계 유지 필요
- '14년도 장성요양병원, '18년 밀양세종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의료법령, 소방법령 등 강화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 야	유형 및 사업명	관계법령	주요내용	주관부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의료시설 안전점검)	-	· 국가안전대진단 자체계획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	보건행정과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단위 : 건, 천원,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1	1	1	1	1
재산 피해		6,000	6,000	6,000	6,000	6,00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안전점검률 (%) ※ 측정산식 = (점검 개소수 / 점검 대상 의료기관 수) × 100	100%	100%	100%	100%	10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청리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은 소관청에서 점검 진행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
 - 보건소, 건축과,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분야별 합동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취약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

- 점검내용

분 야	내 용
의료법 분야	- 요양병원 인력기준 등 준수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 환자 대피 및 이산대책 수립 시행 여부, 정전 대비 시설 운영 여부
건축 분야	-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관리상태
소방 분야	- 안전관리 일반 준수 여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적정 관리
전기시설 분야	- 전기 설비 관리
가스시설 분야	- 가스 설비 관리

나) 대비·대응단계

○ 의료기관 안전점검 후 사후관리

- 즉시 보완이 가능사항은 즉시 현장조치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빠른 시일(1~3개월)내 조치
- 추가진단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사후 보완사항은 보완요구 후 관할 부서에서 재점검
- * 의료, 소방, 건축 등 법령 위반사항 발생시 관할 부서에서 조치
-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 의료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전기, 가스, 소방 안전 교육 실시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 분장 상 직원 임무 숙지
- 환자 대피 모의 훈련 실시

다) 복구단계

○ 안전사고 발생 후 사후관리

- 안전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 사후점검 시행을 통한 재정비

8) 세부추진대책

가) 기타시책

(1) 의료시설 안전점검

작성 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자 및 연락처	보건행정팀장 이정숙	032-718-0421 ljsnph@korea.kr	재난관리 단계 예방	국가집행계획 연계 X
			김해리 주무관	032-718-0422 woo0402@korea.kr		

◇ 국가안전대진단 자체계획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안전점검률	100%	100%	100%	(점검 개소 수/점검 대상 의료기관 수)*10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청라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은 소관청에서 점검 진행

□ 주요내용

- 점검기간 : 매년 2~4월
- 점검대상 : 의료기관 (병원급이상)
-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에 의한 시설물 관리 주체 자율점검
 - 민관합동점검
 -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 건축과 등 관계 기관과 협의 후 합동 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 의료법, 소방 등 관련 현행 법령 준수 여부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배연설비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 점검결과 후 사후관리

- 즉시 보완이 가능사항은 즉시 현장조치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빠른 시일(1~3개월)내 조치
- 사후 보완사항은 보완요구 후 재점검
-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 '25년도 주요 계획

-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2~3월
2/4분기	점검결과 사후관리	5월
3/4분기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요양병원 등 상반기 점검 미진행 의료기관	10월
4/4분기	점검결과 사후관리	11월

라-5) 저수지

1) 현 황

< 연도별 저수지 붕괴 피해현황 >

(단위 : 건, 천원, 명)

구 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통계 출처) 경제정책과 소관 통계자료

< 서구 저수지 현황 >

시설명	위 치	유연면적	관개면적	저수량	만수면적	기타			
						구조	높이	길이	체적
금곡저수지	금곡동 493일원	238ha	8ha	64천m ³	2ha	토언제균일형	4m	213m	112천m ³

- 금곡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저수량 30만톤 미만의 2종시설로 분류
- 저수지 설치년도는 1946년으로 노후도는 보통임(B등급)

2) 원인분석

- 관리자 안전교육·훈련, 안전점검, 홍보 등
 - 저수지 안전관리점검 실시(분기별)
 - 자연재난대비 수시 점검 실시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순찰 및 홍보활동 강화
 -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대응기반 구축
 -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교육 이수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야	유형	관계법령	주요내용	주관부서
사회재난	농업용저수지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8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경제정책과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단위 : 건, 천원,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연도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금곡저수지환경정비공사	116	20	20	20	31	25

기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 및 대비단계

1) 위기경보

- 위기경보 기준

구 분	판단기준	비 고
관심 (Blue)	· 저수지 붕괴는 예상되지 않으나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기상상황에 따라 사전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단계	징후 감시활동
주의 (Yellow)	· 저수지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접근 · 저수지의 구조적변화가 일부 있으나 붕괴는 예상되지 않는 경우	협조체제 가동
경계 (Orange)	· 저수지 붕괴가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나 붕괴 발생 전 상황 ※ 대책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 · 또는 붕괴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자체대응·복구가 가능한 경우	대비계획 점검
심각 (Red)	· 저수지 붕괴가 발생하였거나 붕괴가 임박하여 곧 확실히 발생할 상황 · 저수지 붕괴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또는 막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각대응

- 위기경보 판단

- 저수지 붕괴사고 관련 징후 포착

- 초기 대책회의

-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 비상근무 실시여부 판단 및 대책회의 개최 건의

- 대책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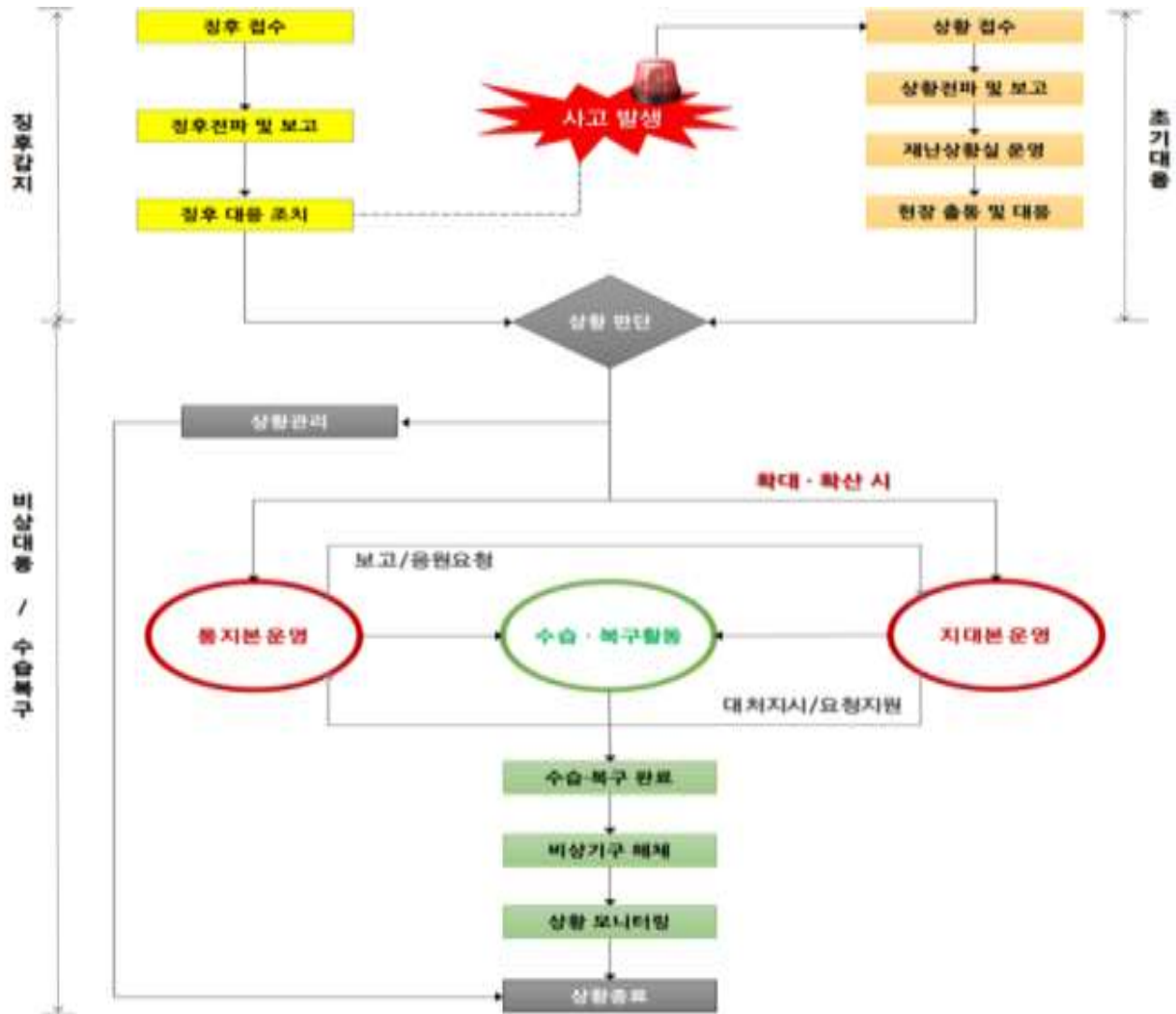
- 저수지 붕괴 피해 우려 시, 위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대책회의 개최, 대응 수준 결정

- 위기경보 발령사항 전파 및 대책추진 지시

- 대책회의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대응계획 추진
- 위기경보에 따른 조치계획 신속 전파

※ 태풍 및 호우특보에 따라 유관기관에 전파

나) 대응 및 복구단계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저수지 등 붕괴 재난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경제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웅겸 농수산팀장	032-560-4451 inagro@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안다솔 주무관	032-560-4454 dksek1101@korea.kr	대비·대응	X

- ◇ 『농어촌 정비법』 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실적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저수지 재난 매뉴얼 정비	2회	1회	1회	매뉴얼 점검 횟수

□ 주요내용

-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점검 매뉴얼에 따라 조사 및 정비하여 저수지 붕괴 등 재난에 대비

□ 추진성과(최근 3년)

연도	추진 내용	추진성과
2022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실무매뉴얼 개정사항 있을 경우 반영	1회
2023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실무매뉴얼 개정사항 있을 경우 반영	2회
2024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실무매뉴얼 개정사항 있을 경우 반영	1회

□ '25년도 주요 계획

- 제2종 시설물 점검 매뉴얼에 따라 조사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개정사항 반영
- 제2종시설물 안전점검 매뉴얼의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에 따라 점검 후 평가등급(A, B, C, D, E) 결정
- 분기별 안전점검 결과 RIMS 등록 및 제출(관리주체→市)

□ 제 · 개정내용

규정명	주요내용	진행상황
「저수지 사고」 행동매뉴얼 개정	- 저수지 재난의 위기 발생요소 발굴 및 지속 관리 - 저수지 재난의 위기 관리 체계 구축	개정 (2024. 7. 10.)
「저수지 재난」 행동매뉴얼 제정	- 저수지 재난의 위기 발생요소 발굴 및 지속 관리 - 저수지 재난의 위기 관리 체계 구축	제정 (2025. 1. 9.)

나) 재정사업

(1) 분기별 저수지 환경정비 사업 (자원)

작성 부서	경제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웅겸 농수산팀장	032-560-4451 inagro@korea.kr	재난안전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안다솔 주무관	032-560-4454 dksek1101@korea.kr	예방	X

◇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하여 배수로 및 제방 주변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저수지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함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저수비 환경정비	4회	4회	4회	점검 및 환경정비 횟수

□ 주요내용

- 분기별로 배수로 및 제방 주변에 누적된 폐기물 처리를 통해 원활한 배수로 저수지 범람 등 재해예방 및 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효과

□ 추진성과(최근 3년)

연도	추진 내용	추진성과
2022	저수지 인근 환경정비	4회
2023	저수지 인근 환경정비	4회
2024	저수지 인근 환경정비	4회

□ '25년도 주요 계획

- 2025. 2. : 저수지 환경정비 계획 수립
- 2025. 3. ~ 11. : 저수지 분기별 환경정비 및 물품 계약
- 2025. 4. : 안전보행매트 등 물품 설치 및 준공
- 2025. 12. : 저수지 환경정비사업 준공

□ 추진일정

구 분	점검기간	점검대상	비 고
1분기	2025. 1월 ~ 3월	금곡저수지	1분기 점검결과 RIMS 등록
2분기	2025. 4월 ~ 6월	금곡저수지	2분기 점검결과 RIMS 등록
3분기	2025. 7월 ~ 9월	금곡저수지	3분기 점검결과 RIMS 등록
4분기	2025. 10월 ~12월	금곡저수지	4분기 점검결과 RIMS 등록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16	20	20	20	31	25	25	25	25	
금곡저수지 환경정비	116	20	20	20	31	25	25	25	25	

라-6) 주거시설(공동주택)

1) 현 황

< 연도별 주거시설(공동주택)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46	46	41	39	54	51	
건당 재산피해	4.1	8.6	3.3	3.2	2.4	3.2	
인명피해	계	5.6	5	4	5	4	10
	사망	1.6	2	1	3	1	1
	부상	4	3	3	2	3	9

※ (통계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 현황(인천광역시 서구, 2020~2024)

2) 원인분석

- 최근 5년간('20~'24)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28명 (사망 8명, 부상 20명), 총 재산피해 960백만원 발생
- 공동주택의 화재발생은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연도별 피해 발생률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야	유형	관계법령	주요내용	주관 부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시설물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주택 관리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주택법 제93조	보고·검사 등	주택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백만원·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49	47	47	45	45
재산 피해		2.9	2.9	2.7	2.7	2.5
인명피해	계	10	7	7	5	3
	사망(실종 포함)	1	0	0	0	0
	부상(환자 포함)	9	7	7	5	3

6) 재정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합계 ('20~'24)	'21	'22	'23	'24	'25
계	302	72	60	72	48	50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82	50	25	50	27	30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120	22	35	22	21	20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점검
 - 건축물 각 분야(공동주택)
 - 해빙기, 동절기 및 상·하반기 점검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대상

- 대 상

- 서구 관내 공동주택

- 점검시기

- 정기점검 : 구조부 및 외관 등 안전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반기 1회)
- 특별점검 : 태풍 등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
-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의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 점검내용

- 노후불량건축물
 - * 건축물의 구조안전도 및 위법내용
 - * 옹벽의 구조적인 안전여부
 - * 절개지 구조적인 안전여부
 - * 배수시설 이상여부
 - * 기타 축대 등 위험요소 진단

나) 대비단계

○ 자재의 비축·수급 장비 및 시설의 확보

- 주민대피계획 수립

· 사전준비 단계

- * 각 주민센터별 주민대피 조건 설정
- * 재난유형에 의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 시행
- * 경찰, 소방서,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및 사전임무 분담
- * 평상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 주민대피를 위한 현장 CP 운영 및 홍보

- 민·관·군 공동대응 체계 구축

- 군부대(17보병사단) · 유관기관 인력, 장비지원체계 구축
- * 자재확보, 비축단계별 동원장비 투입

- * 협약 시 동원 시기·대상 및 방법 등 합동대응체계
- * 사전협의(인력·장비·공급선 등)
- 피해시설 수습·복구
 - 수습복구는 1차적으로 서구 재난사고총괄부서의 책임 하에 실시
 - 대책위원회 소집방안 강구, 관련기관 협조방안 협의
 - 사고원인, 피해내용 조사 철저 및 사전 복구대책 마련
 - 기존 재난사고를 토대로 재난의 근원적인 요인을 분석
- 재난의 보고체계
 - 재난발생 최초 발견자, 건축물 관리자 : 소방관서 등에 신고
 - 재난상황관리 체계도에 따라 재난발생상황 신속보고·전파

다) 대응단계

- 시설물 재난대응 근무체계 확립
 - 단계별 근무체계
 - 사전대비체계
 - *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판단 시
 - * 상황전개에 따라 구성운영 및 근무편성
 - 비상단계
 - * 재난상황전개에 따라 근무조 편성 운영
 - * 상황총괄자, 상황전파반, 실무반 등
 - 근무요령
 - * 근무자는 비상 시 확보된 구청 재난종합상황실에 정위치 근무
 - * 근무자는 관련분야 임무에 대한 재난상황관리
 - * 근무자는 체제별 근무시기에 맞추어 상황종료 시까지 근무
 - * 근무조 편성은 요일·시간별로 구분하지 않고 순번제 운영
 - 재난발생 피해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도

-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매뉴얼 활용
-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 중앙재해대책본부상황실 : NDMS(최초, 중간, 최종보고)
 -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 재난발생 후 인명피해 및 국민생활 필수시설 등 피해상황에 관한 재난정보수집, 상위기관 및 재난관계기관에 보고, 전파
 -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 통신수단의 확보
 -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
 - * 상시 비상연락망 구비
-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
 - 재난현장 비상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재난현장
 - * 긴급구조 대응계획 및 단계별 현장 지휘체계 활용
 - 구조·구급활동 지원
 -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등
 - * 군부대의 구조·구급활동 지원
 - 피해상황 파악·전파
 - *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가축폐사 등 피해현황 파악 및 전파
- 응급 구조·구호 활동 대책
 - 비상급수 및 생필품 공급
 - * 비상급수 : 정수장 가동이 정지된 지역, 이재민 공동수용시설 등
 - * 생필품공급 : 필수품목만을 포장 피해발생 즉시 이재민 공급 기준에 의해 기 확보된 생필품의 긴급 수송지원

라) 복구단계

- 신속한 재난응급 복구 대책
 - 원활한 재난복구 대책
 -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계획 수립
 - *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피해상황, 복구계획 수립 및 정리
 - 재난원인분석 조사단 구성·운영
 - 재난원인분석 조사단
 -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 강구를 위해 학계·민간전문가 등을 위주로 편성·운영
 - * 직무범위
 - 재난원인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 홍수범람 흔적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측량, 지적도 대조, 위성사진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사후 재난관리체계 등의 재정비
 - 유관기관 협력 및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 지자체 방재교육과 연계하여 상호 협력체계 구축
 - 대국민 홍보
 - * 홈페이지를 통한 기상악화 현상별 대처요령 홍보(국민안전처 홍보자료 활용)
 - * 각종 소식지에 태풍, 집중호우에 대한 관련내용 게재 요청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작성 부서	주택 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정민 주택지원팀장	032-560-3001 bw410103@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오영진 주무관	032-560-3003 ddwddw205@korea.kr	예방	X

◇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안전점검 대상 점검	100%	100%	100%	(이행개소/선정개소)*100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준공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15층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 사업내용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의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에 따라 점검 후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의 3단계로 구분하여 안전상태 결정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종합점수 범위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추진성과(최근 3년)

추진년도	안전점검 실시 대상	비고
2022년	55개동(아파트 45개동, 연립 10개동)	
2023년	42개동(아파트 40개동, 연립 2개동)	
2024년	55개동(아파트 54개동, 빌라 1개동)	

'25년도 주요 계획

-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시행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3/4분기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발주	8월
4/4분기	- 실태조사 시행	9월
4/4분기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FMS 등록 - 관리주체 통보 - 지정사항(지정사실 및 사유 등) 공보 또는 게시판 고시 - 실태조사 결과 제출	11월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과-외)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20	22	35	22	21	20	25	30	35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120	22	35	22	21	20	25	30	35	

[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작성 부서	주택 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정민 주택지원팀장	032-560-3001 bw410103@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오영진 주무관	032-560-3003 ddwddw205@korea.kr	예방	X

-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의2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안전점검 신청대상 점검	100%	100%	100%	(선정개소/신청개소)*100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경과된 임의관리 공동주택단지
- 사업내용
 -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추진성과(최근 3년)

추진년도	안전점검 실시 대상	비고
2022년	4개단지 9개동	
2023년	7개단지 15개동	
2024년	4개단지 12개동	

□ '25년도 주요 계획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 사업안내·홍보 및 신청접수 - 현장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1월 2월 3월
2/4분기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점검대상 결정 통지 - 업무위탁기관 참여 요청 및 위탁계약자 선정	4월 5월
3/4분기	- 안전점검 실시 및 완료, 점검결과 통보	8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3)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57	50	25	25	27	30	35	40	40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57	50	25	25	27	30	35	40	40	

나) 기타시책

(1) 대형공사장 안전점검(공동주택)

작성 부서	주택과	작성자 및 연락처	황수광 주택1팀장	032-560-4731 hwangsukwang@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최낙원 주무관	032-560-4734 xg2936@korea.kr	예방	X

- ◇ 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 「주택법」 제93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100%	100%	100%	(점검완료수/점검개수) * 100

□ 주요내용

- 해빙기, 동절기 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 추진
 - 점검대상: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공사 공사현장
 - 점검기간: 2025. 2월 ~ 3월(해빙기) / 2025. 11월 ~ 12월(동절기)
 - 점검방법
 - 현장대리인, 총괄감리원 주재 자체점검
 - 점검반에 의한 현장 안전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추락, 붕괴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대비 안전관리 적정여부
 - 대설, 폭설, 강풍 등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관리 적정여부
 - 타워크레인 등 대형 건설기계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주요구조부(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등) 균열관리 적정 여부
 - 중대재해 예방 현장 관리실태 적정여부 등

- 우기 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
 - 점검대상: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공사 공사현장
 - 점검기간: 2025년 6 ~ 7월 중(예정)
 - 점검방법
 - 현장대리인, 총괄감리원 주재 자체점검
 - 점검반에 의한 현장 안전점검
 - 중점 점검사항
 - 대규모 절 · 성토 구간의 보호 대책 여부
 -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의 지반침하 여부
 - 안전펜스 등 위해방지시설 설치 여부
 -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 착용 여부
 - 상주 감리자 및 건설기술자 배치 적정 여부

□ '25년도 주요 계획

- 해빙기, 동절기 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 계획 수립
- 해빙기, 동절기 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 동절기 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 지적사항 정비 요청
- 해빙기, 동절기 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추진성과

추진년도	안전점검 실시 대상	비 고
2022년	총 46개소 (우기 26개소, 동절기 20개소)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2023년	총 59개소 (해빙기 19개소, 우기 26개소, 동절기 14개소)	
2024년	총 51개소 (해빙기 14개소, 우기 20개소, 동절기 17개소)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실시	2~3월
2/4분기	우기 대비 공동주택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실시	6~7월
3/4분기		
4/4분기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실시	11~12월

라-기 다중이용시설

1) 현 황

○ 최근 5년간 ('20~'24) 다중이용시설 사고발생 현황 없음

< 연도별 다중이용시설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관내 다중이용시설 지정 현황

구 분	합 계	판매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관광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비고
개소 수	27	14	5	5	2	1	

- 의료시설(5개소)

연번	상 호	종류	소재지	연면적(m ²)	비고
1	나은병원	종합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23(가좌동)	18216.9	
2	검단탑병원	종합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9번길 5(당하동)	17298	
3	뉴성민병원	종합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70 (석남동)	6474.9	
4	카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종합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심곡동)	104663.7	
5	온누리병원	종합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99 (왕길동)	6482.9	

- 판매시설(14개소)

연번	상 호	종류	소재지	연면적(m ²)	비고
1	서경백화점	백화점	가정로 369(신현동)	4,651.00	
2	홈플러스 가좌점	대형마트	가정로 151번길 11(가좌동)	42,794.00	
3	탑스빌웰빙타운	쇼핑센터	완정로 70(마전동)	14,235.00	
4	이마트 검단점	대형마트	서곶로 754(당하동)	20,765.00	
5	롯데마트 검단점	대형마트	원당대로 581(마전동)	33,796.00	
6	HomeCC인천점	전문점	중봉대로 393번길 16(원창동)	20,365.00	
7	검단공구상가	전문점	보듬5로 13(오류동)	5,677.00	
8	모다아울렛	전문점	북항로32번안길 50(원창동)	44,660.76	
9	롯데마트 청라점	대형마트	청라커널로 252(청라동)	10,761.59	
10	홈플러스 인천청라점	대형마트	중봉대로 587(청라동)	25,820.01	
11	홀리랜드	쇼핑센터	서곶로 788	13,544	
12	인천축산물 백화점	전문점	가좌로96번길 32	22,460	
13	청라스퀘어세븐	쇼핑센터	청라루비로76(청라동)	64,204	
14	코스트코 청라점	대형마트	서구 첨단서로 188(청라동)	16,046.00	

- 종교시설(5개소)

연번	상 호	종류	소재지	연면적(m ²)	비고
1	검단중앙교회	종교시설	서구 신석로 70	5,417	
2	예수중심교회	종교시설	서구 가좌동 472번지	8730	
3	수정교회	종교시설	서구 불로동 416-4번지	5082	
4	신현교회	종교시설	서구 신현동 292-5번지	7169	
5	청라주안중앙교회	종교시설	서구 청라동 98-3번지	7410	

- 관광숙박시설(2개소)

연번	상 호	종류	소재지	연면적(m ²)	비고
1	조양관광호텔	관광숙박시설	서구 서곶로301번길 21(심곡동)	8,946	
2	호텔 원티드	관광숙박시설	서구 북항로32번길 20	6289	

- 문화 및 집회 시설(1개소)

연번	상 호	종류	소재지	연면적(m ²)	비고
1	지젤엠 청라	문화시설	서구 청라 에메랄드로 99	7148	

2)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20~24') 다중이용시설 사고발생 현황 없어 해당사항 없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2019.7.1.)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위기상황 대응역량 향상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①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 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2019.7.1.)

②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주요 내용 개요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위기상황에서 매뉴얼이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나) 대비단계

①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 지도·점검

- 추진목적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조치 활동의 상시화 도모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③항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에 따른 판매·문화 등의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점검방법 : 상·하반기 전수 지도·점검(설, 추석 전 시행)
 - 점검내용
 - (매뉴얼) 비상연락망 유지, 비상벨 작동여부, 개인별 임무부여 내용 확인 등
 - (훈련) 위기상황 대비 초동대응을 위한 훈련 실시 여부 확인
 - (예방활동) 비상구, 소화전 등 주요 안전시설 앞 물건 적치 여부 확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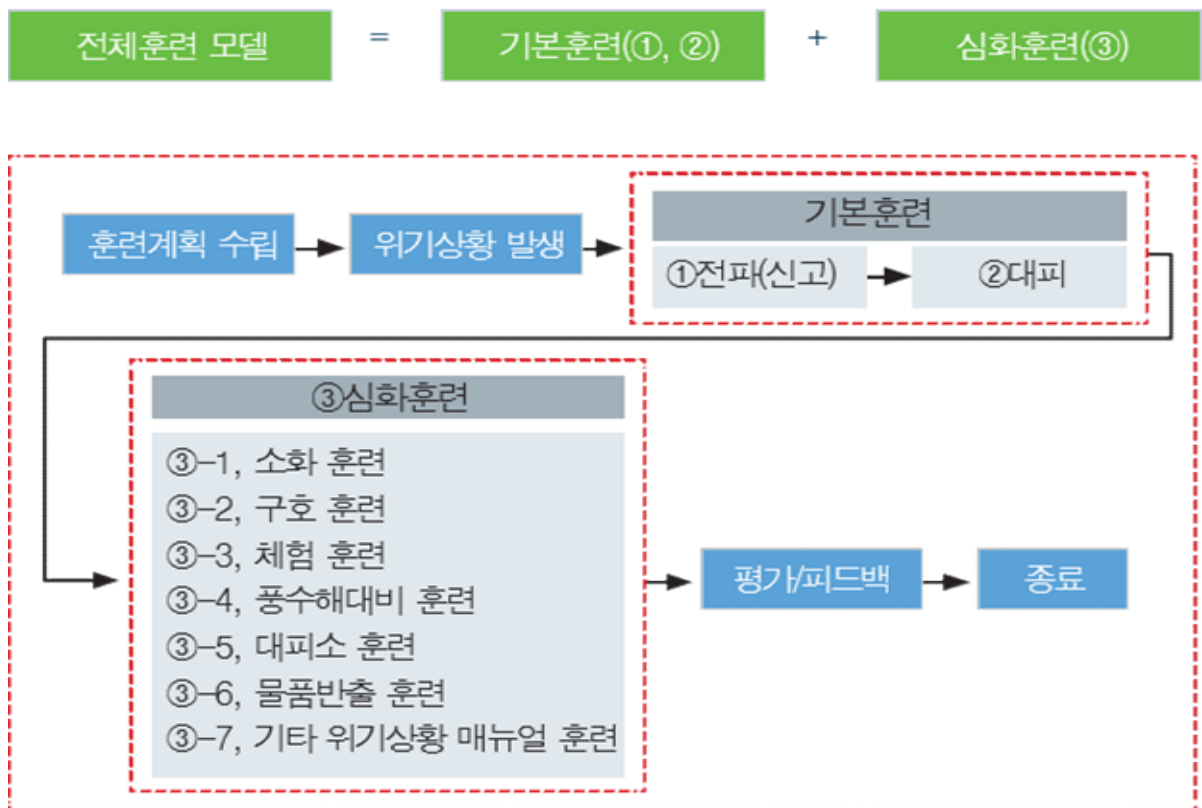
②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응 훈련 강화

-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②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9 ②~③항
- 목 표
 - 재난상황을 가정한 위기상황 대응 훈련 실시로 실전 자체 대응역량 강화
 - 훈련 평가표를 통한 문제의 원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평가, 피드백, 계획 재수정
 -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와 물적 피해 경감

○ 주요 내용

- 재난 안전의 중요성 인식, 재난 유형별 구체적인 문제 해결 전략 및 역할별 올바른 대응 역량 기술 습득을 통한 위기상황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
- 훈련은 위기상황 유형(화재, 지진, 테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등)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시설은 사용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위기상황 유형에 따른 대응훈련은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전원이 참여하는 실제 훈련을 하여야 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함

○ 위기상황 훈련시스템 체계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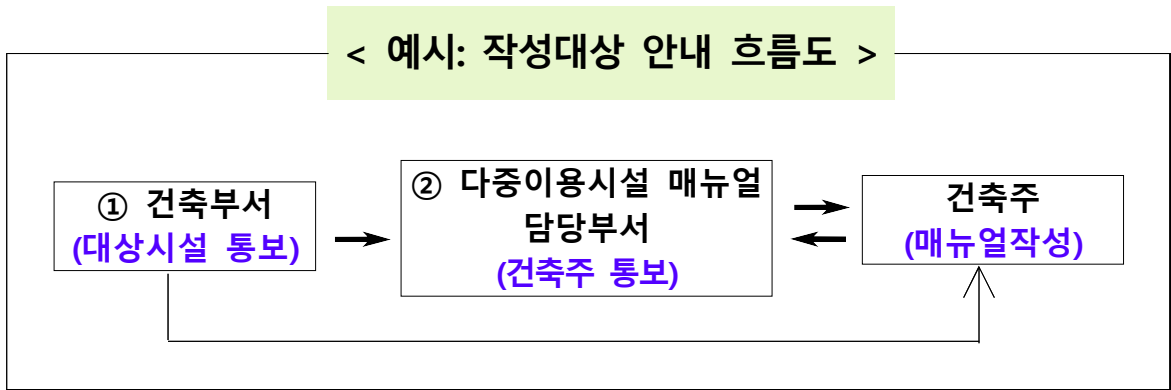
③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리 철저

- 매뉴얼 작성 대상 시설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8)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구 분	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이와 유사시설)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이와 유사시설)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과 이와 유사시설 및 관람석이 있는 체육관 및 운동장)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및 이와 유사시설)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이와 유사한 것) ◦ 소매시장(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의류, 가전, 가정용품 등 판매전문점) ◦ 상점: 일용품 판매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완구,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및 게임제공업 시설(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일반·인터넷컴퓨터·복합유통게임) <p style="text-align: center;">※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복권발행업·현상업·회전판돌리기업·추첨업·경품업은 제외</p>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대상시설 관리(신규, 용도변경, 휴·폐업 등)

- 건축물 허가 후 사용검사 또는 용도변경(사용승인·신고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사용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군·구 위기상황 매뉴얼 담당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



- ① 건축물 인·허가 부서에서 사용검사 또는 수리 시 안내하고 해당 시설물 사용검사 또는 수리 시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담당 부서에 반드시 통보
 - ②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총괄부서에서 매뉴얼 표준안을 첨부하여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사용승인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토록 통보하고 매뉴얼 표준안을 참고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매뉴얼 작성하도록 안내
 - 매뉴얼 담당부서는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휴·폐업 된 시설물의 현황 정비 철저
 - 정기변동 보고 : 매년 2회(1월 10일, 7월 10일) 시·도에 정기 보고
- ※ 별도 정기 전수 점검을 한 경우 그에 따르고 신규 시설은 매뉴얼 담당 부서에서 지도 점검(상·하반기)시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된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시 고려사항

- 위기 유형

- 화재, 지진, 테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 그 외 시설 등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 * 정전, 동파 등 시설 특성에 따른 위기유형 포함 가능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 체계
-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 위기상황별·단계별 조치 사항
-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방법

-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유형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유사한 경우 해당 위기유형은 통합하여 작성 가능
- 위기유형별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
- 조치사항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작성
- 누구라도 바로 실행 할 수 있도록 작성
-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작성
- 간결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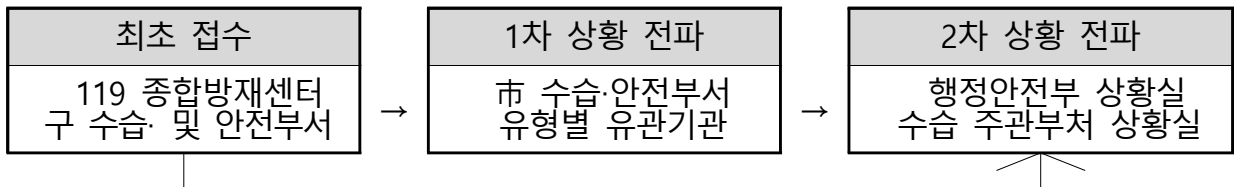
다) 대응단계

1) 재난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처

○ 초동 대응 방향

- 재난상황 근무 체계 확립
-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전파 체계 구축
- 현장 파악과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한 초동 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운영

○ 보고 계통에 따라 신속한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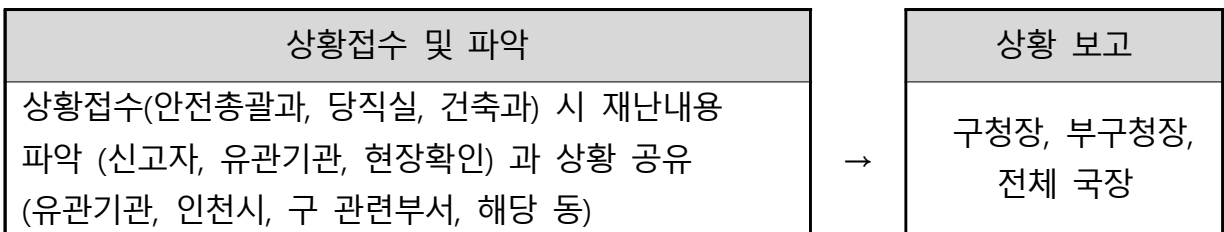


*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fax, 문자 등 신속한 상황 전파(문서작성 보고 지양)

- 인천시 및 상급부서 보고는 중대규모 재난 시 보고함

○ 상황 접수 및 보고

- 평시 :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 (032-560-2991)
- 야간 및 공휴일 :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 (032-560-2991)
- 비상시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032-560-0910~0918)
- 안전총괄과 또는 당직실 등 상황접수 방법
(당직실 및 재난수습부서에서 간부 공무원 선보고 시 안전총괄과에 즉시 상황전파)



- 안전총괄과 : 상황보고, 전파(유선보고 후 NDMS 및 FAX)

▶ 청 내 : 상황실장(안전총괄과장) → 차장(부구청장) → 본부장(구청장)

▶ 상급기관 : 구상황실 → 시상황실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인천광역시 : 종합상황실(440-1881)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044-205-8000)

▶ 유관기관 :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서구지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 재난수습 주관부서

(안전총괄과와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상황 종료 시 까지 상황공유 실시)

① 상황 연락체계 유지	• 구 관내 : 청내 관련 협조부서, 유관기관, 단체 등 • 인천시 관련부서, 중앙 관련부서 등
② 소속직원 현장확인	• 즉시 소속직원 파견으로 사고 현장 확인 【상황 유지용 무전기 및 근무조끼 착용 : 안전총괄과 수령】
③ 구 사고수습본부 가동	• 소규모 재난 시 구 자체 수습 완료 후 상황 종결 보고 • 필요시 해당 실·국 사고수습본부 운영(군·구 지원)
④ 구 차원 대응 필요시	• 상황판단회의 개최 건의(수습부서 → 안전총괄과) • 재난 규모(경계 또는 심각)에 따라 대응 필요성 검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여부)

② 재난 대처계획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토교통부(2019.1.)
 -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사고수습 주도, 국토부는 건설장비, 긴급점검·원인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시설안전공단 등) 지원

【 10분 내외 : 상황접수 】

소속		임무 및 역할 (조치사항)	
현장	현장소장/ 건물주 등	○ 119, 112 등 인명구조 요청 및 자체 인명구조 * 현장소장.건물주 → 119 → 소방청 → 국토부	
	119(소방서장)	○ 사상자 구호 / 교통통제.정리(경찰 지원)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지자체	(정) 단체장 (부) 부단체장	○ 119 정보 접수 즉시 유관기관* 상황전파 * 우리 부, 행정안전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 건축.주택 및 재난 담당직원 현장 출동	
국토부	지방청	(정)건설관리 실장 (부)담당과장	○ 시설안전과로부터 상황접수 및 청내 전파 ○ 건설관리실(국토사무소) 직원 중 가까이 위치한 직원 (A, B) 현장출동 지시 * 지방청(A)는 상황파악, 지방청(B)는 현장 연락채널 담당
	기술안전	(정)기술안전정책관 (부)시설안전과장	○ 상황접수 즉시 장차관·BH 보고 및 부내 전파 ○ 행정안전부·지자체와 연락체계 확립 ○ 공단 전문가(C) 즉시 파견
	건축주택	(정)담당정책관 (부)담당과장	○ 인허가정보, 법령정보 등 사고관련 사실 확인 * 인허가 부서 등과 연락 또는 자체 정보를 활용하여 인허가 정보, 법령 위반 사항 등 상황보고와 언론대응 준비를 위한 사실 확인 진행 ○ 본부 직원(D, E) 현장 출동
		장·차관님	○ 국토부 복귀 및 사고내용 파악

【 30분 내외 : 대응체계 확대 】

소속		임무 및 역할 (조치사항)		
현 장	<119> (소방서장) <지자체> (담당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구호 / 교통통제.정리(경찰지원) ○ 군.경 등 인력, 구조장비 등 지원 요청 ○ 구조상황, 구조대의 요청사항 등을 지자체에 보고 ○ 현장지휘소 설치 시작 		
지 자 체	(정)단체장 (부)부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보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시작 		
국 토 부	지방청	(정)청장 (부)건설관리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설치 시작 ○ 현장출동 인원의 위치파악 	
	본 부	(정)기술안전정책관 (부)시설안전과장	건설 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규모 등 상황파악 및 수시보고 ○ 현장출동 인원 비상연락망 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시작 - 건축·주택, 홍보담당관에게 지원 요청
			건축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지원(2명 파견) ○ 현장출동 인원의 위치파악 ○ 사고관련 법령, 제도 등 정보 수집
			홍 보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동향 모니터링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지원
장·차관님		국토부 복귀 및 사고내용 파악		

【 1시간 내외 : 현장연락망 확립 】

소속		임무 및 역할(조치사항)		
현 장	통제단	(시·도)소방본부장 (시·군·구)소방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구호 / 교통통제.정리(경찰지원) ○ 군.경 등 인력, 구조장비 등 지원 요청 	
	통합 지원 본부	【지자체】 (정)부단체장 (부)국장 【우리 부】 (정) A, (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상황, 통제단 요청사항 등을 지역본부에 보고하고 지휘소 인력.장비 확충 등 지원 요청 ○ 현장출동 인원(A, B) 현장지휘소 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A) : 피해규모, 지원 사항 조사 등 상황 파악 - 지방청(B) : 수습본부, 지방청과 지속적으로 연락 	
지 자 체	지역재난 안전대책 본부	(정) 단체장 (부) 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구조 상황 수시보고.전파 및 언론대응 ○ 현장 요청사항 지원방안 마련 ○ 대피소 마련, 보건소 동원 등 구난체계 가동 	
국 토 부	상황실	(정)실장 (부)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운영 ○ 인근현장 건설장비 동원 등 지원체계 가동 준비 	
	중앙사고 수습본부	(정) 장관 (부)기술안전정책관	총 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기술안전정책관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완료 ○ 상황보고.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대응현황 홍보¹⁾ * 중대본 협의 선행, 우리 부 대응현황외 구조상황, 사고원인 등에 대한 언론대응은 현장지휘소 주관 시행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건축.주택정책관 ○ 언론보도 사실 확인 등 상황보고 지원 ○ 사고관련 법령, 제도 등 정보 수집
			홍 보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대변인 ○ 언론 모니터링, 기자단 연락 등 홍보 지원
장 · 차관님		장관님, 수습본부 지휘		

【 2시간 내외 : 사고수습 지원체계 확립 】

소속		임무 및 역할(조치사항)		
현 장	통제단	(사·도)소방본부장 (사·군·구)소방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구호 / 교통통제.정리(경찰지원) ○ 군.경 등 인력, 구조장비 등 지원 요청 	
	통합 지원 본부	<지자체> (정)부단체장 (부)국장 <우리 부> (정) D, (부)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상황, 통제단 요청사항 등을 지역본부에 보고하고 지휘소 인력.장비 확충 등 지원 요청 ○ 본부현장출동 인원(D, E) 현장지휘소 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파악 및 현지 언론대응(D), 수습본부와 지속 연락(E) - 지방청(A, B) : 본부(D, E) 지원 * 출동인원 교대 등의 대책은 소관부서가 자율적으로 시행·교대 시 본부 보고 ○ 공단 전문가(C) 현장지휘소 합류, 사고원인 조사 	
지 자 체	지역재난 안전대책 본부	(정) 단체장 (부) 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병원 연락망 형성 및 사상자 정보 확인 ○ 실종자 신고센터 설치 등 피해자 가족 혼란 방지 ○ 대피.구조 상황 수시보고 및 언론대응 ○ 현장지휘소 요청사항 지원방안 마련 	
국 토 부	지방청	(정) 실장 (부) 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장비 지원 등 본부(D)의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수습본부에 수시 상황보고 	
	중앙사고 수습본부	(정) 장관 (부) 기술안전정책관	총 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계속) ○ 상황보고.전파 및 대응현황 홍보 * 중대본 협의 선행, 우리 부 대응현황 외 구조상황, 사고원인 등에 대한 언론대응은 현장지휘소 주관시행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보도 사실 확인 등 상황보고 지원 ○ 사고관련 법령, 제도 등 정보 수집
			홍 보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모니터링, 기자단 연락 등 홍보 지원 ○ 장관 현장방문 등 홍보전략 수립
장·차관님		우리부의 사고수습 지원체계 확립 후 장관님 현장방문 가능 (건축·주택정책관 수행)		

라) 복구단계

- 사고원인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확인
 - 관련 분야별 전문가 및 자체 점검반을 활용하여 사고원인 조사
 -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 상황 조사
 - 사고 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최종보고
-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
 - 사고 조치 및 복구단계 보완사항 발취·개선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실시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강성재	032-560-2881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사회재난팀장 김환길 주무관	bada68@korea.kr 032-560-2884 khg960407@korea.kr	예방	X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도입 및 훈련 실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14.12.30.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대상)(‘17.7.26.개정)에 따라 시행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률	100%	100%	100%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개소 수/ 다중이용시설 개소 수)*100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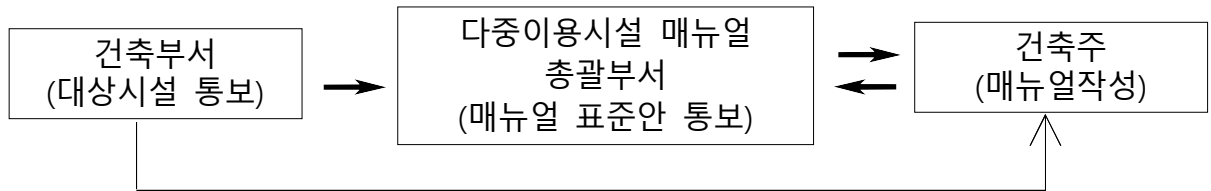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추진성과(최근 3년)**

- 2022년 ~ 2024년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실적 및 변동사항 조사 (반기별 1회 실시)

□ **'25년도 주요 계획**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실적 및 변동사항 조사 (7월, 12월)
- 추진체계



- ① 건축물 인·허가 부서에서 사용검사 또는 수리 시 안내하고 해당 시설물 사용검사 또는 수리 시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담당 부서에 반드시 통보
- ②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총괄부서에서 매뉴얼 표준안을 첨부하여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사용승인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토록 통보하고 매뉴얼 표준안을 참고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매뉴얼 작성하도록 안내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4/4분기	- 민간 다중이용시설 신규 허가 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수립토록 함 - 민간 관리주체 주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위기 대응 훈련 실시	연중 (1월~12월)

나) 기타시책

(1)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강성재	032-560-2881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사회재난팀장 김환길 주무관	bada68@korea.kr 032-560-2884 khg960407@korea.kr		

◇ 이용객이 급증하는 명절 연휴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14.12.30.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방법 등)(‘17.7.26.일부개정)에 따라 시행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관내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100%	100%	100%	(점검 개소 수 / 다중이용시설 개소 수) *100

□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설 · 추석 명절 연휴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표본점검
 - 안전·전기·가스 분야별 점검반 구성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
 - 민간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 관리토록 안내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안전관리 실시토록 지도

□ 추진성과(최근 3년)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022년	-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월
	-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9월
2023년	-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7월
2024년	-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9월
	- 겨울철 대형화재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월
	-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2월
	-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9월

□ '25년도 주요 계획

- 설·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월, 9월)
 - 명절 연휴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표본점검실시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	1월
3/4분기	-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	9월

마. 유해화학물질 (우선순위 공동4위 / 주요유형)

1) 현 황

○ 최근 5년간 사고현황

< 연도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피해현황 >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건)		1.4	1	0	1	3	2
재산피해(천원)		0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1.8	8	0	1	0	0
	사망(실종)	0.2	1	0	0	0	0
	부상	1.6	7	0	1	0	0

※ (통계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 사고(2024.12.)

○ 사고원인에 따른 분류(최근 5년)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사고원인	계	1.4	1	0	1	3	2
	작업자 부주의	0.4	1	0	1	0	0
	시설 결함	0.6	0	0	0	1	2
	운송차량	0.4	0	0	0	2	0

※ (통계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 사고(2024.12.)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석유화학 공업단지(%)	영세업체 밀집 산업단지(%)	가스원유 비축시설(m ²)	가연성 분진 취급시설(%)
서구	0.05	3.87	1,726,839	13.49
비교지역 평균	3.87	1.36	70,375	4.41
항 목	중공업 산업단지(%)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영유아(%)
서구	3.87	0.29	0.23	6.77
비교지역 평균	2.76	0.11	0.03	4.66

2) 원인분석

- 서구는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7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높아 화학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화학물질 사고원인에 따른 분류를 보면 시설 결함 및 작업자 부주의 등 인재에 의한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

3) 관련 계획 및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44조
 - 화학사고 발생시 신고 및 조치, 현장 대응에 관한 내용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사고 방지 교육 등을 통한 화학사고 발생 제로화 목표

< 연도별 목표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건)	0	0	0	0	0
재산 피해(천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없음

기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업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2015.1.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 업무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참여
- 취약시기 사업장 주변 순찰 강화 및 안전관리 홍보

나) 대비단계

① 유해화학물질 방제 인력·장비 확보

- 방제 장비·자재·약품 확보 및 적재적소 비치
 - 보호의, 방제 약품, 방제 장비 등 비치 및 관리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방제약품 판매업체 현황 파악

② 화학사고 대비 유관기관 대응체계 유지

- 사고대응 유관기관·부서와 상시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 대상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소방서, 경찰, 군부대 등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근무 태세 확립

③ 사고 대비 교육·훈련 실시

- 장소별·유형별 유해화학물질 사고 관련 교육 실시 및 참여
-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고 유형별 모의 도상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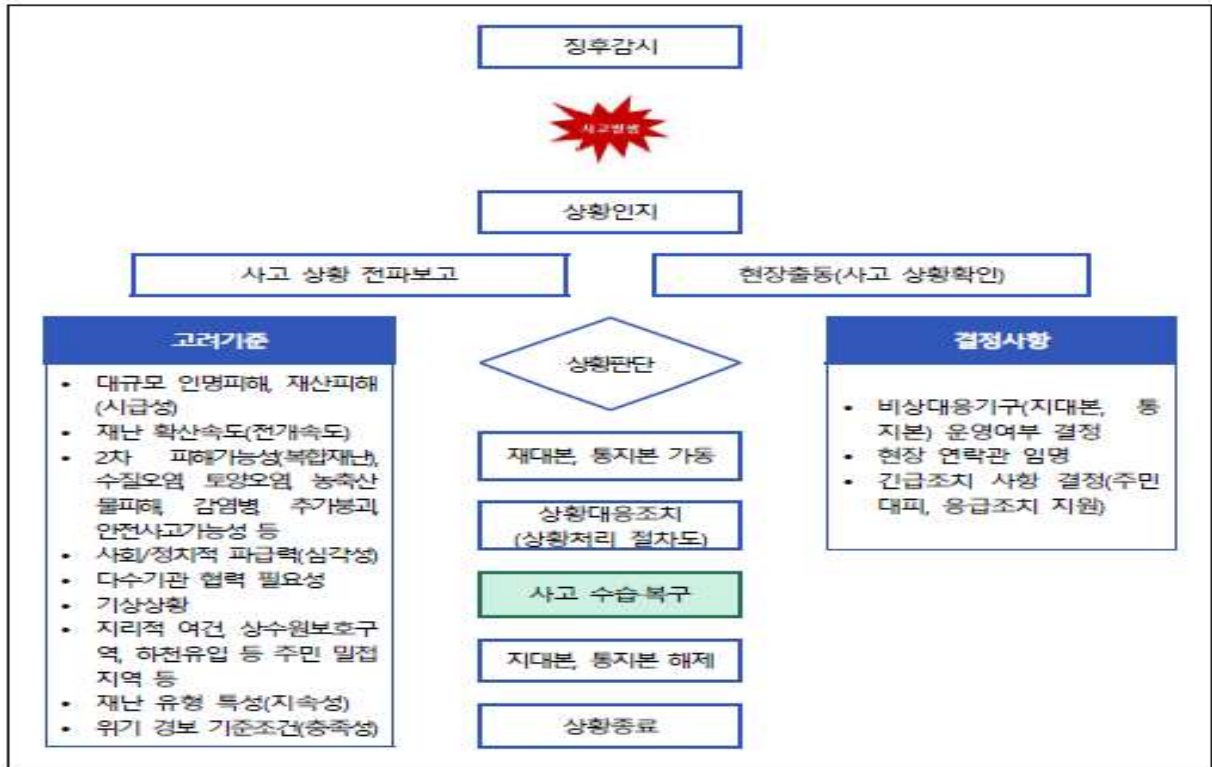
④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상위기관 매뉴얼 개정에 따라 행동매뉴얼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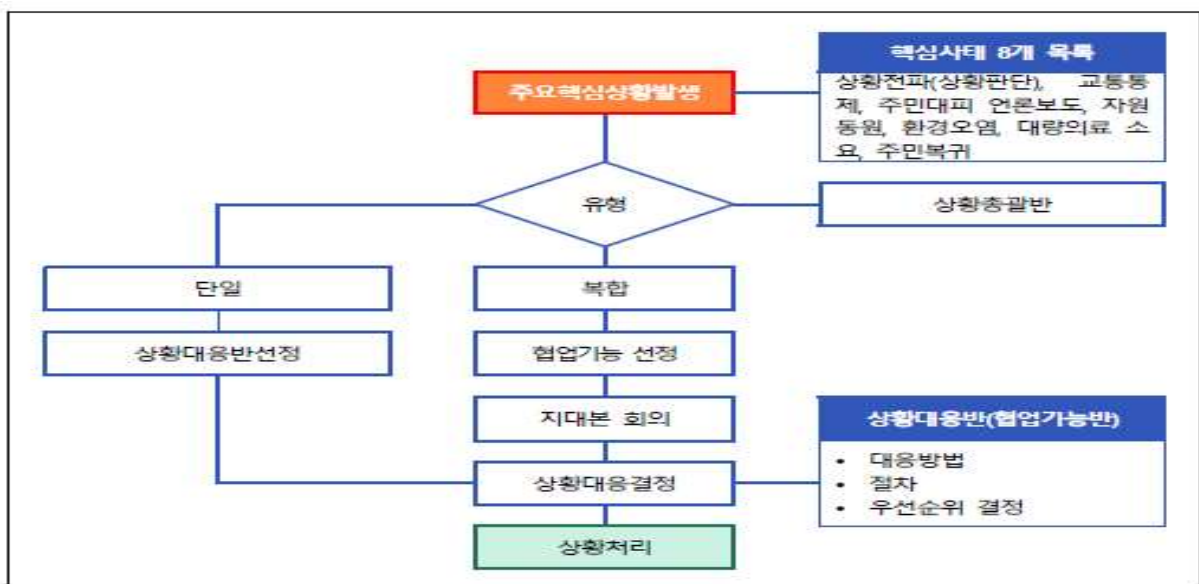
다) 대응단계

1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사고 대응체계

○ 재난 대응 절차도



○ 상황처리 절차도



○ 화학사고 위기경보 단계

구분	판단기준	주요활동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계획 수립 및 실습 대피 경로, 대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비상 연락망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후 감시활동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점검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시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유출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유출누출되어 방재작업이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공동 대응체계 가동 준비 지시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유출누출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5명 이상)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유출누출되어 방재작업이 3일이 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공동 대응체계 가동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유출누출사고 대규모 인명피해(10명 이상)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유출누출되어 방재작업이 5일이 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가용 자원 총동원 지원을 위한 중대본 운영 건의 사고피해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 공동 대응체계 가동 강화

※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이 복잡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 위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심각”단계 발령 시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2] 재난상황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 신고 : 누구든지 화학사고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

- 접수처

신고(접수)처	주간		야간(당직실)	
	전화	팩스	전화	팩스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8~9	044)201-6830	044)201-7440~1	044)201-7442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01	031)790-2899	031)790-2590	031)790-2600
시흥화학재난합동 방재센터	031-470-2484	031)470-2449	031-470-2454	031)470-2449
인천광역시	032)440-8581	032)440-8683	032)440-2222	032)440-8642
인천서구	032)560-4354	032)560-2752	032)560-4222	032)560-2835
소방서, 경찰서 등	소방서(119상황실, 안전지휘팀 723-5417), 경찰서(112)			

※ 당직실 근무자는 접수 즉시 화학사고 담당자에게 연락

- 접수 시 확인사항

- 접수사항 : 접수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접수자
- 확인내용 : 발생일자/시간, 발생장소, 위기유형, 사고물질, 사고 원인, 원인물질의 환경 확산 현황, 피해현황 등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시 환경관리과과장은 상황보고 및 전파
- 보고대상 : 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 전파대상 :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시 환경안전과,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중부 지방고용노동청, 17사단(필요시)
- 전파방법 : 전화, FAX, 서면 등
- 위기상황 평가 및 경보발령
- 환경부 자체위기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자체위기평가회의 시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 위기경보 발령 및 발령 수준에 따른 현장 대응 조치
- 돌발상황 발생 시 접수기관은 초동 조치 시행과 동시에 보고 및 협조 요청

○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 시행**

- 신속한 초동 조치, 관계자 비상 소집 및 상황전파 등 상황유지
- 사고 규모, 원인물질 및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
- 사고 관련 유관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의 원활한 지원체계 구축
- 화학사고 수습상황 모니터링

○ **2차 환경오염사고 확산방지조치 시행**

- 화학사고 지역,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로 제2의 환경오염 사고 확산 방지
- 사고 유형에 따라 방제 관련 전문기관의 방제 기술 또는 특수 방제 장비 등을 지원요청 및 신속한 방제활동 실시

라) 복구단계

- 긴급구조 구급이 완료된 후 유출사고 주변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수습복구 시행
 - 신속한 수습·복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 장기 이재민에 대한 대책 마련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유해화학물질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환경 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소연 환경정책팀장	032-560-4026 soyonkim9757@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차민철 주무관	032-560-4354 ghostmk7@korea.kr	예방	X

- ◇ 화학사고 발생 대비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지속 확인·관리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매뉴얼 개정에 따른 승인 여부

□ 주요내용

- 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관련한매뉴얼 개정 등
 - 유관기관 협조사항 및 비상연락망 지속 관리

□ **추진성과(최근 3년)**

- 2022.05.: 비상연락망 현행화
- 2022.1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표준안 반영 등 개정
- 2023.01.,04: 비상연락망 현행화
- 2024.01.: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내용 공통부록 반영 등 개정
- 2024.07.: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25년도 주요 계획**

- 2025.01.: 재난관리체계도 반영 및 비상연락망 정비
- 2025.05.: 비상연락망 현행화
- 2025.07.: 비상연락망 현행화
- 2025.12.: 개정사항 반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1월
2/4분기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5월
3/4분기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7월
4/4분기	화학사고 행동매뉴얼 개정	12월

바. 미세먼지 (우선순위 공동4위 / 주요유형)

1) 현 황

- 최근 5년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생 건수 및 피해 현황
 - 예비·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9.2.15.) 이후

< 연도별 초미세먼지 피해현황 >

(단위: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계	4.8	4	7	6	6	1
	예비저감조치	1.6	2	1	3	1	1
	비상저감조치	3.2	2	6	3	5	0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증)	-	-	-	-	-	-
	부상	-	-	-	-	-	-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미세먼지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석유화학 공업단지(%)	중공업 산업단지(%)	영세업체 밀집 산업단지(%)	발전시설(m ²)
서구	0.05	3.87	3.87	326,143
비교지역 평균	2.27	2.76	1.36	11,208
항 목	쓰레기매립장(개)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지역(개소)
서구	1	4.32	2.40	39
비교지역 평균	0.07	7.51	4.46	9.84

2) 원인분석

-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다양한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미세먼지 입자로 발생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2차 생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초미세먼지 고농도 원인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서 초미세먼지가 생성되고,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 및 장기간 지속
- 기상요인 등으로 인한 초미세먼지의 대규모 외부 유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의 급격한 상승 및 일정기간 지속
- 초미세먼지 생성 및 외부 유입, 대기 정체가 복합적으로 발생·반복되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 및 장기간 지속

3) 관련 계획 및 규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조(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인천서구)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서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단계적 목표 수립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 명)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목표농도	17	16	15	15	15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12월 ~ 이듬해 3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초미세먼지 감축 조치 시행
 - 미세먼지 기저농도 낮춰 고농도 빈도 및 강도 완화 선제조치

부문	과 제 명	주관부서
산업/발전	○ 대기배출업소 불법배출 등 집중단속(VOC 포함)	환경관리과
수송	○ 관급공사장(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관내 운행차량 배출가스 및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	기후대기과
생활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점검 및 적발시 행정처분 -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 집중점검	기후대기과
	○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먼지 사전 제거) ○ 집중관리도로 확대 지정·운영(먼지 사전 제거) - 3개 구간 총 17.6km(일 2회 이상 청소 강화)	자원순환과
농업	○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단속	자원순환과
	○ 농·어업인 대상 불법소각 금지 등 홍보	
건강보호	○ 민감·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복지정책과
	○ 옥외작업자 마스크 보급	자원순환과
구민 활동공간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지하역사, 대합실 습식청소 강화 -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등 점검 강화	환경관리과
지역특화 사업	○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 운영	기후대기과
정보제공	○ 계절관리제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 홍보 강화 - 전자 홍보 강화(홈페이지, 전광판 등)	기후대기과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행정·공공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사장 및 공공·의무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계획 관리카드 사전 준비, 비상연락망 현행화
-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대응요령 등에 대한 사전 홍보로 주민 건강 피해 최소화

나) 대비 및 대응단계

- 클린서구 대기오염상황실 운영
 - 근무편성: 평일 2개조, 휴일 1개조, 악취 24시 콜센터 4개조 4교대근무
 - 운영시기: 비상저감조치 등 관련 경보발령 요건 충족 시
 - 추진사항
 - 비상저감조치 총괄 및 이행 결과분석, 일일 보고
 - 대기오염 위기경보 발령 및 해제 문자발송 및 상황전파(전 직원, 사업장, 공사장), 행동요령 홍보
-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전파 및 초기 대응
 - 초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설치·운영(필요시)
 - 신속한 상황 전파·보고
 - 피해상황 등 특이사항 파악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조치사항 점검
- 비상저감조치 비상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경계단계에서 상황판단회의
 -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조치내용 총괄, 대내외 보고·전파 지속
 - 언론대응 준비
 - 고농도 상황, 조치내용 및 국민행동요령 주기적 홍보



- ➡ **발령·전파** : ① 공문(환경부→시행기관), 문자(환경부→시행기관 및 일선기관)
 ② 공문·문자(시행기관→일선기관)
- ➡ **결과보고** : ③ 일선기관 → 시행기관(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 민간사업장 → 수도권대기환경청
 ④ 중앙부처 시행기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자체 시행기관 → 시·군·구 → 시·도
 ⑤ 수도권대기환경청, 시·도 → 비상저감협의회(환경부)

○ 위기경보 수준

구분	판단 기준	비고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u>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는 발령기준 충족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일 $50\mu\text{g}/\text{m}^3$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 예보 ③ 내일 $75\mu\text{g}/\text{m}^3$ 초과 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후 감시 강화 ◦ 비상저감 착수 (비상저감조치 1단계) ※ 인천시 2단계로 격상대응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u>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 1시간 $150\mu\text{g}/\text{m}^3$,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75\mu\text{g}/\text{m}^3$ 초과 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조체계 가동 ◦ 공공부문 저감 강화 (비상저감조치 2단계)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u>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 1시간 $200\mu\text{g}/\text{m}^3$,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150\mu\text{g}/\text{m}^3$ 초과 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 가동 (비상저감조치 3단계)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전국적으로</u>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 1시간 $400\mu\text{g}/\text{m}^3$,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200\mu\text{g}/\text{m}^3$ 초과 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차원의 대응 태세 (비상저감조치 3단계)

○ 비상저감조치 발령단계별 부서 조치사항

부서별 조치사항	예비저감조치 (50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1단계 - 관심 (1~2일차)	비상저감조치 2단계 - 주의 (3~4일차)	비상저감조치 3단계 - 경계/심각(5일 이상)
<주관> 기후대기과	상황전파, 공문 발송, 옥내·외 전광판/홈페이지 발령상황 게시	+ 청내 안내방송(2회), 보도자료 배포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지대본) 운영, 상황실 가동
	공공 공사장 시간 단축조정	+ 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점검, 관급공사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노후건설기계 제한, 민간 공사장 시간50%조정 등, 1사1도 클린관리제, 클린로드단 운영 + 다중이용시설 '비상저감조치' 점검, 공기환기 가동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안내	+ 단속 강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안내	
안전총괄과		재난 상황전파(재난문자 등), 전광판 게시	+ 경보발령 전파	지대본 설치·운영/실무반 편성, [필요시]주민대피명령
환경관리과	공공 대기배출 사업장 시간 단축·조정	+ 의무 사업장 점검(배출량 : 공공사업장 25~35% 추가감축, 의무사업장 10%이상 감축, 민간 사업장 자율감축)		
자원순환과	살수차/도로청소 확대 운영, 불법소각 집중단속, 영농폐기물(잔재물) 처리(수거), ※경제정책과: 영농폐기물 폐기	+ 확대 운영(3~4회 이상, 60km/대,일 이상), + 단속강화		
산림정원과	산불단속, 불법소각 단속	+ 산불감시원 건강 보호조치(마스크 등)	+ 단속강화	
총무과	청사 차량 2부제(청원경찰) 실시	+ 청원경찰/시설공단 직원 건강보호조치(마스크 등) + 공공·관용차량2부제 관련 제외비표 발급	+ 직원차량 운행전면제한	
재무과		공공·관용차량2부제 관련 공용 차량 배차제한 등,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필수차량, 친환경차량 제외)		
복지분야	영유아·노인복지시설 상황전파	+ 야외활동 자제, 공기청정기 정상가동 확인, 마스크 비치·보급	단속수업/수업중단/휴교 검 토, 이재민 관리, 장례지원, 안전취약계층 대피, 기초생활 수급자 마스크 보급	
홍보정책과	언론 모니터링, 오보 대응	+ [필요시]재난방송(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문화관광 체육과		야외공연 및 체육행사 운영 조정		

다) 복구단계

- 고농도 미세먼지 사고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 검토
- 복구 등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수습·복구 체계를 가동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 비상저감조치 점검결과 보고·평가
 - 시행 후 10일 이내 자체 점검결과를 인천시에 최종 보고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 예비저감조치 결과도 함께 제출)
- 고농도 원인분석 및 대응조치 개선방안 검토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기후 대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승호 대기관리팀장	032-560-5921 myblue11@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길종근 주무관	032-560-5924 kilkoki@korea.kr	대비·대응	X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 인천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초미세먼지 재난 행동매뉴얼 정비	100%	100%	1회	매뉴얼 정비 횟수

□ 추진성과(최근 3년)

- 주기적 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년 1회 이상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현행화
- 년 1회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25년도 주요 계획

- 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현행화
 - 상위기관 매뉴얼 변경에 따른 행동매뉴얼 개정
-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하반기 예정)

□ 주요내용

- 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구정 현황에 맞는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현행화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실무매뉴얼 개정사항 있을 경우 반영	1~3월
2/4분기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실무매뉴얼 개정사항 있을 경우 반영	4~6월
3/4분기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실무매뉴얼 개정사항 있을 경우 반영	7~9월
4/4분기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실무매뉴얼 개정사항 있을 경우 반영	10~12월

사. 도로교통 재난·사고 (우선순위 공동4위 / 주요유형)

1) 현 황

○ 최근 5년간 사고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수		1,603	1,688	1,712	1,688	1,587	1,338
인명피해	계	2,149	2,426	2,410	2,330	2,222	1,355
	사망	19	20	16	24	16	17
	부상	2,239	2,406	2,394	2,306	2,206	1,883

※ (통계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24.12.31.)

○ 차종별 사고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승용차	발생건수	1,041	1,116	1,065	1,039	1,078	909
	사망자수	8	7	8	9	7	8
	부상자수	1,475	1,626	1,509	1,438	1,510	1,291
화물차	발생건수	210	221	229	246	187	169
	사망자수	5	9	4	5	6	3
	부상자수	298	322	325	331	258	252
이륜차	발생건수	117	107	163	147	92	76
	사망자수	3	2	3	6	1	4
	부상자수	162	146	236	207	123	96
개인형 이동장치	발생건수	11	5	7	14	16	13
	사망자수	0	0	0	0	0	1
	부상자수	12	5	9	16	20	12

※ (통계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24.12.31.)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도로 교통재난·사고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지하차도(km)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지역(개소)	영세업체 밀집 산업단지(%)
서구	0.07	39	3.87
비교지역 평균	0.05	9.84	1.36
항 목	도로(km)	교량(km)	철도(km)
서구	6.01	0.13	0.34
비교지역 평균	9.93	0.25	0.59

2)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는 증가하다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교통(도로)안전시설의 꾸준한 보수정비 및 신규 설치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증가 등 교통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차종별 사고현황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주요 법규위반 행위 단속과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가 꾸준히 필요함.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교통안전법 제17조)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교통안전법 제18조)

4) 의견수렴

- (교통안전캠페인)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서부모범운전자회,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등 교통안전환경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협업사업 연중 추진

5) 목 표

< 연도별 목표 >

(단위 : 건,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1,550	1,530	1,510	1,490	1,470
인명피해	계	2,202	2,191	2,180	2,169	2,160
	사망	12	11	10	9	8
	부상	2,190	2,180	2,170	2,160	2,150

6) 재정투자 현황

< 연도별 예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계	7,127	1,050	1,100	670	680	3,62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1,182	200	200	250	250	282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540	100	100	120	120	100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	350	100	50	50	30	120
보호구역 정비 (어린이, 노인, 장애인)	3,345	550	150	150	100	2,395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1,710	100	600	100	180	730

기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구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나) 대비단계

-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시행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사업
 - 조명식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다) 대응단계

-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연간단가계약을 통한 불량 시설물 긴급정비

라) 복구단계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유관기관 협의체계 구축
 - 분기별 교통안전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시 대책회의 실시
 - 시설물 파손 원인자 파악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交通安全시설물 설치 및 정비

작성 부서	교통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인규 교통시설팀장	032-560-3041 pik74090@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김선구 주무관	032-560-3042 sg920602@korea.kr		
			안세준 주무관	032-560-3043 cs300@korea.kr		
			박지호 주무관	032-560-3044 jihopark95@korea.kr		
					예방	X

- ◇ 교통약자보호구역 내交通安全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交通安全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제4조)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交通安全시설물 설치 및 정비	95%	95%	95%	재정사업 예산집행률 (집행액/예산액)*100

□ 주요내용

- 交通安全시설물 설치 및 정비
-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
- 조명식交通安全시설물 설치
- 보호구역 정비

□ 추진성과(최근 3년)

- 交通安全시설 개선
 - 스마트횡단보도(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28개소

- 조명식 교통안전 시설물 47개소
- 노면 재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25개소
 - 노인 보호구역 확대지정 36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22개소
 -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57개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4개소

□ '25년도 주요 계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 사업기간 : '25. 01. ~ 12.
 - 사업내용 : 시선유도봉 및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 소요예산 : 282백만원
-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5. 01. ~ 12.
 - 사업내용 :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및 정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조명식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사업기간 : '25. 01. ~ 12.
 - 사업내용 : 투광기 등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보호구역 정비
 - 사업기간 : '25. 01. ~ 12.
 - 사업내용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 소요예산 : 1,995백만원
-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5. 01. ~ 12.
 - 사업내용 : 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정비
 - 소요예산 : 730백만원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 조명식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	연중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8,927	1,050	1,100	670	680	3,627	600	600	60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1,932	200	200	250	250	282	250	250	250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840	100	100	120	120	100	100	100	100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	500	100	50	50	30	120	50	50	50	
보호구역 정비 (어린이, 노인, 장애인)	3,645	550	150	150	100	2,395	100	100	100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2,010	100	600	100	180	730	100	100	100	

3 공통분야

가. 안전취약계층 지원 (우선순위 1위)

가-1) 아동·여성

1) 현 황

○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

-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표1]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8세미만 인구(천명)	8,042	7,810	7,589	7,370	7,168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221	221	183	187	181
아동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2.75	2.83	2.41	2.54	2.53

※ (통계 출처) 통계청

-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표2]

(단위 : 명, 10만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83	2.29	2.21	2.21	1.8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1.38	1.07	0.82	0.81	0.64
	익사	0.31	0.31	0.32	0.36	0.26
	추락	0.34	0.22	0.34	0.24	0.28
	화재	0.10	0.11	0.04	0.16	0.08
	중독	0.04	0.05	0.02	0.04	0.01
	기타	0.66	0.52	0.67	0.60	0.56

※ (통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망원인통계, 국가승인통계 제10154호』

· 기타 사항 : 2024.12.26. 공표

○ 여성범죄 발생건수

(단위 :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가정폭력 범죄	36	27	103	117	119
성폭력 범죄	2,820	2,635	3,035	3,748	3,490

※ (통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인천지방검찰청)』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안전취약계층 사고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지하/옥탑 거주층(%)	영세업체 밀집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명)
서구	1.98	3.87	9.63
비교지역 평균	2.57	1.36	4.71
항 목	장애인(%)	후기고령자 (75세이상)(%)	전기 고령자 (65세-74세)(%)
서구	4.26	4.32	7.53
비교지역 평균	4.94	7.51	11.18

2) 원인분석

-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05년 8.56명에서 '23년 2.53명으로 대폭 감소
- '03년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결과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소 추세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연도별 목표 >

(단위 : 건)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여성범죄	계	3,609	3,595	3,581	3,567	3,553
	가정폭력	119	115	111	107	103
	성폭력	3,490	3,480	3,470	3,460	3,450

6) 재정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계	321.2	58.9	58.9	58.6	63.9	80.9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지원	24.2	4.9	4.9	4.6	4.9	4.9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	297	54	54	54	59	76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아동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근원적 제도 실시
 - 보육시설(어린이집) 대상 교육
 -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종사자 대상 소방 및 재난대비 안전 교육 실시
 - 이용 아동 대상 5대 안전의무교육 실시
 -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참관 요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교육
 -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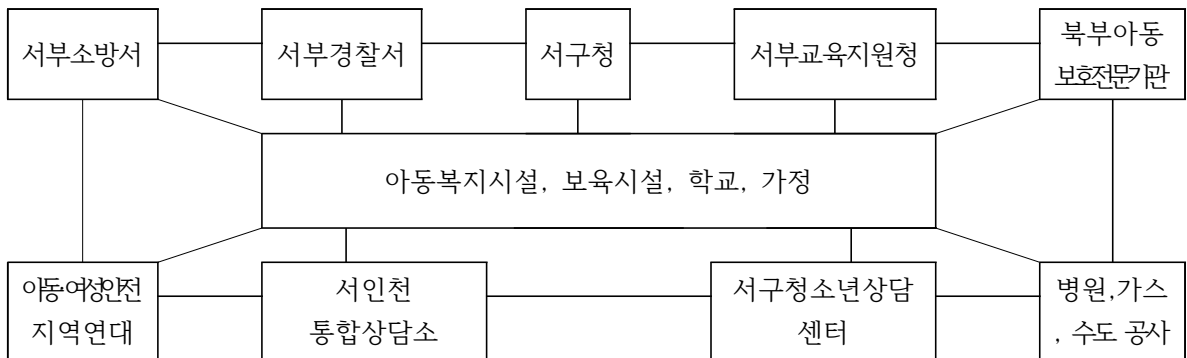
○ 안전진단 및 교육 실시 여부 점검

- 시설 안전 진단 실시 점검
 - 자체점검, 민관합동점검 등
- 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점검

나) 대비단계

○ 민관 긴급연락체계 구축

- 각 민관 상호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
- 안전사고 발생에 있어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므로 특정 기관이 아닌 모든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필요



다) 대응단계

○ 적극적인 신고 및 보고 태세 확립

- 안전사고 발생 시
 -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서는 24시간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
 -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 * 중상 이상의 신체적 피해,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 침수, 붕괴 등
- 아동학대 등 폭력 관련사고 발생 시
 - 시설에서는 즉시 112 범죄 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아동 보호 적극 개입

- 시 아동복지관과의 공조로 시설 보호 연계
- 상황판단회의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 실무사례관리회의를 통한 대응조치 논의
 - 관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 논의
 - 보육솔루션위원회
 -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복합적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아동 및 부모 지원방안 모색
 - 어린이집 보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의견 제시 등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조치
 - 아동예방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설, 행정처분 조치
 - 아동학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

작성 부서	가정 보육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명희 여성정책팀장	032-560-5731 icemoca72@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승주 주무관	032-560-5735 sjlee1004@korea.kr	예방	X

◇ 1인 여성 밀집 거주지역,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여 범죄 발생 예방 및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 해소하고자 함.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무인택배함 이용 실적	12,821건	13,000건	17,000건	무인택배함 이용 실적 건수

□ **주요내용**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 운영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운영방법 : 임차용역
 - 운영개소 : 13개소 *1개소 신규 설치예정
 - 이용절차 : 택배신청 → 택배보관(무인택배함) → 택배도착 문자발송(자동) → 본인인증(시스템) → 물품 수령

□ **추진성과(최근 3년)**

- (2022년) 이용현황 : 12개소 10,063건(2022.12.31.기준)
- (2023년) 이용현황 : 12개소 12,821건(2023.12.31.기준)
- (2024년)
 - 추진사항 : 1개소 추가 설치(블로문화체육센터)
 - 이용현황 : 13개소 16,897건(2024.12.31.기준)

□ **'25년도 주요 계획**

-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 및 무인택배함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업체 계약, 여성 안심무인택배 서비스 운영, 무인택배함 홍보	연중
2/4분기	여성 안심무인택배 서비스 운영, 무인택배함 홍보	연중
3/4분기	여성 안심무인택배 서비스 운영, 무인택배함 홍보	연중
4/4분기	여성 안심무인택배 서비스 운영, 무인택배함 홍보	연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297	54	54	54	59	76	60	60	60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운영	297	54	54	54	59	76	60	60	60	

(2) 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작성 부서	가정 보육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명희 여성정책팀장	032-560-5731 icemoca72@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승주 주무관	032-560-5735 sjlee1004@korea.kr	예방	X

-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 아동·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민·관이 연대하여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	1회	1회	1회	회의 개최 횟수

□ 주요내용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주요기능
 - 아동·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보호 정책
 -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 주요사업
 - 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연1회)
 -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연중)
 - 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실시(연중)
 - 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 추진성과(최근 3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0회	1회	1회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실시	연중
2/4분기	- 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실시 -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연중
3/4분기	- 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실시 - 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	연중
4/4분기	- 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실시	연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24.2	4.9	4.9	4.6	4.9	4.9	4.9	4.9	4.9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지원	24.2	4.9	4.9	4.6	4.9	4.9	4.9	4.9	4.9	

가. 안전취약계층 지원 (우선순위 1위)

가-2) 사회복지시설

1) 현 황

<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해당사항없음					
재산피해							
인명피해	계						
	사망(실종)						
	부상						

2)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미발생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

4) 의견수렴

- 시설 의견 청취

5) 목 표

< 연도별 목표 >

(단위 : 건,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	0	0	0	0	0
	부상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점검 제도 운영

○ 보험관리 여부 확인

-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 시설안전점검 실시



○ 안전관리 인력 확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은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하도록 함

○ 안전관리 교육·훈련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소에 상시 근무 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민관 협력 방재시스템 구축지원

○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 시설안전사고 지도·점검 등 예방조치 ● 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조사반 파견 및 지원대책반 구성운영 ●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필요시)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지도감독 ●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문제시설 조치 ●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시설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사고 발생시 시·도, 시·군·구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필요시) ● 사고수습 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을 관내 시설의 시설안전담당자로 지정 운영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시설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 ●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구축 ●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나) 대비단계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재난발생 시 연락체계	담당공무원
<pre> graph TD A[장 관] --> B[시·도지사] B --> C[시·군·구청장] C --> D[사회복지시설 (재난최초발견자)] D --> E[관계 행정기관] F[긴급구조기관 (소방기관)] <--> C F <--> D F <--> E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복지정책과 440-3463) - 노숙인시설(복지정책과 440-1543) ○ 區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 (정혜연 560-4293) - 노숙인시설 (정기원 560-4292)

다) 대응단계

□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

○ 1단계 :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후 발생 통보 : 사도 시설 담당부서, 119종합상황실, 경찰서
- 위기상황 전파 및 보고
 -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에 통보(전화, 비상방송 활용)
 - 시설 이용자 가족 및 유관기관(가스, 전기)

○ 2단계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자체 상황반 가동 및 자위소방대 출동
 - 119도착 시 까지 초기 소화활동 실시
- 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긴급 대응·출동태세 강화, 화재 초기 총력대응태세 구축
 - 소방차 진입로 및 대피로, 안전구역 확보
 - 시설이용자 대피 및 안전구역 안내, 응급처치
-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취약시설 관리

- 3단계 :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 복구조치
 - 위기경보 해제결정 및 전파
 - 화재상황 평가, 지자체 차원 대응방침 및 복구절차 협의
 - 현장 긴급복구 인력, 장비 급파 요청
 - 사상자 수 및 신원파악, 실종자, 분실물 신고접수
 - 복구활동, 이재민 수용, 구호품 제공 등 요청

라) 복구단계

□ 사회복지시설 복구대책

- 사회복지시설 화재·상해보험 수혜규모 파악
 - 사회복지시설의 보험 수혜 규모 파악, 시설 피해복구 실시
 - 피해복구를 위한 자구책 마련 노력(인적·물적자원 동원)
- 자원봉사활동인력 동원(소규모 개인시설)
 -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소규모 개인시설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인력(자원봉사센터)을 요청하여 피해현장 복구 노력
- 사고발생 요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소방관서와 협조체계 구축하여 사고발생요인 파악 및 분석
 - 사고발생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설 자체 응급조치 및 복구체계 구축
 - 시설자체 재원 및 인적자원을 동원, 응급조치 실시
 - 가용부분과 불용부분을 구분, 가용부분 응급조치를 통해 최대한 활용
 - 시설 자체 복구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복구활동 실시

부서	재난복구 시
시설장	총괄 복구책임자
행정파트	긴급지원예산 확보 및 구청 담당부서 정보교류
사회복지파트	시설이용자 대상 임시프로그램 개발
시설지원파트	안전관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역자원파트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요청
사례관리파트	위기가정에 대한 무중단 사례관리 실시

8) 세부추진대책

가) 기타시책

(1)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작성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지영 복지정책팀장	032-560-4291 j02220@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정혜연 주무관 정기원 주무관	032-560-4293 jhy8036@korea.kr 032-560-4294 jkw0927@korea.kr	예방	X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하·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2회	2회	2회	사회복지시설 전수점검 횟수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 안전 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자체 안전점검
 - 사군구에서는 하동절기(4월 및 11월경)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3월
2/4분기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시설 자체 및 현장점검)	6월
3/4분기	시설 안전점검 실시 권고 (시설 자체점검)	8월
4/4분기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시설 자체 및 현장점검)	11월

가-3) 어린이놀이시설

1) 현 황

- 최근 5년간('19~'23년)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발생건수는 총 7건(부상 7건, 사망 0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수	1.4	4	0	1	1	1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1.4	4	0	1	1
	사망(실종)	-	-	-	-	-
	부상	1.4	4	0	1	1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황(운영기준) >

(2025.1.23. 기준)

대 상 류	합계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놀이제공 영 업 소	목욕장 업 소	식품접객 업 소	종교시설	하천
관 리 부 서		공원과	가정보육과	주택관리과	안전총괄과	검단출장소 (위생팀)	검단출장소 (위생팀)	문화관광 체육과	문화관광 체육과
개소	921	179	59	625	28	1	24	3	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운영기준) >

(2025.1.23. 기준)

대상분류	시설 개소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현황								
		안전검사			보험가입여부			안전교육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율	이수	미이수	이수율
도시공원	179	163	16	91%	11	168	6.1%	163	16	91%
어린이집	59	55	4	93.2%	59	0	100%	59	0	100%
주택단지	625	612	13	97.9%	603	22	96.4%	601	24	96.1%
놀이제공영업소	28	27	1	96.4%	27	1	96.4%	28	0	100%
목욕장업소	1	1	0	100%	1	0	100%	1	0	100%
식품접객업소	24	22	2	91.6%	22	2	91.6%	20	4	83.3%
종교시설	3	3	0	100%	3	0	100%	3	0	100%
하천	2	2	0	100%	0	2	0%	2	0	100%
합 계	921	885	36	96%	726	195	78.8%	877	44	95.2%

※ (통계 출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2) 원인분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미입력
 - 안전보험 가입 등의 경우 관리자가 보험 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전관리자가 교체될 경우 이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재고지 해야되는 경우가 많음
 - 총괄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시설마다 보험가입 시기 및 기간 등이 달라 갱신일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 미입력 등 시설 매달 발생

3) 관련 계획 및 규정

- 관련계획
 - 2025년 1분기 향후 계획 수립 예정
- 관련법 및 조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저감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저감 목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1	1	1	1	1
재산 피해		-	-	-	-	-
인명피해	계	1	1	1	1	1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1	1	1	1	1

6) 재정투자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①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 신규 등록시설에 대한 관리주체 의무사항 안내

구 분	의무내용
설치검사 및 정기 시설검사	- 설치검사 : 시설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은 후 관리주체에 인도 - 정기 시설검사 :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실시
안전점검	- 월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및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 발견시 이용금지 조치 후 1개월 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안전관리자 지정	- 신규 또는 변경 배치 시 15일 이내에 시스템 입력
안전교육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 가입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가입 가능
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시 배상한도가 8천만원인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중대사고의 신고	- 관리주체는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놀이시설 사용중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안전요원 배치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

- 관리주체 의무사항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안내



○ 관리주체 의무사항 미이행 시설 발생 시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 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고지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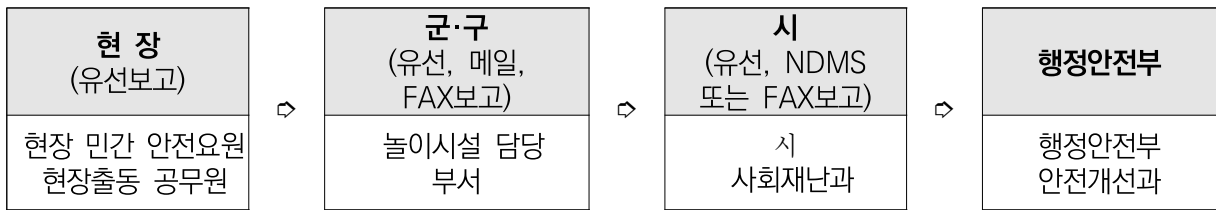
점검시기	점검주체	점검대상	점검방법
월 1회 이상(의무)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전체	관리주체 자체점검
2025. 2월 ~ 3월 중 2025. 8월 ~ 9월 중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전체	관리주체 전수점검
2025. 4월 / 7월/ 10월	놀이시설 소관부서	어린이놀이시설 30% 이상	표본점검
2025. 7월	물이용 놀이시설 소관부서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시 합동점검
2025. 10월	키즈카페 놀이시설 소관부서	키즈카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시 합동점검
2025. 11월	놀이시설 소관부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미흡시설 지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3% 이상)	시 합동점검
2025. 10월~11월	키즈카페 놀이시설 소관부서	키즈카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시 합동점검

③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현행화(상시)

- 설치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안전사고 현황
- 교육 및 검사기관 이행실적 월별 입력 등 실적관리 현행화

나) 대비단계

① 사고발생시 신속 상황보고체계 구축



- 시기 :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 신고기관
 - 학교, 유치원, 학원 : 교육지원청
 - 그 외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 : 시·군·구
- 내용
 - 구두(전화)보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공문 보고
 - 사고원인,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내용, 놀이시설의 이용중지 여부 등을 확인
 -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市 사회재난과 및 유관기관, 행정안전부에 보고

② 사고대비 유관기관 현장대응 공조체제 구축

- 대상 :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인근병원 등 관련 유관기관
- 내용
 - 추락, 붕괴 등 사고유형별 수습체계 및 단계별 대응방안 협의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등
- 사고발생 시 신속 상황보고체계 구축

다) 대응단계

① 대응1단계 : 사고발생 신고접수 · 출동지령 및 전파

- 신고접수 후 소방대 출동 지령 및 유관기관 현장 지원요청

② 대응2단계 : 지휘체계를 통한 보고 및 유관기관 · 단체 전달

- 市 사회재난과 및 행정안전부 보고·전파

③ 대응3단계 : 긴급구조, 대응조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④ 대응4단계 : 긴급구조통제단 활동 및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라) 복구단계

① 사고원인 파악 및 피해상황 조사

- 놀이시설 담당 부서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자체 점검반을 활용하여 사고원인 파악 및 조사
- 사상자·부상자 관리 및 피해상황 조사

② 복구계획 수립 확인 및 보고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최종보고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강성재 사회재난팀장	032-560-2881 bada68@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윤상 주무관	032-560-2883 lys12345@korea.kr	예방	X

◇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100점	100점	100점	관리계획 수립(80점) 조례제정 여부(20점)

□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작성
 - 놀이시설물의 유지보수,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성과(최근 3년)

[2022년]

- 2022. 2. : 관리계획 수립
- 조례제정(2019년)

[2023년]

- 2023. 1. : 관리계획 수립
- 조례제정(2019년)

[2024년]

- 2024. 1. : 관리계획 수립
- 조례제정(2019년)

□ '25년도 주요 계획

- 상·하반기, 시기상 주요 테마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관리계획 수립 및 배포	2월
2/4분기	놀이시설 담당 부서별 관리계획 수립 촉구 및 완료	4월
3/4분기	물놀이 이용시설 점검 계획 수립	7월
4/4분기	관리계획 및 매뉴얼 수정 및 보완	10월

나) 기타시책

[1]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현행화를 통한 사고 예방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강성재 사회재난팀장	032-560-2881 bada68@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 계획연계
			이윤상 주무관	032-560-2883 lys12345@korea.kr	예방	X

◇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심되는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함에 목적으로 한다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어린이 놀이시설 선제적 예방조치	90점	100점	90점	- 어린이놀이시설점검(20점) - 안전관리시스템 현행화(40점) *(총입력률) 95%이상(40점), 90~95%(35점), 85~90%(30점), 80~85%(25점) - 놀이제공영업소(키즈카페) 시합동점검(40점)

□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및 표본점검 실시
 -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및 표본점검
 - 놀이시설 담당 부서별 관리계획에 따른 점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현행화
 - 매월 법정 의무사항(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기간만료예정 놀이시설을 전달하여 기간만료 전에 갱신하도록 담당 부서에 안내
 - 매월 놀이시설 담당 부서에 기간만료 된 놀이시설 행정조치 촉구 및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시스템 현행화
 - 안전관리자 변경 시 관리주체에 현행화 촉구
- 놀이제공영업소(키즈카페) 市 합동점검
 - 서구 관내 영업중인 모든 놀이제공영업소를 직접 나가 현장점검
 - 시설의 노후화, 방역 조치사항 등 점검 철저 및 미흡한 사항 행정조치

□ 추진성과(최근 3년)

[2022년]

- 2022. 5. :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100개소)
- 2022. 8. : 3분기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67개소)
- 2022.10. : 4분기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79개소)

[2023년]

- 2023. 4. :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안전 유해요인 점검
(키즈카페 및 어린이놀이시설 분야)(19개소)
- 2023. 4. :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 실시(76개소)
- 2023. 8. : 3분기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 실시(76개소)
- 2023.11. : 3분기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 실시(101개소)

[2024년]

- 2024. 6. :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135개소)
- 2024. 7. : 여름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점검(21개소)
- 2024.12 : 4분기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87개소)

□ '25년도 주요 계획

- 상·하반기, 시기상 주요 테마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관리계획 수립 및 배포	2월
2/4분기	놀이시설 담당 부서별 관리계획 수립 촉구 및 완료 어린이놀이시설 표본점검	4월
3/4분기	물놀이 이용시설 市 합동점검	7월
4/4분기	놀이제공영업소 市합동점검	10월

가-4) 어린이 · 고령자

1) 현 황

< 연도별 취약계층 교통사고 발생현황 >

(단위 : 건, 명)

구 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82	91	72	82	90	73
	사망자수	0	0	0	0	0	1
	부상자수	96	113	86	96	100	84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	182	176	176	178	181	201
	사망자수	7	12	1	7	8	5
	부상자수	189	181	183	184	184	213

※ (통계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2024.12.31.)

2)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교통약자(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 교통(도로)안전시설의 꾸준한 보수정비 및 신규 설치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증가 등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노인 교통사고는 2020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사망자수가 소폭 증가했음.
 -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단일로에서의 보행자 사고이며, 시간대별 오전 10시~12시, 오후 14시~18시에 사고가 다수 발생함. 연령 특성상 날씨가 흐리거나, 야간시간 때 사고 발생이 취약함.
 - 인구 노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이와 관련한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필요.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교통안전법 제17조)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교통안전법 제18조)

4) 의견수렴

- (교통안전캠페인)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서부모범운전자회,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등 교통안전환경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협업사업 연중 추진

5) 목 표

< 연도별 목표 >

(단위 : 건,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280	276	272	268	1,470
인명피해	계	281	275	269	263	2,160
	사망	7	6	5	4	8
	부상	300	295	290	285	2,150

6) 재정투자 현황

< 연도별 예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계	80	15	14	14	14	23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80	15	14	14	14	23

기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구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나) 대비단계

-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시행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사업
 - 조명식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다) 대응단계

-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연간단가계약을 통한 불량 시설물 긴급정비

라) 복구단계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유관기관 협의체계 구축
 - 분기별 교통안전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시 대책회의 실시
 - 시설물 파손 원인자 파악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추진

작성 부서	교통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안순애 교통정책팀장	032-560-4851 anshunai@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나윤경 주무관	032-560-4852 ykra0426@korea.kr	예방	X

- ◇ 교통약자인 취학 전 아동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인천 서구 교통안전 시행계획,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제8조)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어린이·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246회	210회	215회	교육 실시 횟수
어린이·고령자 교육참여인원 증대	7,215명	5,950명	6,100명	교육 참여 인원수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8회	9회	9회	캠페인 실시 횟수 (교통안전테마캠페인 포함)

□ 주요내용

-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추진

□ 추진성과(최근 3년)

- 교통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 619회, 13,751명
 -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 44회, 6,771명
-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추진 : 23회

□ '25년도 주요 계획

-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추진
 -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모범운전자회, 서부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추진 (연중)
 - 교통관계기관(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추진(개인형이동장치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어린이 교통안전용품(옐로카드) 제작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월~3월 3월
2/4분기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월~7월 4월~6월
연 중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연 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계	80	15	14	14	14	23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80	15	14	14	14	23	

나. 재난 구호 및 복구 (우선순위 2위)

1) 현 황

- 재해구호물자 비축 현황 : 총200개(응급 145개, 취사55개)
- 임시주거시설 현황: 총 107개소(학교 70, 경로당 23, 인재개발원1, 행정복지센터 13)
- 재해구호물자 비축 현황: 총273개(응급 218개, 취사 55개)
-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피해요인	피해구분	지급건수	집행액	비고
2020	호우, 태풍	주택침수, 농업 피해	33	50,144	
2021	한파, 호우, 강풍	주택침수, 농업 피해	7	6,501	
2022	호우, 태풍, 대설	주택, 사업장 침수, 농업 피해	144	415,183	
2023	호우	주택침수, 농업 피해	34	99,260	
2024	호우, 대설	주택, 사업장 침수, 농업 피해	114	296,871	

2) 관련 계획 및 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구호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목 표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게 구호 지원을 위해 구호물자를 비축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4) 재정투자 현황

세부사업명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합계	'23	'24	'25
재난복구지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	220	50	90	80

5)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이재민 발생 사례 분석, 임시주거시설 지정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및 상호 구호체계 구축
- 자원현황 파악, 재해구호물자 점검 및 창고 관리
- 임시주거시설 점검(시설 점검 및 수용인원 파악)

나) 대비단계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사전연락 실시
- 재난유형별 필요 재해구호 물자 등 사전준비
- 이재민 규모 및 발생지역에 따라 인근 임시주거시설 선정
- 임시주거시설 관리자 사전연락, 접근성 확인 및 시설 가동점검

다) 대응단계

- 실무반 가동하여 교대근무, 반별 주요임무 수행
 - 부서별 역할
 - 상황총괄(보고), 이재민 파악, 대피소 안내. 임시주거시설 운영: 안전총괄과
 - 환자발생 모니터링, 의료지원: 보건행정과
 - 방역활동, 방역인력, 장비 관리: 질병관리과
 - 재해지역 및 임시주거시설(급식) 위생점검: 식품위생과

라) 복구단계

- 재해구호기금(재난지원금) 소요액 파악
- 주택피해별 이재민 현황정리, 임시주거 유형 파악
- 심리회복 고위험군 선별관리 및 복지부 연계요청

8) 세부추진대책

나) 재정사업

(1)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신규)

작성 부서	안전 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자연재난팀장 조봉현	032-560-4701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지원 주무관	032-560-4704 xnwldhjs18@korea.kr	복구	X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 및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	-	20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 지출 건수

□ 주요내용

- 자연재난(풍수해, 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업체)에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 추진성과(최근 3년)

- (2022년)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144건 지급(415,183천원)
- (2023년)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34건 지급(99,260천원)
- (2024년)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114건 지급(296,871천원)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3/4분기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피해 발생 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300	30	50	50	90	80	120	120	120	
재난복구지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	300	30	50	50	90	80	120	120	120	

3. 재난·안전사고 일반 유형별 관리대책

① 자연재난 분야

가. 산사태

1) 현 황

< 연도별 산사태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	0	0	0	0	1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 (통계 출처) 산림정원과 소관 통계자료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산사태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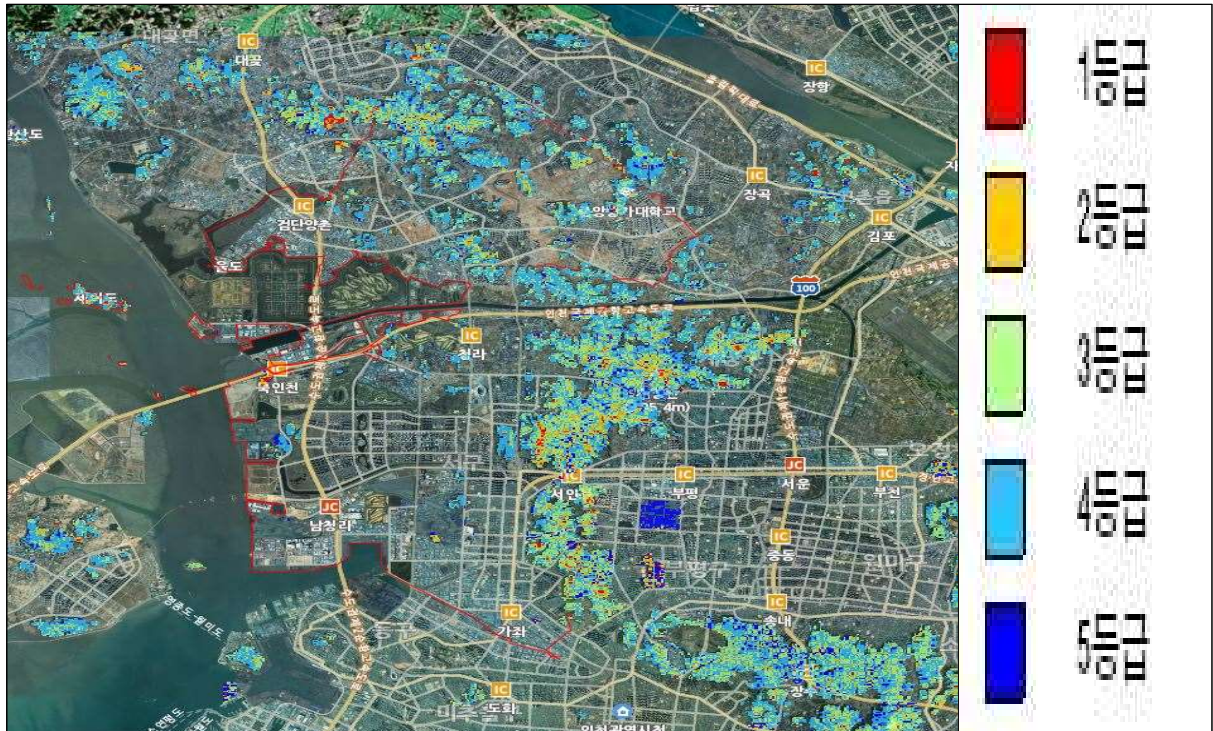
항 목	산사태 예보발령(회)	노출인구(명)	안전취약계층(명)
서구	17	19,073	167,694
비교지역 평균	8	4,737	96,339
항 목	산사태위험지역 건물(m ²)	산사태위험지역(m ²)	산지율(%)
서구	3,464,118	176	26
비교지역 평균	82,574	258	31

2) 원인분석

- 매년 산림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피해이력, 유역면적, 경사도 등 위험인자 분석
- 게릴라성 폭우 등 기상이변 현상이 잦아지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산사태 위험지도

-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집중강우 등 산사태 유발요인이 작용할 경우, 산사태 발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험도순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림보호법」 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수행함
 - 산림보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제45조의 8에 의해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수립,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 및 조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3에 의한 산사태예방 교육철저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산림청지침 제1456호)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지속적인 산사태 우려지역 관리를 통해 산사태 발생 건수 0건
- 지속적인 사방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0개소

< 연도별 목표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건)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연도별 예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계	148	29	29	30	30	30
산사태 예방단	148	29	29	30	3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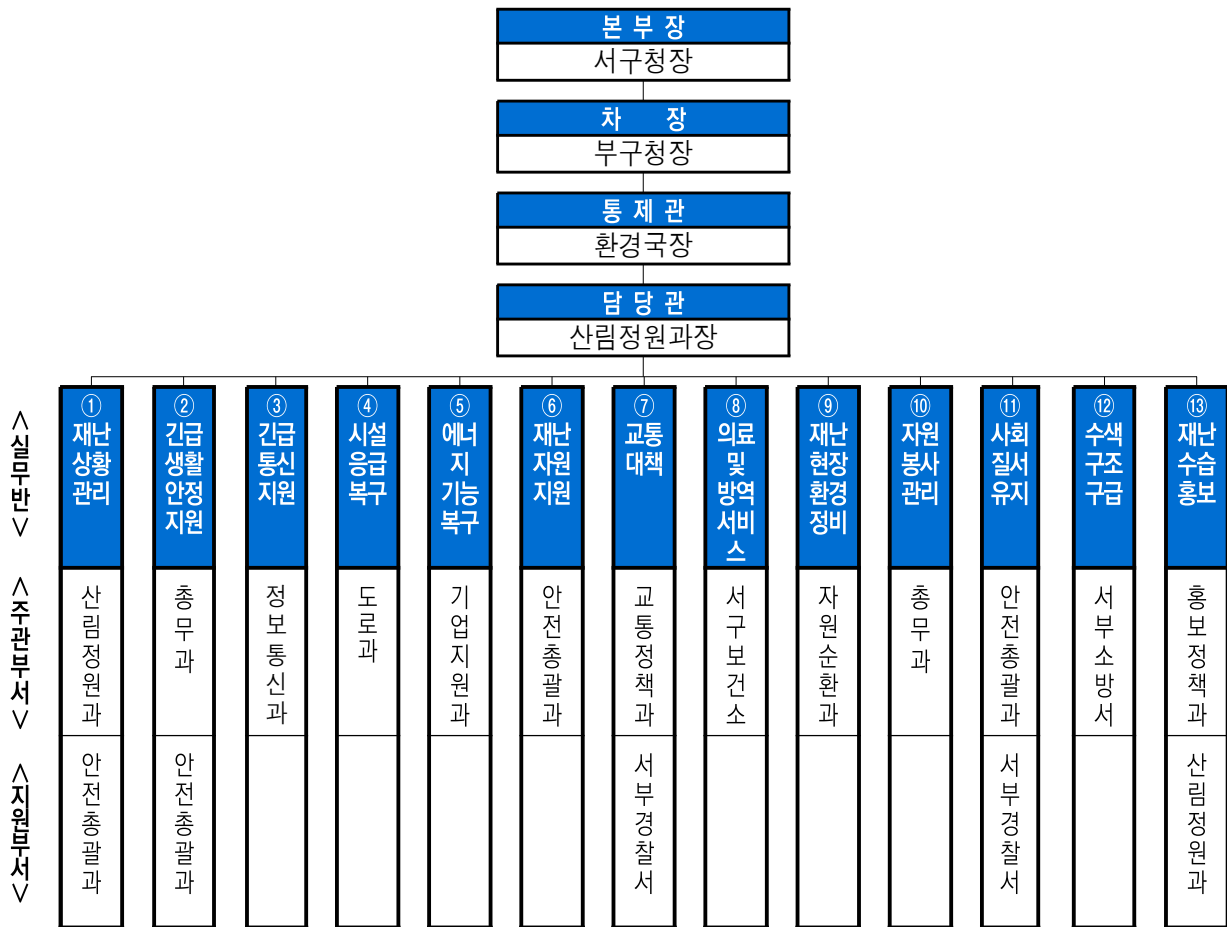
기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산사태 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

- 운영기간 : 2025.5.16.~2024.10.15.(5개월)
- 조직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지휘본부



- 설치장소 : 산림정원
- 주요임무
 - 산사태 예방·대응 상황의 총괄 지휘
 - 산사태 예방 행동 매뉴얼 수립
 - 산사태 발생지 관리·통제

○ 운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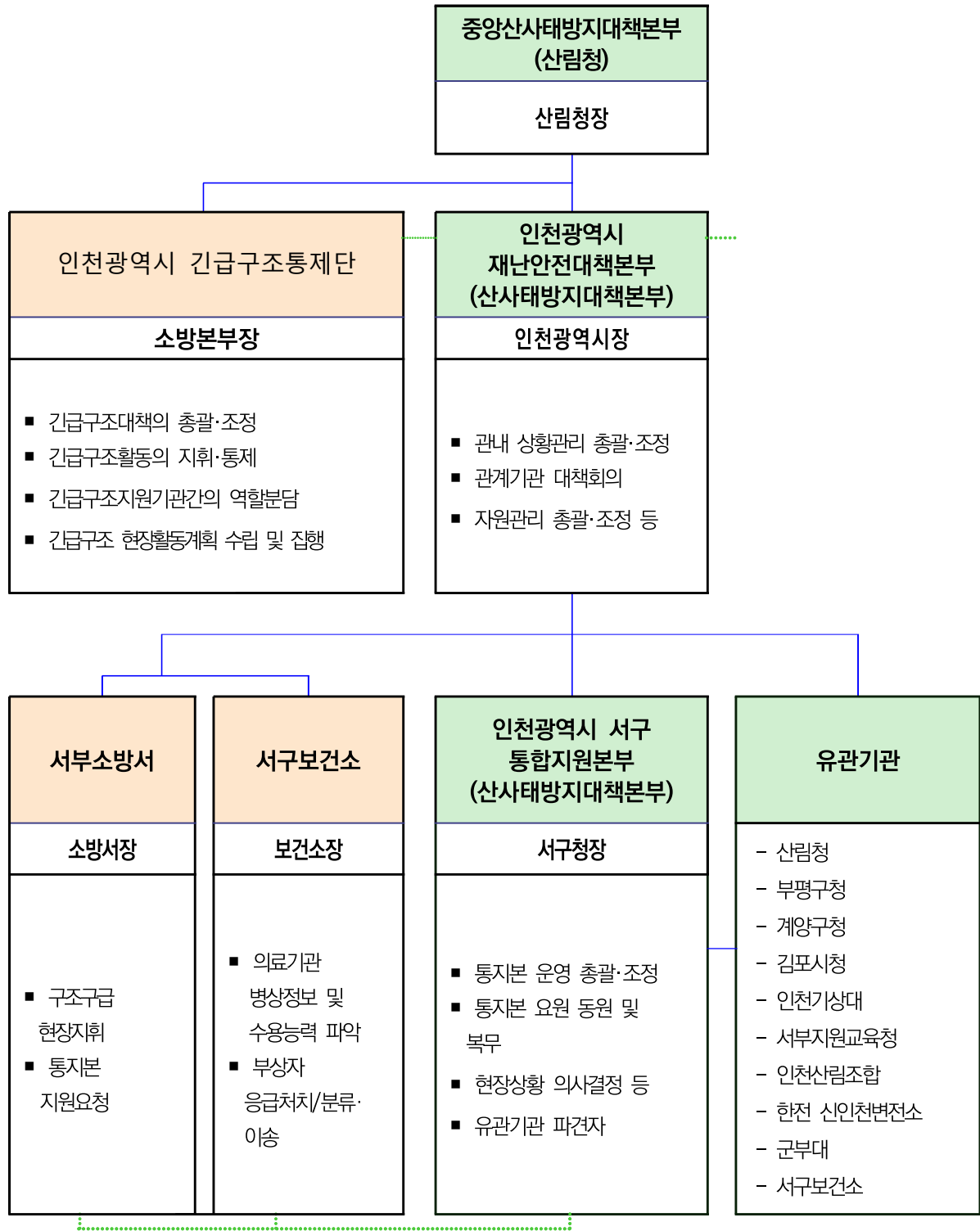
종류	판단기준	주요활동	근무인원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빈발 시기(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 5.15 ~10.15) 등 산사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 ○ 지진 규모 4.0 ~4.4의 지진 발생시 	징후 감시활동	-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산사태주의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 이상에서 발생시 ○ 지진 규모 4.5~4.9의 지진 발생시 	기상정보 모니터링 협조체제 가동	2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산사태주의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50% 이상에서 발생 또는 산사태경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 이상에서 발생시 ○ 지진 규모 5.0~5.9의 지진 발생시 	신속 대응체제 점검	4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때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산사태경보의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50% 이상에서 발생시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 발생시 	즉각 대응태세 돌입	8

- 매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산사태 예방
 -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 16소 중 12개소 사방사업 완료

나) 대비단계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체계 구축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산림청

주관기관(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산림재난통제관	통제관	이종수	042-481-1230	
산사태방지과	과 장	박영환	042-481-9900	
	사무관	정경화	042-481-8844	
	주무관	이혜선	042-481-8845	

- 인천광역시청

주관기관(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녹지정책과	과 장	박세철	032-440-5049	
녹지정책과 (산림자원팀)	팀 장	전병철	032-440-3681	
녹지정책과 (산림자원팀)	주무관	이현진	032-440-3684	

- 인천광역시 서구

주관기관(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산림정원과	과 장	심은엽	(사) 032-560-2954 (CP) 010-3433-6592	
산림정원과 (산림관리팀)	팀 장	곽동운	(사) 032-560-4791 (CP) 010-8711-1170	
산림정원과 (산림관리팀)	주무관	김기양	(사) 032-560-4792 (CP) 010-4192-1496	

- 인천광역시 서구 유관부서 및 기관

기 관 명	관련 부서	전 화	
			Fax
산 림 청	산 사 태 방 지 과	042-481-8844	042-472-3223
인 천 광 역 시 청	녹 지 정 책 과	032-440-3681	032-440-8687
산 림 향 공 본 부	서 울 관 리 소	02-2166-4503	02-2665-8153
북 부 지 방 산 림 청	서 울 국 유 림 관 리 소	02-3299-4510	02-967-4871
부 평 구 청	공 원 녹 지 과	032-509-6983	032-509-7639
계 양 구 청	공 원 녹 지 과	032-450-5654	032-551-5765
김 포 시 청	공 원 녹 지 과	031-980-2373	
인 천 소 방 본 부		032-870-3371	
서 부 소 방 서		032-723-5475	
소 방 향 공 대		032-752-1191	
서 부 경 찰 서		032-453-3329	
군 부 대	해 병 2 사 단	032-454-3350	
	향 공 대 청 룡	031-989-0736	
	7873부대1대대	032-562-1113	
	7873부대 47관리대	032-562-0113	
	7 5 7 0 부 대	032-561-2628	
	국제평화지원단	032-450-6410	
	7325부대2포대	032-563-0113	
	6799부대3포대	032-564-0113	

- 산사태 예방단 운영
 - 5~10월 산사태 예방단 채용
-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점검
-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 산사태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정비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산림재해대책본부 운영
 - 산림재해대책본부 운영으로 산사태 예방 및 조기대처
 - 산사태 상황 전파 및 비상근무 실시
 - 중앙부처, 시 대책본부와 연계하여 산사태 대응
- 산사태예방단 산사태취약지역 배치
- 산사태예방단 산사태 취약지역 배치로 산사태 조기발견 및 대응

□ 상황판단회의

- 산사태 예방단 현장 대응
- 지역주민 대피 장소 사전 안내 등 사전준비
- 산사태 관련 유관기관에 상황 전달
- 산사태 발생시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상황 보고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산사태 피해조사 실시
 - 산림청, 시 등 전문조사반과 연계하여 원인분석
 - 인명, 재산 등 피해조사 실시
- 복구계획 수립
 - 산사태 피해지에 대하여 복구계획 수립
 - 산림청, 시에 복구자금 신청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산사태예방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산림정원과	작성자 및 연락처	곽동운 산림관리팀장	032-560-4791 kenny74@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김기양 주무관	032-560-4792 gocco790@korea.kr	예방	X

◇ 「산림보호법」 제45조의2에 따라 산사태예방 매뉴얼 정비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매뉴얼정비 현행화	100%	100%	1회	행동매뉴얼 개정 횟수

※ 측정산식 변경

□ 주요내용

- 산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정비
 - 구정현황에 맞는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현행화

□ 추진성과(최근 3년)

- 2024년: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2023년: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2022년: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25년도 주요 계획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2~3월
2/4분기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4~6월
3/4분기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7~10월
4/4분기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11~12월

□ 제·개정내용

규정명	주요내용	진행상황
산사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산사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나) 재정사업

(1)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신규)

작성 부서	산림정원과	작성자 및 연락처	곽동운 산림관리팀장	032-560-4791 kenny74@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김기양 주무관	032-560-4792 gocco790@korea.kr	예방	X

◇ 「산림보호법」제45조의4에 따라 사전적 산사태 예방 사업 추진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취약지역 사전점검	100%	100%	100%	(점검 완료 개소 수/점검 대상 개소 수) * 100

□ 주요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우기 전 현장점검·정비

추진성과(최근 3년)

- 2024년: 취약지 연3회 이상 점검
- 2023년: 취약지 연3회 이상 점검
- 2022년: 취약지 연3회 이상 점검

'25년도 주요 계획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점검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산사태 취약지 점검	2월
2/4분기	산사태 취약지 점검	6월
3/4분기	산사태 취약지 점검	8월
4/4분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48	29	29	30	30	30	31	31	31	
산사태예방단	148	29	29	30	30	30	31	31	31	

나. 가뭄

1) 현 황

< 연도별 가뭄피해 발생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출처) 서구 NDMS 입력 현황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가뭄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가뭄 예·경보발령(회)	노출인구(명)	안전취약계층(명)
서구	0	0	167,694
비교지역 평균	0	0	96,339
항 목	물다량사용시설(개소)	농축산업(개소)	상수도 미보급율(%)
서구	220	1,151	0
비교지역 평균	163	1,238	0

2) 원인분석

- 피해 현황은 통계와 같이 최근 5년간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음
- 가뭄 피해는 태풍·집중호우 등 빈도에 따라 연도별 피해 격차가 크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학적 영향을 받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가뭄 피해 예방 및 대비 체제를 확립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재해 및 관리지침」 제7조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가뭄 피해 경감: 제로화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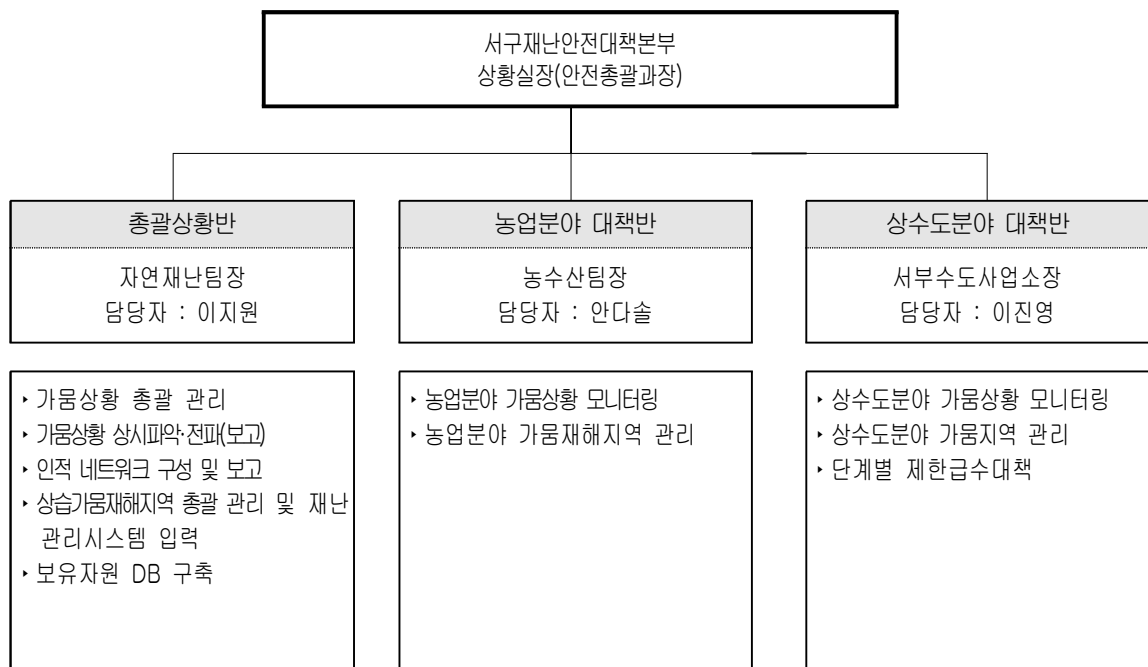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6) 재정투자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1) 재난안전상황실(안전총괄과)



- 가뭄 관계부처 상호간 업무분담 및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
- 상황관리 체계 및 협력체계 확립
- 가뭄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홍보
-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한 가뭄 정보자료 수집·전파

2) 경제정책과·서부수도사업소

- 가뭄 정보자료 수집·공유(공통)
-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 용수대책 예방대책 추진
- 가뭄발생 예상지역의 가뭄 대책장비 점검·정비
- 상습가뭄 재해지역 전수 조사 지정 및 해소 중·장기 대책 수립
- 물 절약 대책 및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

구 분		기 준	내 용
1 단 계	1-1단계	10% 감량 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 ○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1-2단계	10~30% 감량 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별로『비상급수대책상황실』운영 ○ 물다량 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공공건물, 대형빌딩 절수 확대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 각 가정 절수 적극 유도 ○ 식수용 지하수 개발 ○ 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 실시 ○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 농업용수원지(저수지 지하수)활용조치
2 단 계	2단계	30~50% 감량 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자체간 긴급 급수지원 ○ 물다량 사용업소 자율 휴무실시 ○ 식수용 관정개발 확대 ○ 민방위 비상관정 이용 ○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 군부대 인력·장비 지원 비상급수
3 단 계	3-1단계	50~60% 감량 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 산업용수 공급 감축·중단 ○ 개인 및 민방위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3-2단계	60% 이상 감량 공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수돗물 다량사용업소 격일제 영업
4 단 계	4단계	급수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샘물 공급 ○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 개인관정 공통이용

3) 기상청 및 군부대

- 가뭄관련 기상정보 체계 구축 및 제공
- 가뭄 감시·전망 및 조기진단에 관한 조사·연구 개발
- 강수량 예측 등 가뭄 전망 정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
- 가뭄 감시를 위한 강수량 분석 등 기상정보 정기적 제공
- 군부대 급수차 등 장비 보유 현황 파악·관리(17사단)

나) 대비단계

□ 중점 추진사항

- ◆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상시대비 체계 구축
- ◆ 안정적 용수 확보 및 공급대책 추진
- ◆ 가뭄대비 물절약운동 전개 등 대국민 홍보

□ 세부 활동내용

1) 재난안전상황실(안전총괄과)

- 가뭄상황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
- 가뭄대비 물절약운동 등 홍보
-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 소방차량 지원대책 추진
- 가뭄지역 지자체와 비상연락망 구축 및 관리지역 지정

2) 경제정책과, 서부수도사업소

- 분야별 가뭄상황 모니터링 및 가뭄 정보 전파
- 생활·농업·공업용수 분야별 급수대책 이행
- 가뭄 관리를 위한 분야별 물 공급체계 가동
- 가뭄 재난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기능 강화

3) 유관기관

- 가뭄관련 기상정보 체계 구축 및 제공(수도권기상청)
 - 가뭄 감시를 위한 강수량 분석 및 예측 등 기상정보 실시간 제공
 - 가뭄 관련 기상상황 전파 및 대국민 홍보

다) 대응단계

□ 중점 추진사항

- ◆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가동으로 신속한 가뭄대책 시행
- ◆ 가뭄발생지역 장비 및 인력 신속 지원
- ◆ 소방·군·민간 급수차량·인력 비상지원체계 강화

□ 세부 활동내용

1) 재난안전상황실(안전총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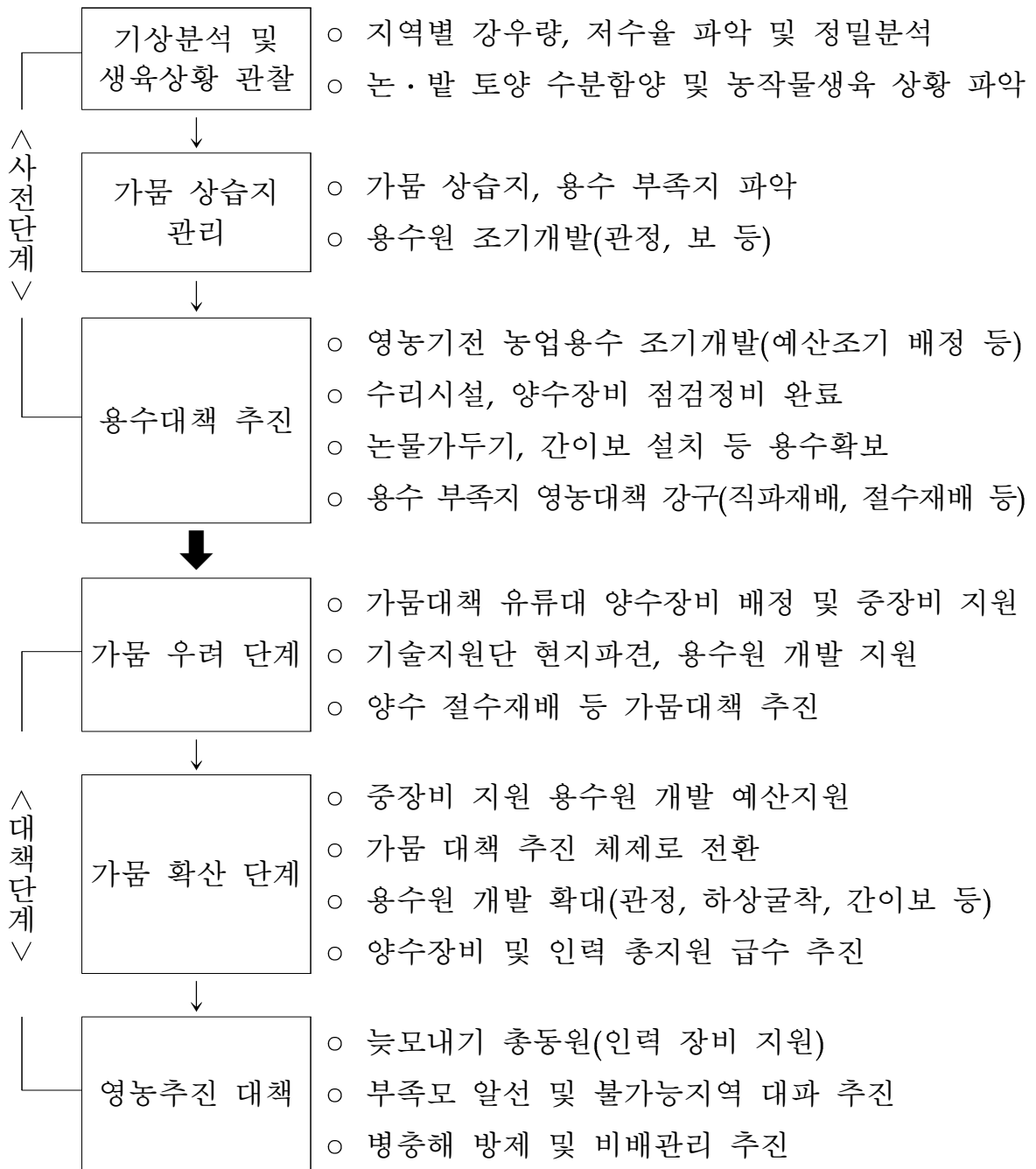
- 해당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해당지역 단계별 비상급수(제한·운반) 실시 및 대처상황 보고
- 관련부서 업무분담 지시 및 가뭄대책 추진상황 총괄 관리
- 유관기관 간 가뭄관련 업무 공조체제 가동
- 절수운동 홍보활동 강화
- 기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적극 개방하여 주민활용 유도
-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전용 소방급수 차량 지정·운영

2) 경제정책과, 서부수도사업소

- 가뭄으로 인한 급수 중단 예상 시 상황접수·전파
- 분야별 용수 및 급수대책 등 가뭄대책 시행
- 급수차·급수선박 등 장비 및 인력지원
- 논·밭의 토양수분함량 및 농작물 피해상황 파악

3) 유관기관

- 가뭄관련 기상정보 체계 구축 및 제공(기상청), 대국민 홍보 등
- 군부대 급수차 등 장비 활용 급수 지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1) 가동시기 : 심각

2) 재난상황 전파

-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상황전파
- 공무원 비상 발령 및 개인별 임무 부여 시행

3) 물절약 대책 추진

- 물다량 사용업소,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 등에 절수교육 실시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물다량 사용업소에 중수도 및 절수기설치유도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수도꼭지에 절수디스크 달기운동 등

라) 복구단계

□ 중점 추진사항

- ◆ 분야별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 지역별 복구대책 수립 및 지원
- ◆ 가뭄 피해 원인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활용

□ 세부 활동내용

1) 재난안전상황실(안전총괄과)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원
 - 가뭄 지역의 각종 관정개발,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가뭄피해 발생에 따른 분야별 지원방안 이행

2) 경제정책과, 서부수도사업소

- 해당지역 단계별 제한(운반) 급수 실시 및 상황보고
- 생활·농업·공업용수 분야별 비상급수 결과보고
- 이재민 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
- 가뭄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 지원
- 가뭄 피해 원인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활용

3) 유관기관

- 유관기관에 복구지역 기상정보 실시간 제공(기상청)
- 가뭄피해 복구를 위한 장비 지원(군부대)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가뭄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조봉현 자연재난팀장	032-560-4701 jonum@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 계획연계
			이지원 주무관	032-560-4704 xnwldhjs18@korea.kr	예방	X

- ◇ 현장의 대응기관을 통합 지원·조정(Support & Coordination)할 수 있도록 중대본 기능 강화, 공통기능(13개)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전면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행동매뉴얼 개정	2회	2회	2회	행동매뉴얼 개정 횟수

□ 주요내용

- 재난관리체계 규정
 - 국가재난관리체계, 중앙부터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등 명시
 - 단계별 행동요령 등 서구 가뭄 발생 시 관리체계 및 주요임무 규정

□ 추진성과(최근 3년)

- 매뉴얼 상, 하반기 개정 추진

□ '25년도 주요 계획

- 가뭄 분야 매뉴얼 전주기 종합 개선 계획 반영
- 인사발령에 따른 비상연락망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4분기	가뭄대비 매뉴얼 정비	5월 중
4/4분기	가뭄대비 매뉴얼 정비	10월 중

□ 제·개정내용

규정명	주요내용	진행상황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상위기관 매뉴얼 개정 내용 반영 -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등 최신화	일부개정 시행

다. 지진

1) 현 황

○ 2016년 이후 인천 지진발생현황(규모2.0이상) : 서구 해당사항 없음

번호	발생시각	규모	위도	경도	위치
1	2024-01-13 08:03	2.4	37.65 N	126.65 E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쪽 36km 해역
2	2023-03-25 18:35	2.4	37.19 N	125.27 E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65km 해역
3	2023-01-09 01:28	3.7	37.74 N	126.20 E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
4	2022-08-28 01:54	2.4	37.17 N	125.42 E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남서쪽 60km 해역
5	2022-08-12 19:37	2.7	37.41 N	124.53 E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남서쪽 62km 해역
6	2022-04-18 14:22	2.3	37.26 N	126.10 E	인천 옹진군 서남서쪽 52km 지역
7	2021-12-04 12:33	2.3	37.48 N	124.36 E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북서쪽 16km 해역
8	2121-04-25 17:07	2.3	37.48 N	124.36 E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남서쪽 60km 해역
9	2021-02-10 19:28	2.1	37.32 N	126.24 E	인천 옹진군 서남서쪽 38km 해역
10	2021-02-03 12:17	2.2	37.32 N	126.24 E	인천 옹진군 서남서쪽 38km 해역
11	2020-09-13 00:54	2.9	37.64 N	124.60 E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남서쪽 35km 해역
12	2020-07-07 14:08	3.3	37.19 N	125.55 E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남서쪽 54km 해역
13	2020-04-18 07:36	2.3	37.58 N	126.14 E	인천 강화군 서남서쪽 36km 해역
14	2019-11-09 23:14	2.4	37.62 N	124.65 E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쪽 37km 해역
15	2019-10-31 16:29	2.1	37.24 N	126.11 E	인천 옹진군 서남서쪽 52km 지역
16	2019-08-23 19:50	2.7	37.96 N	124.69 E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동쪽 1km 지역
17	2019-08-11 18:19	2.1	37.97 N	124.63 E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북서쪽 5km 지역
18	2019-05-04 05:43	2.4	37.42 N	124.56 E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쪽 60km 해역
19	2019-02-27 21:22	2.2	37.31 N	124.74 E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쪽 72km 해역
20	2019-01-09 03:10	3.7	37.37 N	124.23 E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남서쪽 76km 해역
21	2018-10-14 14:46	2.4	37.49 N	124.58 E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쪽 52km 해역
22	2018-04-24 05:20	2.5	37.06 N	125.92 E	인천 옹진군 덕적도 남서쪽 27km 해역
23	2018-03-26 09:40	2.7	37.78 N	124.83 E	인천 백령도 남동쪽 24km 해역
24	2018-01-06 02:47	2.2	37.71 N	125.94 E	(북한)인천 옹진군옹연평도 동북동쪽 21km 해역
25	2017-11-24 00:29	2.6	37.23 N	125.04 E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76km 해역
26	2017-11-14 02:17	2.7	37.29 N	124.82 E	인천 백령도 남쪽 75km 해역
27	2017-09-07 14:58	2.9	37.60 N	125.34 E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서남서쪽 33km 해역
28	2017-07-18 10:31	2.7	37.69 N	126.19 E	인천 강화군 서남서쪽 27km 해역
29	2017-03-28 00:48	2.2	37.17 N	125.48 E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남서쪽 58km 해역
30	2017-02-23 21:03	3.1	37.40 N	124.89 E	인천 백령도 남남동쪽 64km 해역
31	2016-12-07 22:34	2.4	37.18 N	125.48 E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남서쪽 57km 해역
32	2016-08-18 17:08	2.1	37.18 N	125.46 E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남서쪽 58km 해역

※ (출처) 서구 NDMS 입력 현황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지진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지진발생현황	인구(명)	취약구조건물(m ²)	내진보강필요 공공시설물(개소)
서구	0	551,026	1,730,002	153
비교지역 평균	0	311,166	1,517,203	147
항 목	산사태 위험지역(m ²)	노후건물(m ²)	발전시설(m ²)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m ²)
서구	176	5,789,674	326,143	130,422
비교지역 평균	258	5,821,977	11,209	23,006

2) 원인분석

- (현황) 2016년 이후 인천지역 지진발생 횟수 : 32회

* 서구 발생사항 없음

- 지진해일은 규모 6.5이상의 지진에너지, 진원위치가 수심 약 1,000m 이상 등 발생조건이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서해안 및 인천은 지진해일에 대해선 안전한 지역에 속함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7조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지진 발생시 피해 최소화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세부사업명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합계	'23	'24	'25
재난복구지원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7.5	13	13	11.5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내진보강대책 수립 및 추진

- 2층이상 또는 200㎡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2017. 12.)
 - 내진설계대상시설물 허가 시 내진설계기준 적합여부 확인
 - 내진설계 대상시설 공사발주 전 적용여부 확인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 추진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 사업내용 : 공공건축물, 도로시설물 등 내진성능확보 추진
- 유관기관 소관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 및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사업 추진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대상시설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상황실 면진시설 설치		
	기확보	확보계획		기설치	확보계획	
		예정년도	사업비		예정년도	사업비
계	1개소	-	-	1개소	-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본관2F)	2017년 (내진보강공사)	완료	완료	2014년	완료	완료

나) 대비단계

□ 지진재난 매뉴얼 활용

- 관련 부서·기관별로 지진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정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관련 부서·기관은 지진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행동매뉴얼 활용

□ 주요시설물 가속도계측기 설치·관리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른 지진 가속도 계측 대상시설인 구청사에 지진가속도계측기 1개소 설치·운영
- 24시간 지진발생 모니터링 강화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완료 : 2014년 9월
 - 지진가속도 계측기 연간 유지관리 용역 : 2025년 1월 ~ 12월

□ 지진 옥외대피장소 및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지진옥외대피장소>

연번	시설명	주소	수용면적 (㎡)	수용 가능인원 (명)	비고
계	116개소		466,732	490,745	
1	백석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695(백석동)	2,646	3,207	
2	간재울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12번길 34(검암동)	2,198	2,664	
3	간재울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33(검암동)	1,949	2,362	
4	검암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9번길 12(검암동)	6,500	250	
5	검암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99번길 45(검암동)	1,943	2,355	
6	은지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72번길 22(검암동)	1,879	2,277	
7	경서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1번길 31(경서동)	2,324	2,817	
8	공촌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88번길 21(공촌동)	1,581	1,916	
9	서곶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56번길 22(연희동)	3,037	3,681	
10	서곶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56번길 9(연희동)	2,833	3,434	
11	심곡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14(심곡동)	1,479	1,793	
12	가석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74(가정동)	2,038	2,470	

연번	시설명	주소	수용면적 (㎡)	수용 가능인원 (명)	비고
13	가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중로478번길 6(가정동)	2,415	2,927	
14	봉수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67번길 11-4(가정동)	2,486	3,013	
15	가현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09(신현동)	2,025	2,455	
16	가현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17(신현동)	1,868	2,265	
17	신현고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399(신현동)	1,643	1,991	
18	신현북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147(신현동)	3,821	4,632	
19	신현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131번길 23(신현동)	2,304	2,793	
20	신현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울도로77번길 1(신현동)	4,484	5,435	
21	석남서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49번길 6(석남동)	3,130	3,794	
22	석남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0번길 4(석남동)	3,257	3,948	
23	신석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9(석남동)	3,205	3,884	
24	천마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58-5 (석남동)	2,983	3,616	
25	가림고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58(가좌동)	2,486	3,014	
26	가정여자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28번길 13(가좌동)	3,795	4,600	
27	가정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1 (가좌동)	3,498	4,240	
28	가좌여자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28번길 13(가좌동)	3,904	4,732	
29	가좌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34번길 31(가좌동)	3,866	4,686	
30	가좌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5(가좌동)	2,644	3,205	
31	건지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길 39(가좌동)	3,322	4,027	
32	동인천여자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112번길 13(가좌동)	2,570	3,115	
33	봉화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50번길 43(가좌동)	1,772	2,148	
34	검단고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40번길 7(마전동)	2,293	2,780	
35	검단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길 12(마전동)	2,551	3,092	
36	검단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115번길 24(마전동)	1,715	2,079	
37	능내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40번길 23(마전동)	2,185	2,649	
38	마전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91(마전동)	2,268	2,749	
39	마전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23(마전동)	2,146	2,601	
40	당하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38(당하동)	1,918	2,325	
41	당하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44(당하동)	2,808	3,404	
42	발산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78번길 6(당하동)	1,695	2,055	
43	백석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55(당하동)	2,122	2,573	
44	원당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20번길 16(당하동)	1,737	2,106	
45	원당고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길 30(원당동)	2,454	2,975	
46	원당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길 22(원당동)	2,708	3,283	
47	창신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61번길 6(원당동)	1,960	2,376	
48	금곡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28번길 19(금곡동)	3,287	3,984	
49	단봉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22(오류동)	3,353	4,064	

연번	시설명	주소	수용면적 (㎡)	수용 가능인원 (명)	비고
50	왕길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440번길 20(왕길동)	2,296	2,783	
51	목향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377(불로동)	2,541	3,080	
52	불로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363(불로동)	2,374	2,877	
53	불로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1길 50(불로동)	2,962	3,590	
54	경명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30(청라동)	1,915	2,321	
55	도담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17(청라동)	1,731	2,098	
56	인천경연초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차오름로 64(청라동)	4,524	5,483	
57	청라고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16-14 (청라동)	3,035	3,679	
58	청라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12(청라동)	1,932	2,342	
59	청라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39(청라동)	1,600	1,940	
60	청람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335(청라동)	2,163	2,622	
61	청람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336(청라동)	1,904	2,308	
62	청일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46(청라동)	1,579	1,914	
63	초은고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42(청라동)	2,606	3,159	
64	초은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0(청라동)	2,061	2,498	
65	초은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33(청라동)	1,988	2,410	
66	해원고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파이어로140번길 25(청라동)	1,864	2,260	
67	해원중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21(청라동)	2,045	2,479	
68	해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파이어로140번길 5(청라동)	1,749	2,120	
69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663(연희동)	60,000	1,000	
70	시립테니스장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11번길 7(가좌동)	7,700	9,333	
71	간재울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07-2	1,750	2,121	
72	장모루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94-2	3,993	4,840	
73	중동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13-5	2,957	3,584	
74	주물공단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78	10,361	12,558	
75	청라1호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73-19	7,000	8,485	
76	갈매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4	1,177	1,427	
77	공촌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13	1,680	2,036	
78	간촌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3(연희동)	2,023	2,452	
79	계명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로46번길 6(연희동)	2,125	2,575	
80	대평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33번길 33-15(연희동)	2,171	2,631	
81	서곶근린공원 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50-0	75,147	91,087	
82	모통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01-3	2,101	2,547	
83	석남체육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20(석남동)	7,616	9,232	
84	신촌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260번길 17(석남동)	4,628	5,609	
85	가좌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7번길 25(가좌동)	6,257	7,585	
86	검단2호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94-0	8,679	10,520	

연번	시설명	주소	수용면적 (㎡)	수용 가능인원 (명)	비고
87	능내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40번길 41(마전동)	54,138	65,622	
88	마전1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7	3,216	3,898	
89	당하제1호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23(당하동)	16,934	24,284	
90	당하지구3호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9-4	1,000	1,819	
91	왕길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27(왕길동)	8,180	9,915	
92	종다리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13	2,064	2,501	
93	불로지구4호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93-2	1,881	2,280	
94	연일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6-1	30,552	37,033	
95	사염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92	85,351	103,456	
96	까투럼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129	21,210	25,709	
97	봉오재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02-17	21,281	25,796	
98	갯들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72-8	10,238	12,410	
99	루원시티3호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19	4,500	5,400	
100	루원시티5호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94-58	2,400	2,900	
101	서인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45	33,836	41,014	
102	신석체육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2	33,694	40,841	
103	석남녹지도시숲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2-4	45,000	54,545	
104	석곶체육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6-8	10,200	12,363	
105	가원숲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512	71,305	86,430	
106	감중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7	5,572	6,753	
107	진주체육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130	9,106	11,037	
108	가좌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9	8,939	10,835	
109	불로지구1호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66-1	1,750	2,121	
110	불로지구2호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73-8	1,200	1,454	
111	불로지구3호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85-10	1,050	1,272	
112	불로지구5호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802-6	2,600	3,151	
113	불로지구6호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862	3,111	3,770	
114	도담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71	24,000	29,090	
115	대촌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22-11	10,870	13,175	
116	아라노을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72-1	48,206	58,431	

<임시구호시설(내진설계 적용)>

연번	시설명	상세시설명	주소	수용면적 (㎡)	수용가능인원 (명)	비고
계	48개소			33,685	12,931	
1	간재울중학교	다목적실 (교사시설 5층)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12번길 34(검암동)	494	190	

연번	시설명	상세시설명	주소	수용면적 (㎡)	수용가능인원 (명)	비고
2	간재울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4층)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33(검암동)	486	186	
3	검암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5층)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99번길 45(검암동)	486	186	
4	경서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4층)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31번길 31(경서동)	630	242	
5	은지초등학교	다목적실 (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72번길 22(검암동)	518	199	
6	공촌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88번길 21(공촌동)	700	269	
7	서곶초등학교	강당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 56번길 9(연희동)	756	290	
8	양지초등학교	강당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197번길 11(심곡동)	683	262	
9	청라고등학교	체육관 (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 86번길 16-14 (청라동)	747	287	
10	청라중학교	강당(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12(청라동)	986	379	
11	청라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3층)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 랄드로 139(청라동)	900	346	
12	초은고등학교	강당(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 랄드로 42(청라동)	894	343	
13	초은중학교	체육관 (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0(청라동)	732	281	
14	초은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 랄드로 33(청라동)	909	349	
15	경명초등학교	체육관 (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30(청라동)	888	341	
16	청람초등학교	체육관 (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336(청라동)	949	365	
17	청일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46(청라동)	709	272	
18	해원고등학교	강당(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사파 이어로140번길 25(청라동)	911	350	
19	해원중학교	체육관 (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21(청라동)	634	243	
20	해원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사파 이어로140번길 5(청라동)	1074	413	
21	신석초등학교	강당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9(석남동)	833	320	
22	석남서초등학교	강당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249번길 6(석남동)	817	314	
23	석남3동경로당	본관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142번길 52(석남동)	116	44	

연번	시설명	상세시설명	주소	수용면적 (㎡)	수용가능인원 (명)	비고
24	절골경로당	본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0번길 29-11 (석남동 해뜨는마을)	98	37	
25	석남중학교	강당(교사시설 3층)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333(석남동)	712	273	
26	가현중학교	강당(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09(신현동)	535	205	
27	신현고등학교	체육관 강당겸용 (교사시설 3층)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399(신현동)	889	341	
28	신현초등학교	강당	인천광역시 서구 울도로 77번길 1(신현동)	656	252	
29	봉화초등학교	체육관 강당겸용 (교사시설 4층)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250번길 43(가좌동)	486	186	
30	가림고등학교	강당(교사시설 3층)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58(가좌동)	848	326	
31	가좌초등학교	강당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09번길 5(가좌동)	753	289	
32	가좌중학교	강당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334번길 31(가좌동)	222	85	
33	가정여자중학교	강당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 28번길 13(가좌동)	494	190	
34	동인천여자중 학교	체육관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 112번길 13(가좌동)	1447	556	
35	검단중학교	강당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88번길 12(마전동)	1108	426	
36	능내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40번길 23(마전동)	446	171	
37	목향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5층)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377(불로동)	914	351	
38	불로초등학교	체육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44번1길 50(불로동)	1336	513	
39	원당고등학교	체육관 (교사시설 1층)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40번길 30(원당동)	823	316	
40	원당중학교	강당(교사시설 5층)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40번길 22(원당동)	486	186	
41	원당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3층)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20번길 16(당하동)	506	194	
42	창신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4층)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161번길 6(원당동)	486	186	
43	당하중학교	강당(교사시설 3층)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38(당하동)	486	186	
44	마전중학교	강당(교사시설 4층)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91(마전동)	635	244	
45	마전초등학교	강당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34번길 23(마전동)	509	195	
46	완정초등학교	강당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99(마전동)	492	189	

연번	시설명	상세시설명	주소	수용면적 (㎡)	수용가능인원 (명)	비고
47	단봉초등학교	체육관 (교사시설 2층)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52-1 (오류동)	890	342	
48	왕길초등학교	강당(교사시설 4층)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440번길 20(왕길동)	576	221	

다) 대응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13개 실무반 운영
-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주민 대피
- 인명 구조·구급 최우선
- 신속한 응급 복구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및 이재민 적극 지원 및 불편 최소화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피해상황 및 복구현장 모니터링
- 단계별 상황전파 및 보고

□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
- 공공시설물 및 사유시설물 위험도 평가 실시
 - 공공시설물 : 단장(지진업무 소관국장)
 - 사유시설물 : 단장(건축물 안전업무 소관국장)
- 단계별 위험도 평가 실시
 - 1단계 위험도 평가 : 건축물의 외관 위주 위험도 조사
 - 2단계 위험도 평가 : 건축물의 외관 및 내부의 위험도 조사

라) 복구단계

□ 재해복구 기본방향 결정요소

- 결정요소 :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 관리주체, 시민의견 등
- 기본개념
 - 신속한 원상복구를 할 것인가(원상복구)
 - 향후 재해에 강한 도시건설 등에 목표를 두고 중장기적 과제의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인가(개량복구)

□ 재해복구의 기본방향

- 시민생활유지 및 국가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은 신속한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여 복구실시
- 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장기 미해결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 복구 실시
- 재해 지역의 복구는 시 및 자치구가 주체가 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민·관 협동으로 복구를 실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
- 복구계획은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지침」에 따라 추진

□ 재해복구 상황보고

- 보고체계
 - 구청장 ⇨ 시장 ⇨ 행정안전부장관

○ 피해시설 복구 체계도



□ **복구계획의 수립**

-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 결정
- 조사방법 : 피해시설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지조사 및 확인반 편성·운영
- 총책임자 : 관련부서 담당과장 (경제정책과, 도로과, 건축과 등)
- 반 원 : 관련부서 담당팀장 외 직원
 - 피해규모 및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사인원 구성
 - 현지조사·확인반 구성·운영시 다른 분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조사·확인

□ **신속한 원상복구의 진행**

- 피해시설의 복구
 - 물자·자재의 조달계획과 인력의 지원계획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피해시설의 복구사업을 실시·지원
 -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서 복구사업의 진행에 관한 인·허가·승인 수속절차의 간소화

- 피해시설의 복구에 있어 원상복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피해 재발 방지의 관점에서 개량복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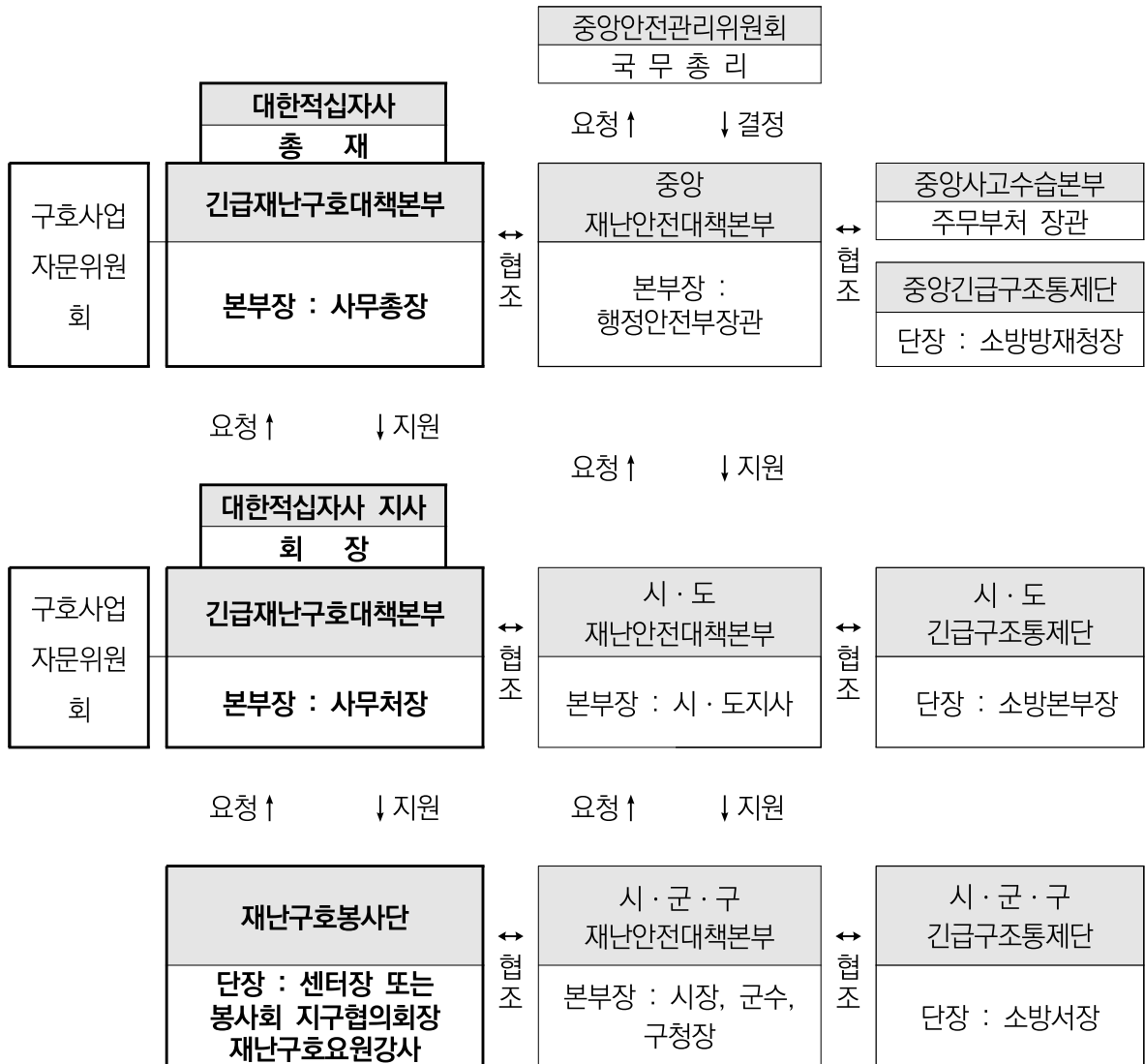
○ 재해 잔재의 처리

- 임시적치장·최종처분장 등을 확보, 계획적인 수집·운반과 처분

□ 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자 비축(청사 내 재해구호 물품 창고)
- 비상 시 대비 대형유통업체와 협조체제 구축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지진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조봉현 자연재난팀장	032-560-4701 jonum@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지원 주무관	032-560-4704 xnwldhjs18@korea.kr	예방	X

- ◇ 관련 부서·기관별로 지진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 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 관련 부서·기관은 지진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행동매뉴얼 활용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행동매뉴얼 개정	2회	2회	2회	행동매뉴얼 개정 횟수

□ 주요내용

- 재난대응체계변경 및 유관기관, 부서 연락처 현황화
 - 재난관리 체계도 및 재난 대응 표준 절차도 변경
 -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자 및 연락처 현행화

□ 추진성과(최근 3년)

- 매뉴얼 상·하반기 개정 추진

□ '25년도 주요 계획

- 2024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안) 반영
- 인사발령에 따른 비상연락망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4분기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비상단계별 실무반 및 담당자 현행화	5월
4/4분기	표준매뉴얼 및 실무매뉴얼 개정에 따른 하위 매뉴얼 개정	10월

□ 제 · 개정내용

규정명	주요내용	진행상황
지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상위기관 매뉴얼 개정 내용 반영 -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등 최신화	일부개정 시행

나) 재정사업

(1)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조봉현 자연재난팀장	032-560-4701 jonum@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지원 주무관	032-560-4704 xnwdhjs18@korea.kr	예방	X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진가속도계측통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향상 및 지진데이터 상호연계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시행	시행	시행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시행 여부

□ 주요내용

- 지진가속도계측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향상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추진성과(최근 3년)

-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실시
- 매월 지진가속도계측기 점검 실시

'25년도 주요 계획

-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실시
- 매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시설물 지진이벤트 미수신 여부 점검 및 미흡사항 조치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착공 및 유지보수 실시	1월
2/4분기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3/4분기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4/4분기	지진가속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준공 및 유지보수 실시	12월

소요예산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61.5	12	12	13	13	11.5	13	13	13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61.5	12	12	13	13	11.5	13	13	13	

②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가. 산불

1) 현 황

< 연도별 산불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2.5	4	0	1	1	4
재산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통계 출처) 산림정원과 소관 통계자료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산불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철탑(송전선로) (개소)	산지(임야)(%)	목구조 건축물(%)	산사태 위험지역(m ²)
서구	9	26.26	0.23	1,761,800
비교지역 평균	3.7	31.33	0.78	2,580,963

2) 원인분석

- 최근 5년간('20 ~ '24) 10건의 산불 발생으로 0.98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주로 봄철에 편중되었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및 등산객 등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산림보호법」 제 35조 산불방지교육 실시
- 「산림보호법」 제 28조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 「산림보호법」 제 31조 산불조심기간 내 비상근무 실시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지속적인 산불 우려지역 관리를 통해 산불 발생 건수 5건 미만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4	5	5	5	5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세부사업명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합계	'23	'24	'25
산불예방사업	63	21	26	16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69	210	223	236
산불진화장비확충	45	15	15	15
산불감시기반 확충	12	4	4	4
산불 무선통신운용	6	2	2	2
장비관리 및 정비	6	2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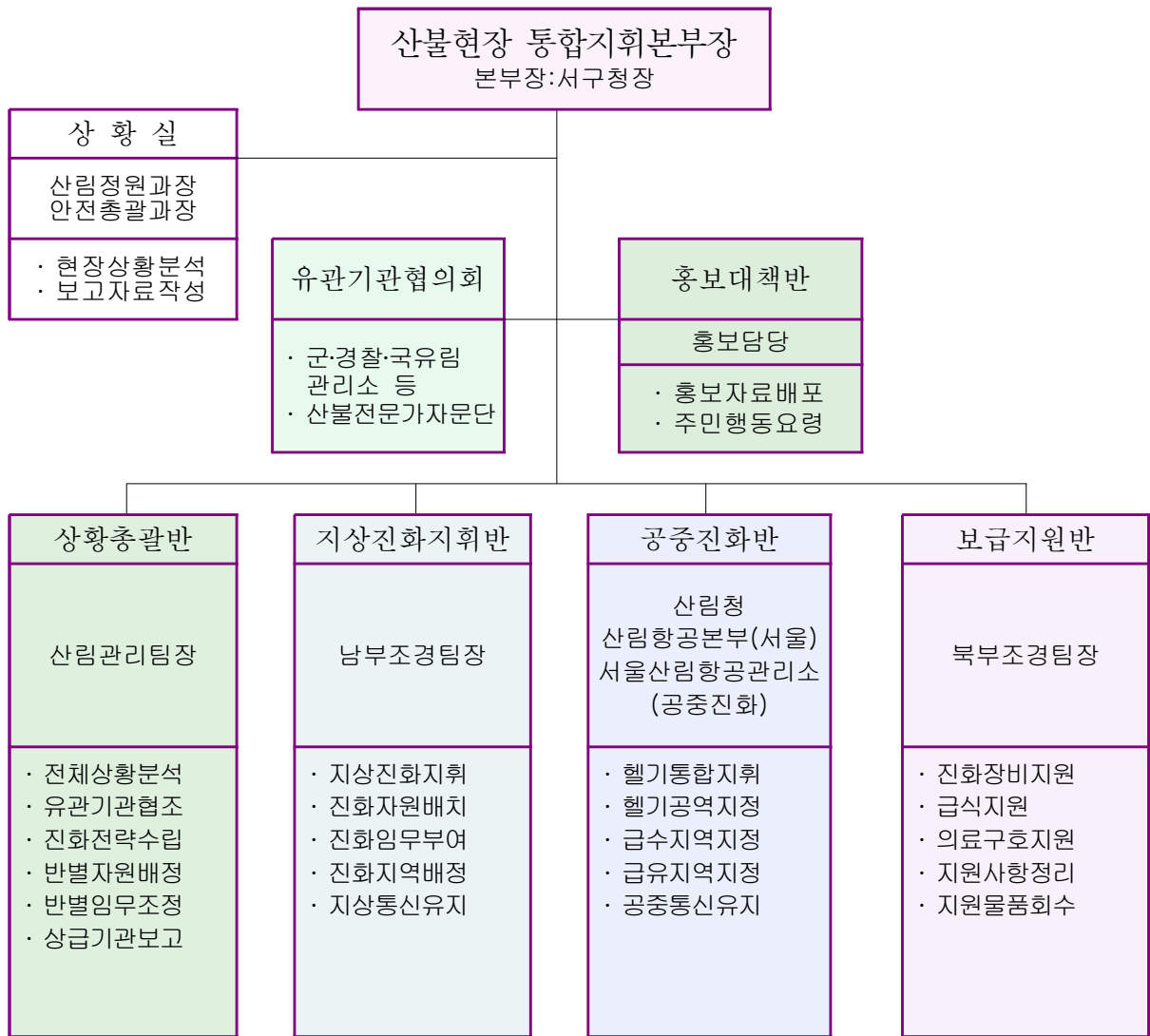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산불피해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 산불예방종합계획 수립·운영
 - 산불종합대책수립, 운영
 - 봄철, 가을철 년 2회 산불종합대책 계획수립운영
 - 산불종합대책상황실 운영(년2회 5개월)

○ 산불현장 지휘본부(산불 발생시)



□ **민관 협력 방재시스템 구축지원**

○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 운영

-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해병2사단 외 5개 군부대 활용 감시 및 진화태세 구축
- 인근 지자체(부평구청, 계양구청, 김포시청)와 유기적인 협조로 광범위하고 신속한 조기진화 체계 구축

○ 운영방법

구 분	판 단 기 준	취약지 배치 및 비상대기 인원배치기준	비 고
관 심 (Blue)	○ 산불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경보 「주의」 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산불방지대책본부 에 속한 상황근 무요원을 배치·대기	○ 기상관측 및 예보 모 니터링 ○ 징후활동 감시 ○ 산불경보 「관심」 발령
주 의 (Yellow)	○ 인천광역시의 산림 중 산불위험 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점검 ○ 산불경보 「주의」 발령
경 계 (Orange)	○ 인천광역시의 산림 중 산불위험 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 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사회복무요 원의 3분의 1 이 상을 배치·대기	○ 대응태세 강화 ○ 산불경보 「경계」 발령
심 각 (Red)	○ 인천광역시의 산림 중 산불위험 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 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 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사회복무요 원의 2분의 1 이 상을 배치·대기	○ 총력 대응 ○ 산불경보 「심각」 발령 (산림청장과 사전협 의)

나) 대비단계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 산림청 헬기 및 공중진화대 지원 체계 구축

- 대형 화재 발생 시 산림청, 소방본부 헬기 지원체제 구축
 - 대형 화재 시 산림청 진화헬기는 서울항공관리소 요청
 - 인천소방본부에 소방헬기 지원요청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의거 실시

- 대형 산불 발생을 대비한 임시주거 시설 및 담당 부서지정

- 대형 산불 발생 시 산림 인근 학교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임시주거 시설지정
- 구호물자, 기부금품 모집 및 지원대책 부서지정 운영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산림청

주관기관(부서)	직 위	연 락 처	비 고
산림재난통제관	국 장	042-481-1230	
산불방지과	과 장	042-481-4250	
산불방지과	산불진화.조사담당	042-481-4252	
산불방지과	주무관	042-481-4258	산불상황실 042) 481-4119

- 인천시 녹지정책과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녹지정책과	과 장	박세철	(사) 032) 440-5049	
녹지정책과 (산림자원팀)	담 당	전병철	(사) 032) 440-3681	
녹지정책과 (산림자원팀)	주무관	공경화	(사) 032) 440-3683	

- 서구청 산림정원과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명	연락처	비 고
서구청 산림정원과	산림정원과장	심은엽	사) 032-560-2954 CP) 010-3433-6592	
서구청 산림정원과	산림관리팀장	곽동운	사) 032-560-4791 CP) 010-8711-1170	
서구청 산림정원과	지방녹지서기보	빅영주	사) 032-560-4794 CP) 010-8121-3855	

- 인천광역시 서구 유관부서 및 기관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Fax
소 방 본 부	중 합 방 제 센 터	032-870-3120	
	119중합방재센터	032-432-0119	
산 립 청	산 립 항 공 본 부 (공 중 진 화)	02-2166-4505	
소방안전본부	(공 중 진 화)	032-870-3120	
해 병 2 사 단		032-454-3411	
길 병 원	(응 급 환 자 후 송)	032-460-3114	
군 부 대	9 공 수 부 대	032-666-7851	
	1 7 사 단	032-510-9001	
	7873부대 1대대	032-562-1113	
	7873부대 47대대	032-562-0113	
	3765부대 1대대	032-564-3113	
인 천 지 방 경 찰 청 (산 하 기 관)	중 부 경 찰 서	032-777-8500	
	남 부 경 찰 서	032-861-0182	
	연 수 경 찰 서	032-821-3336	
	부 평 경 찰 서	032-514-9935	
	삼 산 경 찰 서	032-566-0112	
	서 부 경 찰 서	032-562-0912	
	계 양 경 찰 서	032-363-6112	
	남 동 경 찰 서	032-469-7000	
	강 화 경 찰 서	032-934-2115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Fax
인천소방본부 (산하기관)	중 부 소 방 서	032-870-5101	
	남 부 소 방 서	032-870-5202	
	부 평 소 방 서	032-516-0119	
	서 부 소 방 서	032-561-0119	
	공 단 소 방 서	032-819-0119	
	계 양 소 방 서	032-560-5601	
	남 부 소 방 서	032-870-3009	
	강 화 소 방 서	032-930-5802	
북부지방산림청	산 립 재 해 안 전 과	033-742-4687	033-738-6202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산불대책 사전대비 운영
 - 산불대책 기간 및 근무 운영
 - 산불대책기간 설정 운영(봄철, 가을철)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예방 및 조기진화체계 구축
 - 산불 상황 전파 및 비상근무 실시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취약지역 배치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취약지역 배치로 산불요인 사전제거
 - 산불진화차량을 활용한 대 구민 홍보 및 조기진화대책 구축
 - 중앙, 시 산불대책본부와 연계한 산불진화체계 유지

□ 상황판단회의

- 현장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 산불 발생 시 현장대책본부 설치, 운영
 - 산불발생시 현장대책본부 설치 운영(소, 중형단계) 구청장
 - 대형 산불 발생 시 현장 지휘권 인계(구청장→시장)
 - 현장 대책회의 개최(동원자원 배치, 대응조치장구, 진화계획, 언론브리핑 등)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산불 발생지에 대한 산불피해조사
 - 산불피해조사 실시
 -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실질적인 피해조사 실시
- 복구계획 수립
 -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 산불 수목 피해지에 대한 조림 복구 등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
 - 대형 화재로 주택 등 소실시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의거 수립
 -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 대형 산불 피해 시에는 연차적인 복구계획 수립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산불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산림정원과	작성자 및 연락처	곽동운 산림관리팀장	032-560-4791 kenny74@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박용주 주무관	032-560-4796 yongju9314@korea.kr	예방	X

◇ 산불 매뉴얼 정비

* 「산림보호법」 제28조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매뉴얼정비 현행화	100%	100%	1회	행동매뉴얼 개정 횟수

※ 측정산식 변경

□ 주요내용

- 산불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정비
 - 구정현황에 맞는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현행화

□ 추진성과(최근 3년)

- 2024년: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2023년: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2022년: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25년도 주요 계획

-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2~3월
2/4분기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4~6월
3/4분기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7~10월
4/4분기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11~12월

나) 재정사업

(1) 산불예방 사전준비

작성 부서	산림정원과	작성자 및 연락처	곽동운 산림관리팀장	032-560-4791 kenny74@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박용주 주무관	032-560-4796 yongju9314@korea.kr	예방	X

◇ 효과적인 산불예방 및 산불기간 내 집중단속으로 초기진화를 하기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채용 및 필요장비 구입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산불전문진화대 채용	12명	11명	10명	채용 인원 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2개	2개	2개	산불cctv 유지보수 개수
산불진화대 진화장비 확충	15백만원	15백만원	15백만원	예산 지출실적

□ 주요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 및 실정에 맞는 개인진화장비 구입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버스 내부 음성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진화장비 보급	2~3월
2/4분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진화장비 유지보수, 산불예방 홍보	4~6월
3/4분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CCTV유지보수, 진화장비 구입 및 보급	7~10월
4/4분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진화장비 유지보수	11~12월

□ 소요예산

사업명	연도별 예산				비고
	합계('23~'25)	'23	'24	'25	
계	726	229	242	25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69	210	223	236	
산불감시기반 확충	12	4	4	4	
산불진화장비 확충	45	15	15	15	

다) 기타시책

(1) 산불예방 캠페인

작성 부서	산림정원과	작성자 및 연락처	곽동운 산림관리팀장	032-560-4791 kenny74@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박용주 주무관	032-560-4796 yongju9314@korea.kr	예방	X

◇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으로 산불발생 건수 저감

* 「산림보호법」 제 33조 및 동법 35조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100개	100개	100개	현수막 설치 개수
산불예방 캠페인	2회	2회	2회	캠페인 실시 횟수
산불관련 안전 교육	3회	3회	3회	교육 실시 횟수

□ 주요내용

-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등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설치
- 산불예방 캠페인
 - 국민들의 산불에대한 인식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 홍보 및 산불발생시 대처요령 교육
-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능률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한국산불방지협회 협조)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채용 운영, 봄철 산불기간 산불상황실 운영	2~3월
2/4분기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교육실시,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4~6월
3/4분기	산불취약지 현장 점검, 산불예방 현수막 설치	7~10월
4/4분기	가을철 산불기간 산불상황실 운영, 산불 취약지 현장 점검	11~12월

나. 생활·레저 사고

나-1) 승강기 사고

1) 현 황

< 인천 서구 연도별 승강기 사고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1.2	2	2	0	1	1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1.4	2	2	0	2

※ (통계 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가승강기정보센터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승강기 사고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초고층아파트 (50층이상)(%)	고층아파트 (30층이상) (%)	가스/ 석유선로(m)	변전시설(m ²)	물류창고(%)
서구	0.51%	3.92%	75,700m	14,862m ²	1.39%
비교지역 평균	0.32%	3.03%	10,321m	12,970m ²	0.76%

2) 원인분석

- 최근 5년간('20년 ~ '24년) 승강기 사고발생 6건
- 승강기 안전사고는 체계적인 안전검사 및 자체점검 시행으로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발생(6건)이후 현재까지 현상유지 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승강기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야	유형	관계법령	주요내용	주관부서
생활안전	승강기 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제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지원과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재산 및 인명피해 제로화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5	2026	2027	2028	2029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운행 부적합(안전검사 미필, 안전검사 연기 등)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 의무적 검사를 미수검하거나 연기한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표지 발급을 통한 운행제한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추진
 -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 점검 실시
 - 승강기운행과 관련된 위법행위 적발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나) 대비단계

- 구 담당자 안전교육 참여
 - 유관기관 주관 안전교육 및 승강기담당직무교육 참석
- 구 담당자 안전교육 참여

다) 대응단계

- 유관기관과 협조 및 지원체계 유지
 - 승강기사고 대응(조사)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 인천광역시 사회재난과(☎032-440-1863)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인천서부지사(☎032-566-5644) 등 유관기관과 상시 비상연락체계 확립

라) 복구단계

- 사고원인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확인
 - 사고원인에 대한 향후 재발 방지대책에 협조

8) 세부추진대책

가) 기타시책

(1) 승강기 안전관리

작성 부서	기업지원과	작성자 및 연락처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	032-560-2892 mswoo@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최형연 주무관	032-560-2892 choi0420@koreakr	예방	X

◇ 연중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10개소	12개소	12개소	승강기 실태조사 점검 개소 수

□ 주요내용

-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에 따른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및 자체점검 결과 등 운영 실태 점검

□ 추진성과(최근 3년)

- 승강기 유지관리업 실태점검
 - 2022. 9. ~ 12. : 승강기 유지관리업 실태점검(10개소)
 - 2023. 9. ~ 12. : 승강기 유지관리업 실태점검(10개소)
 - 2024. 9. ~ 12. : 승강기 유지관리업 실태점검(12개소)

□ '25년도 주요 계획

-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 관내 승강기 유지관리업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시청 승강기 담당자 및 승강기 안전공단과 협조

□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나-2) 전기·가스 사고

1) 현 황

- 최근 5년간 인명피해 없음

< 인천 서구 연도별 가스사고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통계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통계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전기·가스사고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영세업체 밀집 산업단지(%)	발전시설(m ³)	가스원유 비축시설(m ³)	초고층아파트 (50층이상)(%)	다중이용시설(%)
서구	3.87	326,143	1,726,839	0.51	2.40
비교지역 평균	1.36	11,208	70,375	0.32	4.46

2) 원인분석

-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용 중 파열 및 폭발 사고
- 공장 철거작업 중 미사용 정압기 손상에 의한 가스 누출 사고
- LPG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및 화재발생 사고

3) 관련 계획 및 규정

- 가스시설 안전관리 계획(연도별 수립)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가스 사고 재산 및 인명피해 제로화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4	2025	2026	2027	2028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가스수급 위기 발생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
 - 가스수급 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세부활동 내용
 - 배관 등 공급 인프라 점검체제 강화
 -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에너지의 안전관리 및 절약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

- 주요 가스시설 점검
 - 고압가스(기후대기과 협조)

세부추진내용	추진기간	유관기관
○ 제조(충전)·판매·저장 검사 및 점검 - 대상 : 제조업소, 판매업소, 저장소 · 가스안전시설 작동상태,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 기타 가스위해 예방 실태 등 ·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수시점검 · 노후시설의 교체 및 현대화 유도	3, 6, 11월	한국가스안전공사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업소 검사 및 점검 - 대상 :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 내용 · 자체검사 실시상태, 검사장비 보유실태 · 생산시설 현황 등	3, 6, 11월	
○ 가스운반차량 단속 - 대상 : 고압가스 및 LPG 운반차량 - 내용 · 충전용기 적재기준 준수 · 주택가 장시간 주정차 금지 · 운반차량 노상주차 근절	연중	

- 도시가스

세부추진내용	추진기간	유관기관
○ 도시가스 충전 및 정압기 시설 검사 및 점검 - 대상 : 충전소 및 정압기시설 - 내용 · 침수방지조치 여부 · 원방 감시장치 작동상태 · 가스누설차단기설치 및 작동상태 등	3, 6, 11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도시가스(주)
○ 도시가스 시설 설치 공사현장 검사 및 감리 - 대상 : 공사계획승인 및 신고현장 - 내용 · 시공감리제 이행 상태 ·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내용 준수여부 등	연중	
○ 다중이용시설 특별관리 및 점검 - 대상 : 백화점, 종교시설 등 - 내용 · 가스누설차단기설치 및 작동상태 · 안전관리자 근무 및 검사실시 여부	1월, 9월	

- 액화석유가스

세부추진내용	추진기간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충전·판매소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LPG 충전소 및 판매소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채용 및 상주근무 여부 · 법정검사 실시 여부 · 시설의 안전유지여부 및 충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 수시점검 · 노후시설의 교체 및 현대화 유도 · 공급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 	3, 6,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 안전공급계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LPG 사용시설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공급계약 체결 의무화 홍보 · 판매업소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공급계약이행 지도 	연중	한국가스안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용품 제조업소 검사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가스용품 제조업소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검사 실시상태, 검사장비 보유실태 · 생산시설 현황 등 	3, 6, 11월	

나) 대비단계

○ 주요 가스시설 점검

구분	발령요건	비고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불안 징후가 나타나는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생산국의 정정 불안 및 가스시장 불안 징후 포착 등 - 주요 가스 소비부문의 수요 증가 징후 포착 등 ○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분야 업무종사자 작업거부 징후포착 	징후 활동 감시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징후가 지속되어 수급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있는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생산국의 정정 불안 및 가스시장 불안 지속 등 - 주요 가스소비부문의 일시적 설비고장 및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일부 수요 증가 등 ○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분야 종사자 작업거부 가능성 농후 ○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설비 재난 발생 예상 	협조 체제 가동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징후가 구체적으로 인지되어 수급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생산국의 정정 불안의 심화 및 일부 가스 생산차질 - 주요 가스소비부문의 설비고장 및 기상재해 상당기간 지속 ○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분야 업무종사자 부분 작업거부 ○ 재난발생으로 생산 및 공급설비 피해 발생 	대비 계획 점검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징후가 현저하게 임박하여 수급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생산국의 국가위기 발생, 대규모 생산시설 및 수송선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란, 쿠데타, 전쟁발발 및 도입량 대량 부족 현실화 - 주요 가스 소비부문의 설비고장 및 기상재해 장기화 등 ○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분야 업무 종사자 총 작업거부 ○ 재난으로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설비의 대규모 사고 발생 	즉각 대응 태세 돌입

다) 대응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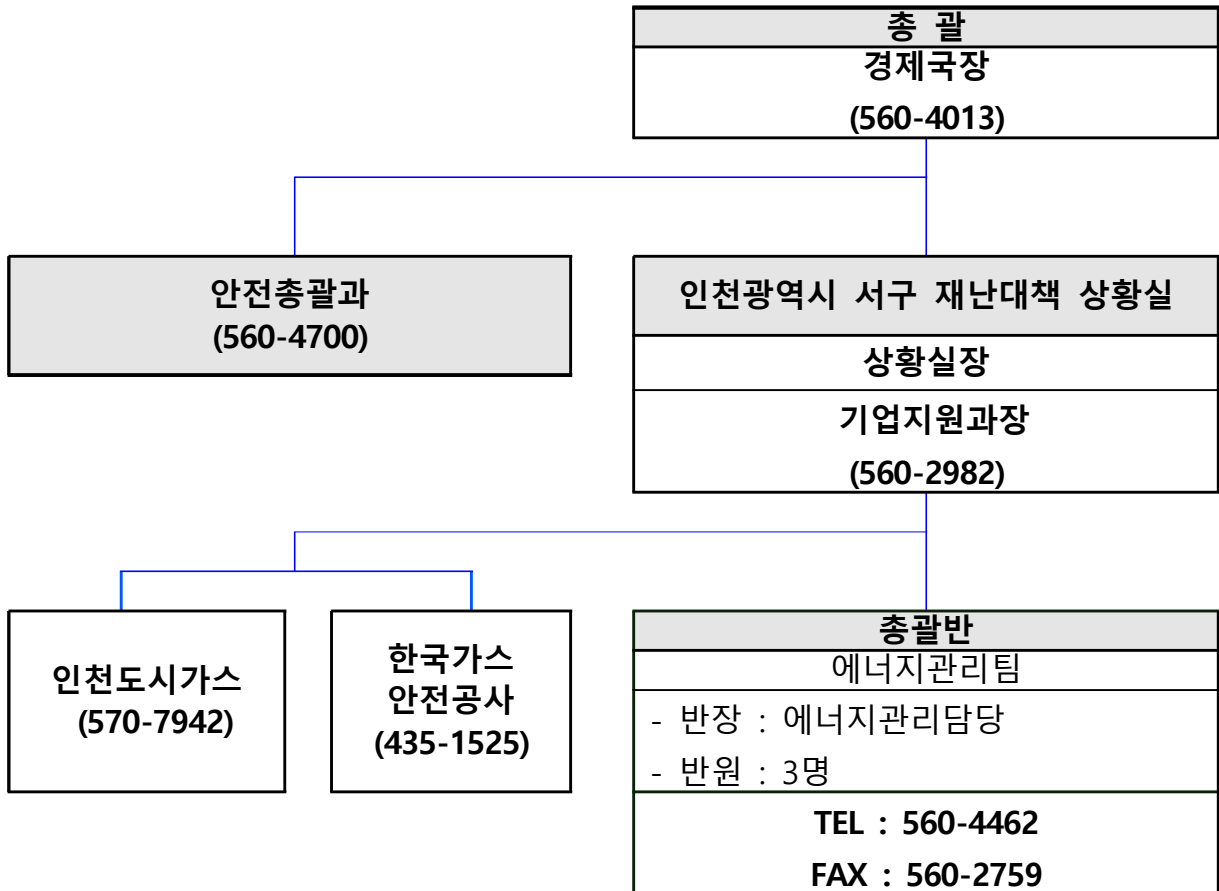
○ 도입 및 공급 수급 위기 시 협조를 통한 종합 대응

- 활동 내용

- 위기상황 발생 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극복
- 가스공급 시스템 장애요인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우회공급 등으로 위기상황 극복
- 위기유형에 따른 실질 대응조치는 수급차질 및 위기지속기간 등을 고려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위기극복을 위한 전 국민 동참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치안질서 유지 및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 노력

○ 긴급구조 및 상황 공동관리체 운영

- 인천광역시 서구청 에너지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



라) 복구단계

○ 가스수급위기 조기 복구 및 보완대책 강구

- 세부 활동 내용

- 위기 진행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 종합 및 계통 정상화 대책 마련
- 피해복구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검토
- 위기 대응조치 평가 보완
 - 1) 비상대응조직 및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검토
 - 2) 중장기 가스 수급 대책 검토

○ 가스공급 복구 활동

- 市에너지산업과와 합동으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원

- 불법행위자 처리방안 협의·검토
- 재난현장 방문 및 피해자 위문 등

- 대체연료 유통질서 확립 추진

- 대체연료 배급제에 따른 연료완충자금 등 제반사항 정리
- 석유 및 LPG 판매업소의 정상영업, 정품취급, 적정가격 준수 지도

- 통합지원 지속

- 서구청 기업지원과에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 지원
- 불법행위자 처리방안 협의·검토
- 재난현장 방문 및 피해자 위문 등

- 관리시스템 진단 및 보완

- 서구청 기업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매뉴얼 수정·보완 요청
- 유관기관 협조체제 점검 등

8) 세부추진대책

가) 기타시책

(1) 가스시설 안전점검

작성 부서	기업지원과	작성자 및 연락처	오효숙 에너지관리팀장	032-560-4461 ohhyosuk@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권용훈 주무관	032-560-4462 kyhoon29@korea.kr		

- ◇ 가스취약시기인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주요시기에 대비하여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함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가스시설 안전점검	100%	100%	100%	(점검 개소 수/점검 대상 개소 수)*100

□ 주요내용

- 주요시기별 가스시설 안전점검
 - 주요시기별 가스시설 안전점검 정기실시 : 해빙기, 우기, 동절기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시설
- 다중이용시설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 대형마트, 전통시장,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 설연휴 대비, 추석연휴 대비
 -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시설

□ 추진성과(최근 3년)

- 주요시기별 가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성과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연휴)
 - 2022년 지도점검 총 5회, 442개소
 - 2023년 지도점검 총 5회, 326개소
 - 2024년 지도점검 총 5회, 305개소

□ '25년도 주요 계획

- 주요시기별 가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일정
 - 2025. 1. 설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2025. 3.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
 - 2025. 6. 우기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
 - 2025. 9.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2025. 11. 동절기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설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점검	'25. 1.
2/4분기	우기 대비 가스시설 점검	'25. 6.
3/4분기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25. 9.
4/4분기	동절기 대비 가스시설 점검	'25. 11.

나-3) 등산·레저 사고

1) 현 황

< 인천 서구 연도별 등산·레저 사고 피해현황 >

(단위 : 건, ha,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ha)		-	-	-	-	-	-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 (통계 출처) 산림정원과 소관 통계자료

2) 원인분석

- 최근 5년간('20~'24) 등산로 안전사고는 다양한 홍보활동, 각종 안전시설의 확충, 예방활동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 계절별 이용행태에 따른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등산이용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사고방지 위한 시설 정비와 홍보활동 전개 필요
 -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 및 구급활동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 숲길의 종류 및 조성 관리
 - 숲길주변의 금지행위 등

4) 의견수렴

-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시공사항에 대한 민원 사항 반영

5) 목 표

- 지속적인 산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건수 0건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6) 재정투자 현황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계	2,620	100	200	400	1,500	420
등산로 정비	2,620	100	200	400	1,500	420

기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지역신문, 반상회 등 안전한 산행을 위한 예방활동 홍보
 - 안전 현수막, 홍보물 배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
 - 본인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안내
 - 위험 등산로에 대한 등산로폐쇄, 안전시설 확충
 - 매트깔기 사업으로 등산로의 쾌적함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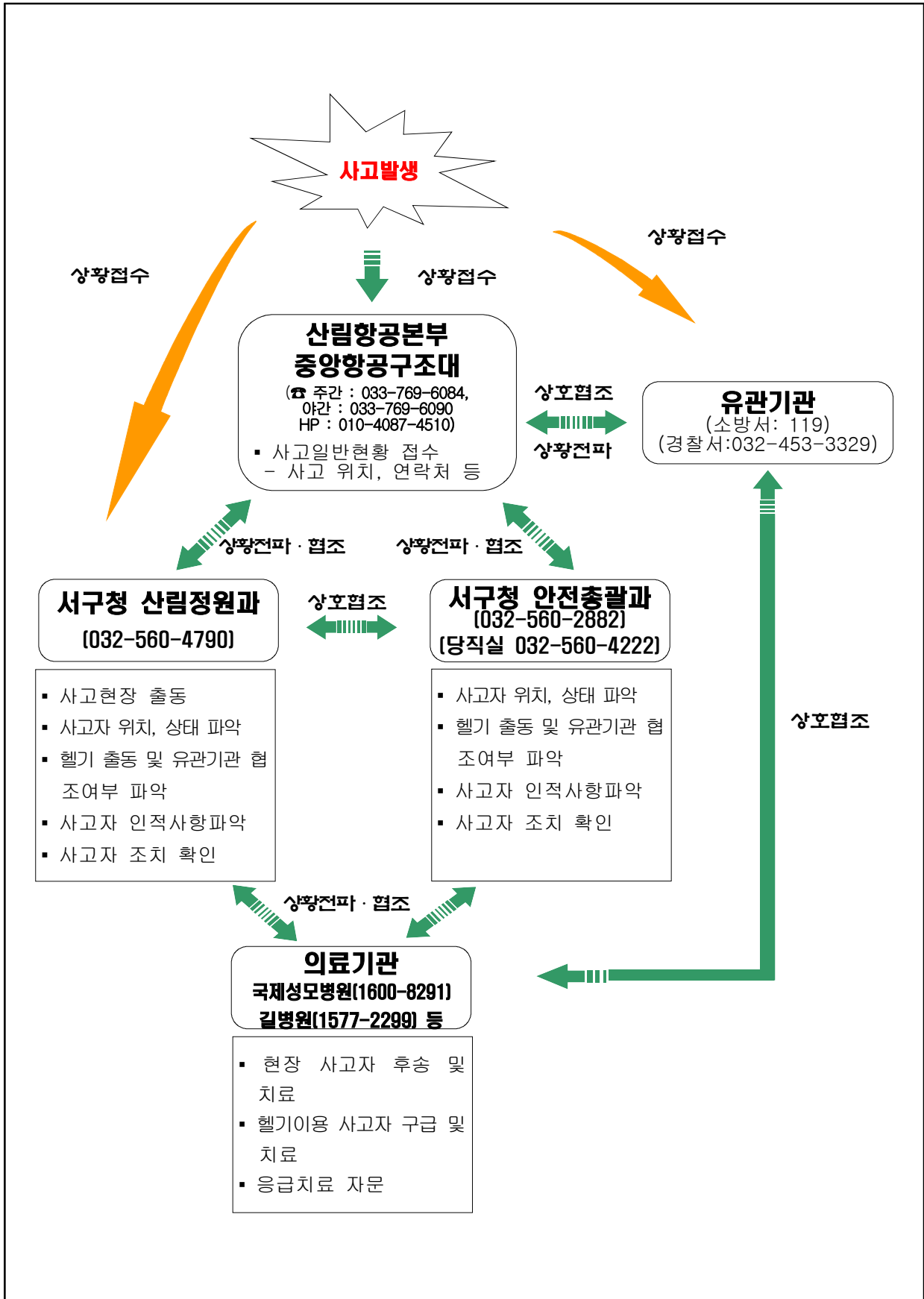
나) 대비단계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 산림청 항공구조대 및 인천소방본부 항공대 지원 체계 구축
 - 긴급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를 위한 항공 지원 체계 구축
 - 발생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 예측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등산로 안전관리 사전대비 점검 운영
 - 산지관리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활용 등산로 위험지역 점검, 정비 (1월~12월) 추진
- 상황판단회의
 - 현장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 등산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산림정원과 내 현장대책본부 설치
 - 긴급 상황에 따른 항공지원, 응급의료기관 연계
 - 안전사고 발생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 자체구조를 먼저 판단하고 불가능한 경우 신속한 구조 요청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등산로 안전사고 피해조사
 - 등산로 안전사고 피해조사
 - 등산로 담당자 현장 확인, 실질적인 피해원인 조사 실시
- 복구계획 수립
 - 등산로 안전사고 발생지(예상지) 안전시설 확충
 - 안전로프, 웬스, 목재계단설치
 - 안전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확보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등산로 정비사업

작성 부서	산림정원과	작성자 및 연락처	곽동운 산림관리팀장	032-560-4791 kenny74@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주무관 김기양	032-560-4792 gocco790@korea.kr	예방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산림관리 사업 추진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100%	100%	100%	사업 공정률

□ 주요내용

- 등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 경사로 안전로프, 웬스 및 목재계단설치
 - 위험등산로 폐쇄 안내판 설치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시설 설치
 - 등산로 안내표지판 및 위치표지판 설치
 - 둘레길 이용 안내 현수막, 홍보 캠페인 시행
- 산림관리원을 활용한 등산시설 점검
 - 등산로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시행

추진성과(최근 3년)

- 2024년: 숲길 정비사업 추진 완료
- 2023년: 숲길 정비사업 추진 완료
- 2022년: 숲길 정비사업 추진 완료

'25년도 주요 계획

- 주요 등산로 점검을 통한 사업 대상지 선정
- 급경사 구간 등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등산로 관련 안전점검 및 홍보,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2~3월
2/4분기	등산로 관련 안전점검 및 홍보,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4~6월
3/4분기	등산로 관련 안전점검 및 홍보,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7~10월
4/4분기	등산로 관련 안전점검 및 홍보, 등산로 정비사업 완료	11~12월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5	'26	'27	
계	2,620	100	200	400	1,500	420	400	400	400	
등산로 정비	2,620	100	200	400	1,500	420	400	400	400	

나) 기타시책

(1) 등산로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작성 부서	산림정원과	작성자 및 연락처	곽동운 산림관리팀장	032-560-4791 kenny74@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김기양 주무관	032-560-4792 gocco790@korea.kr	예방	○

◇ 적극적인 등산로 내 위법행위 계도 및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등산로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3회	3회	3회	단속 및 홍보횟수

□ 주요내용

- 올바른 등산문화 홍보 및 국민의 공공에 이익을 저해시킬 수 있는 행위 계도
 - 등산로 내 불법 굴취 및 벌채행위 계도
 - 지방지 및 반상회보등을 통한 홍보로 등산에 대한 구민 의식 전환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등산로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홍보	2~3월
2/4분기	등산로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	4~6월
3/4분기	등산로 산행관련 안내 홍보	7~10월
4/4분기	등산로 산불 등 안전관련 홍보 및 점검	11~12월

다. 수질오염

1) 현 황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발생
 - 원인자(폐수배출업소) 확정시 부실 관리로 인한 오염사고 발생시 해당 사업장에 방제 조치 명령
 - 원인자를 알 수 없는 오염사고 발생 또는 공공수역으로 유류 일부가 유출됨이 확인 되면, 오일웬스 등 방제 장비를 도입하여 방제작업 실시

< 연도별 수질오염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2.2	3	6	0	0	2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통계 출처) 환경관리과 소관 통계자료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수질오염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취수/정수장(개)	저수지(개)	소하천지역(%)
서구	1	1	0.15
비교지역 평균	0.23	4.58	0.09
항 목	폐기물 처리시설(%)	축사(m ²)	영유아(%)
서구	0.23	62,255	6.77
비교지역 평균	0.03	12,465	4.66

2) 원인분석

- 사고 발생지역 일원 환경피해가 없는 소규모 수질오염사고로 해당없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금지 및 오염발생시 방제조치 주체를 명시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
 -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수질오염 재산 및 인명피해 제로화

< 연도별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21~'25)	'21	'22	'23	'24	'25	'25	'26	'27
계	1,327.7	22.8	22.8	498.5	373.7	409.9	409.9	409.9	409.9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매	40	11	11	11	4	3	3	3	3
환경사고 발생 오염물질 처리	20.4	4.8	4.8	4.8	4.8	1.2	1.2	1.2	1.2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 용역	31	7.0	7.0	7.0	7.0	3.0	3.0	3.0	3.0
수질 TMS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1,236.3	-	-	475.7	357.9	402.7	402.7	402.7	402.7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수질오염사고 유발시설 점검·관리

- 수질오염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재난 관리 대상시설 지정 및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수질오염사고 감시 강화

· 대 상 : 폐수처리업, 도금단지 등

· 내 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확인

* 수질오염행위 행위 여부 확인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등

○ 수질오염사고 대비·예방 강화

- 유해물질 제조유통판매업소 현황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업소 현황 사전 구축

- 관내 배출업소 대상으로 사고대비 안전교육

· 대 상 : 관내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 내 용 : 배출업소 시설 관리방법, 환경오염행위 적발 사례 등

- 수질오염사고 유형별 자체 방제 훈련 실시

나) 대비단계

- 수질오염사고 현장 지휘체계 및 초동 대응 태세 사전 구축
 - 오염사고 대응 관련 현장 지휘체계 구축·운영
 - 사고 현장 보고·과약 및 전파체계 구축
 - 현장 대응 및 수습역량 강화대책 강구
 - 수질오염사고 대응조직 구성 등 재난관리 대책강구
 -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 예상 상황별 위기수준 평가 및 긴급 대응계획 준비

- 수질오염사고 방제 인력·장비 확보
 - 오일웬스 등 방제장비 및 약품 사전 확보, 적재적소 비치
 - 유관기관 지원인력 공조체제 구축

-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유지
 - 수질관련 유관기관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점검
 - 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주기적 점검·현행화
 -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비상근무태세 확립

- 사고 대비 교육·훈련 실시
 -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 훈련 실시 (환경관리과)
 - 폐수 배출업소 대상 환경관리인 교육 실시 (환경관리과)

-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상위기관 매뉴얼 개정에 따라 행동매뉴얼 개정

다) 대응단계

○ 위기경보 수준 판단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p><가까운 기간 내에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등의 폭발·화재 또는 위해물질 운반차량의 전복 등으로 다량의 유류·유해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이 우려될 때 ○ 대규모 하·폐수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다량의 미처리된 하·폐수의 유출이 우려될 때 ○ 오염물질 유입으로 추정되는 수질자동측정망의 주의경보가 지속 될 때 ○ 국가하천에서 오염물질 유입으로 추정되는 어류폐사가 발생하였을 때 	징후활동 감시
주의 (Yellow)	<p><위기로 발전 할 수 있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화재 및 차량 전복 등으로 유출된 다량의 유류·유해물질 중 일정량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었을 때 ○ 대규모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이 장기화 되어 다량의 미처리된 하·폐수가 하천 등으로 유입되었을 때 ○ 오염물질 유입으로 추정되는 수질자동측정망의 경계경보가 지속 될 때 ○ 국가하천에서 오염물질 유입으로 추정되는 어류폐사가 상당량 발생하였을 때 	협조체제 가동 및 초동방제 조치
경계 (Orange)	<p><사고의 전개속도상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사고로 일부지역의 취수가 중단되거나, 대규모 취수 중단이 우려될 때 ○ 국가하천에서 어류폐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다량의 물고기가 폐사하였을 때 	대응체제 가동 및 방제활동 실시
심각 (Red)	<p><사고의 전개속도가 빨라 위기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사고로 취수중단이 장기화되어 일부 지역의 급수가 중단되거나, 다수의 인구에 급수 중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차원의 대응태세 가동

○ 사고 접수·전파 및 상황파악

- 위기상황 접수

- 신고 : 수질오염사고를 유발시킨 자 또는 수질오염사고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환경청, 환경부 등에 신고
- 접수처

신고(접수)처	주간		야간(당직실)	
	전화	팩스	전화	팩스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7	044)201-7070	044)201-7440	044)201-7442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83	031)790-2600	031)790-2590	031)790-2600
인천광역시	032)440-3607	032)440-8686	032)440-2222	032)440-2229
인천서구	032)560-4360	032)560-2752	032)560-4222	032)560-2852
소방서, 경찰서 등	소방서(119상황실), 경찰서(112)			

- * 당직실 근무자는 접수 즉시 수질오염사고 담당자에게 연락
-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센터(1666-0128) 24시간 운영
- 접수 시 확인사항
- * 접수사항 : 접수기간,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접수자
- * 확인내용 : 사고발생일자/시간, 발생장소, 위기유형,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

○ 상황 보고 및 전파

- 최초상황보고는 가급적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청은 사고 상황을 환경부에 종합보고
- 인천시 서구청장은 국민의 생명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심주의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대피 등의 초동대응 조치 실시
- 인천시 서구청장이 위기경보를 발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와 환경청에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전파
- 위기 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사고 발생 시 접수기관은 초동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인근 소방서, 인근 군부대) 등에 협조 요청

- 사고 수습 및 방제 활동 실시
 - 현장 출동 및 방제 작업
 - 사고 오염물질 유출 차단 등 초동 조치·대응
 - 방제 인력·장비 동원 등 방제활동 전개
 - 사고 수습 및 방제 활동 상황 보고·전파
 - 사고 원인 조사 실시
 - 사고 원인 물질 정보 확인 유관 기관 전파
 - 현장 수질 분석 위한 시료 채취 실시
 - 어류 폐사 경우 폐사 원인 분석 및 폐사어 수거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위기 경보 변경·해제
 - 인천광역시, 서구는 위기 경보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고 수습이 완료되면 사고수습상황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위기경보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
 - 사고 수습 종합정리 보고 및 후속 조치
 - 인천광역시, 서구는 위기 경보 발령이 해제되었을 때는 사고 수습 조치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여 환경부에 보고
 - 사고수습상황 파악 환경부(환경청) 보고
 - 사후 환경영향 조사 실시
 - * 수질조사, 어류폐사의 경우 폐사원인 분석 및 폐사어 수거·처리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비용산출, 원인자 비용부담 조치
 - 사고 수습에 따른 폐기물 등 수거 처리
 - 긴급구조통제단, 경찰서 등 유관기관 지원요청(필요시)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환경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범희 환경산업팀장	032-560-4361 lifejust@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서예진 주무관	032-560-4366 kooisys131@korea.kr	대비	X

- ◇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수질오염 행동매뉴얼』 개정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지속 확인·관리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00%	100%	100%	(정비 실시 횟수 / 정비 목표 횟수)*100

□ 주요내용

-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대규모 수질오염 발생 시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가 개정사항 발생 시 반영
- 유관기관 협조사항 및 비상연락망 지속 관리
 - 사고 발생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 유관기관별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2/4분기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6월
4/4분기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12월

추진성과(최근 3년)

-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2022년: 2회 실시(11월, 12월)
 - 2023년: 7회 실시(1월, 4월, 6월, 7월, 10월, 11월, 12월)
 - 2024년: 2회 실시(7월, 12월)

'25년도 주요 계획

-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2회 실시(7월, 12월)

제 · 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나) 재정사업

(1) 수질오염 방제작업

작성 부서	환경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범희 환경산업팀장	032-560-4361 lifejust@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서여진 주무관	032-560-4366 kooisys131@korea.kr		
					대비	X

- ◇ 각종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각종 방제약품 및 장비의 적정 비치를 통한 대응체계 구축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수질오염사고 대비 예산 집행률	90%	90%	90%	(집행예산/예산액)*100

□ **주요내용**

-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비치
 - 다양한 사고 유형에 따라 필요한 방제 물품, 약품 등의 적정 구입 (비치)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비

-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
 - 각종 사고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를 통한 사고 후속 조치 및 2차 환경오염 예방

- 방제 장비 적정 보관·관리
 - 보관중인 방제 물품(장비, 약품 등)의 적절한 관리 통한 신속한 방제 활동 능력제고 및 예산 절약

□ **추진성과(최근 3년)**

- 2022년: 22.8백만원 예산 수립 및 집행
- 2023년: 22.8백만원 예산 수립 및 집행
- 2024년: 15.8백만원 예산 수립 및 집행

□ **'25년도 주요 계획**

- 7.2백만원 예산 수립 및 집행 예정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방제물품 구비 내역 정비	3월
2/4분기	방제물품 추가 물품 확인 및 구매	6월
3/4분기	방제물품 적정 관리	9월
4/4분기	방제물품 적정 관리	12월

□ 소요예산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21~'25)	'21	'22	'23	'24	'25	'25	'26	'27
계	1,327.7	22.8	22.8	498.5	373.7	409.9	409.9	409.9	409.9
수질오염 방제물품 구매	40	11	11	11	4	3	3	3	3
환경사고 발생 오염물질 처리	20.4	4.8	4.8	4.8	4.8	1.2	1.2	1.2	1.2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 용역	31	7.0	7.0	7.0	7.0	3.0	3.0	3.0	3.0
수질 TMS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1,236.3	-	-	475.7	357.9	402.7	402.7	402.7	402.7

다) 기타시책

(1) 수질오염 방제훈련

작성 부서	환경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범희 환경산업팀장	032-560-4361 lifejust@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서예진 주무관	032-560-4366 kooisys131@korea.kr	대비	X

◇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오염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방제 훈련 실시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방제훈련 실시	1회	2회	1회	방제훈련 실시 횟수

□ 주요내용

-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실시
 - 예정일 : 2025. 5~6월 중
 - 장 소 : 서구 관내 하천
 - 주 관 : 서구 환경관리과
 - 주요내용 : 환경오염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방제 훈련 실시
 - 추진효과 : 단계별 방제훈련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실제 사고 발생 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하고 방제 요령 및 장비 사용 방법 숙지

- 수질오염사고 대비한 예방·감시·대응체계 구축
 - 취약시기별(해빙기, 장마철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체계 구축
 - * 동절기·해빙기 특별점검 실시 : 1~4월
 - * 장마철 대비 특별점검 실시 : 7~8월
 - * 그 밖의 현안사항 관련 특별점검 실시 : 연중
 - 민·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 해빙기 대비 배출업소 점검 : 3월
 - * 소규모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 4월, 10월
 - * 장마철 대비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 점검 : 6월
 -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특별 순찰 : 연중
 - * 하천 및 주요 맨홀 확인 및 인근 지역 순찰

□ 추진성과(최근 3년)

- 지방하천 수질오염사고 대비 자체방제훈련 실시
 - 2024. 10. 24.: 오류동 목재단지 및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외곽 수로
 - 2023. 4. 24.: 오류동 875 (검단천 하류)
 - 2022. 5. 25.: 오류동 875 (검단천 하류)
- 취약시기별(동절기·해빙기·하절기·장마철) 수질관리대책 수립, 특별감시·단속
-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민·관합동 특별 점검

□ '25년도 주요 계획

- 2025년도 지방하천 수질오염사고 대비 자체방제훈련 실시
- 취약시기별(동절기·해빙기·하절기·장마철) 수질관리대책 수립, 특별감시·단속
-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민·관합동 특별 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해빙기 특별점검 및 상시 점검 실시	1~4월
2/4분기	방제 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장마철 특별점검 실시 등	6~7월
3/4분기	그 밖의 특별점검 및 상시 점검 실시	9월
4/4분기	그 밖의 특별점검 및 상시 점검 실시	12월

라.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1) 현 황

< 연도별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가축 전염병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축사(m ²)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
서구	62,255	4.32	0.23
비교지역 평균	12,465	7.51	0.03
항 목	농지(%)	다중이용시설(%)	영유아(%)
서구	12.29	2.40	6377
비교지역 평균	5.84	4.46	4.66

2) 원인분석

- 중국 등 주변국에서 가축질병(구제역 및 AD)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럽피스킨과 같은 신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직도 발생 우려가 높은 상태

3) 관련 계획 및 규정

-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 관련법령·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관련규정, 지침 등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고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재산 및 인명피해 제로화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세부사업명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합계	'23	'24	'25
계	236.4	78.8	78.8	78.8
구제역 및 SI예방사업	37.5	12.5	12.5	12.5
구제역 예방주사	18.9	6.3	6.3	6.3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지원	180	60	60	60

기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주변국 발생시(평시)

□ 가축전염병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 가축질병 사전 검색을 위한 중앙·지역 예찰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상시예찰 활동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에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 강화
- 주변 국가들의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발생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 및 정보 공유 및 상황 전파
-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여행자 등에 대한 검색 활동
- 긴급상황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용 준비
 - 상황실이동통제소 설치, 방역 동원장비, 매몰지 관리용 자재 및 매몰지 사전 확보 등 사전 점검

나) 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환축 발생 - 백신 접종 유형의 환축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다음해 2월) - 의사환축 발생 - 국내 발생 * 역학조사 실시후 가축방역심의회 자문을 거쳐 격상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돼지열병, 럼피스킨 : 의사환축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가축질병 : 국내 원인불명의 의사환축 발생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 가축질병 위기 발생에 대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가축질병 종류별로 세부방역 요령 등을 검토·시행
- 가축질병 위기에 대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고, 사전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 구축
- OIE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가축질병 발생 국제동향 파악, 재출현/신종 가축질병에 대한 예찰활동 등으로 조기식별
- 가축방역 협의회 및 생산자 단체 등과 합동방역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 방역체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 점검
- 양축농가 및 국민에 대한 방역교육, 정부시책 홍보활동

【구제역】

- Standstill(일시정지), 살처분, 방역지역 설정, 이동통제, 소독실시 등 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홍보, 축사내 야생조류 침입 방지 조치(그물망 등)
- 권역별 Standstill(일시정지), 살처분, 방역지역 설정, 이동통제, 소독실시 등 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 Standstill(일시정지), 살처분, 방역지역 설정, 이동통제, 소독실시 등 준비, 야생멧돼지 등 침입 방지 조치(울타리 등)

【럼피스킨】

- Standstill(일시정지), 살처분, 방역지역 설정, 이동통제, 소독실시 등 준비

다) 대응단계

- 구제역 : 백신 접종 유형이 인접 또는 타 지역 전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인접 또는 타지역 등으로 전파
- 신종가축질병 : 국내 신종가축질병 발생

□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조치

- 농가 및 관련단체 등 상황 전파(관련단체 등)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상황실 설치 및 비상방역 운영(신고보고 유지) 강화
 - 대책본부(본부장 : 구청장) 및 상황실 가동(24시간)
 - 발생지역 현장 통제본부 설치·운영
 - 살처분 동원인력에 대한 항바이러스 투여 협조요청
 - 경찰서 및 군부대와 협력, 방역인력 및 장비 등 확보
 - 해당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조치, 감수성 가축의 이동통제, 소독 및 예찰실시 강화 등 긴급 방역조치 이행
 - 방역대별로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시·군간, 주요 거점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 해외 여행객·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및 축산농가 등 예방수칙 홍보 강화
- 【구제역】** 발생지역 추가 백신접종 방안 등 검토

라) 복구단계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 발생 축소(진정) 및 종식단계
- 신종 가축질병 : 발생 축소(진정) 및 종식단계

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 등 피해농가 및 관련 산업 재기를 적극 지원하여 조기에 복구하고, 소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재발을 방지

② 세부 추진 사항

-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활 및 관련 산업 피해복구 지원
 - 생계비 지원,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입식자금 등 재활 지원
-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및 소독 등 사후관리 추진
 - 살처분 농가 재입식 등 종합적 예찰 및 소독 등 추진
-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역대책 강구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소독약품 및 예방백신 지원

작성 부서	경제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채현 축산동물팀장	032-560-1901 fever365@korea.kr	재난관리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장규성 주무관	032-560-1902 newc2k@korea.kr	대비·대응	○

- ◇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추진,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지원 및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소독약품 지원	912kg	500kg	500kg	소독약품 지원 (kg)
구제역 예방백신	5,660두	4,500두	4,500두	구제역백신 지원 (두)

□ 주요내용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도축장, 도계장 등)에 가축방역 약품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성과(최근 3년)

사업내용	계	추진성과		
		2022년	2023년	2024년
소독약품 지원	1,454kg	105kg	912kg	437kg
구제역 백신 지원	14,748두	2,610두	5,660두	6,478두

□ '25년도 주요 계획

-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 (사업비) 12,500천원(시비 6,250, 구비 6,250)
 - (대상) 관내 축산농가
 - (내용)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사업비) 6,428천원(국비 4,502, 시비 963, 구비 963)
 - (대상) 관내 우제류 사육 농가
 - (내용)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을 통해 구제역 발생 예방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축산농가 예찰 및 현황 파악	3월
2/4분기	· 가축방역 물품 구입 지원 및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4월
3/4분기	· 축산농가 사육규모 현황 파악	9월
4/4분기	· 소독약품 배부,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551.1	162.1	152.4	78.8	78.9	78.9	78.9	78.9	78.9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	87.5	25	25	12.5	12.5	12.5	12.5	12.5	12.5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	37.6	12.1	6.4	6.3	6.4	6.4	6.4	6.4	6.4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426	125	121	60	60	60	60	60	60	

마. 농·어업 사고

1) 현 황

- 최근 5년간 사고 및 발생현황(1건)
 - 2022년에 우리 구에 등록된 어선(9.77톤) 1척에서 어업 작업 중 양망기에 맞아 외국인 선원 1명 사망

< 연도별 농·어업 사고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2	-	-	1	-	-
재산피해		0	-	-	0	-	-
인명피해	계	0.2	-	-	1	-	-
	사망(실종)	0.2	-	-	1	-	-
	부상	0	-	-	0	-	-

※ (통계 출처) 경제정책과 소관 통계자료

- 등록어선 현황

계	1톤 미만	1~2톤	2~5톤	5~10톤	10~30톤	30톤 이상
7척	2척	1척	0	3척	0척	1척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농·어업 사고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쓰레기매립장(개)	매립지역 (간척지)(%)	중공업산업단지(%)	축사(m ²)
서구	1	45.53	3.87	62,255m ²
비교지역 평균	0.07	6.28	2.76	12,465m ²
항 목	영세업체 밀집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명)	야외작업자(%)	농지(%)
서구	3.87	9.63	9.84	12.29
비교지역 평균	1.36	4.71	9.23	5.84

2) 원인분석

- 우리 구에 등록된 어선은 대부분 소형어선이며 타 지역과 환경 여건 등이 유사하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으나, 2022년에 어업 작업 중 선원 1명이 양망기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 농·어업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오랜기간 종사하므로, 농·어업인들의 안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어선의 경우 사소한 사고에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
- 매년 주기적으로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강풍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전파(안전 관리 요청)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어선안전조업법」 제5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저감 목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세부사업명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합계	'23	'24	'25
	111	40	34	37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	13	4	4	5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8	2	2	4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66	22	22	22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4	12	6	6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어선 설비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정기 점검 시 구명조끼, 부환 등의 구명장비와 소화설비 등 필수 안전 장비 실태 점검(연 2회/상하반기)
 - 어선 승선 및 운항 시 선장 포함 전원 구명조끼 착용, 비상 상황 발생 시 해경 등 비상연락망 숙지 등 안전교육 실시(수시)

나) 대비단계

- 사고 대응체계 점검·확인
 - 출동인원 및 장비 대응태세 점검
 - 유관기관 등에 관한 비상연락망 수시 점검
 - 사고상황 등 정확한 실태 파악
 - 해당사고 관련 매뉴얼 준비
 - 어선사고 대응 장비 가동 가능여부 확인(인천해양경찰서 협조)

다) 대응단계

① 위기상황 접수·확인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 접수처 : 경제정책과(032-560-4450), 당직실(032-560-4222)
- 접수내용

항 목	확인사항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접수
접수자 인적사항	접수시간, 접수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접수내용 (발생사항)	발생 일시, 장소, 현상 및 원인, 현장 조치사항, 피해발생 가능성 등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상황확인 : 담당자가 사고현장에 파견되어 접수된 위기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
- 상황보고·전파
 - 보고·전파 : 경제정책과장
 - 내 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구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전파
 - 보고대상 : 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시 관련부서
 - 전파대상 : 보건소, 소방서, 해경, 시·군·구, 해군 등
- ※ 상황확인 동안 긴급사항의 경우 先 구두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② 상황판단회의 개최

- (시기) '주의' 단계 이상에서 연근해 어선사고로 인해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판단될 시
- (주재) 대규모 재난(부구청장 또는 경제국장), 소규모 재난(경제국장 또는 경제정책과장)
- (내용) 상황의 심각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위기경보 수준 및 발령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응근무 소집·조직구성 여부(결정)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

③ 초동조치

- 승선원 보호조치(구조·구급기관과 협조)
 - 구조·구난기관(소방서, 해군, 해경 등)에 긴급 지원요청 후 신속하게 승선원을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
 - 사고유형 매뉴얼(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사전 준비 및 매뉴얼에 따라 구조 실시
 - 관계기관(해경, 해군, 소방서 등) 합동 현장 지휘본부 설치
 - 전문 구조요원 신속 진입 후 先 확보·확인사항 구조 실시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에 긴급 후송조치

④ 대응조치

- 비상대책기구 편성 및 운영
 - 상황(주의단계별)에 따라 구성
 - 주의단계(4명 이하 인명 피해) : 비상대책반
 - 경계단계(5명 이상 9명 이하 인명 피해) : 지역사고수습본부
 - 심각단계(10명 이상 인명 피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주요업무
 - 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 종합관리
 - 수습·복구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 현장지휘본부 대응활동 지원
 - 관계기관 대책반과 연락체계 유지·지원 협의
 - 의료·방역대책, 교통대책, 부족물자 지원대책 시행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 현장상황, 피해상황, 구조현황 등 신속파악 및 보고
 - 대국민 언론홍보 및 정보제공
 - 자원봉사자 행정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 및 파견

라) 복구단계

- 현장 수습활동
 - 긴급 합동 구조활동(해경, 인천시, 서구, 소방서, 해군 등)
 - 인명구조활동 및 자체 방제지원 활용, 방제활동 등 초동 조치
-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 현장 상황보고서 접수 및 중수본 상황보고서 전파
 -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보고(중수본)
 - 인명구조현황, 물적 피해 현황 등
 - 사고 선박 합동감식
 - 사고원인 조사(중앙해양안전심판원)
 -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지원
[시, 군·구, 해경, 어선안전조업국 등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재난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중수본)
 - 실종자 가족 대상 브리핑
 - (필요시) 해양재난사고 백서 발간 현장 수습활동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작성 부서	경제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용겸 농수산팀장	032-560-4451 inagro@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조은지 주무관	032-560-4453 goodg0414@korea.kr	대비·대응	X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라 어업활동 중 부상, 사망 등의 재해(사고) 시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어업경영 안정 도모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어선어업인(선체 포함) 보험료 지원	100%	100%	80%	(보험료 사업비 집행액/총예산액) * 100

□ 주요내용

- 연근해 어선의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어선(선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

□ 추진성과(최근 3년)

사업내용	계	추진성과 (지급대상, 지급액)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3척 / 8.9백만원	5척 / 2.4백만원	10척 / 4백만원	8척 / 2.5백만원
어선어업인보험료	12척 / 5.2백만원	3척 / 1.8백만원	5척 / 2백만원	4척 / 1.4백만원
어선(선체)보험료	11척 / 3.7백만원	2척 / 0.6백만원	5척 / 2백만원	4척 / 1.1백만원

□ '25년도 주요 계획

-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 (사업비) 5,000천원(시비 2,500, 구비 2,500)
 - (대상) 관내 어선(7척)
 - (내용) 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 부담금 일부 지원
-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 (사업비) 4,000천원(시비 2,000, 구비 2,000)
 - (대상) 관내 어선(7척)
 - (내용)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 부담금 일부 지원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보조금 지급(구 → 수협중앙회)	2월
2/4분기	· 사업 대상자 보험 가입 현황 확인(수협중앙회)	4~6월
3/4분기	· 사업 대상자 보험 가입 현황 확인(수협중앙회)	7~9월
4/4분기	· 사업 대상자 보험 가입 현황 확인(수협중앙회) 및 사업완료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27.2	3	3.2	6	6	9	9	9	9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	17	2	2	4	4	5	5	5	5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10.2	1	1.2	2	2	4	4	4	4	

[2] 농업인 보험료 지원

작성 부서	경제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용겸 농수산팀장	032-560-4451 inagro@korea.kr	재난관리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안다슬 주무관	032-560-4454 dksek1101@korea.kr	대비·대응	X

- ◇ 농업인이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
- ◇ 농업재해 발생 시 복구업무 추진 및 농업인의 농업재해보험 가입 시 가입비 지원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농업인 보험료 지원	100%	100%	100%	(보험료 사업비 집행액/총예산액) * 100

□ 주요내용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사업자 수요조사	2~3월
2/4분기	· 사업대상자 보험가입 현황 확인	4~10월
3/4분기	· 사업대상자 보험가입 현황 확인	4~10월
4/4분기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1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38	24	24	34	28	28	34	34	28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110	22	22	22	22	22	22	22	22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8	2	2	12	6	6	6	6	6

나) 기타시책

(1)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작성 부서	경제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웅겸 농수산팀장	032-560-4451 inagro@korea.kr	재난안전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조은지 주무관	032-560-4453 goodg0414@korea.kr	대비·대응	X

◇ 어선(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자체·합동) 실시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어선(낚시어선) 안전점검	5척	4척	4척	연간 어선 점검 척수

□ 주요내용

- 행락철 등 해양사고 취약시기 대비 주기적으로 어선 안전점검 실시

□ 추진성과(최근 3년)

구분	계	추진성과		
		2022년	2023년	2024년
어선 점검(척)	15	6	5	4

□ '25년도 주요 계획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점검대상) 어선 7척
 - (점검내용) 안전 점검 실시 (상, 하반기 1회씩)
 - (점검기관) 구 자체 및 합동 단속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3월
2/4분기	상반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4월
3/4분기	하반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9월
4/4분기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10월

바. 범죄

1) 현 황

○ 최근 5년간 사고 및 발생현황

< 연도별 여성범죄 발생건수 >

(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정폭력 범죄	80.4	36	27	103	117	119
성폭력 범죄	3,145.6	2,820	2,635	3,035	3,748	3,490

※ (통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인천지방검찰청)』

○ 최근 5년간 서구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 실적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483	1,932	1,645	1,681
심리·정서적 지원	1,483	1,930	1,645	1,650
수사·법적지원	-	-	-	-
의료지원	-	-	-	-
시설입소연계	-	-	-	-
기타	-	2	-	31

-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383	489	394	378
심리·정서적 지원	380	482	354	378
수사·법적지원	1	1	-	-
의료지원	-	-	-	-
시설입소연계	-	-	-	-
기타	2	6	40	-

※ (통계 출처)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보호실적 제출결과

※ 통계 작성 기준

· 해당연도 12월 기준 누계 실적

· 기타'는 타상담소·알콜상담센터·건강증진센터 연계 등의 건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범죄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다중이용시설(%)	중심/일반상업지역(%)	외국인근로자(명)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서구	2.40	3.15	9.63	9.89
비교지역 평균	4.46	5.82	4.71	11.360

2) 원인분석

- 가정·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 및 적극적인 신고
-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으로 폭력에 대한 구민 의식 개선을 통해 유관기관 연계 상담 건수 증가

3) 관련 계획 및 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의견수렴

-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활동 지속적 협조 요청
 - 수렴 방법 : 민·관이 함께하는 폭력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 향후 일정 : 2025년 4월 ~ 12월

5) 목 표

< 연도별 목표 >

(단위 : 건)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여성범죄	계	3,609	3,595	3,581	3,567	3,553
	가정폭력	119	115	111	107	103
	성폭력	3,490	3,480	3,470	3,460	3,450

6) 재정투자 현황

세부사업명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합계	'23	'24	'25
계	46.5	30.5	8	8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12.5	12.5	0	0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1	11	5	5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3	7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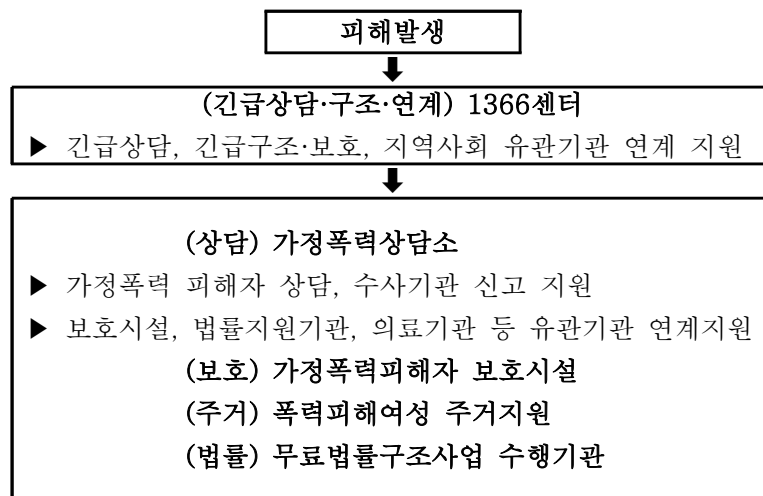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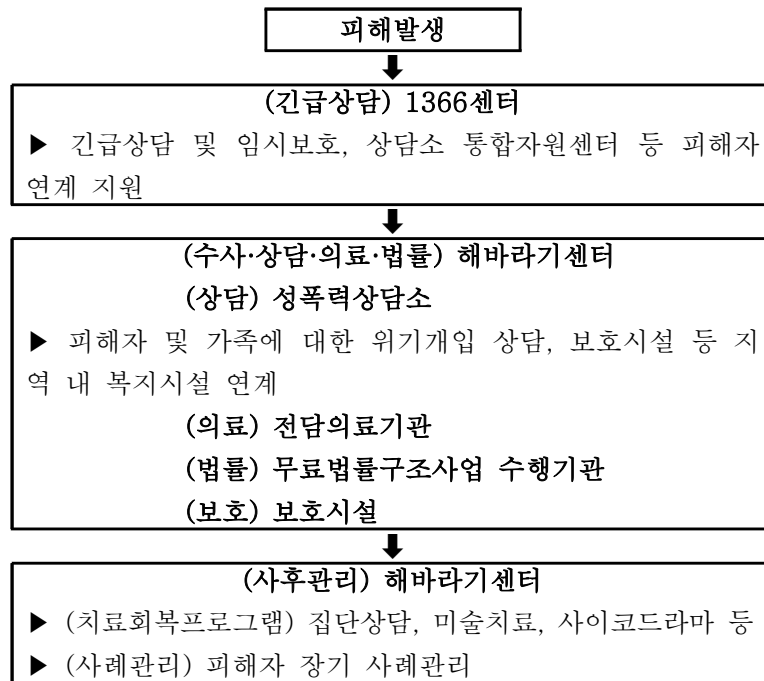
- 가정폭력·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활동
 - 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 일 정 : 2025년 4월 ~ 12월
 - 참여기관 : 여성단체협의회, 구민참여단, 여성권익시설, 서부경찰서 등
 - 장 소 : 다중집합장소
 - 내 용 : 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홍보, 홍보물 배포 등

나) 대비·대응 단계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다) 복구단계

○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 의료기관명 : 가톨릭대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지원내용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성폭력 응급키트 보급
 - 응급실 이용시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응급실에서 원내 조제·투약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작성 부서	가정보육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명희 여성정책팀장	032-560-5731 icemoca72@korea.kr	재난관리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승주 주무관	032-560-5735 sjlee1004@korea.kr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폭력 가해자 행동 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하고자 함.
-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상담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149명	150명	160명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통계자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77명	105명	54명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40명	44명	30명	

□ 주요내용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25. 2. 1. ~ 12. 31.
 - 사업내용 :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상담, 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집단 상담 진행
 - 수요 확보방법
 - 인천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 지정
 - 인천지역 경찰서 / 지구대 연계
 -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지원센터, 기타 상담소 연계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25. 2. 1. ~ 12. 31.
 -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 및 집단상담 진행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미술, 모래놀이 등) 진행
 - 수요 확보방법
 - 인천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 지정
 - 인천지역 경찰서/지구대 연계
 - 법원 등 유관기관 연계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25. 2. 1. ~ 12. 31.
 - 사업내용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 진로교육, 미술치료 등 진행
 - 수요 확보방법
 - 인천지역 경찰서/지구대 연계
 -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연계

추진성과(최근 3년)

○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참여인원

구 분	2022년 (실인원/연인원)	2023년 (실인원/연인원)	2024년 (실인원/연인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102명/120명	117명/149명	117명/159명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74명/100명	68명/77명	41명/52명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33명/41명	28명/40명	23명/28명

'25년도 주요 계획

○ 중점 추진사항

-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집중 시행
- 미술치료,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 부부캠프 및 가족캠프, 미술관 투어 등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사이코드라마, 그림책 독서치료 등 피해자 여건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신회복치료에 기여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가정·성폭력 상담 진행, 가정·성폭력 프로그램 지원 신청	연중
2/4분기	가정·성폭력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연중
3/4분기	가정·성폭력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연중
4/4분기	가정·성폭력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연중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07.5	30.5	30.5	30.5	8	8	8	8	8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37.5	12.5	12.5	12.5	0	0	0	0	0	법무부 일원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43	11	11	11	5	5	5	5	5	삭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7	7	7	7	3	3	3	3	3	삭감

나) 기타시책

(1) 가정폭력·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활동

작성 부서	가정보육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명희 여성정책팀장	032-560-5731 icemoca72@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승주 주무관	032-560-5735 sjlee1004@korea.kr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일일 캠페인을 진행하여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가정폭력·성폭력 추방주간 캠페인 진행	7회	7회	4회	캠페인 결과보고 자료 (횟수)

□ 주요내용

- 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 일정 : 2025년 4월 ~ 12월
 - 참여기관 : 지역연대, 여성단체협의회, 여성권익시설, 서부경찰서 등
 - 장소 : 다중집합장소
 - 내용 : 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홍보 등

□ 추진성과(최근 3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정폭력·성폭력 추방주간 캠페인 진행 횟수	7회	7회	4회

□ '25년도 주요 계획

- 폭력예방 인식확산 캠페인 실시
 - 불법촬영은 “범죄행위”라는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추진
 - 피켓, 현수막, 홍보물품 등 적극 활동
- 서구여성단체협의회 및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과 연계
-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와 연계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가정폭력·성폭력 추방주간 캠페인 및 폭력예방 캠페인	연중

사. 자살

1) 현 황

○ 연도별 자살률

(단위: 인구10만명당,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26.5	25.6	24.3	26.6	26.9	25.7	26.0	25.2	27.3
인천	27.4	26.5	24	27.9	25.9	26.5	25.9	25.8	28.8
서구	24.1	21.8	19.8	26.4	25.8	27.4	21.4	24.2	23.5

※ (통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4)

○ 연령별 자살사망률

(단위: 인구10만명당, 명)

구 분	총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사망자수	142	8	14	15	31	31	29	8	6
자살사망률	-	7.0	19.3	16.3	29.2	30.7	39.3	27.8	40.4
순위	-	8	6	6	4	3	2	5	1

※ (통계 출처) 지역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 보고서(2024,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원인별 자살사망 현황

(단위: 명, %)

연번	원인	구분	현황
1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백분율	35.6
		자살자 수	48
2	경제생활 문제	백분율	34.1
		자살자 수	46
3	미상	백분율	10.4
		자살자 수	14

※ (통계 출처) 지역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 보고서(2024,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원인분석

- 사회적 고립, 경제난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며 자살의 직·간접적 영향 발생
- 연령별 자살사망현황에 따른 노년기 자살예방사업 필요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필요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 ~ '27)

4) 의견수렴

- 2025년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계획 관련 회의(2024. 11. 21., 2024. 12. 26.)
- 2025년 자살예방시행계획 관리자 회의(2024. 12. 12.)
- 전문가 자문회의(2024. 12. 13.)

5) 목 표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자살 사망률	23.7	23.5	23.3	23.1	22.9

6) 재정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합계	'21	'22	'23	'24	'25
계	872	126	149	182	215	2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58	71	71	72	72	72
기초정신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181	35	35	36	37	38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193	0	23	54	57	59
생명존중안심마을	60	0	0	0	40	20
지역자살예방사업 자체	80	20	20	20	9	11

기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자살관련 사회 인식개선
 - 자살예방 캠페인 및 홍보
 -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편견 감소를 통해 생명 존중 환경 조성
 - 자살 예방 광고지, 포스터 등 인쇄물, 대중교통, 현수막 광고 및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정신질환 및 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
-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 생명지킴이 자살 예방 교육 : 우울, 자살의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가까운 사람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조기 개입 기반 강화
 -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게이트키퍼의 보수교육 진행 및 정기적 간담회 개최
 - 생명 사랑 위기 대응 센터 및 응급실 종사자 간담회 : 관내 응급의료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 및 기초센터 연계 활성화

나) 대비단계

- 자살 고위험군 발굴
 - 대상자 상담, 타 기관 의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병·의원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 자살 고위험군 중 자살 유족에 대한 행정적, 심리적 지원 제공
- 청년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 이동검사 및 상담, 자살 예방 교육,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 자살위험환경 개선
 -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중독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 사업 : 관내 번개탄 판매업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살예방 중요성에 대한 교육

다) 대응단계

- 자살 위기 대응 및 개입
 - 자살 고위험군 대응 및 위기 상담
 - 자살 고위험군 응급출동 : 자살시도자 발생 시 대상자의 안전 및 신변확보를 위한 112 협조 및 주간 응급대응
 - 주간 상담 : 09-18시 온라인, 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운영
 - 야간 상담 : 18-09시 자살예방센터 상담 운영

라) 복구단계

- 자살 예방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 자살시도자의 재시도율을 낮추기 위해 우울 및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 등의 사례관리 진행
 - 생명 사랑 위기 대응 센터 분기별 사례 회의를 통해 관내 응급 의료기관의 자살 예방 대응 능력 향상 및 연계 강화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자살예방사업

작성 부서	치매정신과	작성자 및 연락처	최정애 정신건강팀장	032-718-0621 twin98kr@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남다영 주무관	032-718-0623 celina1219@korea.kr	예방	X

- ◇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자살률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자살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위기대응, 사례관리 등의 활동을 강화하여 생명 안전망 조성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필요

□ 목 표

목표명	'24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제공 건	7,867회	6,372회	6,700회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건수 (근거 : 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실적 보고)

□ 주요내용

-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 생명지킴이 자살 예방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동지원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자살 고위험군 발굴·등록 및 사례관리
- 자살 위기 대응 및 개입
- 자살위험환경 개선
-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 추진성과(최근 3년)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자살관련 일반상담	2,018건	1,789건	3,074건
자살고위험군 등록	118명	175명	189명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7,107건	6,390건	7,867건
자살예방교육	16,356명	16,428명	11,800명

□ '25년도 주요 계획

-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 자살 고위험 시기 생명존중 홍보
 - 온라인, SNS, 유관기관 등 리플릿 및 홍보물 배포 통한 홍보
 - 지역사회 행사 연계 캠페인 진행
- 생명지킴이 자살 예방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동지원
 - 관내 지역주민 대상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 생명지킴이 대상 보수교육,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지원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자살 유족에 대한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 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일시 주거 지원 등 등록 관리
- 자살 고위험군 발굴·등록 및 사례관리
 - 자살 시(의)도자에 대한 치료 연계, 정신건강 상담 지원, 관련 기관 자원 연계 등 등록 및 사례관리

- 자살 위기 대응 및 개입
 - 자살 시도자 발생 시 응급 대응 및 상담
- 자살위험환경 개선
 -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을 위한 번개탄 판매 개선 캠페인
 - 관내 공원, 교량 등 자살 다빈도 장소의 자살예방사업 홍보
-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 관내 8개 동 대상 5개 영역 참여기관(단체) 모집 및 운영
 -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 예방교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수단 차단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연중	자살 고위험군 관리,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위기 대응, 자살위험환경 개선,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연중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2)	'21	'22	'23	'24	'25	'26	'27	'28	
계	872	126	149	182	215	200	200	200	2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58	71	71	72	72	72	72	72	72	
기초정신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181	35	35	36	37	38	38	38	38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193	0	23	54	57	59	59	59	59	
생명존중안심마을	60	0	0	0	40	20	20	20	20	
지역자살예방사업 자체	80	20	20	20	9	11	11	11	11	

아. 해양오염

1) 현 황

< 연도별 해양오염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통계 출처) 환경관리과 소관 통계자료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해양오염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항만(m ²)	방조제(m ²)	가스원유 비축시설(m ²)	매립지역 (간척지)(%)
서구	42,075	0	1,726,839	45.53
비교지역 평균	6,265	421,74	70,375	6.28

2)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15조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금지 및 오염발생시 방제조치 주체를 명시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
 -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재산 및 인명피해 제로화

< 연도별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해양오염사고 감시체계 구축 및 감시활동 강화
 - 오염사고 예방 교육, 홍보 실시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 해양오염방지 홍보활동 실시
 - 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실시
 - 재난 관리 대상 시설물 정기·수시 점검
 - 오염사고 감시·예방활동 실시
 - 기름오염 유발시설 위주 환경순찰 실시
 -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통한 오염사고 감시활동 실시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기름오염 방제 및 수습 관련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 사고발생시 초동조치 등을 위한 방제전문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나) 대비단계

- 방제 능력 확충 및 관리
 - 해안오염 방제를 위한 기자재 등 확보
 - 방제물품 보유현황 수시 확인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 기자재 구입
 - * 수질오염사고 대비 구비한 방제장비로 대체
-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활동 추진
 -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위한 대응활동
 - 비상연락망 가동 및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출동반 부재시 대리근무자 편성
 - 방제자원 가동상태 확인 및 긴급동원태세 점검
 - 사고유형·피해규모 등 사고현장 상황 관련기관 신속 전파
 - 기름 유출방지, 유출유 확산방지, 회수조치(초동대응)
-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상위기관 매뉴얼 개정에 따라 행동매뉴얼 개정

다) 대응단계

- 위기경보 수준 판단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관심 (Blue)	○ 해양오염사고 발생가능성 인지(재난가능성 예측) - 대형유조선 충돌, 침몰, 좌초사고 및 해양시설 파손
주의 (Yellow)	○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HNS) 유출 사고발생(재난가능성 출현)
경계 (Orange)	○ 유출된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HNS)이 어장, 양식장 및 연안지역까지 확산 우려 (재난가능성 농후)
심각 (Red)	○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 (지속성 유류 100㎥, 비지속성 유류 300㎥ 이상 유출 등) 및 유출된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HNS)로 해안가 100km이상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 서구 위기경보 절차

-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서구청장이 회의(대면 또는 서면개최)를 소집
- 서구청장, 부구청장, 환경국장, 홍보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으로 구성
- 위기 징후 및 상황 평가
 - 상황의 심각성 및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긴급조치 필요사항 및 유사시 대응전략 검토
-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사고 발생 시 접수기관은 초동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에 협조 요청

○ 사고 접수·전파 및 상황파악

1) 위기상황 접수

- 신고 : 오염사고를 유발시킨 자 또는 오염사고를 발견한 자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신고
- 접수처
 - 최초 상황 접수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 해양오염신고센터(해양경비안전서) : 122, 119, 1588-0333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제센터 : 032-880-6472
 - 지자체 상황 접수(인천광역시 서구)
 - * 서구 환경관리과 : 032-560-4360
 - * 야간상황 발생 시 구 당직실(032-560-4222)에서 신고 접수
- 접수 시 확인사항
 - 접수사항 : 접수기간,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접수자
 - 확인내용 : 위기발생일자/시간, 발생장소, 위기유형, 사고물질,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

-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기름이 서구 관할 외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방제 협조 요청
 -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인천지사 및 민간 방제조직 동원
 - 사고 발생 시 비상근무태세 확립
 - 해양오염 사고 방제 장비 확보
 - 방제 장비·자재·약품 확보 및 적재적소 비치
 - 수질오염사고 대비 구비한 방제 물품으로 대체 확보
 - 해안방제 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 자원순환과 협조 요청
 - 수거된 폐유, 폐기물(사용한 방제자재 포함) 안전 처리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대책 강구
 - 복구 조치사항 보고
 - 항만 내 침몰선박 처리 협력지원
 - 해안 방제인력 안전 및 보건 관리
 - 관할 주민, 자원봉사자 관리
 - 해안오염평가(SACT) 등 협력 지원
 - 현장조치 매뉴얼 수정·보완
 - 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대응체계 조사·평가 통한 매뉴얼 개선
 - 방제활동 분석·평가 및 방제 시스템 개선·보완
 - 위기대응매뉴얼, 국가·지역 방제계획 검토 및 문제점 수정·보완
 - 방제활동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피해지역 지속 관찰 및 방제완료 종합 보고
 - 사고 현장 1회/일 순찰 통한 제2차 오염여부 확인
 - 방제완료 후 종합보고 실시
 - 방제 비용 징수
 -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 산출
 - 방제비용 부과 결정 등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법령, 조례, 규칙, 지침, 매뉴얼 등)

(1)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환경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범희 환경산업팀장	032-560-4361 lifejust@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서여진 주무관	032-560-4366 kooisys131@korea.kr	대비	X

◇ 관할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오염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지속 확인·관리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00%	100%	1회	행동매뉴얼 개정 횟수

□ 주요내용

-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가 개정사항 발생 시 반영
- 유관기관 협조사항 및 비상연락망 지속 관리
 - 사고 발생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 유관기관별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추진성과

- 유관기관 협조사항 및 비상연락망 지속 관리
-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25년도 주요 계획

-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2/4분기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정비	6월
4/4분기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12월

제 · 개정내용

규정명	주요내용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비상연락망 현행화

나) 기타시책

(1) 해양방제 합동훈련

작성 부서	환경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범희 환경산업팀장	032-560-4361 lifejust@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서여진 주무관		032-560-4366 kooisys131@korea.kr	대비	X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를 토대로 실시하는 2025 방제대책본부 운영 훈련 참여 통한 행동요령 숙지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해양방제 합동훈련 실시	1회	1회	1회	해양방제 합동 훈련 횟수

□ 주요내용

- 2025년 해안방제 합동훈련 참여
 - 예 정 일 : 2025. 9월 중
 - 주 관 : 인천광역시·인천해양경찰서
 - 참여기관 : 인천시, 군·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중부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방제업체 등
 - 주요내용 : 선박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각 실시반별 임무 숙지 및 대응절차 숙달

□ 추진성과(최근 3년)

- 인천해양경찰서 합동 해안 방제 훈련 실시
 - 2024. 9. 24. : 인천 영종도 선녀바위
 - 2023. 9. 22. : 인천 영종도 선녀바위
 - 2022. 9. 28. : 인천 영종도 선녀바위

□ '25년도 주요 계획

- 2025년도 해양경찰서 합동 해안 방제 훈련 참여
- 북항 주변 배출업소 지도·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3/4분기	방제대책본부 운영 훈련 참여	9월 중(예정)

자. 식품사고

1) 현 황

○ 식품제조유통업소(소분, 보관·운반 포함)

(2024. 12. 31. 기준, 단위 : 개소)

계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운반업	용기·포장기제조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3,780	377	709	214	10	23	53	280	362	150	66	1,536

○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

(2024. 12. 31. 기준, 단위 : 개소)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8,729	90	78	5,932	1,885	561	183

○ 식중독 발생현황

<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6	0	0	0	3	0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6.6	0	0	0	33
	사망(실종)	-	-	-	-	-
	부상	6.6	0	0	0	33

※ (통계 출처) 식품안전나라 <http://www.foodsafetykorea.go.kr>(2025.01.24.)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식품사고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목	어린이(%)	축사(m ²)	군사시설(%)	노인/사회복지시설(개)
서구	5.43	62,255	0.12	4.96
비교지역 평균	4.03	12,465	0.11	5.92

2) 원인분석

○ 식중독 예방관리

- 미세먼지 악화, 해수온도 상승, 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 변화로 식중독은 과거와 달리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발생하고 있음
- 배달, 외식문화 증가추세의 식생활 소비경향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구는 가정 루원시티 및 청라 신도시, 검단 신도시의 개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외 5개 업종) 또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1회 조리로 다수에게 영향을 미쳐 식중독 발생의 취약업종이라 볼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구에는 여러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고 산업체 집단급식소 또한 타지역에 비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식중독을 빙자한 악용사례는 증가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및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식품안전기본관리계획(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 식중독예방관리계획(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
-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위생법)
- 인천시 및 인천서구 식중독예방관리계획(식품위생법)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식중독 발생 관리율
 - 최근 5년간 평균 식중독 발생 환자수가 선진국 수준인 인구 백만명 당 100명 이하인 경우는 100명 이하로 유지
 - 식중독 발생 관리 목표인원(발생대비 산정): 환자수 59명 이하

<연도별 목표>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4	4	4	4	4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59	59	59	59	59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59	59	59	59	59

6) 재정투자 현황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30.4	18	16.7	16.7	15	16	15.7	15.7	15.7
식중독 예방관리	3.4	2	0.7	0.7	0	0	0.7	0.7	0.7
유통식품 안전관리 등	127	16	16	16	15	16	16	16	16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추진방향
 -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 추진
- 추진체계 : 조리식품 및 유통식품 지도점검
 - 집단(위탁)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식품지도팀)
 - 유통식품에 대한 식품제조판매업 지도점검 (유통식품팀)
- 핵심내용
 - 집단(위탁)급식소, 식품접객업소(조리식품) 및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로 식중독 예방관리

1] 식중독 예방관리

○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 운영

- 운영반 : 1개반 5명 (식품지도팀장 외 팀원 4명)
- 검사대상 :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살균소독장치 설치시설 제외)

○ 식중독 우려 위생취약업소 집중관리

계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100평이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도시락류 제조가공업	비고
904	561	189	150	4	

- 점검사항 :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점검시기 및 점검대상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 지도·점검		대상 (개소)	시기	비고
집단급식소	학교	100	3월, 9월	민·관 합동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150	3월, 9월	민·관 합동
	유치원, 어린이집	184	4월 ~ 5월	민·관 합동
	사회복지시설	26	5월 ~ 6월	민·관 합동
	병원, 공공기관, 수련시설	68	7월 ~ 8월	민·관 합동
	기업체, 기타	183	9월 ~ 11월	구 자체
뷔페 및 대형음식점		189	상반기, 하반기	구 자체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 식중독 예방·관리 교육
 - 사회복지시설 등 식중독 예방 교육
 - 식품접객업소 관리자 등 위생교육 시 식중독 예방교육
 - 현장에서 손 씻기 방법 및 식중독 3대요령 안내 및 홍보 실시
-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
 - 방 법 : 전자·비전자 각종 매체
 - 1) 비전자(오프라인) : 구청장 서한문, 간담회, LED 전광판, 민원 게시대, 구 게시판 등
 - 2) 전자매체 : 구, 협회, 급식센터 등 각종 홈페이지, 블로그, SNS
 - 내 용 : 식중독 예방관리 문서 및 동영상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위생수칙,
올바른손씻기,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등)

- 식중독 모의훈련 실시
 - 훈련일시 : 2025년 9~10월
 - 훈련장소 : 관내 집단급식소
 - 훈련내용 : 식중독 발생을 가상으로 출동, 처리, 신속검사 등 실질적인 모의훈련을 통한 상황발생 대처능력 배양

② 식품안전사고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 식품안전 종합계획 수립
 - 우수 생산기반 구축 및 사전예방 강화
 - 제조단계 우수위생관리수준 제고를 통한 사전예방 기반조성
 - 상습·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 위생관리 강화
- 유통식품 수거·검사
 - 유통 점유율이 높은 국민 다소비 식품 등의 수거·검사
 - 추진기간 : 2025. 1월 ~ 12월
 -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른 수입식품 수거·검사 확대
 - 다소비 식품 및 관내 생산제품 수거·검사 실시
 - 명절, 계절별 성수식품, 빼빼로 데이 등 특정일 수거·검사 강화
 - 수거목표 : 860건
- 구민과 함께하는 식품 안전관리 제도 운영
 - 구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
 -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감시망 구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활성화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42명) : 연중
 - 식품관련업소 위생지도 : 연중
 - 재래시장 위생관리 및 부적합제품 사후관리 : 연중
 - 기타 위생관리 홍보·제도 및 현황조사 : 연중

나) 대비단계

1) 식중독 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 운영

1) 근무개요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인원
연 중	평 일	09:00~20:00	1명
	토·일요일 및 휴일	09:00~16:00	1명

※ 식중독관리시스템을 통한 채택근무 실시(모바일기반)

2) 서구 식중독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직위	담당자	핸드폰	전화	팩스
서구	식품 위생과	식품위생과장	안은숙	010-2281-5458	560-4499	560-2756
		식품지도팀장	김유경	010-4272-1552	560-4381	
		담당자	황은지	010-5754-7129	560-4382	
		담당자	정여정	010-9253-9147	560-4383	
		담당자	김수정	010-8746-5870	560-4384	
		담당자	김현경	010-5620-4642	560-4385	
	서구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배은정	010-3333-0796	718-0441	718-0791
		담당자	정원경	010-6613-8652	718-0442	
		담당자	장희선	010-2727-6311	718-0444	
		역학조사관	서성욱	010-2478-2459	718-0451	
	서부 교육 지원청	담당자	정원이	010-2866-1592	560-6661	

3) 임 무

- 식중독 발생사항 접수
- 비상연락망 가동 및 현장 출동지시 등 상황조치
- 식중독 보고체계에 따라 관련기관 신속 보고·전파
- 식중독 확산 여부 및 역학조사 등 수시 진행 상황 파악 보고

다) 대응단계

① 식중독 상황처리반 구성·운영

1) 서구 식중독 상황처리반 : 1개반/10명(구청, 보건소, 교육청)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연락처	비고
식중독 처리반	식품위생과	식품지도팀장	김유경	560-4381	총괄
	식품위생과	보건주사보	황은지	560-4382	반원
	식품위생과	보건주사보	정여정	560-4383	〃
	식품위생과	보건서기	김수정	560-4384	〃
	식품위생과	보건서기보	김현경	560-4385	〃
	서구보건소	간호주사	배은정	718-0441	〃
	서구보건소	간호주사	정원경	718-0442	〃
	서구보건소	보건서기	장희선	718-0444	〃
	서구보건소	간호서기	서성욱	718-0451	〃
	서부교육지원청	주무관	정원이	560-6661	〃

2) 상황처리반 임무

- 자체 식중독 관리사업 계획 수립·추진
- 지방식약청 및 시 교육청 등 관련기관 간 상호업무 협의
- 식중독 발생 보고, 원인조사 및 결과 보고
- 식중독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3) 서구 식중독 발생 대응 업무흐름도

순번	상황별 단계	조치사항		비고
		확인	대응	
1	접수	발생분석 및 설문조사 (발생인원, 증상, 증상시간, 취식인원, 취식품 전메뉴, 취식 일시, 장소)	① 시 보고(즉시) ② 시, 보건소 등 합동현장점검 조율 등	보건소 or 식품위생과 접수
2	출동준비	검체수거물품 세트 (소비기한 확인 등)	【식중독 현장조사 준비】 ① 서류)법령, 확인서, 수거증,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등 보고양식 ② 물품)아이스박스, 수거백, 수거봉투, 채수병, 위생장갑	검체수거물품 세트 상시대기
3	현장확인	대응(절차)안내 및 검체수거	① 식품가검물 수거 - “3M 샘플백” 수거백 사용 - 보존식, 섭취식품, 조리식품 식재료, 음료(물) ② 환경가검물 수거 - “유통식품수거봉투” 사용 - 칼, 도마, 의심되는 조리기구	식품 500g, 음 료1L 위생장갑착용 수거증작성 아 이 스 박 스 보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점검	소비기한경과제품, 보건증, 위생상태 등	
4	검사의뢰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유선확인 및 검사의뢰	보건환경연구원 검체전달 및 검사의뢰	
5	결과보고	통합안전망시스템 가입확인 등	① 시 결과보고(현장대응) ② 통합안전망시스템 입력보고 ③ 자체 복명 및 결과보고 ④ 시 공식(공문) 보고	

2] 위해식품 발생 대응

1) 정보의 수집 및 전파

- 위해식품 등 정보 신속 통보 및 기관별 정보 공유·활용
 - 위해식품 전담 담당자 지정운영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제공

- 위해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민원업무 관리 : 연중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foodsafetykorea.go.kr>)

2) 위해식품 회수 및 폐기

- 위해식품 등 회수대상이 있을 경우 영업자에게 즉시 긴급 회수 명령 등 신속한 행정조치
 - 자진회수 업체 관리 및 현장 확인
 - 부정불량식품 발생에 따른 제품회수·압류·봉인 및 폐기 등 현장조치
 - 신속한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폐기물처리업체와 연계 실시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제공 : 연중
 - 식품위생감시원, 기타식품판매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 위해식품 등 회수 배너 설치 및 회수대상 식품 게재 : 연중

라) 복구단계

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속적 위생관리

- 식중독 발생 접객업소(급식소) 행정처분 및 개선사항 이행확인
- 식중독 발생 접객업소(급식소) 위생관리 컨설팅

② 위해식품 발생 및 회수결과 환류

- 위해식품 회수 및 폐기상황 공표
 - 회수내역 및 폐기 내역 홈페이지 공표 : 업소명, 회수내역, 처리결과 등
- 사후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영업자의 회수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재발 방지대책 이행 결과 확인
 - 조치사항
 - 회수완료 후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게 하고 결과 제출 요청
 - 재발방지대책 이행여부에 따라 시설개수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작성 부서	식품 위생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유경 식품지도팀장	032-560-4499 kyk80@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정여정 주무관	032-560-4383 yeojung26@korea.kr		

◇ 식중독 발생요인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집중취약시설 지도점검	100%	100%	100%	(점검완료 개소 / 점검대상 개소) * 100

□ 주요내용

- 상·하반기 집단급식소 전수 지도점검
 - 대상 : 관내 집단(위탁)급식소
 - 내용 : 전수 지도점검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 등
- 식중독 발생이력 및 행정처분 집단급식소 현장 컨설팅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력 업소 및 행정처분 이력업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
- 상·하반기 330㎡이상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 대상 : 뷔페 및 대형음식점
 - 내용 :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점검
- 배달전문 음식점 등 위생취약시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 대상 : 배달앱 등록업체(약 3,000여개) 등
 - 내용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점검

□ 추진성과(최근 3년)

구분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성과
2022년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 지도점검 실시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시: 775개소 - 상반기 지도점검: 514개소 - 하반기 지도점검: 261개소
2023년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 지도점검 실시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시: 752개소 - 상반기 지도점검: 466개소 - 하반기 지도점검: 286개소
2024년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 지도점검 실시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시: 819개소 - 상반기 지도점검: 341개소 - 하반기 지도점검: 478개소

□ '25년도 주요 계획

- 집단급식소 전수 지도점검
 - 대상 : 집단급식소 744개소 (위탁급식 포함)
 - 내용 : 전수 지도점검 및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 위생취약시설 식품접객업소(배달전문 음식점, 뷔페, 대형음식점 등) 지도점검
 - 대상 : 뷔페 및 대형음식점 233개소, 배달앱 등록업체(약 3,000여개) 등
 - 내용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점검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계획수립	2월
2,3,4분기	▪ 지도점검 및 결과보고	3~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3.4	2	0.7	0.7	0	0	0.7	0.7	0.7	
식중독 예방관리	3.4	2	0.7	0.7	0	0	0.7	0.7	0.7	

(2) 유통식품 수거 검사

작성 부서	식품 위생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유경 식품지도팀장	032-560-4499 kyk80@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정여정 주무관	032-560-4383 yeojung26@korea.kr	예방	X

◇ 식품의 출고 전 원료 및 식품 등의 운반·보관·취급 중 발생 할 수 있는 위해와 생산 또는 출고 후 식품의 운반·보관·취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한 사전차단

- * 식품위생법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 * 식품위생법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 2025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다소비 식품 등의 수거검사	1,136건	816건	860건	수거·검사 건수

□ 주요내용

-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위생취약지역인 도매시장, 전통시장, 국도변 슈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식품판매점 1개소에서 동일날짜에 일괄 수거하는 건수 위주의 수거검사 지양하고, 수거제품이 특정 제조업체 또는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거
- 검사결과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식품이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부적합 식품 정보를 신속·정확히 입력
- 기본검사
 - 식품유형별 표본검사
 - 대상 : 식품유형별 가공식품
 - 주기 : 지자체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
 - 검사항목 : 식품유형별 개별 규격(공통규격 포함)

○ 기획검사

- 제조가공단계 : 회수이력업체 출고 전 검사
 - 목적 : 회수이력이 있는 식품에 대한 출고 전 수거검사 강화
 - 대상 : 전년도 회수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동일 품목류 출고 전 제품
 - 주기 : 연중
 - 검사항목 : 회수 사유가 된 부적합 항목
- 유통단계 : 위해우려 식품유형 기획검사
 - 목적 : 부적합율·회수이력 등을 반영 선정하여 특별 관리
 - 대상 : 안전관리 변수*별 가중치가 높은 식품유형
 - ※ 안전관리 변수 : ① 수거검사 부적합율 ② 자카품질검사 부적합 건수
 - ③ 위해식품회수 건수 ④ 생산실적 ⑤ 다소비 등
 - 주기 : 분기별
 - 검사항목 : 위해우려 항목

□ 추진성과(최근 3년)

구 분	추진 계획	연차별 추진성과
2022년	- 위해식품 유통근절 수거검사 실시 ·유통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취약 농산물 안전관리 수거검사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 2022년도 위해식품 유통근절 수거검사 실시 : 826건
2023년	- 위해식품 유통근절 수거검사 실시 ·유통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취약 농산물 안전관리 수거검사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 2023년도 위해식품 유통근절 수거검사 실시 : 1,136건
2024년	- 위해식품 유통근절 수거검사 실시 ·유통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취약 농산물 안전관리 수거검사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 2024년도 위해식품 유통근절 수거검사 실시 : 953건

□ '25년도 주요 계획

- 식품 유형별 유통 가공식품 수거검사
 - 관내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유형별 가공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식품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 소비트렌드에 따른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유통되는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설 대비 성수식품 수거검사	1월~2월
	○ 봄철 다소비 농산물 수거검사	2월~3월
	○ 봄나들이 성수품목 제조업체 점검	2월~3월
2/4분기	○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점검	4월
	○ 어린이 기호식품 등 제조업체 점검 및 수거검사	4월~5월
	○ 무인 식품판매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	5월
	○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	6월
3/4분기	○ 가을 신학기 대비 점검	8월
	○ 추석 대비 성수식품 수거검사	9월
	○ 가을 나들이철 대비 수거검사	9월
4/4분기	○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수거검사	11월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수거검사	12월
	○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79	16	16	16	15	16	16	16	16	
유통식품 안전관리(수거) 등	79	16	16	16	15	16	16	16	16	

나) 기타시책

(1)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작성 부서	식품 위생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유경 식품지도팀장	032-560-4499 kyk80@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정여정 주무관	032-560-4383 yeojung26@korea.kr	예방	X

- ◇ 식생활 문화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맞춤형 식중독 예방관리를 함으로써 관내 식중독 사고 발생을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40회	40회	40회	연간교육홍보 횟수

□ 주요내용

- 식중독 예방관리 교육
 - 집합교육(현장 간담회)
 - 상·하반기 일반음식점 보수교육 : 10회
 -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취약시설 식중독 예방교육 : 1회
 - 각종 식품위생영업단체 간담회 및 보수교육: 연중 매월 1회
 - 사이버교육 : 식품위생영업단체 홈페이지 교육프로그램 제공
-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캠페인)
 - 방 법 : 전자·비전자 SNS 등 각종 매체 활용
 - 내 용
 - 식중독 예방 협조 서한문 발송
 - 식중독 예방 안내문 배포
 - 집합교육 현장에서 손 씻기 방법 및 식중독 3대요령 안내

□ 추진성과(최근 3년)

구 분	추진 계획	연차별 추진성과
2022년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 식중독 교육·홍보 및 캠페인: 40회 실시
2023년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 식중독 교육·홍보 및 캠페인: 40회 실시
2024년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 식중독 교육·홍보 및 캠페인: 40회 실시

□ '25년도 주요 계획

- 식중독 예방·관리 교육
 - 상·하반기 일반음식점 보수교육 및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교육 등
-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캠페인)
 - 전자·비전자 SNS 등 각종 매체 활용 및 식중독 예방 안내문 배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2/4분기	일반음식점 보수교육 실시	5월
3/4분기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7월
	일반음식점 보수교육 실시	9월

(2)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 점검

작성 부서	식품 위생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민규 유통식품팀장	032-560-4331 jujumang@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현주 주무관	032-560-4332 s684008@korea.kr	예방	X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유통식품 지도 점검	100%	100%	100%	(점검건수/대상업소수)*100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 부정·불량식품이 유통·판매업체를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
- 식품 판매업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
-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신고 식품 판매 행위 점검
- 시기별 다소비식품, 집단급식용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및 지역별 특산식품 등 유통·판매 업체 관리 강화

○ 대상업종

-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 기타 도·소매업 및 무신고 식품 판매·통신판매 중개업자

○ 주요점검내용

- 무신고영업행위 여부
-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등

- 무허가(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위·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
- 유통관리 적정여부
 -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행위
 -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 냉장·냉동제품, 신선편의식품 등의 적정 보존·보관·운반·진열·판매여부
- 불법 수입식품등 취급·판매행위
 -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등 판매행위 등
 - 수입식품등의 용도(불법판매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용 등)외 판매여부
- 표백제, 색소 등 위해물질 처리 및 판매행위
 - 연근, 도라지, 더덕, 밤, 마늘 등에 표백제 및 황산알루미늄 처리
 - 생선, 두부, 목 등에 색소 및 보존료 처리
- 대형마트의 PB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 강화
- 냉장·냉동 제품 온도관리는 기기에 부착된 온도계의 온도를 검증·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
- 로컬푸드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강화
 - 영농조합법인 등이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 추진성과(최근 3년)

구분	추진계획	추진성과
2022년	·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 3,230건
2023년	·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 3,945건
2024년	·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 4,517건

□ '25년도 주요 계획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 소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식품 제조 및 유통분야 식품위생업소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고자 함.
- 찾아가는 맞춤형 식품위생업소 1:1 안심멘토링 실시
 - 기존 규제위주의 점검을 탈피하여 영업주들의 위생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식품제조업소 1:1 맞춤형 멘토링 등을 실시함으로써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설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1월
	○ 봄철 다소비 농산물 수거검사	2월~3월
	○ 봄 신학기 대비 합동점검	2월~3월
	○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3월
	○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업체 점검(1차)	3월
2/4분기	○ 청소년수련시설 등 식중독예방 점검	4월
	○ 어린이날 대비 합동 점검	4월
	○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제조·유통업체 점검	5월
	○ 하절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6월
3/4분기	○ 가을 신학기 대비 점검	8월
	○ 영유아식 및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업체 점검	9월
	○ 추석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9월
	○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9월
4/4분기	○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건기업체 점검(2차)	10월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식품 접객업체 점검	10월
	○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점검	11월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점검	12월

차. 의료제품 사고

1) 현 황

< 연도별 의료제품 사고 피해현황 >

(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출처 통계) 보건행정과 소관 통계자료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의료제품 사고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영유아(%)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	중심알바사업자(%)	의료시설(병원)(개)
서구	6.77	4.32	3.15	9.86
비교지역 평균	4.66	7.51	5.82	17.83

2) 원인분석

- 불량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감시 필요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 야	유형 및 사업명	관계법령 및 지침	주요내용	주관부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의료제품 사고 (의약품 취급자 지도점검)	약사법 및 의약품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	·관내 약국(의약품취급자) 지도점검 실시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위해우려 의약품 회수 및 폐기)	보건행정과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청라지역 내 약국은 소관청에서 점검 진행

4) 의견수렴: 해당없음

5) 목 표

- 의료제품 사고 재산 및 인명피해 제로화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부정·불량 의약품 사용 사전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 중앙정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를 통한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감시
 - 의·약·정 간담회를 통한 관내 병·의원 및 약국 관련 협회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
- 부정·불량 의약품 관련 내용 전파
 - 부정·불량 의약품 관련 정부 정책을 즉각적으로 홍보하여 위기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
 - 부정·불량 의약품이 의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 * 위해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나) 대비·대응단계

-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여부 점검
 - 의약품취급자(약국) 대상 부정·불량 의약품 조제 및 판매여부 점검
- 부정·불량 의약품 회수 및 폐기 처리 절차 안내
 - 회수명령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회수 명령 공표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의약품 취급자 및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
 - 부정·불량의약품 취급자가 회수의무자에게 회수대상의약품이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

다) 복구단계

-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업소 사후 점검
 - 회수대상 의약품에 대한 즉각적인 판매중지 및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는지 등을 점검
 -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 절차에 따라 의약품을 회수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및 평가

8) 세부추진대책

가) 기타시책

[1] 의약품 취급자(약국) 지도점검 실시

작성 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정숙 의약관리팀장	032-718-0421 ljsnpth@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은주 주무관	032-718-0425 dmswn91@korea.kr		

◇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 취급자 지도점검 실시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의약품 취급자 지도점검	100%	100%	100%	(점검 개소 수/관내 약국 개소 수)*10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청라지역 내 약국은 소관청에서 점검 진행

□ **주요내용**

- 점검기간 : 연중
- 점검대상 : 관내 약국
- 점검방법
 - 정기점검 : 현장 및 자율점검
 - 수시점검 : 위반사항 적발업소·민원 등이 잦은 의약품 취급업소
- 주요 점검내용
 - 의약품 광고 및 표시기재 규정 준수 여부
 -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 여부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행위 여부 등 약사법 준수 여부
- 점검결과 후 사후관리
 - 즉시 보완이 가능사항은 즉시 현장조치 및
 - 사후 보완사항은 보완요구 후 재점검
 -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약물관리계획 수립 - 약국 현장점검 실시(위반사항 적발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	1월
2/4분기	- 약국 자율점검표 배부 - 약국 현장점검 실시(위반사항 적발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	5월
3/4분기	- 약국 자율점검표 회수 - 약국 현장점검 실시(위반사항 적발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	
4/4분기	- 약국 자율점검표 회수 및 미회신 약국 현장점검 실시 - 약국 현장점검 실시	10월

카. 전시재난·테러

1) 현 황

< 연도별 테러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 주민대피시설: 108개소
 - 공공용지정시설 108개소
- 비상급수시설 : 160개소
 - 정부지원시설 7개소, 지자체시설 1개소, 공공용지정시설 65개소, 준비명령시설 85개소
- 방독면: 47,659개

○ 민방위대 편성현황

- 829대 45,202명(2024. 12. 31. 편성일자 기준)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전시재난·테러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군사시설(%)	가스원유 비축시설(m ³)	발전시설(m ²)	방송통신 시설(%)	중공업 산업단지(%)
서구	0.12	1,726,839	326,143	0.20	3.87
비교지역 평균	0.11	70,375	11,208	0.15	2.76

2)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야	유형	관계법령	주요내용	주관부서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전시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안전 총괄과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민방위 준비	안전 총괄과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6) 재정투자현황

< 연도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계	891	154	170	213	168	183
재난안전예산 반영사업						
민방위 교육훈련	290	47	55	67	55	66
민방위 교육운영경비	226	42	43	55	41	45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0	2	2	2	2	2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362	63	70	89	70	70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대비단계

①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운영 개선

-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민방위 편성 관련 ‘민원 사례’ 공유를 통한 효율적 민원대응
-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
 - 실제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 실시
 - 사이버교육을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의 내실화 도모
- 민방위대원 교육 편의성 제고
 - 교육 일정 선택 기회 확대 등 편의성 제고
 - 민방위 교육 통지 절차 간소화 및 전자화

②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

- 안보상황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민방공 대피 훈련 실시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민방공 대피 훈련 실시
- 재난여건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특성화 훈련 강화
 - 전국 동일한 훈련을 탈피하여 지역 맞춤형 훈련 진행
- 다양한 홍보 방법 활용 및 협업을 통한 국민 참여 활성화
 - 민방위기, 현수막, 포스터,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 조직과의 협업으로 국민 참여 유도

③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 정기검열을 통한 전반적 운영실태 확인
- 자체 검열 계획 수립 및 시행
- 민방위대 검점 결과에 따른 조치 시행

④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관리

- 민방위 장비 유지 관리
 - 월별 및 반기별 정기 점검을 통한 노후 장비의 정비·교체 시행
 - 장비의 내구연한 고려하여 적정 보급 교체 시행
- 공공용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 강화
 - 반기별 중점 정기 점검(상반기, 하반기)
 - 대피시설 사각지역이 없도록 탄력적·자율적 정비
 - 대피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 강화 및 교육 실시
- 비상급수체계 정비
 -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으로 유사시 즉시 활용을 위한 관리 강화
 - 음용수 분기 1회, 생활용수 3년 1회 정기 검사로 수질 관리
 - 급수시설 저수조 및 펌프 사후관리를 통한 유지 관리

⑤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체계 강화

- 민방위 경보전달 태세 확립
 - 민방공사태 대비 민방위 경보발령 자체훈련 참여
 - 경보담당자 경보시스템 운영교육 참여

⑥ 주민보호(대피) 계획 수립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민보호계획 수립
- 위기상황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일괄 수립
- 군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마련으로 주민보호계획 강화
 - 비상연락망 구축, 경보시설 관리 등 상시 점검·유지

나) 대응·복구단계

① 민방위대 활용

- 경보·대피
 - 민방위사태에 따른 경보 발령 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로 대피 유도 지원
- 주민통제 및 소산
 - 군사작전에 자장을 주지 않도록 정부지도에 따라 주민 통제 및 파산조치 지원
- 교통통제 및 등화관계
 - 주민이동과 차량운행 통제 지원 및 조명장치 소등 지도 지원
- 인명구조 및 안전관리
 - 인명구조 및 사상자 병원 이송 지원 및 재난 발생 전파 및 복구작업 지원
- 복구지원 : 파손된 중요시설물 응급조치 및 임시 복구 지원
- 주민계도 : 주민계도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계도 지원

② 동원단계별 처리내용

단계별	처리기관	처 리 내 용	비고
① 동원요건	법 제26조1항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 민방위사태발생보고 : 구 → 시 → 행정안전부장관	
	시행규칙 제41조	○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② “동원권자”의 동원요인 진단 (법 제9조) (규칙 제41조)	행정안전부 (시행령 제3조)	○ 동원권 발령 여부 판단(협의회 심의) - 동원권 발령 여부, 동원규모 등 * 긴급 시 협의회 생략 가능	
	시, 구(동) (시행규칙 제2조)	○ 동원권 발령 여부 판단(협의회 심의) - 민방위대원 임무와 역할, 동원 규모 등 * 긴급 시 협의회 생략 가능	

단계별	처리기관	처 리 내 용	비고
③ 동원권 발령 (법 제26조)	행정안전부 시 구	○ 발령권자: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구청장(긴급시 동장)	
④ 동원령 전파 (시행령 제35조)	민방위대장 (통)	○ 전파방법 - 지역방송 및 마을방송, 사이렌 등 - 비상연락망 및 동원명령통지서에 의한 개별 전달 ○ 전달체계 : 발령권자→동장→민방위대장→대원	
⑤ 사태수습통제 지휘소설치·운영	시장, 구청장	○ 사태수습 통제 및 지휘, 민방위대별 임무부여 ○ 동원인력 보강 여부 판단 및 요청 (통제 지휘단장 → 동원권 발령자) ○ 자재, 장비, 취사 등 지원 ○ 부상자 가료 및 후송, 이재민 긴급구호 등 종합대책 마련 ○ 인근 민방위대 응원 요청 - 요건 : 사태의 급박 및 수습능력 부족 - 범위 : 동원권자 관할 지역범위 내 - 요청경로 : 통제단장(민방위대장)→인근지역 민방위대장 - 절차 : 구두(사후 서면 제출) - 응원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동장(구청장)에게 보고	
⑥ 동원 집결지	통제지휘소 (동장)	○ 응소인원 점검 : 지역민방위대장 → 동장에게 보고 ○ 대원별 임무부여 및 민방위 장비 배부 ○ 대원의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교육 ○ 미 응소대원에 대한 동원명령통지서 전달	
⑦ 대원 임무수행	민방위대장 및 대원	○ 대원 단독행동을 자제하고 2~3인 이상 집단 활동 ○ 통제지휘소(본부)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임무수행 중 특이사항 즉시 보고	
⑧ 의료기관지정 및 사상자 후송	동원권자 통제지휘소	○ 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인근 의료기관 후송 ○ 의료기관 지정 : 부상자 가료 신청→ 동장→ 구청장 (의료기관) ○ 부상자(또는 유가족)에게 보상 또는 가료 신청 안내	
⑨ 사상자 파악보고	민방위대장	○ 파악대상 : 동원 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보고체계 : 민방위대장 → 동장 → 구청장 → 시장 → 행정안전부장관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민방위 교육운영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경아 민방위팀장	032-560-4281 kakim123@korea.kr	재난관리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김유진 주무관	032-560-4284 dbwls222@korea.kr	대비	o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 2025년 서구 민방위 계획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민방위 교육 수료	91%	96%	96%	(수료자 수/대상자 수)*100

□ 주요내용

- 전시·사변,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 시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민방위 대원의 실질적 교육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민방위 기본교육(1차) 실시계획 수립(2월) 민방위 사이버교육(상반기) 계획 수립(2월)	2월
2/4분기	민방위 기본교육(2차) 실시계획 수립(4월)	4월
3/4분기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실시계획 수립(9월) 민방위 사이버교육(하반기) 계획 수립(7월)	7월, 9월
4/4분기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실시계획 수립(10월)	10월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526	91	100	124	98	113	102	106	110
민방위교육훈련	290	47	55	67	55	66	57	59	61
민방위교육운영경비	226	42	43	55	41	45	43	45	47
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	10	2	2	2	2	2	2	2	2

(2)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경아 민방위팀장	032-560-4281 kakim123@korea.kr	재난관리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효진 주무관	032-560-4283 happy.leopard@kreakr	대비	X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등)

◇ 2025년 서구 민방위 계획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100%	100%	100%	(시설장비 점검 수/시설장비 대상 수)*100

주요내용

- 민방위 장비의 최적 상태 유지·관리로 유사시 주민보호 및 대원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유지·관리 시행

추진성과(최근 3년)

- 민방위 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수시)
-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분기별)
- 비상대피시설 점검(월별)

'25년도 주요 계획

- 비상대피시설 표지판 배부 (상반기)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3월) 및 저수조 청소(상/하반기)
- 화생방 방독면 구입(상반기)

□ 추진일정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1분기)	3월
2/4분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2분기)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상반기)	6월
3/4분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3분기)	9월
4/4분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4분기)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하반기)	12월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21~'25)	'21	'22	'23	'24	'25	'27	'27	'28
계	351	63	70	89	70	70	80	85	90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351	63	70	89	70	70	80	85	90

3 공통분야

가.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1) 현 황

- 안전점검의 날 추진

구분	24년 1분기	24년 2분기	24년 3분기	24년 4분기	총계
안전점검의 날 추진 횟수	3	3	2	3	11

2) 원인분석

- 분기당 2회 이상 안전문화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 문화 의식 고취
- 안전보안관의 자발적인 안전 홍보 활동으로 안전 문화 정착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안전 교육 및 문화활동 계획
 - 안전보안관 교육 실시: 2025.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실시 예정
 - 안전점검의 날 실시: 연 중 10회 이상 실시 예정
- 관련 규정

분 야	유 형	관계법령	주요내용	주관 부서
공 통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안전 총괄과

4) 의견수렴

- 안전문화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확대하여 자발적이고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 실시 예정

5) 목 표

-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문화 교육 등 확대 추진

< 연도별 목표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교육 건수(회)	2	2	2	2	2
안전점검의 날 추진 횟수(회)	12	12	12	12	12
안전점검의 날 평균 참여 인원(명)	40	20	25	30	35

6) 재정투자현황

< 연도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계	105.4	41	13.5	13.5	22.4	15
재난안전예산 반영사업						
안전문화운동 운영 물품 구입비	47.5	41	2.5	2.5	0.5	1
안전보안관 실비 지급	57.9	0	11	11	21.9	14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안전보안관 운영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강성재 사회재난팀장	032-560-2881 bada68@korea.kr	재난관리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이윤상 주무관	032-560-2883 lys12345@korea.kr	예방	X

- ◇ 안전보안관으로 통합에 따른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 운영개선 방안(안)-인천광역시 안전정책과(21.1.)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에 따라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하여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안전보안관 활동 추진	100점	100점	100점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에 근거한 실비 지급 (월 평균 활동인원 1명 = 5점)
안전점검의 날 추진	100점	100점	100점	안전점검의 날 개최 (개최 건수 1회 = 10점)

□ 주요내용

- 안전보안관을 통한 안전 문화운동 추진
 - 인 원: 30명 내외
 - 주요 역할
 -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안전무시 7대 관행 및 생활안전 신고
 -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등 안전활동 전개
 - 지역행사 및 축제의 안전관리요원 및 각종 안전훈련 자원봉사 참여
- 안전점검의 날 개최시 배포할 홍보물 제작
 - 물티슈, 핫팩 등 안전점검의 날 홍보 물품 주민들에게 배부

□ 추진성과(최근3년)

- 안전보안관 활동
 - 2022 안전보안관 활동 인원 : 17명
 - 2023 안전보안관 활동 인원 : 41명
 - 2024 안전보안관 활동 인원 : 60명
- 안전 점검의 날 추진
 - 2022 안전점검의 날 추진 : 9회 (참여 : 안전보안관 외)
 - 2023 안전점검의 날 추진 : 11회 (참여 : 안전보안관 외)
 - 2024 안전점검의 날 추진 : 11회 (참여 : 안전보안관 외)

□ 2025년도 주요계획

- 안전 점검의 날 추진계획
 - 2025년 목표 횟수 : 8회 이상
 - 2025년 목표 참여 인원 : 회당 20명 이상
 - 참여자 모집 : 안전보안관 적극 활용, 자율방재단 및 통장 등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안전점검의 날 개최 및 홍보물 제작	매월
2/4분기	안전점검의 날 개최 및 홍보물 제작	
3/4분기	안전점검의 날 개최 및 홍보물 제작	
4/4분기	안전점검의 날 개최 및 홍보물 제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105.4	41	13.5	13.5	22.4	15	25	28	28	
안전보안관 실비지급	57.9	0	11	11	21.9	14	22	24	24	
안전문화운동 운영 물품 구입비	47.5	41	2.5	2.5	0.5	1	3	4	4	

나.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1) 현 황

(기준: 2025.1.1.)

연번	구 분	기관명	주소	비고
1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국제성모병원	심곡로100번길 25(심곡동)	인천시 지정
2		나은병원	원적로 23 (가좌동)	
3		검단탑병원	청마로19번길 5(당하동)	
4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	뉴성민병원	칠천왕로33번길 17(석남동)	지자체 지정
5		온누리병원	완정로 199 (왕길동)	

2) 원인분석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상황 발생 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야	유형	관계 법령	주요 내용	주관부서
사회재난	의료서비스 대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보건행정과

4) 의견수렴 : 해당없음

5) 목 표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훈련 횟수	5회이상	5회이상	5회이상	5회이상	5회이상

6) 재정투자 현황

< 연도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계	7.5	1.5	1.5	1.5	1.5	1.5
신속대응반 지원	7.5	1.5	1.5	1.5	1.5	1.5

기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보건소 신속대응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으로 구성된 신속대응반 2개 팀 21명 편성
- 관계기관(경찰서,소방서,해양경찰서,군부대 등)간 협조체계 유지
- 재난의료 핫라인 및 비상연락망 구성 및 점검
- 재난대응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 파악
- 신속대응반 구성원의 교육·훈련 실시

나) 대비단계

-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응급의료지원 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사전 점검 및 대규모 모의훈련 실시
- 현장응급의료소 및 신속대응반 운영 물품 비축 및 관리

다) 대응단계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제20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의료소에는 소장 1인과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을 두고 각 반에는 반장을 두되 반장은 의료소 요원 중에서 의료소장이 임명함



○ 주요임무

- 현장응급의료소장인 보건소장을 보좌하여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지원
- DAMT 도착 전 선착대로서 현장 상황 파악
- 재난현장의 의료수요를 평가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

* DMAT(재난의료지원팀) : 인천 내 의료기관 2개소(인하대병원, 가천대길병원)

- 인하대병원(의사1,간호사1,응급구조사1,행정1로 구성3팀, 총12명),
- 가천대길병원(의사1, 간호사1, 응급구조사1,행정1로 구성 4팀, 총16명)

반명	주요임무
현장응급의료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응급의료소 총괄 지휘 · 감독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 · 관리
분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한 의사배치 • 사상자 중증도 분류(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응급처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 초기인원이 부족할 경우, 분류반과 응급처치반을 통합하여 운영가능
이송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동
운영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응급의료소의 행정업무(현장기록, 사상자 현황 파악, 상황실 정보 보고 등)를 수행

라) 복구단계

○ 현장응급의료소 활동 종료 및 사후조치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결과 보고
- 현장응급의료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작성 부서	보건 행정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정례 응급의료팀장	032-718-0601 ggobb@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허현정 주무관	032-718-0602 plus0128@korea.kr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 동법 시행규칙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5장(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운영)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재난 훈련	3회	3회	3회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 훈련 시행 횟수

□ 주요내용

-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 응급의료지원 요청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전 현장 응급의료지원 활동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 활동 종료 및 사후조치

□ 추진성과(최근 3년)

-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 관리
 - 신속대응반 구성 : 2개 팀 총 20명 편성
 - 신속대응반 현장출동용 물품 정비·점검
 -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점검
- 도상훈련 및 유관기관 연계 현장훈련 실시
- 응급의료자원 관리: 구급차, 헬기인계점 관리

□ '25년도 주요 계획

- 재난의료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참여도 100% 달성
- 신속대응반 2팀 구성·운영 유지
- 현장응급의료소 출동물품점검 10회 이상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자체 도상훈련 및 직원교육 실시	3월
2/4분기	자체 도상훈련 및 직원교육 실시	5월
3/4분기	자체 도상훈련 및 직원교육 실시	8월
4/4분기	자체 도상훈련 및 직원교육 실시	11월
상시	유관기관 연계 현장 및 도상훈련 참석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7.5	1.5	1.5	1.5	1.5	1.5	1.5	1.5	1.5	
신속대응반 지원	7.5	1.5	1.5	1.5	1.5	1.5	1.5	1.5	1.5	

다. 재난안전관리체계

1) 현 황

< CCTV 운영현황 >

(2025.1월 기준, 단위: 개소/대)

구분	개소	카메라 대수			담당부서	
		합계(A+B)	회전형(A)	고정형(B)		
범죄예방	생활방범	1,139	2,160	1,138	1,022	안전총괄과
	어린이보호	371	687	371	316	
	도시공원	207	581	219	362	
	차량번호판독	10	21	0	21	
	소계	1,740	3,449	1,728	1,721	
시설관리	펌프장, 저류지 등	15	18	15	3	생태하천과
	지하차도	23	23	23	-	도로과
교통단속	불법주정차단속	197	479	197	282	주차관리과
재난예방	산불감시	5	8	5	3	산림정원과
	환경감시	5	10	5	5	기후대기과
	하천감시	6	10	6	4	인천시청
총계	1,999	4,031	1,987	2,044		

2) 원인분석

-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1인 가구의 지속 증가로 인해 방범 CCTV를 통한 생활 안전망 확대가 필요함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야	유형	관계법령	주요내용	주관부서
공통	재난안전관리체계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관 제 센터 운 영 규 정 제18조 3항 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 CCTV 설치	안전총괄과

4) 의견수렴 : 해당없음

5) 목 표

< 방법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

(단위 : 개소)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방법 CCTV 설치	35	15	15	20	20
방법 CCTV 성능개선	49	20	20	25	25

6) 재정투자 현황

< 연도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계	8,166.5	1,595.7	2,225	1,806.5	2,681.4	2,681.4
재난안전예산 반영사업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6,254.7	309	1,304.8	1,426.5	1,675.5	1,538.9
방법 CCTV 설치 및 운영	1,911.8	1,286.7	920.2	980	1,005.9	322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관제센터 및 인천 서부경찰서 상호협력체계 유지
 - 방법 취약지역 화살 순찰 중 거동수상자 발견 시 즉시 순찰차 출동 요청
 - 범죄사건 발생 관련 112 신고 접수 즉시 주변 CCTV 영상검색을 통해 경찰관에게 인상착의 및 도주방향 등을 전달하여 피의자 검거 지원

나) 대비·대응단계

- 모니터링 중 사건 사고 등의 상황 발견시
 - 상황보고(모니터링 담당) → 상황과악 및 유지(경찰/모니터링 담당)
 - 상황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
- 비상벨 작동 감지 시
 - 상황과악(경찰/모니터링 담당) 및 전파(유·무선 등)
- 상황별 전파

구 분	주간	야간·주말·공휴일	비 고
범죄예방	모니터링 담당(560-4586) ↓ 서부경찰서상황실(112)	상주 경찰, 모니터링 담당(560-4586) ↓ 서부경찰서 상황실(112)	· 경찰출동, 경찰차 출동 등 현장대응
생활안전	모니터링 담당(560-4586) ↓ 서부소방서(119)	모니터링 담당(560-4586) ↓ 당직실(560-4222) 서부소방서(119)	· 해당 부서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 대응
풍수해	모니터링 담당(560-4586), 비상근무자 ↓ 해당부서(560-4701)	모니터링 담당(560-4586), 비상근무자 ↓ 해당부서(560-4701)	· 상황근무자 비상근무 · 풍수해 예상 지역 집중모니터링
사회재난 (화재 및 그외사고)	모니터링 담당(560-4586) ↓ 사회재난담당(560-2887) 서부경찰서(112) 서부소방서(119)	모니터링 담당(560-4586) ↓ 당직실(560-4222) 서부경찰서(112) 서부소방서(119)	· 소방서, 경찰서 상황전파 · 담당부서로 상황전파 및 현장대응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방법 CCTV 운영

작성 부서	안전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정욱 통합민체팀장	032-560-4581 kjjw363@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전오영 주무관	032-560-4585 conan502@korea.kr		

- ◇ 국민안전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신속한 대응 요구
- ◇ 국민의 지속적인 안전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 「아동복지법」 제16조의2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CCTV 설치 및 정비	60/60	33/6	35/49	CCTV 설치개소/CCTV 정비개소

□ 주요내용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5년 연중
 - 사업목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사업내용 : CCTV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 시설물 유지관리 채용시기 분산을 통해 관제요원의 CCTV 실시간 관제 및 비상벨 응대 등 업무 공백 최소화
- 방법 CCTV 설치 및 정비
 - 사업기간 : 2025.1 ~ 12.
 - 사업규모 : 서구 관내 84개소(신규설치 35개소, 정비 49개소)
 - 사업내용
 - 2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 카메라 및 비상벨, 안내간판 설치
 - 노후화 CCTV 교체 및 이전 설치를 통해 감시 사각지대 해소와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추진성과(최근 3년)

○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단위 : 건수)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CCTV 신규 설치	76	60	33
CCTV 성능개선	42	60	6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1/4분기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수요조사 설치 후보지 현장 실사	2~3월
2/4분기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행정업무 진행 방법 CCTV 신규 설치 발주 및 착공	4~6월
3/4분기	CCTV 현장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추진 관제센터 주요 시스템 정기점검 실시 방법 CCTV 신규 설치 준공	9월
4/4분기	CCTV 통합관제센터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획 수립 관제센터 주요 시스템 정기점검 실시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8,166.5	1,595.7	2,225	1,806.5	2,681.4	1,860.9	1,953.9	2,051.6	2,154.2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6,254.7	309	1,304.8	1,426.5	1,675.5	1,538.9	1,615.8	1,686.5	1,781.5	
방법 CCTV 설치 및 운영	1,911.8	1,286.7	920.2	980	1,005.9	322	338.1	355.1	372.7	

라. 국가핵심기반사고

라-1) 정보통신사고

1) 현 황

< 연도별 정보통신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통계 출처) 정보통신과 소관 통계자료

○ 취약요인 현황

< 서구 정보통신사고 취약요인 현황(2022년 기준) >

항 목	방송통신시설(%)	초고층아파트 (50층이상)지역(%)	발전시설(m ²)	국공립 및 출연연구소(개)
서구	0.20	0.51	326,143	1
비교지역 평균	0.15	0.32	11,208	0.55

2) 원인분석

○ 최근 5년간('20~' 24) 정보통신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없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조의 2

-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 정보통신사고 예방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정보통신 사고 피해 제로화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신속한 재난대응 및 관리에 사용되는 정보통신시스템 상태 점검
- 긴급통신지원 기능 수행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연락망 확인
 - 통신두절 상황 파악을 위한 민간통신사업자
 - 긴급통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원부서(기관) 및 단체
- 관할 지역 내 통신 음영지역 확인 및 공유

나) 대비·대응단계

- 재난현장 지휘자, 재난현장통합지원센터, 대피소 등으로부터 요청 접수시 긴급통신설비 자체지원 및 유관기관, 통신사업자 측에 지원요청
 - 통신장비 지원(무전기, 위성전화기 등)
 - 긴급 우회선로(백업망) 구성 및 SNG 차량 등 위성백업망 지원요청
 - 통신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비상전력 지원요청
- 지원 자원 부족시 지원부서 및 지원기관(단체)에 자원 지원요청
 - 통신지원 수요 급증시 통신 관련 자격증 보유 자원봉사자 지원요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필요시 재난현장 및 재난대책본부에 연락관 지정·배치하여 긴급 통신 지원 상황 공유
 - 재난현장(13개반)↔상황실 간 긴급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다) 복구단계

- 긴급통신지원 자원 철수, 정비 및 원상 배치
 - 필요시 지원받은 통신자원 사용료 정산
- 재난수습 대처 과정 사후 보고서 작성
- 재난관리 긴급통신 지원체계 확립 강화를 위한 정책 반영
 - 대처과정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대처과정 교훈·사례 전파

8) 세부추진대책

가) 제도개선

(1) 정보통신사고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정보통신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용진 통신관리팀장	032-560-4301 moto@korea.kr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안정윤 주무관	032-560-4305 wjdds884@koreakr	대비·대응	X

◇ 정보통신사고 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4조의 5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매뉴얼정비 현행화	100%	100%	100%	(개정 완료 횟수 / 개정 대상 횟수) * 100

□ 주요내용

- 정보통신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정비

□ '25년도 주요 계획

- 구정현황에 맞는 행동 매뉴얼 정비
 - 유관기관 현행화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2/4분기	상반기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6월
4/4분기	하반기 유관기관 협조사항 숙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12월

□ 제 · 개정내용

규정명	주요내용
정보통신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	- 상위기관 매뉴얼 개정 내용 반영 -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등 최신화

라-2) 전산망 사고

1) 현 황

< 연도별 정보통신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 (통계 출처) 정보통신과 소관 통계자료

○ 전산실 현황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 4층 정보시스템실(서구 서곶로 307)
- 전산실 면적: 총 161㎡
- 화재시설: 분말 소화기 2식 및 하론 소화기 1식
- 부대시설: UPS 2식, 향온향습기 1식
- 보안시설: CCTV 2식, 출입문(1개), 이중잠금장치

○ 정보시스템 백업현황: 공통기반시스템 등 총 38종

구 분	백업대상
행정망용	27개 시스템
	공통기반 I(2), 공통기반Ⅱ(2), 온나라(3), 부동산종합공부(2), 계약정보(1), 세입세출(1), 새올민원문자(1), 파일공유클라우드(2), 기록물(3), 민원통합관리(2), 챗봇(5), 통합전략(1), 맞춤형예산정보(1), 장애인주차구역(1)
대시민망용	11개 시스템
	가상화서버(1), DNS(1), 구정홍보문자(1), 영어나라(2), 공동주택정보공유(1), 재정정보(1), 계약정보(1), 의회회의록(1), 소통1번가(2)

2)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2조(재난 방지대책)
-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 2024년 행정정보시스템 백업 및 소산계획 (정보통신과-1742, 2024. 2. 19.)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통합백업시스템 운영을 통한 최상의 백업상태 유지
- PTL백업 및 원격백업, 물리적 소산을 통한 백업 안전성 강화
-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통한 재해복구 능력 제고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 재해복구시스템의 원격지 자료복제, 행정정보시스템의 백업·복구 관리
- ▶ 전기·공조시설 등 인프라, 통신망, 정보시스템 등의 재난경감 및 예방활동

1 조직체계

구분	주요 임무 및 역할	조직
행정안전부	- 시군구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업무총괄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총괄	지역디지털협력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통신망담당부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기술 지원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강지원 -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간 동기화 모니터링 지원 -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지원	지방행정시스템별소관부서
인천광역시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 지도·감독	정보화담당관
서구	-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 -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수행 - 전체 정보시스템 백업 및 소산 상태 점검	정보통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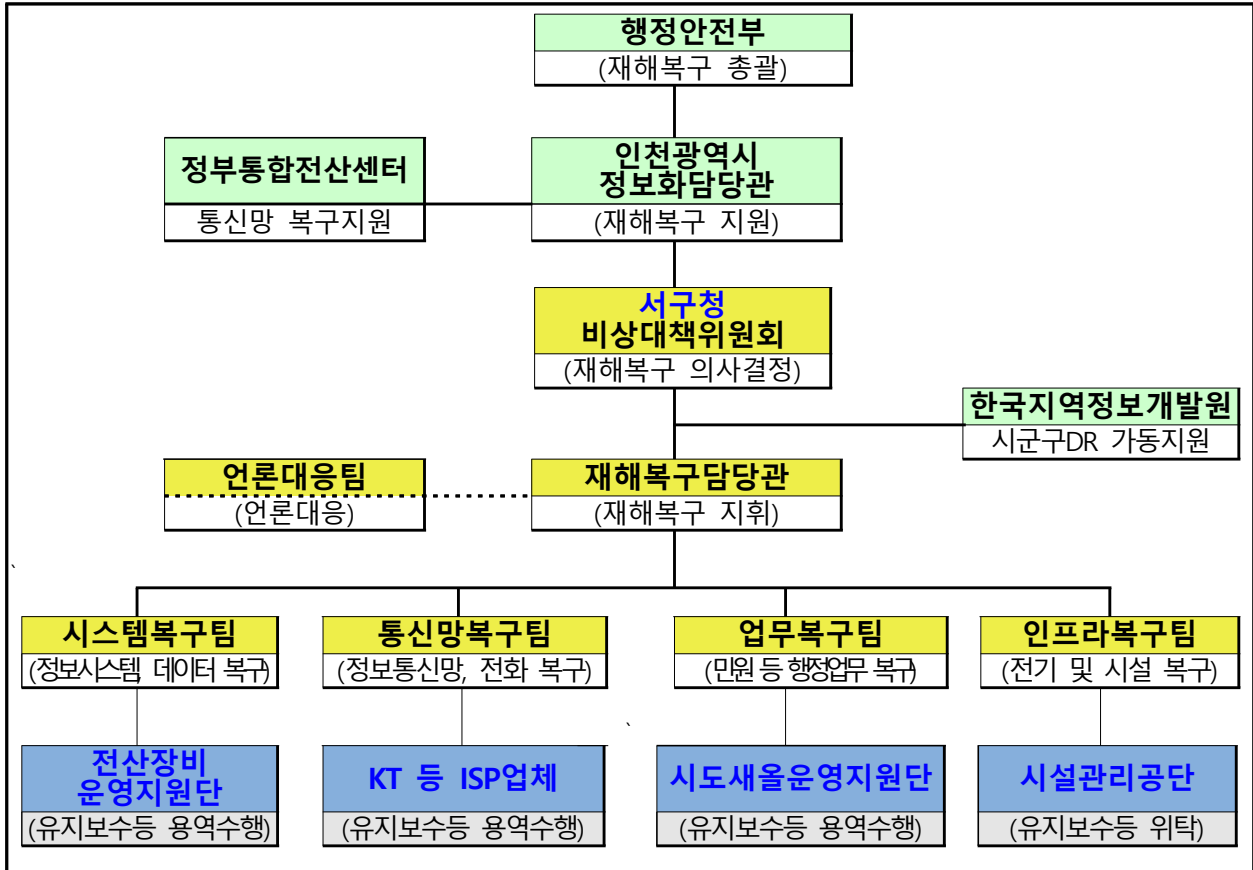
나) 대비단계

- 업무 연속성 계획 관리
 - 재난대응 조직 구성 및 담당자별 임무부여
 - 재해시 시스템별 중단·복구 우선순위 도출 및 현행화 관리
 -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 연속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검증 및 유지관리
- 행정정보(자료)관리
 -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행정정보의 원격지 복제상태 점검
 - 주기적인 통합백업 수행 및 소산지에 백업 자료 소산 관리
 - 백업자료에 대한 복구계획 및 훈련 수행
-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
 - 비상발전기, UPS 등 전기시설 점검 및 네트워크 구성 관리
- 재해복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관리
 - 인천시 재해복구센터와 협력하여 DR시스템 상시 가동상태 유지
 - 재해복구 미구축 시스템은 우선순위, 복구방법 등 복구계획 관리

다) 대응단계

- ▶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표준 행정업무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가동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 ▶ 전기 등 전산실 환경, 통신망, 정보시스템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

1) 조직체계



-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해복구 컨트롤타워 수행
- 재해복구 영역별로 대응팀 구성
 - 재해복구담당관은 시설, 통신망, 시스템, 행정업무 등 복구 총괄대응
 - 인프라복구팀은 시설, 전기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
 - 통신망복구팀은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을 최우선적으로 복구
 - 업무복구팀은 행정자료의 유실에 대비하고 행정자료를 복구
 - 시스템 복구팀은 재해복구시스템 가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복구 순위에 따라 시스템별로 소실된 자료 등을 복구

○ 초기 비상대응

- 화재시: 소화설비 등을 이용한 초기 화재 진압
- 정전시: UPS 확인 및 발전기 가동 등을 통한 비상전력 공급
- 공조시설 마비시: 항온항습기 수리 또는 여유장비로 대체가동
- 통신망 마비시: 운영지침에 따른 점검활동 및 장애조치

○ 피해분석 및 재해선포

- 인적, 물적, 업무 등의 피해 상황을 집계·분석
- 피해 현황을 종합 및 분석하여 비상계획 가동범위를 협의하고, 재해선포 여부 결정

▶ 재해선포

- 전산실 시설, 전산기반설비 및 통신망의 파괴로 초기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장애조치 최대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기관의 핵심업무 또는 주요 업무가 중단되고 최대중단허용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라) 복구단계

○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가동 및 핵심업무 개시

- 새울, 재정, 세정 등 재해복구체계가 구축된 핵심 업무의 행정 서비스 불가할 경우 재해복구시스템 가동을 결정
 - 재해복구시스템의 전환 단계별 상황을 점검하고 가동목표시간내 (4시간) 전환 가동 완료
- 전기, 통신망 등 재해복구시스템 이용을 대비한 응급 복구
-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완료 후 행정업무별로 기능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 복구

- 정보시스템별 가동여부 등 피해상황을 수집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된 우선순위별 정보시스템을 복구
-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한 유휴 장비 또는 대체 장비의 확보, 전산 장비 및 시스템 SW 긴급구매

-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업무는 재해 발생 전 최신 백업본 또는 소산매체를 이용해 복원
- 재해복구시스템 가동 중단 및 전환복귀
 - 전산센터 복구가 완료되면 재해복구시스템 중단 및 전환가동을 재해복구센터에 요청
 - 재해복구시스템에서 처리된 행정정보(자료)를 원본시스템으로 역복제 수행 후 데이터 동기화 적용
 - 역복제 완료 후 최신 자료 반영결과를 점검

8) 세부추진대책

가) 기타시책

(1)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및 통합백업 실시

작성 부서	정보통신과	작성자 및 연락처	문성진 정보관리 팀장	032-560-4081 sjlhj@korea.kr	재난관리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조연우 주무관 이진영 주무관	032-560-4084 rgotjd07@korea.kr 032-560-4086 leejinyoung22@ korea.kr	대비·대응	X

- ◇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
- ◇ 운영중인 전체 시스템에 대한 통합백업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
-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재난방지대책)

□ 주요내용

- 새울, 인사, 재정 건축행정 등 공통기반 표준행정업무에 대하여 재해 상황에 따른 모의복구 훈련 실시
- 운영 중인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일부 이중백업(1차 DISK, 2차 Tape, 원격 DISK)실시 및 분기별 원격지 소산을 통하여 행정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존체계 운영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실시	실시	실시	실시	목표복구시간(4시간)내 복구완료 여부

□ 추진일정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실시	'25년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일정 확정시 추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별사업단, 업무별담당자 동시 훈련 실시)	25년 하반기 (예정)
백업시스템 백업 및 복구 모의훈련 실시	주요시스템 백업 모의훈련 상반기(24.6.)/하반기(24.12.) 실시 (어플라이언스 및 PTL로 행정망, 대시민망 번갈아 실시)	반기별

라-3) 사이버 안전관리

1) 현 황

< 연도별 정보통신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2) 원인분석 : 해당없음

3) 관련 계획 및 규정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장(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
- 인천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침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사이버침해사고 피해 : 분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 연도별 피해 저감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저감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	0	0	0	0	0

6) 재정투자 현황 : 해당없음

기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기관별 사전대비 활동 강화
 - 사이버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연락체계 상시관리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및 운영관리, 사이버침해대응 등)
 - 분청 및 시 등 비상연락망 정비 및 임무·역할 명확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지보수업체 등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 국가기관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 * 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 공공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관리적 기술적 예방활동
 - 정보시스템, 웹 사이트 등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 정보보호 교육 및 침해사고대응 모의훈련 실시
 - 침해사고 예방조치(네트워크 접근통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
- 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적용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용
 -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분야별 정보보안 교육실시 등
- 사이버위기대응 관련 매뉴얼 정비
 - 매뉴얼 수시정비 및 점검 등
 - 서구 비상시 정보시스템 관리 매뉴얼

나) 대비단계

- '관심' 경보 내용을 기관 내부 및 산하기관 등에 전파
 - 이상 징후 및 사고발생 시 즉시 초동조치하고 침해사고 신고·전파
-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권고문 등 보안조치 이행

- 사이버침해 대비 보고체계 및 연락체계 정비
-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시행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점검 및 위기징후 감시 강화
 - 새로운 보안취약점 및 해킹수법에 대비, 보안패치 및 백신 업데이트
 -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및 프로그램, 서비스포트 차단, 위험 최소화
 - 정보보호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접근 차단 규칙 점검·차단
 - 해킹 의심메일 열람 금지 및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접속 차단

다) 대응단계

-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기관 내부 및 산하기관 등에 전파
- 사이버테러 대응반 가동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위기경보 발령 시
 - 사이버위기 경보발령 시 설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 설치장소 : 정보통신과 정보관리팀
- 피해발생 시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
- 사고원인 및 대응방안 파악(침해요인 및 대응방안)
- 위기경보 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시행

라) 복구단계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침입경로 차단 및 중요 백업데이터 복구
- 피해복구 범위 결정

구분	내용
데이터복구	데이터만 손상 발생
소프트웨어복구	프로그램 및 운영체제에 오류 발생
시스템재설치	운영체제에 복구가 불가능한 심각한 오류 발생
하드웨어교체	하드웨어의 손실발생

- 시스템 복구 절차 이행

○ 상황종료 보고

- 조치내역 결과 등이 포함된 상황종료 보고서 작성
-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종료 보고 실시, 사이버 위기 상황종료 기록
- 관계기관 등에 상황종료 보고

○ 사후관리

- 시스템 재가동 후 일정기간 모니터링 강화
- 수시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단계	보안대책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사항 전파 및 대응조치 - 보안권고문 수행 등 보호대책 이행 - 주요 웹, 해킹기법 및 보안취약점 발표 시 모니터링 강화 - 불필요한 서비스 차단 - 라우터,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네트워크접근제어 시스템 차단정책 점검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시 연락체계 점검 및 긴급대응반 가동 준비 - 공격대상 시스템, 서비스포트, 스캐닝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 웹, 바이러스, 해킹 등 악성코드의 예상 유입경로 차단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 교대근무 및 긴급대응반 가동 - 사이버안전 관련기관 전파사항 이행여부 재확인 - 서비스거부공격 발생 시 차단 정책 재설정 - 중요자료 백업 - 공격IP, 포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취약점 점검 강화 -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는 물리적인 케이블 분리 검토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 비상근무 - 사이버안전센터에 지원요청 - 사고관련 데이터, 백업자료 및 로그 제공 - 긴급대응반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지원팀에 협조 및 연락체계 유지 - 경보발령 공격대상 서비스 포트 차단 - 기관 내 PC사용 최소화 -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는 물리적인 케이블 분리

8) 세부추진대책

가) 기타시책

(1)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작성 부서	정보통신과	작성자 및 연락처	문성진 정보관리팀장	032-560-4081 sjlhj@korea.kr	재난관리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조연우 주무관	032-560-4084 rgotjd07@korea.kr	예방	X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인천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침 제 18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 실시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PC보안 프로그램 운영(내PC지키미)	95.3점	94점	94점	내PC지키미 점검항목 점수

□ 주요내용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 대상 : 정보시스템 및 부서별 업무PC
- 일시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 점검방법 : 내PC지키미 시행(전 직원)
- 개인별 보안 취약점 진단결과 도출된 취약점 조치
- 기본항목 미조치 시 인터넷 차단
 - 로그온 암호 안전성 여부 점검
 - 로그온 암호의 분기 1회 이상 변경 여부 점검
 - 화면 보호기 설정 여부 점검
 - 사용자 공유 폴더 설정 여부 점검
 - 미사용(3개월) ActiveX 프로그램 존재 여부 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연간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보안진단의날 시행	매월

라-4) 공공청사

1) 현 황

- 피해 현황 (2019. 9. 7.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
 - 본관동 5층 지붕 일부 파손
 - 제2청사 3개층 복도 벽체 균열 및 전도 발생, 건물 외부마감재 일부 탈락, 벽체 전도로 인하여 주차타워에 설치된 소방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비 일부 파손

< 연도별 청사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16	1	0	0	0	0	0
재산피해		60	300	0	0	0	0	0
인명 피해	계	0	0	0	0	0	0	0
	사망 (실종)	0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 (통계 출처) 재무과 소관 통계자료

2) 원인분석

- 2019년 제13호 태풍 '링링'(최대풍속: 47m/s, 강풍반경: 380km, 강도: 강, 크기: 중형)의 영향으로 재난사고 1건 발생

3) 관련 계획 및 규정

- 구청사 긴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 계획 수립 후 시설물 안전진단 및 시설물 복구 시행 (공사완료일 2020.1.15.)
 - 관련 규정 : 인천광역시 서구 영조물등관리규정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연도별 목표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6) 재정투자현황

< 연도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합계 (‘21~‘25)	‘21	‘22	‘23	‘24	‘25
계	732	142	143	147	149	151
안전관리계획 세부추진대책 사업						
청사유지관리비	565	113	113	113	113	113
소방시설유지관리비	167	29	30	34	36	38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구청사 건축·시설 등 관리점검

○ 목 적

- 구청사 건축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동절기 등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사고 발생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건물에 대한 재난예방과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추진방침
 -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건축, 소방, 전기, 가스분야 등 유관기관 원활한 합동점검 추진
- 점검반 구성
 - (점검총괄) 청사관리 부서장(재무과장)
 - (점 검 반) 청사관리 소속 공무원, 건축·토목·전기·기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편성
- 안전점검 결과 조치
 -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조치

□ 구청사 소방안전관리계획

- 목 적
 -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구청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 완화, 대비, 대응, 복구 계획 수립으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 추진내용
 - 일반사항 : 목적, 적용범위, 책임과 권한,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 예방 및 완화 : 일반현황의 작성, 화재예방, 자체점검 업무대행 등
 - 대비 : 소방안전관리위원회,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훈련 등
 - 대응 : 비상연락, 지휘통제, 초기대응, 피난 등에 관한 사항
 - 복구 : 피해복구계획,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점검

구 분	점검일자	점검방법(점검자)
소방점검(외관점검)	매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작동기능점검	본청사 2024년 12월 제2청사 2024년 5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종합정밀점검	본청사 2024년 6월 제2청사 2024년 11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 안전점검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정 조치하고 비용이 소요되는 보수는 시설 장비유지비 도는 별도 예산확보로 조치

□ 시설관리공단 건축물 시설 안전관리계획

○ 안전점검

- 건축물 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매년 초)
- 안전 점검반 운영
 - 안전점검총괄 : 시설관리부 부장 송창호
 - 안전점검반 : 청사관리부 팀장 강충환 외 9명
- 안전점검
 - 일상점검
 - 정기점검
 - * 주간점검 : 매주 1회
 - * 월간점검 : 매월 3회
 - * 특별점검 :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점검
 - 설 연휴 점검 : 1월 중
 - 해빙기 점검 : 3월 중
 - 상반기 청사관리 합동점검 : 5월
 - 호우 대비 점검 : 6월 중
 - 휴가철 대비 점검 : 7월 중
 - 하반기 청사관리 합동점검 : 8월 중
 - 추석연휴 대비 점검 : 9월 중

- 동절기 대비 점검 : 11월 중
- 연말연시 점검 : 12월 중
- 안전교육
 - 교육자 : 청사관리부 팀장
 - 월 1회 이상 실시
 - * 일자 : 매월 셋째주 목요일
 - * 대상 :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나) 대비단계

□ 긴급구조 대비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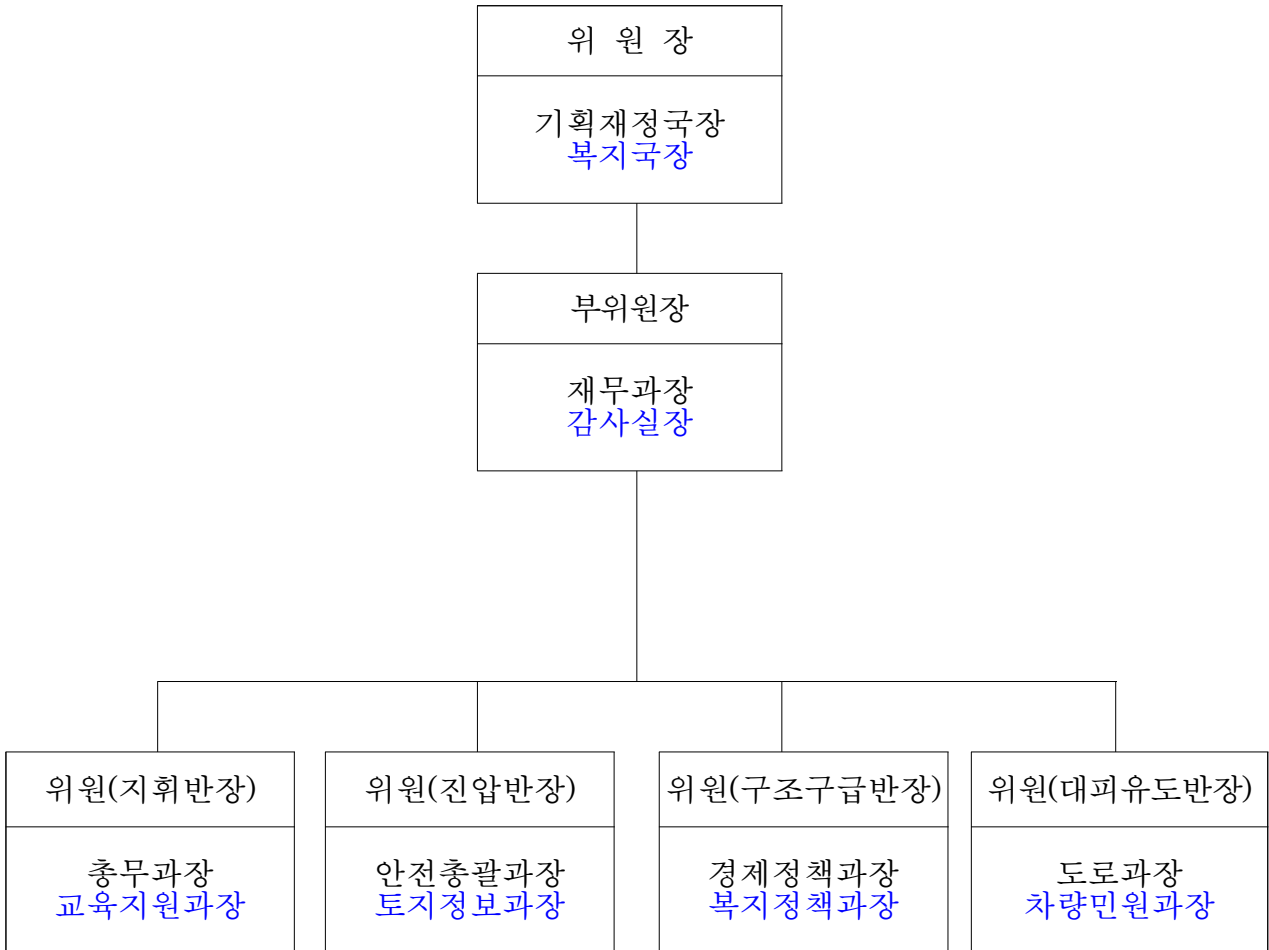
- 사건발생 시 초기 진압 및 연락
 - 초동대처 및 신고 신속강화
 - 청사 안내방송 실시, 전 직원 문자 상황 실시간 전파, 행동요령 안내
 - 청경 및 청사관리실, 청사관리담당자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처
 - 자위 소방대 반별 임무 숙지 및 가동 대처
- 인천서부소방서 종합상황실 협력 활용
 - 설치장소 : 서부소방서 상황실
 - 임 무
 - 재난사고 발생상황의 접수·확인 및 초기조치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및 응원요청 등 상황관리
 - 재난유형·규모 및 동원 인력·장비 등 상황 보고
- 유관기관 상호간 복구 및 소방협조, 지원체제 구축
 - 신속한 화재·폭발발생 경보 및 전파체계 확인
 - 재난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신고 일원화

□ 대피 및 복구계획 수립

- 직원·주민 대피계획 수립
 - 대피장소 지정하고 사전 교육하여 신속한 대피 안내·유도
 - 주기적으로 대피훈련 실시

○ 소방안전관리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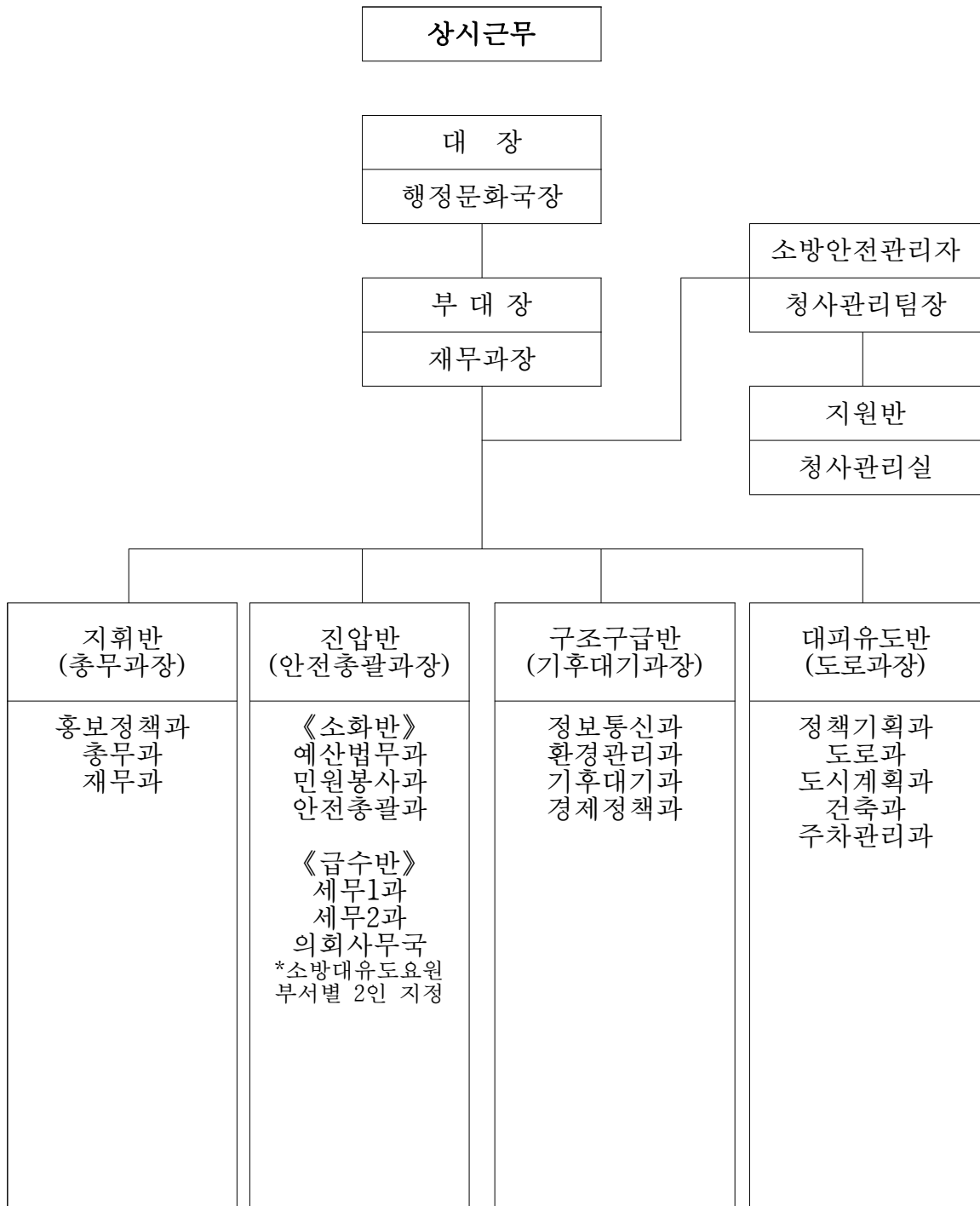
- 목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의결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 본청사 및 제2청사 조직도(청색은 제2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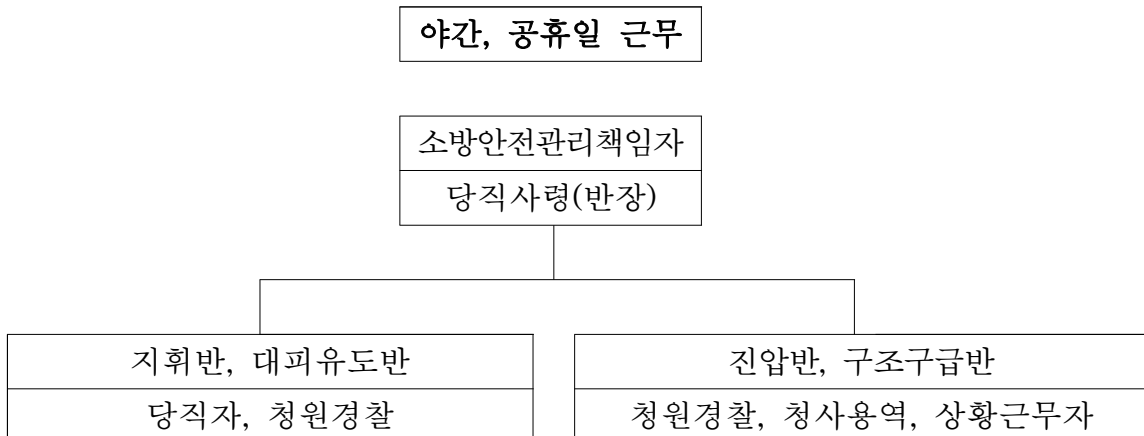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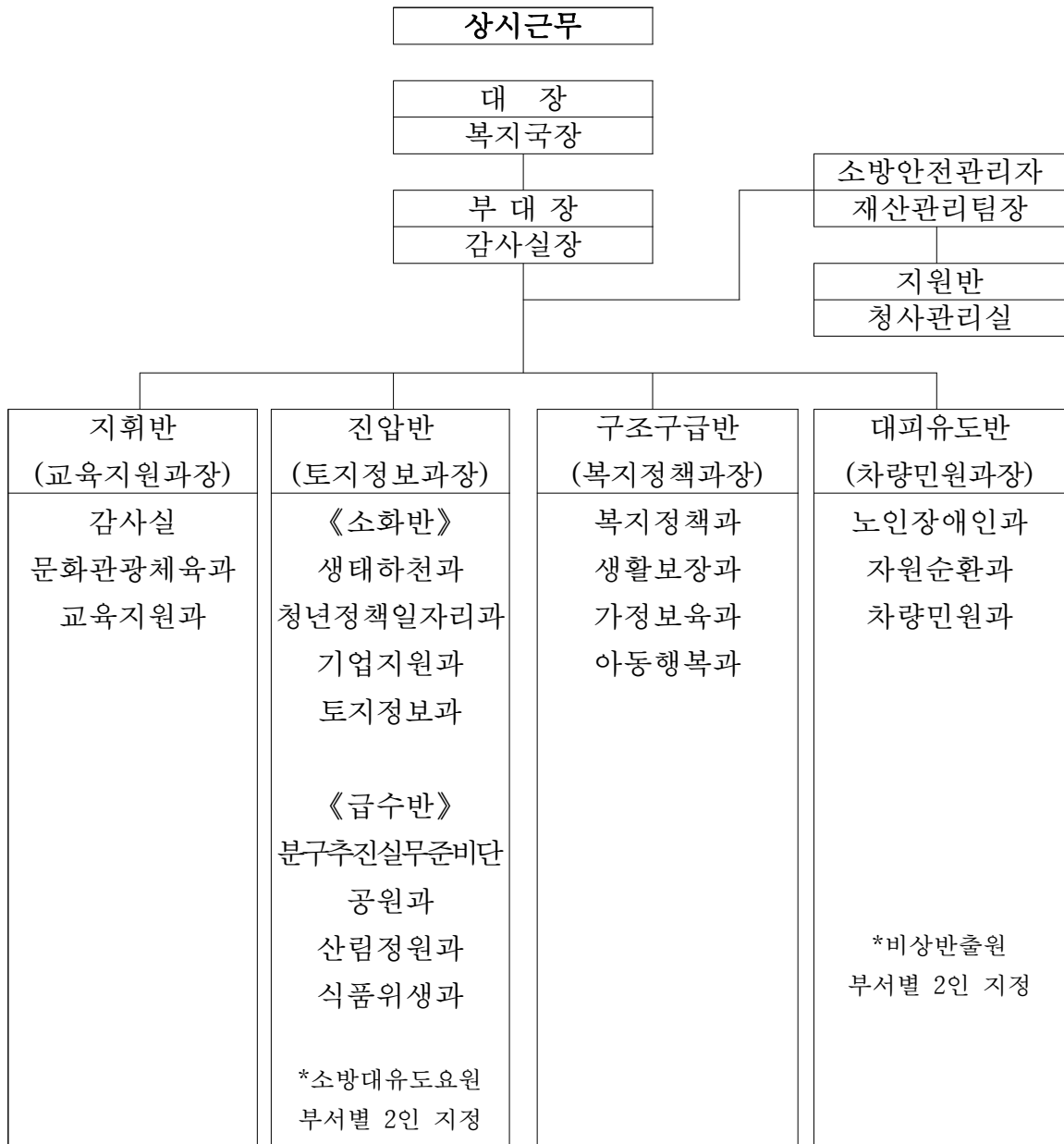
○ 자위소방대 운영

- 목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함
- 내용 : 화재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기타인명·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화재진압활동 중 소방관서 지원 및 협조

- 본청 조직도 및 임무편성표



- 제2청사 조직도 및 임무편성표



[조직별 임무]

구 분	임 무
대 장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 운용한다.
부 대 장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임무를 대행한다.
지휘반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연락한다.
진압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 소화반 :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 · 급수반 :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
구조구급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
대피유도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하고 방화문을 폐쇄한다.

다) 대응단계

□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단계별 근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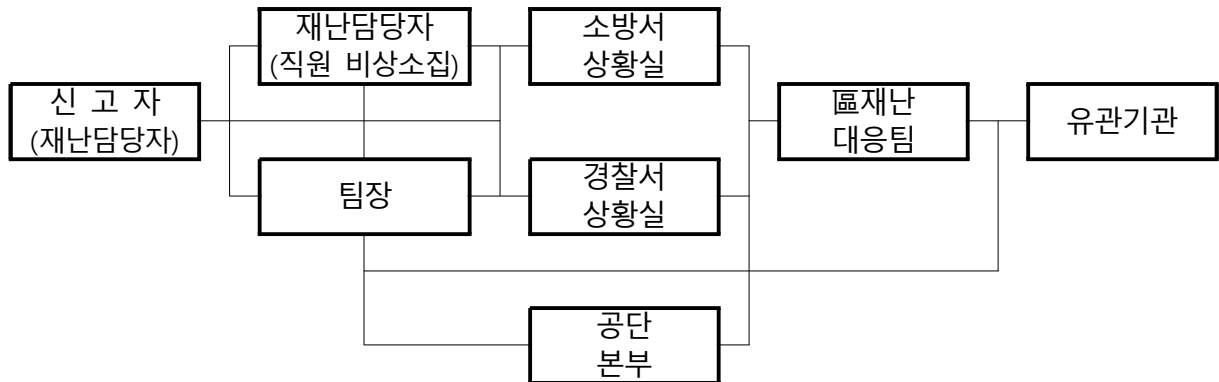
- 상시대비체계 : 상황실 24시간 근무·운영
- 비상단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근무자 재난종합상황실 정위치 근무
 - 근무교대 : 1일 1교대 원칙
 - 재난 피해상황 보고 및 전파

○ 재난 예·경보 발령

- 재난 사태별 경보 발령
-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비상상황 발생 보고

○ 비상상황 보고 체계도



□ 통신 소통계획 및 교통수송대책

○ 통신수단 확보 : 기획예산과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조치
- 위성통신, 무선통신 등 긴급통신수단 활용 확보

○ 교통 및 수송 대책 : 재무과, 교통정책과

-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긴급 의료지원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
- 응급물자 수송차량 확보 및 지원

□ 응급구조·구호

○ 직원 및 주민 응급 구호활동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보건소
- 서부소방서 구조구급팀 및 관내 대형병원 협력

□ 상황판단회의 운영

○ 운영개요

- 일시 : 필요 시 [재난상황 종료까지]

- 장소 :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 (본관)
- 목적 :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재난발생 초기 또는 재난 피해 확대가 예상될 시 아래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자 회의 개최
- 참석자 [주재 : 기획재정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담당자
- 협의 사항
 - 최초 재난 발생 시 재난개요, 현 상황 보고 및 대처 방안 논의
 - 부서별 일일 상황보고
 - 발생 피해현황 공유 등
 - 초기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 등
- 회의내용
 - 재난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 피해현황 및 초기 조치사항
 - 단계별 대응전략 보고 : 위기상황 및 피해 규모 예측 등
 - 주요사항 논의 결정 : 공무원 비상 소집여부 및 재대본 지원 필요 등
 - 후속 조치 이행 : 회의결과 조치 및 지시사항 전파 등

라) 복구단계

□ 신속한 재난응급 복구대책

- 전기·통신시설 응급복구
 - 전기·통신시설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복구 조치
 - 자체 확보인력(시설 관리 직원) 동원 응급 복구
 - 한국전력공사 동원지정업체 활용, 전력시설 복구
 -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원 전기피해시설 복구

○ 방역 등 보건위생 및 부상자 치료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보건소
- 중상자 등 부상자 응급조치
- 후송이 필요한 부상자 지역 의료시설로 신속 수송
- 응급 의약품 기자재 비축 및 기급 지원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

○ 원활한 재난복구

- 시설물 상태파악 및 합동 안전점검반 구성
-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 의견 청취
-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 자문
-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 복구계획 수립
- 크레인, 굴삭기 등 응급복구 지원 요청 및 신속한 복구 실시
- 구 보유 자원물자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 시 유관기관 및 민간 장비 활용

□ 재난관리체계 정비·평가

○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방재 유관기관 연락책임자 선정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재난관리협력체계 평가 구축

- 재난 협력에 문제점 분석과 함께 보완대책 수립

8) 세부추진대책

가) 재정사업

(1) 구청사 시설물 점검·보수

작성 부서	재무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한진 청사관리팀장	032-560-4741 han9520@korea.kr	재난관리단계	국가집행 계획연계
			오진욱 주무관	032-560-4744 jinwookoh@korea.kr	예방	X
			이성규 주무관	032-560-4746 skyu9214@korea.kr		

◇ 청사 시설물의 점검·보수 시행으로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및 재산과 인명보호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 인천광역시서구영조물등관리규정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청사정비	93%	95%	95%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액/예산액)*100
소방시설유지관리	12회	12회	12회	월별 소방시설물 점검 실적

□ 주요내용

- 시설물 보수 등 공사
 -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수시로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실시
- 소방시설물 보수 및 정비
 - 소방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수시로 점검 및 보수하여 화재 예방·대비

□ '25년도 주요 계획

-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공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서구청 소방시설 유지보수공사	2월
2/4분기	· 본청사 종합정밀점검 실시 · 제2청사 작동기능점검 실시	6월 5월
3/4분기	· 서구청 소방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8월
4/4분기	· 본청사 작동기능점검 실시 · 제2청사 종합정밀점검 실시	12월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21~'25)	'21	'22	'23	'24	'25	'26	'27	'28	
계	732	142	143	147	149	151	153	153	155	
청사유지관리비	565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소방시설유지관리비	167	29	30	34	36	38	40	40	42	

나) 기타시책

(1) 구청사 건축·시설 점검

작성 부서	재무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한진 팀장	032-560-4741 han9520@korea.kr	재난관리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오진욱 주무관	032-560-4744 jinwookoh@korea.kr		
			이성규 주무관	032-560-4746 skyu9214@korea.kr	예방	X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교육 실시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 인천광역시서구영조물등관리규정

□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시설안전점검	9건	9건	9건	점검 횟수
화재예방교육	2회	2회	2회	실시 횟수

□ 주요내용

- 시설물 안전점검
 - 시설물 안전 및 재난 위험요소 점검
 - 불안전 요인이 내포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경미한 보수·정비사항은 현장 조치
 -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물은 예산반영 조치
- 화재예방 교육 실시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에 의거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며, 연1회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훈련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설연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1월
	·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3월
	· 소방시설 현장점검	매월
2/4분기	· 상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5월
	· 하절기 및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6월
	· 휴가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7월
	· 소방시설 현장점검	매월
	· 2025년 상반기 소방 합동훈련 및 교육 실시	5월
3/4분기	·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8월
	· 추석연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9월
	· 소방시설 현장점검	매월
4/4분기	·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11월
	· 연말연시 대비 안전점검	12월
	· 소방시설 현장점검	매월
	· 2025년 하반기 소방안전교육 실시	11월

라-5) 환경(폐기물)

1) 현 황

< 연도별 폐기물 피해발생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 (통계 출처) 자원순환과 소관 통계 자료

2)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등) 관련사고 미발생

3) 관련 계획 및 규정

분야	유형	관계법령	주요내용	주관 부서
사회재난	환경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처리	자원순환과

4) 의견수렴 : 해당사항 없음

5) 목 표

< 연도별 목표 >

(단위:건, 백만원,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6) 재정투자현황 : 해당사항 없음

기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등) 관련 현황

○ 수집운반업체 주요현황

- 일반생활폐기물업체 : 5개 업체
- 대형폐기물업체 : 1개 업체

기관별 (업체수)	연번	수거형태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서구 (6)	1	단독공동 혼합	태성환경	최진원	576-0374	청라동 96-1, 908호(하엘에스페이스)
	2		경인환경	정성훈	571-0851	중봉대로 30번길6(석남동)
	3		삼우산업	김용배	561-4400	건지로 86번길 37-1(가좌동)
	4		검단환경	한영석	562-7152	원당대로 269번길 7-1(오류동)
	5		이도	최정훈	563-0186	드림로 172(백석동)
	6	대형	(주)천일에너지 성수센터	박상원	562-1008	인천 서구 오류동 1763-8

○ 생활폐기물 적환장 현황

- 위 치 : 서구 경서동(수도권 매립지 2공구내)
- 면 적 : 33,000m²(9,982평)
- 설치주체 : 인천광역시(관리 : 구청 및 사용업체)
- 일일 적환량 : 약 900톤
- 토지 소유주 : 환경부 및 서울시, 인천시
- 유지관리 : 사용 업체별 운번제
- 사용업체 : 8개구, 14개 업체

○ 청라생활폐기물 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

- 위 치 : 인천 서구 경서동 673-6번지 일원
- 면 적 : 156,077m²(47,213坪)
- 규 모(1일 처리기준)
 - 소각시설 : 500톤(250톤×2기) ⇒ '02. 1가동

- 음식물 자원화시설 : 100톤/일(건식사료화)
- 처리구역 : 옹진군 및 8개구 전지역(공동주택 우선)
- 쓰레기선별장
 - 위치 : 인천 서구 거월로37 일원
 - 면적 : 5,981m²
 - 규모 : 폐합성수지 폐기물 약 300여 톤 적치 가능
-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집하장 현황

구분	위치	관로 길이 (km)	설계 처리 용량 (톤/일)	운전 시간 (시간)	사업자분 투입구(개)				공기 흡입구 (개)	섹션 밸브 (개)
					계	일반	대형	음식물		
제1 집하장	서구 첨단동로 298	12.72	12.59	8:00~17:00	74	32	6	36	35	11
제2 집하장	서구 로봇랜드로 269	4.89	16.83	8:00~17:00	0	0	0	0	0	5
제3 집하장	서구 중봉대로 715번길 28	6.33	11.32	8:00~17:00	40	16	4	20	9	8
제4 집하장	서구 청라대로 2	12.92	19.23	8:00~17:00	79	31	11	37	24	11
제5 집하장	서구 담지로 42번길 15	8.87	15.05	8:00~17:00	57	19	10	28	17	16
합계		45.73	75.02		250	98	31	121	85	51

- 수도권매립지 현황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일원
 - 반입대상 :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 매립장 규모

(단위:1000m²)

계	1매립장 (매립완료)	2매립장 (매립완료)	3매립장 (매립중)	4매립장	기타
16,002	4,089	3,779	3,071	3,889	1,174

관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등) 관련 업무 담당 현황

부서명	소속 팀	담당자	담당 시설	비고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최한울	일반 생활폐기물 업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팀	장문석	청라 자동집하시설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	오승우	수도권 매립지 관련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	전현우	대형 폐기물 업체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김준모	쓰레기선별장	

나) 대비단계

□ 재난대응 상호협력체계 구축

- 책임 및 지원부서
 - 책임부서 : 안전총괄과
 - 지원부서 :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도로과
- 시설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시설
자원순환과	최한울	560-4392	일반 생활폐기물 업체
자원순환과	장문석	560-3364	청라 자동집하시설
자원순환과	오승우	560-4552	수도권 매립지 관련
자원순환과	전현우	560-4553	대형 폐기물 업체
자원순환과	김준모	560-1936	재활용 선별장

-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 자원순환과 부서장 관할 하에 상황실 설치 운영

다) 대응단계

□ 단계별 대응업무 확립

구 분	단계별	주요대처 및 조치사항
1단계	재난발생단계	○ 상황실 설치 및 운영
2단계	폐기물 발생단계	○ 발생량 파악 ○ 장비 및 인력 지원 협의
3단계	폐기물 수거 및 처리단계	○ 재난현장 인력 및 장비투입 ○ 임시적환장 설치(쓰레기선별장 활용)
4단계	재난복구 마무리단계	○ 재난·재해발생지역 일제대청소 실시 ○ 폐기물처리비용 산출과 국고지원신청

□ 1단계(재난발생단계)

총괄지휘	자원순환과장	박 성 현(4027)
대책 1반	자원순환팀장	김희진(4391) 외 16명
대책 2반	폐기물관리팀장	김민수(4401) 외 16명
지원반	환경공무원	방 석 수 외 143명
	공무직근로자	서 동 원 외 1명

○ 상황실 설치 및 운영

- 반별임무

반 별	주 요 임 무
대책 1반	○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 수거장비 운송 지원요청 (도로팀, 507여단 1대대) ○ 오염물질 방재장비 지원요청(환경관리과) ○ 재난현장 필요 인력배치 및 수거작업 지원(환경공무원)
대책 2반	○ 폐기물 수거·운반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 쓰레기선별장 관리 및 수용가능량 파악(선별장 공무직근로자) ○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 협의
지원반	○ 환경공무원 재난 현장 투입 ○ 공무직근로자 쓰레기선별장 투입

□ 2단계(폐기물 발생단계)

- 재난폐기물 발생량파악 및 임시적환장 확보
- 신속한 수거를 위한 재난현장의 폐기물 발생량 우선 파악
- 임시적환장 확보

구 분	위 치	폐기물수용면적	비 고
임시적환장	서구 거월로37	5.981㎡(1,809평)	현 쓰레기선별장

- 수거 장비 투입 및 인력 지원협의

구 분	기관, 단체명	업 무	전화번호	비 고
주 인력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원 144명 및 청소차량 투입	560-4396	
보조 인력 및 장비지원	환경관리과 도로과	환경오염조사 및 건설차량 투입	562-4631	
폐기물수거	자원순환과 임시적환장	공무직근로자2명 투입 및 폐기물 반입	560-1936	

□ 3단계(폐기물 수거단계)

- 환경공무원 활용

구 분	명 단	전화번호
A조	방석수(감독) 외 71명	010-5351-3817
B조	김경수(감독) 외 71명	010-8999-1143

※ 환경공무원 재난환경정비 조편성(2개반 144명)

- 청소장비 활용

계	노면 청소차	노면 살수차	집게차	기동순찰차	기동처리차
21	10	5	2	2	2

○ 청소 수거·운반 등 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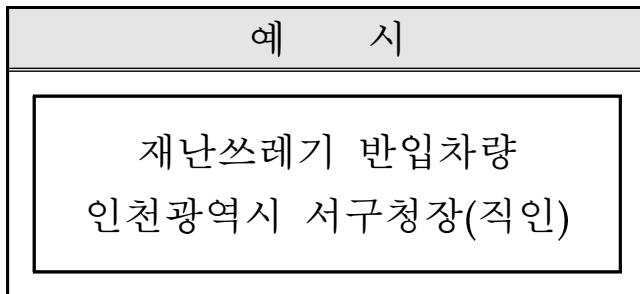
구 분	관련부서	연 락 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태성환경	576-0374
	경인환경(주)	571-0851
	삼우산업(주)	561-4400
	검단환경(주)	562-7152
	(주)이도	563-0186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천일에너지 성수센터	562-1008

○ 폐기물 임시 적치 : 현 쓰레기선별장

○ 추후 폐기물 반입처리(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 재난발생지역에서 수거된 폐기물 반입을 위하여 임시반입 허용에 관한 협의(반입량, 임시반입차량, 반입기간, 기타제반사항 등)

○ 일반차량 이용 시 폐기물반입차량으로 표시 후 반입허용



□ 4단계(재난복구 마무리단계)

○ 재난지역 일제대청소 실시

- 폐기물수거가 완료된 이후 미수거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일제대청소 실시

라) 복구단계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폐기물 유형 분석 : 유해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파악
- 복구계획 수립 : 필요 인력 및 장비 파악 및 배치

복구사업관리

- 재난지역 일제대청소 실시
- 폐기물 처리 비용 예산 반영 및 처리

8) 세부추진대책

가) 기타시책

(1)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적환장 지도 점검

작성 부서	자원순환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희진 자원순환팀장	032-560-4391 pro111@korea.kr	재난관리단계	국가집행계획 연계
			최한울 주무관	032-560-4392 tmdkltf@korea.kr	예방	X

◇ 재난 발생시 원활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수집·운반 업체 및 적환장 점검

목 표

목표명	'23년 실적	'24년 목표	'25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6회	6회	6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횟수

주요내용(점검내용)

- 폐기물 반입량 입치 여부 및 적환장, 차고지 관리 실태 점검
- 수거차량·장비 등 관리실태 점검
- 직원 교육 및 관리사항
- 청소민원의 접수 및 민원처리 상태

□ ' 25년도 주요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및 적환장 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및 적환장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월
2/4분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및 적환장 점검	6월
3/4분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및 적환장 점검	9월
4/4분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및 적환장 점검	12월

제 V 장

2025년 안전관리계획

행정사항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장은 재난예방에 소임을 다하여야 하며, 소관 안전관리 업무를 본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재난발생 시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단체에서는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 기능별 재난 대응 활동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4에 따라 작성된 계획으로 분야별 재난안전관리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본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물자 확보 등의 소요 예산은 적기에 확보하고 물자 등 확충에 우선 노력하여야 합니다.
 - 관계부서의 장은 소관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이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인사이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사무를 철저히 인계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획에 기재된 기관·업무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등 변동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총괄과(☎032-560-2885)로 즉시 통보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작성부서 현황 507
2. 지역 재난관리책임 기관 비상연락망 509
3. 중요시설 현황 510

I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작성부서 현황

분야	유형(00개)	작성부서	담당자	연락처	
자연 재난 (6)	1) 풍수해(주요유형)	안전총괄과	조상혁	032-560-4705	
	2) 대설·한파(주요유형)	안전총괄과	이지원 조상혁	032-560-4704 032-560-4705	
	3) 폭염(주요유형)	안전총괄과	조상혁	032-560-4705	
	4) 산사태	산림정원과	김기양	032-560-4792	
	5) 가뭄	안전총괄과	이지원	032-560-4704	
	6) 지진	안전총괄과	이지원	032-560-4704	
사회 재난 (20)	1) 화재·폭발(주요유형)	안전총괄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설정한 백진원 김병훈	032-560-2885 032-560-3382 032-560-5932	
	2) 감염병(주요유형)	질병관리과	정원경	032-718-0442	
	3) 사업장 사고(주요유형)	안전총괄과	이은지	032-560-3282	
	4) 시설물 재난·사고 (주요유형)	문화시설	문화관광체육과	김민현	032-560-4347
		체육시설	문화관광체육과	김은혜 정용운	032-560-4134 032-560-3185
		청소년시설	문화관광체육과	이여화	032-560-3102
		의료시설	보건행정과	김해리	032-718-0422
		저수지	경제정책과	안다솔	032-560-4454
		공동주택	주택과 주택관리과	오영진 최낙원	032-560-3003 032-560-4734
		다중이용시설	안전총괄과	김환길	032-560-2884
	5) 유해화학물질(주요유형)	환경관리과	차민철	032-560-4354	
	6) 미세먼지(주요유형)	기후대기과	길중근	032-560-5924	
	7) 도로교통 재난·사고(주요유형)	교통정책과	김선구 안세준 박지호	032-560-3042 032-560-3043 032-560-3044	
	8) 산불	산림정원과	박용주	032-560-4796	
9) 생활·레저 사고·승강기사고	기업지원과	최형연	032-560-2892		
10) 생활·레저 사고·전기가스사고	기업지원과	권용훈	032-560-4462		

분야	유 형(00개)		작성부서	담당자	연락처
	11) 생활레저 등산-레저 사고		산림정원과	김기양	032-560-4792
	12) 수질오염		환경관리과	서예진	032-560-4366
	13)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경제정책과	장규성	032-560-1902
	14) 농·어업 사고		경제정책과	조은지	032-560-4453
	15) 범죄		가정보육과	이승주	032-560-5735
	16) 자살		치매정신과	남다영	032-718-0623
	17) 해양오염		환경관리과	서예진	032-560-4366
	18) 식품사고		식품위생과	정여정 이현주	032-560-4383 032-560-4332
	19) 의료제품 사고		보건행정과	이은주	032-718-0425
	20) 전시재난·테러		안전총괄과	이효진 김유진	032-560-4283 032-560-4281
공통 (6)	1) 안전취약 계층지원 (주요유형)	아동·여성	가정보육과	이승주	032-560-5735
		사회복지시설	복지정책과	정혜연 정기원	032-560-4293 032-560-429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총괄과	이윤상	032-560-2883
		어린이·고령자	교통정책과	나윤경	032-560-4852
	2) 재난 구호 및 복구 (주요유형)		안전총괄과	이지원	032-560-4704
	3)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안전총괄과	이윤상	032-560-2883
	4)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보건행정과	허현정	032-718-0602
	5) 재난안전관리체계		안전총괄과	전오영	032-560-4585
	6) 국가핵심 기반사고	정보통신사고	정보통신과	안정윤	032-560-4305
		전산망 사고	정보통신과	조연우 이진영	032-560-4084 032-560-4086
		사이버 안전관리	정보통신과	조연우	032-560-4084
		공공청사	재무과	오진욱 이성규	032-560-4744 032-560-4746
		환경(폐기물)	자원순환과	최한울	032-560-4392

II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주무부서 및 담당자			비고	
	부서명	연락처			
		사무실	FAX		
1	서구청	안전총괄과	560-4700	560-2735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무관리실	560-9393 560-9402	560-9395	
3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 인천사무소	인천안전환경팀	560-3711	453-6609	
4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교통안전팀	560-6955 560-6100	560-6058	
5	코레일 공항철도(주)	안전환경팀	745-7183 745-7788	745-7902	
6	한국중부발전(주) 인천화력발전본부	안전품질팀	070-7511-4024	070-7511-4771	
7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발전본부	총괄운영팀 안전품질팀	580-2260 070-5007-7141	070-5007-7159	
8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발전본부	기술안전팀	070-7713-3014	070-7713-3087	
9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사	안전관리부	579-2263	579-2265	
10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고객지원팀	560-1213	560-1214	
11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590-3010	590-3229	
1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총무팀	560-6675	560-6759	
13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팀	456-2324	456-2099	

Ⅲ

중요시설 현황(국가핵심기반 시설)

시설명		관리기관 및 연락처		비고
		기관명	연락처	
1	인천발전본부	한국중부발전(주)	070-7511-1114	
2	신인천복합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주)	070-7113-3011	
3	서인천발전본부	한국서부발전(주)	070-5007-7147	
4	SK인천정유(주) 인천공장	SK인천정유(주)	032-570-5262	
5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주)	032-560-6114	
6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주)	032-292-7164	
7	공항철도	공항철도(주)	032-745-7178	
8	경인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411	
9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032-560-9866	

※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핵심기반 지정 현황('24년 기준)